

軍

史

2024. 3. 제130호

Military History

- 조선 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재임 실태
- 조선후기 충청수영의 松政
- 1896년 을미홍주의병 선봉장 정인희와 정산 전투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과 과제
-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할에 관한 연구
- 1940~50년대 군가 음반 연구
-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제1차 세계대전 협력 배경에 대한 검토

[서 평]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
(서울: 국방부, 2023), 492 페이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제130호 | 2024년 3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조선 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재임 실태	
김병훈	1
■ 조선후기 충청수영의 松政	
- 안면도를 중심으로 -	
김명래	67
■ 1896년 을미홍주의병 선봉장 정인희와 정산 전투	
조준희	113
■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과 과제	
- 사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	
고종성	145
■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할에 관한 연구	
-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메시지」를 중심으로 -	
문관현	187
■ 1940-50년대 군가 음반 연구	
이준희	231
■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제1차 세계대전 협력 배경에 대한 검토	
- 사회주의적 ‘선의’에 입각한 전쟁 협력논리 재조명 -	
고용준	259

軍史

[서 평]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2023), 492 페이지

| 김열수 295

[부 록]

연구소 동정	309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311
『軍史』誌 投稿案内	313
연구윤리예규	316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1-65
<https://doi.org/10.29212/mh.2024..13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 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재임 실태

김병훈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객원교수

목 차

1. 머리말
2.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부임 현황
3.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출신 이력
4.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상피와 품계
5. 맺음말

초 록 본고는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재임실태를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병사의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연구에 참고한 자료는 주로 『조선왕조실록』이고 이 밖에 각종 읍지의 『선생안』이나 『일기』 등을 이용했다. 연구 범위는 조선 건국부터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1592년까지이다.

조선 전기 하삼도에 부임한 병사의 연인원은 총 395명이다. 이들 중 같은 도에 연달아 근무했던 병사는 31명으로 8%에 불과했는데, 대다수가 공신세력들이었다.

병사의 임기는 24개월이었으나 실제로 평균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그 절반인 12개월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는 병사의 작전 실패, 개인적 인 사정과 비리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조선 전기 하삼도를 배출한 가문은 총 52성 120본관이었다. 이 중 2명 이상을 배출한 가문은 30성 55본관이었다. 하삼도 병사를 배출했던 가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와는 달리 병사를 역임한 자들이 부자·형제 등 혈연관계였다.

병사는 외관직이기 때문에 상피제도 중에서 본향상피도 적용받았다. 따라서 병사로 부임한 자들의 연고지와 부임지를 분석해 보면 서울·경기권 출신이 다소 우세했다. 시대별로 보면 15세기에는 본향출신이 좀 더 많이 임명되었으나 16세기에는 감소했다.

병사에 임용될 당시 관품은 종2품의 가선대부가 주를 이루었고 다음으로 3품의 당상관이 임명되었다. 병사에 가장 많이 임명된 연령은 40대, 50대였고 다음으로 60대와 30대였다.

주제어 : 조선 전기, 병마절도사, 하삼도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 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머리말

조선 시대의 군대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분리되었고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 운용되었다. 육군은 종2품의 품계를 지닌 兵馬節度使가¹⁾ 설치되어 군대를 節制하고 수군은 정3품의 水軍節度使가 통솔하는 이원체제였다. 육군의 최고 지휘관인 兵使는 營鎮軍체제 때는 배속된 영진군을 지휘하고 군무를 감독하면서 유사시에는 외적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세조대에 오게 되면 진관체제가 확립되면서 병사는 主鎮의 主將이 되었고 그 예하로 巨鎮과 諸鎮의 수령들이 鎮將으로 소속되면서 이들의 군무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되었다. 따라서 병사는 도내의 육군을 움직여 한 지역의 방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하삼도는 양계와는 달리 고려 말부터 시작된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가 속출되는 상황이었다. 조선은 군사제도와 무기체계의 개편, 연해지역의 성곽 구축, 專任의 병사 파견 등을 통해 지방군을 재건하며 왜구에 대응했다. 특히 지방군의 육군은 실질적으로 군현의 방위를 담당하는 군대였기에 때문에 병사의 임무가 막중했다.²⁾ 이에 병사의 재임 실태를 상세

1) 병마절도사라는 호칭은 세조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에는 도절제사라고 칭해졌다. 본 고에서는 『經國大典』에 법제화된 명칭인 병마절도사로 통칭하며 이하 병사라 약칭한다.

2) 더불어 병사는 수사를 겸직하거나 수군과 관련된 업무를 종종 수행하기도 했다. 종종 때는 잠시 兵使兼治制가 실시되었다가 폐지되기도 했다. 『태종실록』권9, 태종 5년 2월 24일(경인) ; 『중종실록』권32, 중종 13년 2월 21일(경인) ; 『중종실록』권44, 중종 17년 4월 4일(경진).

히 살펴보는 것은 조선 전기 하삼도 지방의 육군을 관장했던 병마절도사제도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병사와 관련된 기왕의 연구로는 병사제도의 정립 과정,³⁾ 각도 병영의 설치와 이설⁴⁾ 등을 중심으로 밝혀져 왔다. 이 중 병마절도사 재임 실태에 관해서 오종록은 『실록』 등의 자료를 통해 조선 초기 8도의 도절제사를 지낸 45명의 부임시기와 출신 및 관직 등을 밝혀냈다.⁵⁾ 그리고 유동호는 조선 후기 하삼도 병사의 재임 실태를 살펴 출신성분과 성관 및 평균 재임 기간을 부록으로 드러내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재임 실태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조선 전기 병사의 명부가 수록된 선생안이 없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

병사는 종2품의 상급 무관이기 때문에 관변자료인 『朝鮮王朝實錄』에 그 임명과 부임, 그리고 교체 사유에 대한 기록이 산전

3) 장병인, 「朝鮮初期의 兵馬節度使」, 『韓國學報』 34, 1984 ; 오종록, 「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 上·下」, 『震檀學報』 59·60, 1985.

4) 金淇森·柳承宙·沈允洪, 『全羅兵營史研究-康津兵營城과 하멜滯留址 攷研』, 조선대학교, 1999 ; 안종만, 「조선시대 경상좌병영의 이설논의 검토」,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임선빈, 「조선시대 '海美邑城'의 축성과 기능변천」, 『역사와 담론』 58, 2011 ; 감병훈,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의 설치와 이설」, 『민족문화논총』 79, 2021.

5) 오종록,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2014.

6) 유동호,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부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 조선 후기에 생산된 병마절도사 『선생안』은 경상우도의 『羈營道先生案』이 거의 유일하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 부임한 병사의 정보는 선조시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의 병사제도 운영을 살펴보는 데는 제한이 있다. 『축영도선생안』의 전기 명단은 그 성명과 품계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임명된 병사는 도입과 퇴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 누락된 인물들이 있거나, 임명만 되고 실제로 부임하지 못한 자도 포함되어 있어 다른 사료와의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시대를 조망하는 병사제도 운영 연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료이다.

되어 있다. 『실록』에는 병사로 임명된 자들의 개인 이력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복무실태를 규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일기』나,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일부 군현의 『읍지』 선생안에 조선 전기의 명단이 남아있다. 선생안에는 이전에 병사의 직임으로 왔거나 병사로 移職했다는 기록이 있어 하삼도 병사의 재임명단을 구성할 때 일부 도움이 되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실록』 등을 기본 자료로 삼아 조선 전기⁸⁾ 하삼도 병사의 총 도입인원과 평균 재임 기간, 그들의 과거급제 여부와 문·무의 종류, 성관과 본향, 상피제의 적용, 도입 당시의 품계와 나이 등을 시기와 왕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다면 병사제도가 정착된 이후 실제로 원칙이 고수되거나 변통이 발생하는지 규명될 것이다. 더불어, 왕대별로 병사의 임명 등 재임시 특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는 조선 전기 하삼도 지방의 육군을 관장했던 병마절도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부임 현황

1) 명단 작성 기준

조선 전기 하삼도에 도입한 병사는 연인원 총 395명으로 이는 필자가 『실록』과 『읍지』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병사의 임명과 부임 기록을 정리한 후, 왕대별과 도별로 정리하여 합한 수치이

8) 본고에서 말하는 조선 전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1592년(선조 25) 4월까지를 말한다.

다. 하지만 『실록』에서 병사의 임명과 遞職에 대한 기록은 일부 누락되었고, 특히 선조 시기의 전반 부분은 내용이 부실하여 병사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읍지』의 선생안도 조선 전기의 내용은 빈약한 측면에 속하며 병사의 『선생안』도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병사의 명단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하삼도 병사 총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병사의 임명 기록으로만 할지, 아니면 실제로 부임지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했던 도입 기록까지 삼을지는 해당 결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병사의 총원과 관련해서 임명과 도입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총 인원을 계산했음을 밝혀둔다.

첫째, 조선시대 유일한 병사의 선생안인 『蠹營道先生案』은 선조대의 병사명단을 작성할 때 그 기준을 임명과 부임을 혼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⁹⁾ 즉 조선 후기의 인사는 부임을 기준으로 삼았고 조선 전기의 인사는 임명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축영도선생안』이 제작될 때 앞선 병사의 명단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료에서 보이는 임명기록까지 수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축영도선생안』에는 누락되었으나 선조 시대에 실제로 병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자가 다른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현재 조선 시대의 명확한 병사의 『선생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축영도선생안』의 임명 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병사에 임명되었다고 해도 중간에 대간들에 의해 탄핵되어 임명이 철회되고, 또는 당사자가 사직하여 부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시켰다. 사료에서 보이는 병사의 임명을 받기만 하

9) 그 예시로 金時敏은 임명은 받고 부임하지는 못했으나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

고 중도에 퇴임한 자들은 실제 재임한 인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발생한다. 경상우도의 경우 實地로 부임한 병사는 125명인데 반해 경상우도 병사에 임명된 자는 17명이 더 존재했다. 이밖에 경상좌도는 20명, 전라도는 13명, 충청도는 11명으로 총 61명이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한 인원이었다. 즉, 본 연구의 병사 총원은 注擬되어 왕의 受點을 받았지만 사직·철회하거나 또는 대간에 의해 탄핵되어 임명이 취소된 인물은 제외하며 임명이 확실한 경우에만 포함하였다.

둘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근거로 한다. 조선 후기의 법전인 『續大典』에서 관찰사의 임기는 拜辭日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며 병사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¹⁰⁾ 또 『大典通編』에는 임명되었으나 肅拜하지 않고 체직된 자는 그 履歷으로 허용치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¹¹⁾ 그렇기에 임명기록이 없더라도 왕을 만나 辭朝를 행한 내용이 있는 자들은 선별하여 총원에 포함하였다.¹²⁾ 이밖에 조선 전기에 병사로 임명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였던 水使의 역임 慣例가¹³⁾ 『대전통편』에는 법으로 明記되었다.¹⁴⁾

따라서 조선 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선생안이 남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병마절도사제도의 실제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임명이 확실시 되는 경우와 도입을 기준으로

10) 『속대전』이전, 외관직, “凡瓜限觀察使都事 以拜辭日始計<節度使營將虞候同>”.

11) 『대전회통』병전, 외관직, “兵水使未肅拜而遞者 勿許履歷”.

12)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사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부임한 적도 있다. 李順蒙·郭連城·黃衡·柳聃年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은 왕이 직접 사조를 생략하고 곧장 부임지로 발령했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대개 그 지방에 사변이 있거나 방위가 시급할 때 종종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사조를 했어도 實地로 부임하지 못한 경우도 1건이 존재한다. 尹任은 사조까지 마쳤으나 孝惠公主의 장례를 주관하기 위해 본직이 갈려 도입하지 못했다.

13) 수사의 직임을 거치지 않고 병사의 중임을 맡길 수 없다는 사간원의 의견이 있다. 『명종실록』권8, 명종 3년 7월 26일(기해) ; 또한 수사가 병사로 승진함은 陞職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종실록』권43, 중종 16년 12월 29일(정미).

14) 『대전통편』병전, 외관직, “西北外諸道兵使 以已經水使人備擬”.

삼는 게 총원에 대한 정확한 값에 근접한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

2) 임명과 도임

조선 전기 하삼도에 병사로 임명되거나 부임한 병사의 총 연 인원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선 전기 하삼도에 도임한 총 연인원과 재임 수

도 명 왕대별	경 상 우 도 ¹⁵⁾	경 상 좌 도	전 라 도	충 청 도	합 계
태 조	5	-	1	3	9
태 종	12	8	13	13	46
세 종	16	13	12	13	54
문 종	2	1	0	0	3
단 종	3	4	2	3	12
세 조	8	7	8	12	35
예 종	2	2	1	2	7
성 종	13	12	13	14	52
연산군	3	1	4	2	10
중 종	20	17	15	12	64
명 종	12	14	15	7	48
선 조	24	10	7	4	45
미 상	5	0	1	4	10
합 계	125	89	92	89	395

출처 : 『조선왕조실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였으며 다음의 모든 <표>도 같다.

비고1 : 총 인원은 再任[重任·仍任] 인원을 포함한 수이다.

비고2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15) 경상우도 항목에는 경상좌병영이 설치되기 이전과 경상좌·우영이 합병된 시기가 편의상 포함되었다. 이는 경상도 좌영이 폐지되고 우영으로 합속되었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 전기에 하삼도 병사로 재임한 총 연인원은 395명으로 경상우도에는 125명, 경상좌도는 89명, 전라도는 92명, 충청도는 89명이 부임했다. 이 중 선조 시대의 인사는 대부분 누락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3도의 경우도 경상우도와 비슷한 인원이 재직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우선, 각 병영이 정착되고 난 뒤 경상도 병사로 처음 부임한 인물은 崔有璉이 확인된다. 그는 1392년(태조 1) 경상도 병사로 서 왜구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중국인들을 한양으로 解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최유련은 본래 州吏로 鄉吏職을 세습하는 출신이었다는 점이다.¹⁶⁾ 그러다가 여말선초 때 이성계의 막하에서 활동하며 공을 세우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 개국원종공신으로 임명되었다.¹⁷⁾ 그의 아들인 崔迺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병사를 지내며 그의 가계는 무관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갔다.¹⁸⁾ 이후 태조 시기 그의 후임으로 파견되는 경상우도 병사들인 趙狷¹⁹⁾, 崔雲海²⁰⁾, 尹邦慶²¹⁾ 등도 개국·원종공신 출신이며 이는 전라도와 충청도도 해당된다.

실록에서 전라도 병사로 처음 확인되는 인물은 金贊吉이다. 그는 병졸 출신으로 신분은 미천했으나 수군에서 군공을 세워 병사를 역임하고 개국원종공신에 봉해진 인물이다.²²⁾ 김빈길은 1397년(태조 6) 1월 왜구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는데,²³⁾ 이전부터 병사로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의 부

16) 『세종실록』권33, 세종 8년 7월 11일(임인).

17) 서병패, 「崔有璉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분석」, 『詳明史學』 10, 2006, 232~233쪽.

18) 주16)과 같음.

19) 『태조실록』권2, 태조 1년 9월 27일(을사).

20) 『태조실록』권2, 태조 1년 10월 9일(정사).

21) 주20)과 같음.

22) 『태종실록』권10, 태종 5년 12월 21일(계미).

23)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1월 28일(신사).

재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라도도 경상도와 같이 개국 초부터 병사가 존재했지만, 사료에서는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김빈길 전임의 병사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충청도는 李承源이 1394년(태조 3) 3월에 임명되었다. 같은 날 경상도 병사로 조건이 최유련의 후임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도 충청도에 두 번째로 부임한 병사가 아닐까 사료된다. 이승원도 건국 이전부터 위화도 회군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이성계의 막하에서 왜구와 전투를 치르며 공훈을 쌓고 개국원종공신에 녹훈된 무장이었다.²⁴⁾

주목할 점은 태조 시대에 병사로 임명된 자들 중 상당수가 개국원종공신²⁵⁾이라는 것이다. 태조의 개국원종공신은 이성계가 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軍官출신들이자 훗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던 핵심세력이었다.²⁶⁾ 이러한 사향은 개국원종공신을 제일 처음 책봉할 때의 교지에서 그 성격이 확인된다.

都評議使司에 교지를 내렸다.…“安州牧使 李承源, 廣州等處兵馬節制使 崔雲海…내가 장수가 되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麾下에 있으면서 힘든 일에 종사하고 적군을 방어하여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공로가 可惜하다. 또 정몽주 등이 國權을 마음대로 부려 臺諫을 몰래 부추겨 禍亂을 부채질하여 장차 내 몸에까지 화를 미치게 하려고 꾀했는데, 이에 항거하는 疏章을 올려 정몽주와 그 黨與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간사한 계책을 瓦解시켜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그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다. 마땅히 모두 ‘原從功臣’이란 칭호를 내려야 할 것이다…

24) 주20)과 같음 ; 『세종실록』권32, 세종 8년 6월 11일(계유).

25) “元從의 본래 뜻은 왕이 잡지 때 호종한 인물 중 등극한 후에 擢用한 官員이나 功臣號를 받은 인물을 지칭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박천식, 「開國原從功臣의 研究」, 『論文集』, 10, 1976, 133~134쪽).

26) 박천식, 「앞의 논문」, 135쪽.

상장군 尹方慶은 그때에 어머니 喪事를 당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班列에 있지 않았지마는, 한때의 연고로 그 옛날의 공로를 버릴 수는 없으니, 공신의 칭호를 또한 위와 같이 하고”²⁷⁾

즉, 개국원종공신의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태조가 出將入相일 때 자신의 휘하에서 무공을 세운 자들을 뜻하고, 둘째 정몽주의 攻駁 때 태조를 끝까지 보필하면서 반박 상소를 올린 자들을 말한다.²⁸⁾ 두 기준에서 이승원·최운해는 첫째 기준인 군무와 관련되고 최유련²⁹⁾과 윤방경은 둘째 기준에 부합된다. 이렇게 본다면 개국원종공신은 오랫동안 이성계의 옆에서 군사·정치적인 활동을 같이한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태조는 國初부터 개국원종공신들을 통해 지방 군권을 장악하고 변란에 대비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정종의 치세 때는 병사를 임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태조 말년인 1396년(태조 6) 4월 12일에 도절제사제도가 혁파되었던³⁰⁾ 여파로 명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³¹⁾ 당시 병영이 폐지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추정되는데 첫째는 정도전에 의해 주도된 지방군의 군사권 통제를 위한 방안이었다.³²⁾ 둘째

27) 『태조실록』권2, 태조 1년 10월 9일(정사).

28) 두 기준은 뒤이어 이루어진 개국원종공신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이후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을 보면 다른 기준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辛氏가 왕위를 훔쳐 정사가 어지러울 때 백성을 깨우치고 훌륭한 정사를 한 사람, 왕실 제도를 정비한 사람, 태조가 즉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大位에 오르도록 권한 사람 등이다”라고 설명한다(박도식, 「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의 研究」, 『人文學研究』 9, 2005, 187쪽).

29) 최유련은 정몽주 등의 공격으로부터 태조를 비호한 공로로 임명되었음을 그의 공신녹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도식, 「앞의 논문」, 188~189쪽).

30)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21일(임신).

31) 1399년(정종 1) 9월 10일의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 병마도절제사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할 것을 보고하여 각도에 騎船軍이 복구되는데 당시 병사의 신원은 알 수가 없었다.

32) 오종록, 「앞의 논문」, 83쪽.

는 당시 경상도에 침입한 왜구를 제대로 금압하지 못했던 병사들의 잘못된 應戰을 통해 방어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왜구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연해지역을 약탈한 후 신속히 그 지역을 벗어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병사가 당도한 뒤에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따라서 왜구가 침략하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병력을 분산시켜 방위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영을 폐지한 것이었다.³³⁾

1398년(태조 7)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면서 병영은 복구되었다. 정확한 시기는 단정할 수 없으나 1398년(태조 7) 10월경으로 생각된다.³⁴⁾ 태종과 세종대를 거치면서 왕권이 안정되고 병사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자 4도에서 병사로 부임하는 인원은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종과 예종은 재위가 각각 3년과 1년밖에 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무려 12명과 7명의 병사가 부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단종은 병사를 대부분 유임하였다. 하지만 계유정난을 전후하여 4도의 병사가 거의 일시에 교체되는데 경상우도에는 金允壽, 경상좌도는 河漢, 전라도는 崔淑孫, 충청도는 成勝 등이다. 당시 세조는 정난을 성공시키고 政局을 안정화하고자 중앙의 관료들을 회유하면서³⁵⁾ 지방은 병사들을 통해서 혹시 모를 변란을 대비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충청도 병사는 본래 성

33) 감병훈, 「앞의 논문」, 5~10쪽.

34)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182~183쪽.

35) “단종의 즉위 후 황보인과 김종서의 국정에 운영에 대해 集賢殿官 등 중진관료와 대간은 集賢殿直提學 河緯地가 ‘늙은 여우[김종서]가 죽으면 내가 다시 관직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관료들과 대간들은 불만과 비판이 팽배하였다. 중진관료와 왕 측근세력의 집정대신과 조정에 대한 불만은 세조로 하여금 . . . 왕 측근 시위군사와 내사들을 지지세력으로 포섭하여 활동하며, 계유정변을 성사시키고 집권하는 좋은 조건을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 . . 이들 중진관료는 계유정변 때에는 집정대신의 전횡에 반발에서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침묵하였다”라고 했다(한충희, 朝鮮 世祖代(1455~1468) 原從功臣研究-1,2等功臣을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22, 2013, 6~7쪽).

승 대신에 池淨이 이미 사배를 마치고 재임지로 내려갔으나 정난이 성공하고 난 뒤 곧바로 金宗瑞의 黨與로 지목되어 귀양을 보냈기 때문이다.³⁶⁾ 또 함길도 병사였던 李澄玉은 정난의 사정을 파악하고 난 뒤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³⁷⁾

세조는 재위기간 동안 많은 수의 정난·좌익원종공신을 임명했는데 그 수가 3,000여 명에 달한다. 세조원종공신의 경우 등급을 보면 1등과 2등이 80명과 849명이었고 3등은 1,744명에 이르렀다. 이 중 1등과 2등은 3등과는 달리 고위 관직자가 집중되어 있고 상전이 우월했다.³⁸⁾ 세조가 원종공신을 임명한 배경은 즉위 이후 왕권을 안정시키고 본격적인 치세를 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현직 관료를 대거 포함시켜 단종폐위에 대한 관리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조정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³⁹⁾ 또 1~2등 세력이 중심이 된 원종공신 350여 명은 세조대 중반부터는 정1~3품의 당상관이 되면서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갔다. 특히 이들은 국왕의 측근에서 시위에 종사한 군사기구를 관장하면서 군사권을 장악한 후 세조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 세력이었다.⁴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조대에 임명된 병사 중에 金允壽와 河漢은 1455년(세조 1) 12월 좌익원종공신2등으로 책록된 인물이다.⁴¹⁾ 김윤수는 1451년(문종 1) 6월에 이미 병사에 임명되어

36) 『단종실록』권8, 단종 1년 10월 11일(갑오).

37) 『단종실록』권8, 단종 1년 10월 25일(무신).

38) 최정용, 「세조 원종공신의 책정과정과 성격」, 『창원사학』 2, 1995, 251~276쪽.

39) “세조의 원종공신의 중심이 된 1등과 2등 세력의 특징은 正功臣을 가족으로 두고 있고, 문과급제자가 다수며, 유력성관 출신에 참상관 이상의 자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원종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등과는 구별이 있다”고 설명한다(한충희, 『앞의 논문』, 8~14쪽).

40) 한충희, 『앞의 논문』, 22~30쪽.

41) 『세조실록』권2, 세조 1년 12월 27일(무진).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난이 발생하자 다시 세조에 의해 중임이 된 경우였다. 하한은 연달아 경상좌도에서 세 번의 연임을 했다. 이들 외에도 단종 재위기간에 세조에 의해 임명된 병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李允孫, 李宗睦, 俞益明 등도 모두 좌의 원종공신1등이었다.⁴²⁾ 따라서 세조대에 병사로 임명된 원종공신 세력은 세조의 즉위나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있던 인물들은 아니었다. 세조는 오히려 이들을 포섭하여 세력으로 삼은 뒤 지방 병권을 맡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종은 즉위 이전 대리청정과 함께 원로대신들과 의논을 통해 정사를 처리하는 院相制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대리청정과 원상제가 결합된 政局은 성종이 친정을 시작하는 시기까지 유지되었다.⁴³⁾ 원상은 세조대의 공신부터 성종의 친정까지 권력을 장악한 유력 대신 집단이었다. 이들은 세조대부터 성종대까지 공신 책록을 받은 세력들로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집단이었다.⁴⁴⁾ 또한 예종의 즉위 전후로는 이시애의 난과 남이의 옥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성종의 즉위 이후 좌리공신을 녹훈했기 때문에 기존의 공신세력은 중첩되었다.

예종조에 임명된 병사들 중 許琮, 林自蕃, 李仲英, 崔有臨이 있는데, 허중은 적개공신1등⁴⁵⁾이고 임자변⁴⁶⁾과 최유립⁴⁷⁾은 세조대의 공신이었다. 특히 이중영은 예종과 단독으로 병력을 징발할 수 있는 密符를 하사받은 자로⁴⁸⁾ 예종의 신임을 받는 자였다.

42) 주41)과 같음.

43) 김종필, 「조선시대 국왕권력 이양 사례연구 -선위와 대리청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84쪽.

44) 김원희, 「조선 성종대 '領敎事以上'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9쪽.

45) 『세조실록』권43, 세조 13년 9월 20일(임오).

46) 『단종실록』권9, 단종 1년 11월 4일(병진).

47) 주41)과 같음.

48) 『예종실록』권4, 예종 1년 윤2월 27일(임오).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1476년(성종 7) 1월 이후에도⁴⁹⁾ 공신 세력들이 병사를 계속해서 역임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⁵⁰⁾ 공신 세력들이 성종의 친정 이후 병사의 직함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진관체제 아래서도 병사를 임명하는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성종도 선왕들처럼 공신세력을 통해 지방군을 통솔하여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 병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서 인사조치가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인종은 단 1건의 병사도 임명한 기록이 없는데, 치세가 불과 8개월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병사를 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걸로 추측된다.

3) 중임

다음으로 병사의 重任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은 지방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병사를 같은 도에 오랫동안 유임시켜 그들의 私有地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⁵¹⁾ 실제로 <표 1>의 총 연인원 395명 중에서 중임자는 31명으로 비율은 8%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동일 인물이 같은 도에서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비율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중임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49) 『성종실록』권63, 성종 7년 1월 13일(무오).

50) 具謙·李從生·沈安仁·曹克治·辛鑄·安仁厚·朴植·朴居謙·裴孟達·孟碩欽·邊脩·李孫·尹末孫·李淑琦·卞宗仁·邊靖 등이 모두 공신들이었다. 공신내용은 별표를 참조할 것.

51) 『성종실록』권204, 성종 18년 6월 3일(신미).

〈표 2〉 조선전기 하삼도 병사의 重任횟수

도명 중임	경 상 우 도		경 상 좌 도		전 라 도		충 청 도		합 계
2 회	朴子安	柳龍生	權蔓	李澄玉	馬天牧	文貴	李龜鐵	柳濕	28
	尹子當	禹博							
	金允壽	柳洙	鄭種	吳誠	崔淑孫	南致勤	李之實	李宗孝	
	具謙	河叔溥							
	李大伸	蘇滄	張弼武	白惟儉	李允孫	李亨順			
	李戡	梁士瑩							
3 회	-		河漢		鄭耕		-		2
4 회	曹備衡		-		-		-		1

비고 : 인원예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하삼도에서 2회 이상 병사를 연임한 자는 28명으로 총 중임자의 90%를 차지하며, 3회 이상은 2명으로 7%를, 4회 이상은 1명으로 3%가 된다. 한 도에서 직무를 연임하더라도 대부분 2번에 그친 반면 3번 이상으로 중임되는 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한 지방의 군권에 대한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여겨진다. 각 도의 감사가 병사의 직함을 겸직했던 이유도 바로 무관의 군사권을 문관인 감사가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에서 병사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인물이 있다는 점은 군권의 사유화에 대한 위험이 있더라도 그들을 유임시켜야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우선, 2번 이상 중임된 자 중에 朴子安이 주목된다. 그는 고려 말 왜구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이후 개국원종공신에 임명된 자로 태조대부터 고위 관직을 역임했다. 1397년(태조 6) 1월 경상도에서 왜구에 의해 知蔚州事 李殷의 납치사건이

발생⁵²⁾했다. 박자안은 왜구 토벌에 참여한 적이 있어 동월에 전라도 병사로 임명되었다.⁵³⁾ 이때 박자안과 함께 경상도와 충청도 병사로 임명된 인물은 尹邦慶[尹祗]과 趙英茂로 태종의 최측근들이었다. 또, 河崙은 현장 담당자였던 鷄林府尹 柳亮의 후임으로 이미 임명되었는데⁵⁴⁾ 사실은 정도전의 요동 攻伐 때문에 미움을 받아 계림부윤으로 좌천된 것이었다.⁵⁵⁾

박자안은 2월에 다시 慶尙·全羅 都安撫使로 제수 받고⁵⁶⁾ 경상도로 내려갔으나, 왜인들을 잡는데 실패하고 말았다.⁵⁷⁾ 왜구 진압이 실패하고 난 뒤 간관들은 이은의 사건과 함께 도절제사들의 작전 실패 등을 명분 삼아 사건의 연루자들을 탄핵하기 시작했다.⁵⁸⁾ 5월 18일에는 그도 작전을 그르쳤다는 죄목으로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 이때 아버지의 처형 소식을 접한 朴實⁵⁹⁾은 당시 靖安公이었던 이방원의 참저로 달려가 읍소하며 아버지를 구해줄 것을 간청했다. 박자안의 참형은 태조의 명령 아래 비밀리에 추진되었는데 이방원은 이러한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태조를 찾아가 박자안을 구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태조는 예상대로 박자안의 참수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면서 크게 대노했으나 결국은 살려 주었다.⁶⁰⁾

52)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1월 3일(병진).

53)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1월 28일(신사).

54)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27일(무인).

55) 『浩亭集』권4, 「墓碣銘」, “丁丑正月 鄭道傳議舉兵出疆 忌公 出爲雞林府尹”.

56)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2월 16일(기해).

57)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4월 6일(무자).

58)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4월 12일(갑오).

59) 태종은 세자시절 때 박실을 자신의 휘하라고 말하면서 박자안을 구명한 일을 소회한 적이 있다. 따라서 박실은 태종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다. 『정종실록』권4, 정종 2년 6월 2일(을미).

60)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18일(기사).

주목할 점은 같은 날 왜구 방어에 실패했던 경상도의 군관들에게 杖刑의 처벌을 내렸다는 것이다.⁶¹⁾ 이러한 공박은 당시 태종과 정적이었던 정도전의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 것이라 생각된다. 정도전은 당시 習陣을 통해 중앙군과 지방군의 군사권을 장악하여 요동 정벌을 단행하고 동시에 종친들의 사병을 통제하려 했다. 이러한 연유로 태종을 비롯한 종친과 2품 이상의 고위 무장들은 정도전의 습진 명령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정도전은 2품의 고위 무관인 병사를 혁파하려고 했다.⁶²⁾ 결국 박자안이 참형을 피한 지 불과 3일 후에는 병사제도가 폐지되었다. 박자안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것은 결말이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도전 일파가 이방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박자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⁶³⁾

이후 박자안은 1401년(태종 1) 경상도 병사를 제수받았고, 1405년(태종 5)에는 다시 경상도 병사를 역임했다. 이처럼 박자안의 사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선 초기에 같은 도에서 2번 이상 재임한 병사들은 공신이나 왕의 측근인사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로 柳龍生, 尹子當, 曹備衡, 禹博, 金允壽, 柳洙, 具謙, 河漢, 河叔溥, 鄭種, 馬天牧, 鄭耕, 文貴, 李龜鐵, 柳濕, 李宗孝, 李允孫 등이며 재임자 중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⁶⁴⁾

61) 『태조실록』권11, 태조 6년 5월 18일(기사).

62) 주32)과 같음.

63) 박용국, 「太宗代 河崙의 정치적 存在樣態의 變化」, 『남명학연구』 28, 2009, 11~14쪽.

64) 류용생은 개국원종공신, 윤자당은 이숙번의 異父兄이자 좌명공신4등, 조비형은 이숙번의 측근, 구겸은 적개공신3등, 하한은 좌익원종공신2등, 하숙부는 하한의 아들, 정종은 좌익·적개공신3등, 마천목은 좌명공신3등, 정경은 아버지인 鄭地가 회군공신2등, 문귀는 神懿王后 韓氏의 조카로 외척, 이귀철은 개국원종공신, 유습은 태종의 원종공신, 이종효는 좌익원종공신2등, 이윤손은 좌익원종공신1등으로 실록에서 그 행적이 확인된다.

병사의 중임은 지방의 군권이 사유화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더라도 실시되었다. 결국 중임의 시행 배경은 왕에게 충성·복종하는 인사들을 지방에 배치한 후 병권을 지휘토록하고 각 도의 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보았던 공신세력의 특징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

4) 평균 재임 기간

조선시대 병사의 임기는 1424년(세종 6) 許稠의 건의에 따라 일찍부터 2년⁶⁵⁾으로 정해졌다. 이후 『경국대전』에 虞候와 評事와 함께 720일이 차면 바꾼다고 명기되었다.⁶⁶⁾ 허조가 2년의 임기를 주장한 이유는 “장수의 직임을 단기간에 교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졸들을 헤아리고 要害處와 적의 형편을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걸린다.”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병사의 임기는 제대로 지켜졌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병사의 도임과 퇴임 등 교체의 날짜를 정확히 산출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전기 하삼도에서 재직한 모든 병사의 재임 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한 사료는 없다. 물론 일부 인사들에 대한 과만이나 체직 기록 등이 『실록』에 남아 있어 일부는 정확하게 재임 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재임 기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임 활동이 일부 확인되는 병사들도 결과 값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록』·『읍지』 등의 사료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병사의 재임 기록을 통해서만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다음의 <표 3>은 조사된 기간을 평균으로 낸 도표이다.

65) 『세종실록』권26, 세종 6년 11월 30일(신축).

66) 『경국대전』 병전, 외관직, “節度使虞候評事 仕滿七百二十”.

〈표 3〉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평균 재임기간

도 명 왕대별	경상우도	경상좌도	전라도	충청도	도임인원	규명인원	평 균
태 조	7개월		미상	7개월	9	4	3.5개월
태 종	68개월		94개월	52개월	46	23	14개월
세 종	130개월	88개월	63개월	107개월	54	27	14개월
문 종	14개월	미상	미상	미상	3	1	14개월
단 종	10개월	미상	6개월	17개월	12	4	8.3개월
세 조	69개월	39개월	75개월	83개월	35	19	14개월
예 종	22개월	13개월	미상	5개월	7	3	13.3개월
성 종	147개월	136개월	121개월	111개월	52	33	15.5개월
연산군	미상	미상	50개월	미상	10	3	16.7개월
중 종	158개월	84개월	131개월	44개월	64	32	13.5개월
명 종	48개월	55개월	92개월	14개월	48	18	11.6개월
선 조	17개월	17개월	25개월	미상	45	6	9.8개월
규명 인원	56	33	45	39	-	173	12개월
평 균	12.3개월	13.8개월	14.6개월	11.3개월	-	-	-

비고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표 3〉을 보면, 태조와 태종대의 평균 재임 기간은 각각 3.5개월과 10개월로 다른 왕대별 평균 기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당시 왜구와의 잦은 전투로 인해 병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두 번째는 태종대까지 병사의 임기가 2년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應變적으로 교대된 것으로 사료된다.

세종대에 병사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면서 평균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세종 시대에 하삼도로 부임한 54명의 병사 중 재임 기간이 확인된 자들은 27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이

14개월이었다. 세종대에 瓜滿이 확인되는 병사는 河敬復, 成奉祖, 朴炯, 李思儉, 李穰, 文貴, 李皎, 辛處康 등이다. 이에 반해 단종의 치세는 평균이 8.3개월로 세종대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세조대에 부임한 병사 35명 중 재임기간이 규명된 자들은 19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4개월이었다. 다시 세종대의 평균 재임 기간 값으로 회복된 것이다. 세조 시대에 임명된 병사 중 瓜遞한 자⁶⁷⁾들도 있던 반면에 부정을 저질러 推劾되거나 병으로 소환되어 재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자⁶⁸⁾들도 발생했다.

예종대는 하삼도로 도입한 병사 7명 중 재임 기간이 확인되는 자들은 3명으로 그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3.3개월이었다. 瓜歸한 인물로 李克均이 확인되는데 그는 1469년(예종)에 제수되어 1471년(성종 2)까지 직임을 수행했다.

성종대는 52명의 병사 중에 재임 기간이 규명된 인원은 33명으로 그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5.5개월이었다. 과만한 인사는 朴良信, 朴埴, 李季全, 金瑞衡, 金伯謙, 變處寧, 曹淑沂, 河叔溥, 具謙, 王宗信, 趙益貞 등이다. 이들 중 변처령과 왕종신은 연임되지 않은 채 24개월의 기간을 넘어 각각 34개월과 35개월의 직임을 수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연산군대에 도입한 병사는 10명인데 이 중에서 재임 기간이 확인되는 자는 3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이 16.7개월이었다. 3명 중 과체한 자는 吳純이 확인된다.

중종대에 부임했던 병사는 64명이고 이중에서 규명된 자는 32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3.5개월이다. 중종대 과체한 병사의 명단은 柳聘年, 尹熙平, 吳世翰, 金舜皐, 朴英, 趙舜, 黃琛, 方輪

67) 李好誠, 洪興祚, 李仲英, 李昇平, 李士平 등이 확인된다.

68) 『세조실록』권24, 세조 7년 4월 9일(기묘) ; 『세조실록』권29, 세조 8년 9월 24일(을묘) ; 『세조실록』권37, 세조 11년 12월 19일(임진).

등이 확인된다. 이중 유담년은 三浦倭亂 발생 이후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임금에게 사조하지 않고⁶⁹⁾ 그대로 부임한 경우였다.

명종대에 하삼도 병사를 역임한 인물은 총 48명이며, 이 중 18명이 규명되었고 평균 재임 기간은 11.6개월이었다. 과만한 병사로는 金胤宗, 尹先智, 南致勤 등이 확인된다.

선조대는 45명의 병사가 도입했는데, 기록의 부재로 6명의 재임 기간만을 규명할 수 있었다. 평균 재임 기간은 선대왕들보다 적은 9.8개월의 수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까지 선조는 25년간 재위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병사가 도입된 걸로 추정되나 기록이 소실되어 더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도별로 살펴보면 경상우도의 병사 중 규명된 자는 56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2.3개월이었다. 경상좌도에서 규명된 자는 33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3.8개월이었다. 전라도는 45명의 재임 기간이 규명되었고 평균 재임 기간은 14.6개월이었다. 충청도는 39명이 규명되었고 평균 재임 기간이 11.3개월이었다. 4도의 평균 재임 기간을 종합하면 24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표 3>에서 확인되는 병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12개월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병사의 임기는 대체로 잘 지켜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사가 적과의 교전에 패배하여 파직되거나 스스로 법을 어기고 비리를 자행하여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나이가 많고 덕망이 없어 병사의 직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되는 일도 잦았다. 그렇기에 평균적으로는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⁷⁰⁾

69)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6월 15일(기해).

70) 교체 사유를 분석하는 것도 재임 실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후일의 연구에서 논변하도록 하겠다.

3.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출신 이력

1) 성관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를 역임한 395명 중에 중임자 31명을 제외하면 364명이 확인된다. 이 중에서 성관이 밝혀진 자는 326명이며 불명인자는 38명으로 성관의 규명 비율은 약 90%에 달한다.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들은 총 52성 120본관에서 나왔으며, 여기에서 2명 이상을 배출한 가문은 30성 55본관으로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성관

성 관	인 원	성 관	인 원	성 관	인 원
全州李氏	11	溫陽方氏	3	靑松沈氏	2
昌寧成氏	10	順興安氏	3	海州吳氏	2
安東權氏	7	寶城吳氏	3	漆原尹氏	2
昌寧曹氏	6	丹陽禹氏	3	固城李氏	2
南陽洪氏	6	廣州李氏	3	德水李氏	2
光山金氏	5	晉陽河氏	3	新平李氏	2
密陽朴氏	5	河陽許氏	3	永川李氏	2
原州邊氏	5	長水李氏	3	龍仁李氏	2
靈山辛氏	5	綾城具氏	2	羽溪李氏	2
順天金氏	4	江陵金氏	2	咸平李氏	2
咸陽朴氏	4	善山金氏	2	羅州林氏	2
平山申氏	4	水原金氏	2	平澤林氏	2
原州元氏	4	延安金氏	2	迎日鄭氏	2
坡平尹氏	4	義城金氏	2	江陵崔氏	2
全義李氏	4	晉州柳氏	2	水原崔氏	2

성 관	인 원	성 관	인 원	성 관	인 원
漢陽趙氏	4	南平文氏	2	通川崔氏	2
淸州韓氏	4	驪興閔氏	2	昌原黃氏	2
安東金氏	3	草溪卞氏	2	-	-
文化柳氏	3	寧越辛氏	2	-	-

비고1 : 1명씩만을 배출한 가문은 <표 4>에서 제외하였다.

비고2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은 전주이씨로 11명이었고, 뒤를 이어 창녕성씨가 10명, 안동권씨가 7명, 창녕조씨·남양홍씨가 6명, 광산김씨·밀양박씨·원주변씨·영산신씨가 각 5명씩을 산출했다. 순천김씨·함양박씨·평산신씨·원주원씨·파평윤씨·전의이씨·한양조씨·청주한씨도 각각 4명씩을 배출하며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유력가문들이 되었다.

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11명이나 병사를 배출한 전주이씨는 대다수가 종친들이었다. 李興發은 完豐大君 李元桂의 손자고, 李皎·李澄·李穰은 義安大君 李和의 아들 및 손자다. 李復·李衡·李衍은 정종의 손자이며, 李徠는 효령대군의 손자였다.

이렇게 종친들이 병사로 임명된 이유는 무엇일까. 태조 이성계는 이복형제와 그 아들을 비롯한 일가 종친들의 군사력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조선을 건국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기에 태조는 前朝부터 계승해왔던 ‘宗親不任以事’의 원칙을 깨고 종친들의 관직진출을 허용하였다.⁷¹⁾ 하지만 종친의 사환과 사병은 왕권 강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종 때 잠시 금지되었다. 1402년(태종 2) 조사의가 난을 일으키자 오히려 태종은 왕권 강화와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

71) 최이돈, 「조선초기 왕실 친족의 신분적 성격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진단학회』 117, 2013, 28~30쪽.

해 다시 종친들의 사환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성종초기까지 유지⁷²⁾되다가 『경국대전』이 반포된 뒤 종친의 사환을 제한하고부터는 종친으로서 병사에 임명된 자⁷³⁾는 없었다. 전주이씨에서 병사를 많이 배출한 이유는 이러한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10명의 병사를 배출한 창녕성씨의 경우 창녕부원군 成石璘의 일가⁷⁴⁾가 대부분이었다.

하삼도 병사를 2명 이상 배출한 가문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전주이씨·창녕성씨 두 가문처럼 병사들끼리 親族 등의 혈연관계로 얹혀있다는 것이다. 즉 부자나 형제의 관계인 자들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병사를 역임한다는 사실이 많았다.

먼저 三代가 병사를 지낸 경우 진양하씨의 하경복·하한·하숙부가 병사를 역임했다. 부자관계로는 순천김씨의 김승주와 金有讓, 밀양박씨의 朴麟壽와 朴晉, 함양박씨의 박자안과 박실, 온양방씨의 방윤과 方好義·方好智, 영산신씨의 辛悅과 신처강, 광평이씨의 李好誠과 李居仁, 나주임씨의 林鵬과 林晉, 창녕조씨의 조숙기와 曹潤孫, 한양조씨의 曹秀文과 趙繼宗, 강릉최씨의 최유련과 최이, 창원황씨의 黃衡과 황침의 가문이 있다. 형제관계로는 파평윤씨의 尹坤과 尹尙, 신평이씨의 이종효와 이종목, 장수이씨의 李昇平和 李士平, 양산이씨의 李澄石과 인천이씨의 李澄玉⁷⁵⁾이 있다. 이밖에 통천최씨의 최운해와 최숙손은 조부관계였다.

조선 전기의 특징은 조선 후기 하삼도 병사를 역임한 성관 분

72) 김지연, 「朝鮮初期 宗親 仕宦의 推移」, 『서울과 역사』 75, 2010, 64~93쪽.

73) 1578년(선조 11) 이후 부임한 李頤壽는 정종의 高孫이므로 선조와는 촌수가 멀다.

74) 성석린의 일가는 다음과 같다. 成發道는 성석린의 아들, 成達生은 성석린의 조카, 成勝은 성달생의 아들, 成貴達의 고조부가 성석린이고, 成世貞은 성귀달의 아들이다. 성봉조는 성석린의 姪孫이고 成倬은 성봉조의 조카이며, 成秀才는 성봉조의 증손이다.

75) 이징옥은 본래 양산이씨였으나 계유정난 이후 후손들이 인천이씨로 환원했다. 양산이씨는 본래 인천이씨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포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 하삼도 병사를 배출한 가문은 후대로 갈수록 특정 성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전주이씨·전의를씨·평산신씨·덕수이씨·능성구씨·영일정씨·안동김씨 등이 그러했다. 이는 노론의 일당 전제가 격화되고 세도정치가 심화되면서 세습된 결과였다.⁷⁶⁾

반면에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를 산출시켰던 가문은 특정 성관에서 세습되기보다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열거된 가문들 다수는 바로 앞서 설명했던 공신세력이라는 점이다. 즉, 조선 초기부터 군사·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공을 세워 공신 등에 임명되면서 무신으로 현달한 가문이었다.⁷⁷⁾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왕과 밀접한 자들을 병사로 임명하여 이들을 통해 지방의 군권을 통솔하여 관리한 것이다. 측근 인사의 병사 임명은 변란을 사전에 대비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2) 과거출신

병사는 종2품의 고급 무관인 동시에 사변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대를 동원하여 적과 교전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다. 따라서 병사는 반드시 무재를 갖추어야 했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무과였다. 당시의 무과는 무술뿐

76) 유동호, 「앞의 논문」, 192~195p.

77) 이밖에 병사의 率飭赴任이 부자끼리 병사로 임명되는 데에 일부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하삼도로 부임하는 병사는 임지로 내려갈 적에 가족을 거느리고 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 당시 전라병사 元續이 敗死할 때 그의 아들도 같이 싸우다 죽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아버지가 병사로 활동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담당고을을 순회하며 간접적으로 병사의 직무를 체험했던 것이다. 『성종실록』권148, 성종 13년 11월 6일(경자) ; 『명종실록』권18, 명종 10년 5월 23일(병진).

아니라 지략을 확인할 수 있는 병서와 『경국대전』 등을 같이 보았기 때문에 병사의 천망은 무과에 등과한 자를 먼저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다.⁷⁸⁾ 또 1434년(세종 16)부터는 『武才錄』에 등록된 무인들 중에서 장수가 될 만한 자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⁷⁹⁾

따라서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로 임명된 자들의 무과급제 여부는 병사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삼도 병사를 역임한 자들의 과거 출신 성분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하삼도 병사의 출신성분

출신 왕대별	문과		무과		음관		미상		합계
	도임	비율	도임	비율	도임	비율	도임	비율	
태조	1	11%	0	0%	2	22%	6	67%	9
태종	3	6.5%	4	8.7%	10	21.8%	29	63%	46
세종	0	0%	16	29.6%	17	31.5%	21	38.9%	54
문종	0	0%	3	100%	0	0%	0	0%	3
단종	0	0%	3	25%	1	8.3%	8	66.7%	12
세조	1	2.9%	14	40%	11	31.4%	9	25.7%	35
예종	2	28.6%	1	14.3%	1	14.3%	3	42.8%	7
성종	5	9.6%	22	42.3%	4	7.7%	21	40.4%	52
연산군	1	10%	5	50%	1	10%	3	30%	10
중종	9	14%	36	56.3%	0	0%	19	29.7%	64
명종	1	2%	26	52%	5	10%	16	36%	48
선조	5	11.1%	23	54.2%	4	8.3%	13	27.1%	45
미상	2	20%	2	20%	2	20%	4	40%	10
합계	30	7.6%	155	39.2%	58	14.7%	152	38.5%	395

비고 :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78) 『세종실록』권117, 세종 29년 9월 4일(계사).

79) 『세종실록』권66, 세종 16년 12월 2일(을사).

출신성분이 확인되는 하삼도 병사는 395명 중에 243명으로 전체 비율은 약 62%이다. 출신성분이 불명인 자들은 152명으로 약 38%인데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과합격자는 30명인 7.6%이고, 무과합격자는 155명인 39.2%였다. 음관은 58명인 14.7%이며, 미상은 152명인 38.5%였다. 무과 합격자 비율이 약 40%이기 때문에 병사의 임용 원칙이 비교적 준수되었다고 보여진다. 또 미상자 중에 무과합격자가 있을 수도 있어 해당 수치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의 『武科榜目』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⁸⁰⁾

한편 문과 출신자를 기용한 이유는 안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고 담당 고을의 백성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이다.⁸¹⁾ 더불어 관할 수령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문신의 경력도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문과 출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개 무재가 있다고 평가된 자들로 임명했음을 알 수 있는데 조건, 이극균, 이내, 허중, 조숙기, 성세정, 李蓀, 金克成, 柳塤, 洪淵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도 남방에 오랫동안 외침 등의 소란이 없거나, 방어가 긴요하지 않을 시기에는 문신들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는 문신들이 평소에 습진이나 점고 등의 사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⁸²⁾

다음으로 시기별 특징을 보면, 태조대는 무과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무과합격자는 없다. 유일한 과거 출신자인 趙狷은 고려 때 문과 출신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6인은 앞서 살펴보았던 이성계의 휘하에서 활약했던 개국원종공신 집단이었

80) 정해은, 「조선시대 武科榜目の 현황과 사료적 특성」, 『군사』 47호, 2002, 264쪽.

81) 오종록, 『앞의 책』, 148쪽.

82) 『성종실록』권204, 성종 18년 6월 3일(신미) ; 『연산군일기』권38, 연산 6년 6월 3일(을유).

다. 따라서 병사는 국초부터 왕의 신임을 얻은 자들 중 실전 경험이 풍부한 무신들을 위주로 기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병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왜구의 침략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시대상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인사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과가 실시된 태종대부터 무과합격자들이 병사에 임용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병사에 오른 자는 조비형으로 1411년(태종 11)에 임명되었다. 그는 1402년(태종 2)에 무과에 합격했는데 登科한 지 불과 9년 만인 35세의 나이로 종2품의 병사직함에 오른 것이다.⁸³⁾ 조비형이 무재가 뛰어난 점도 있겠으나, 공신세력인 이숙번의 최측근 인사였다는 점에서 태종의 의도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태종은 인사권을 장악한 정종대부터 공신세력을 요직에 등용하여 정권의 안정을 꾀했기 때문이다.⁸⁴⁾

이와 함께 음사로 진출한 자들의 신분은 대체로 공신들⁸⁵⁾로 이들을 통해 지방의 변란을 방지하고 군권을 장악하려 한 태종의 정치적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태종 시기 미상 자들도 태조대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무반수령을 지내거나 무관직을 역임한⁸⁶⁾ 무신들이었다.

세종대에 오게 되면 무과 합격자의 비율이 30%로 증가하는데, 무과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3) 조비형과 함께 무과에 합격한 성달생은 6년이 지난 41세 때인 1417년(태종 17)에 병사에 처음 임명되고, 李恪은 그보다 12년이 늦은 49세 때인 1423년(세종 5)에 임명되었다. 『태종실록』권34, 태종 17년 12월 3일(갑신); 『세종실록』권19, 세종 5년 1월 25일(정미).

84)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韓國史學報』 35, 2009, 169~175쪽.

85) 박자안·辛有定·유용생은 개국원종공신, 洪恕·馬天牧·윤자당은 좌명공신4등, 柳濕은 태종 때 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86) 태종 시기 병사를 역임한 박자안·유용생·강사덕·조비형·李都芬·마천목·鄭耕·李之實·李承幹·崔沄·金尙旅·金重寶 등에서 무반직의 경력이 확인된다.

다만 음관의 비율도 31.5%에 달할 만큼 상당한데 이들의 신분을 보면 종친 또는 부마거나 태종대의 공신들이었다. 세종도 태종처럼 이들을 통해⁸⁷⁾ 지방의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신이 불명한 22명도 이전부터 무관직을 수행한 무반들이었다.

세조 시기에는 무과 합격자가 거의 절반에 접근할 만큼 증가되며 동시에 미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신에 음관의 비율이 31.4%로 늘어나는데 이들은 주로 세조의 공신들⁸⁸⁾이었다. 세조도 선왕처럼 신임하는 인사를 지방에 파견하여 안정적으로 병권을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종대 이후부터는 문신들의 임명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사실은 같은 시기 음관의 비율이 10% 이내로 감소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또한 성종대부터 선조대까지 무과합격자들의 비율을 보면 성종대는 42.3%, 연산군대는 50%, 중종대는 56.3%, 명종대는 52%, 선조대는 54.2%였다. 이는 조선 전기에 병사의 임명 조건에서 무재를 우선하는 기준이 준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7) “세종도 능력만 있다면 왕자는 물론 종친이나 부마에서 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종친 사화에 대한 세종의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김지연, 「앞의 논문」, 75~79쪽).

88) 柳誅는 정난공신2등·좌리공신4등, 具文信은 좌리공신4등, 이승평·이사평·尹欽은 좌익원종공신2등이다.

4.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상피와 품계

1) 본향상피

병사는 한 지방의 육군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피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받았다. 병사와 상피되는 관직은 병권을 총괄하는 병조판서⁸⁹⁾가 있고 지방 병권을 같이 겸했던 관찰사나 예하의 수령·첨사·만호 등과도 반드시 상피⁹⁰⁾되었다. 나아가 임시로 한 도에 파견되어 군사 활동을 펼쳤던 도체찰사⁹¹⁾도 상피되었다. 이러한 상피제는 대개 親族相避를 준용한 것으로 혹시 모를 친족 간의 유대를 통한 반란을 방지한 점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병사는 외관직이었기 때문에 本鄉相避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향상피는 외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墳墓之地와 농장이 있는 생활 근거지의 관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다. 고려 때는 향리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 상피제도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⁹²⁾이 되었다.

조선 전기 하삼도에 부임한 병사들의 연고지⁹³⁾와 부임지를 살펴보면 본향상피가 준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삼도에 도입한 병사 395명 중 연고지가 확인되는 자들은 248명으로

89) 『성종실록』권155, 성종 14년 6월 16일(정축).

90) 『속대전』이전, 상피, “觀察使節度使守令僉使萬戶 竝交代相避”.

91) 『성종실록』권130, 성종 12년 6월 11일(갑인).

92) 이기명, 「조선시대 관찰사의 본향상피 재검토」, 『역사와 교육』 17, 2013 10~11쪽.

93) 본고에서 말하는 연고지는 고향이나 묘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약 63%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연고지와 부임지

연고지 부임지	서울·경기		경상우도		경상좌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15C	16C	15C	16C	15C	16C	15C	16C	15C	16C	15C	16C
경상우도	14	23	17	1	2	4	1	1	3	5	1	3
경상좌도	12	15	9	4	9	2	0	0	0	2	0	0
전라도	23	12	5	0	4	0	11	3	0	3	2	3
충청도	26	8	2	2	2	0	2	0	6	4	1	1
합계	75	58	33	7	17	6	14	4	9	14	4	7

비고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울·경기 출신이 34%이고, 지방출신은 29%이다. 출신지가 확인되지 않는 147명인 37%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서울·경기관이 약간 우세한 비율이다.

<표 6>에서 확인되는 본향상피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경상우도에 부임한 병사들은 38명인데 이 중 서울·경기 출신이 14명, 경상우도 출신이 17명으로 동향출신이 우세했다. 하지만 16세기부터는 상황이 역전되어 경상우도 출신자가 1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도도 마찬가지로 경상좌도의 경우 15세기는 9명이었다가 16세기는 2명으로 줄었다. 전라도는 15세기에 11명이었다가 16세기는 3명으로, 충청도는 15세기에 6명이었다가 16세기는 4명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15세기는 대체적으로 본향상피가 그렇게 준용되지 않았고 16세기는 어느 정도 작용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세기 동안 상피제 적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16세기부터 하삼도 병사 출생지는 서울·경기관

의 비율이 동향 출신자보다 지속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비단 병사뿐 아니라 다른 외관직인 감사나 지방 수령의 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⁹⁴⁾ 감사나 지방 수령직은 후대로 갈수록 서울·경기 출신으로 세력을 이루었던 京華子弟들에 의해 점유⁹⁵⁾되어 갔다. 그렇기에 종2품의 고위 무관직인 병사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본향 출신의 임명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품계와 연령

병사의 전신이 되는 도절제사는 이미 고려 말부터 都評議事와 대간으로 하여금 위엄과 덕이 일찍부터 드러난 자를 천거하도록 되어 있었다.⁹⁶⁾ 이러한 사항은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그대로 준수되어 兩府, 즉 2품 이상의 대신들을 도절제사로 파견하고 있었다.⁹⁷⁾ 병사를 천거할 때 2품 이상만을 제수한다는 준칙은 예종대까지 준거되었다.

1476년(성종 7) 12월부터는 당상관도 천거할 수 있도록 변경⁹⁸⁾되면서 절충장군이나 통정대부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병사에 임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3품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임명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때의 변화는 이전의 전례를 법적으로 수용한 조치였다.⁹⁹⁾

94) 이동희, 「19세기 전반 수령의 임용실태」, 『전북사학』 11·12, 1989, 222~229쪽.; 김양수·김양식, 「조선후기 忠淸監司와 淸州守令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회』 125, 2004, 165~166쪽.

95) 이동희, 「조선후기 전라도관찰사 임용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2020, 52쪽.

96) 『고려사절요』권34, 공양왕 1년 12월.

97) 『태종실록』권2, 태종 1년 11월 7일(신묘); 『세종실록』권24, 세종 6년 6월 23일(병인).

98) 『성종실록』권74, 성종 7년 12월 20일(기축).

99) 1476년 이전 절충장군의 품계를 가진 상태에서 병사에 임명된 사례는 2건이 확인되는데 1472년(성종 3)에 부임한 朴良信은 당시 절충장군이었고 가선대부는 1475년

특히 품계는 같은 도에서 군권을 겸직하던 감사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감사는 한 도의 지방을 통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병사와 같은 관품이었다. 이에 병사는 군무와 관련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멋대로 고을을 출입하는 폐단이 국초부터 발생했다. 따라서 조정은 감사가 병사의 임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위계를 정해 주기도 했다.¹⁰⁰⁾ 또한 같은 도에서 수사와의 位次 문제에 있어서도 품계가 그 기준이 되기도 했다.¹⁰¹⁾

병사는 적변이 발생하면 직접 군대를 지휘해야 했기에 스스로 무예를 수련해야 했다. 평시에는 담당 지역의 방위를 책임지며 예하 고을의 진법과 군사훈련을 감독했다. 또 도내에 반란이나 도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를 진압하도록 되어 있어 체격과 경륜을 갖추어야 했다. 이처럼 체력과 연령은 병사의 중요한 임명 기준인데 다음의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우승지 洪興이 아뢰기를, “...그리고 전라도 절도사 朴星孫은 나이가 70이 넘었으므로 기력이 쇠약하여 고달프고 정신이 흐리어 便所에 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니, 적을 짐작해 보아 기발한 꾀를 내지도 못할 것이고 자신이 사졸들의 앞장을 서지도 못할 것이고 要害地를 보존하여 국경을 든든히 하지도 못할 것이 분명하니, 청컨대 그의 소임을 바꾸도록 하소

(성종 6) 加資되었다. 李從生도 1475년(성종 6) 병사에 임명되었을 당시에는 절충장군의 품계를 가진 상태였으며 가선대부는 1485년(성종 16)에 가자되었다. 이밖에 1466년(세조 12)에 임명된 이복은 1468년(예종 원년)에 가서야 가선대부로 승진되었고, 1469년(예종 1)에 취임한 이극균은 1472년(성종 3)에 가선대부로 승직했으며, 1471년(성종 2)에 제수된 하숙부도 1473년(성종 4)에 가선대부로 승차했기 때문에 이들도 병사로 천거 받았을 당시에는 3품 당상관이 유력시된다고 볼 수 있다.

100) 『세종실록』권22, 세종 5년 11월 9일(병술).

101) 『중종실록』권24, 중종 11년 2월 24일(을해).

서.”하고, 도승지 한韓健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경상도병마절도사 李欽石은 오랜 병이 한층 더해 약과 음식과 미음이나 죽으로 겨우 몸을 보존한다니, 변에 대응하고 도적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소임을 그만두게 하기를 바랍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우승지의 말이 옳다.…이제 이미 늙기는 하였지만 과연 부축하여야 다니게 된다면 變將의 소임에 맞지 않겠다. 그러나 장수를 進退함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박성손과 이흠석이 변장에 합당한지 않은지를 속히 이조와 병조에 물어보는 것이 가하다.”하였다.¹⁰²⁾

위의 기록에 인용된 것처럼 병사는 직접 말을 몰고 앞장서 군대를 지휘해야 했으므로 너무 연로해서도 안 되며,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하삼도 병사로 임명을 받았더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 노쇠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부임하지 못하는 사례¹⁰³⁾가 발생했다. 다음 <표 7>은 하삼도 병사에 임명될 당시의 품계와 연령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102) 『성종실록』권234, 성종 20년 11월 18일(임신).

103) 대표적인 기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권4, 세종 1년 5월 7일(신해) ; 『성종실록』권266, 성종 23년 6월 19일(무오) ; 『중종실록』권1 중종 1년 10월 19일(갑자) ; 『중종실록』권11 중종 5년 6월 6일(경인) ; 『중종실록』권23 중종 10년 12월 11일(계해) ; 『중종실록』권99 중종 37년 11월 22일(무진).

〈표 7〉 하삼도 병사의 임용시 품계와 연령

도명	도임인원	품 계	규 명 인 원	연 령	규 명 인 원
경상우도	125	資憲大夫	2	30대	5
		嘉靖大夫	2	40대	16
		嘉善大夫	25	50대	13
		通政大夫	0	60대	10
		折衝將軍	12	70대	1
		합 계	41	합 계	45
경상좌도	89	資憲大夫	1	30대	4
		嘉靖大夫	1	40대	10
		嘉善大夫	14	50대	12
		通政大夫	1	60대	4
		折衝將軍	3	70대	0
		합 계	20	합 계	30
전라도	92	崇政大夫	1	30대	4
		資憲大夫	2		
		嘉靖大夫	2	40대	12
		嘉善大夫	24	50대	15
		通政大夫	1	60대	6
		折衝將軍	3	70대	0
		합 계	33	합 계	37
충청도	89	正憲大夫	1	30대	3
		資憲大夫	1		
		嘉靖大夫	1	40대	9
		嘉善大夫	9	50대	9
		通政大夫	1	60대	7
		折衝將軍	3	70대	0
		합 계	16	합 계	28

비고 : 인원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할 것.

병사 총원 395명 중 품계는 110명(28%), 연령은 140명(35%)만이 확인되었다. 경상우도에서 품계가 확인되는 41명의 병사 중 가선대부는 61%이고, 경상좌도에서 가선대부의 비율은 70%이다. 전라도는 가선대부가 75%이고, 충청도는 가선대부가 60%이다. 결과를 통해서 보면 품계는 중2품인 가선대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는 품계의 원칙이 잘 고수되었다고 판단된다.

가선대부 다음으로 많은 품계는 3품의 당상관인 통정대부와 절충장군이었다. 절충장군으로 경상우도 병사에 임명된 자들은 13명으로 약 3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상좌도는 4명의 3품 당상관들이 부임하여 20%의 비율이었다. 전라도는 4명이 파견되어 12.5%를 차지하고 충청도는 4명이 도입하여 약 27%의 비율을 이루었다. 3품 당상관으로 임용된 자들은 대개 1476년(성종 7) 이후 임명되었다.

가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이들은 총 13명이었다. 전체 비율로는 약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체로 병사는 중2품 하계의 가선대부가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단, 가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들에게서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음사로 가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채 병사를 지낸 자들은 高官大爵의 자제¹⁰⁴⁾들이라는 점이다. 둘째, 세조대에는 문신과 무신을 막론하고 세조의 공신세력¹⁰⁵⁾이라는 점이다.

연령은 40대와 50대에 많이 분포되었다. 경상우도에서 40대는 16명으로 전체 비율의 35.5%를 차지하였다. 50대는 13명으

104) 黃致身[정헌대부]은 황희의 아들이고, 權攀[자헌대부]은 권근의 손자이다.

105) 가정대부는 윤흥이 좌익원종공신1등, 이종생은 적개공신2등·좌익원종공신2등, 자헌대부는 강곤이 정난공신3등, 박거겸은 좌리공신4등·좌익원종공신2등, 이숙기는 적개공신1등·좌리공신4등·좌익원종공신2등, 임자번은 정난공신3등, 허형손은 좌익원종공신2등이며, 승정대부는 허종이 정난공신3등이다.

로 약 29%를 점유했는데 40·50대를 합치면 64.5%가 된다. 경상좌도에서 40대는 10명으로 33%이고 50대는 12명으로 40%인데 더하면 73%가 된다. 전라도에서 40대는 12명으로 32%이고 50대는 40.5%를 차지하는데 합치면 72.5%이다. 충청도에서 40대와 50대는 각각 9명으로 도합 64%의 비율이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로 재임하는 자들의 평균연령은 경륜을 갖추 수 있는 40대와 50대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경상우도의 경우 10명이 부임하여 22%였다. 경상좌도는 4명으로 13%이며, 전라도는 6명으로 16%였고, 충청도는 7명으로 25%였다. 또 70대는 경상우도에서 1명¹⁰⁶⁾만 임명되었기에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경국대전』에는 나이가 65살이 지난 사람은 지방의 벼슬자리에 임명하지 않지만 당상관은 여기에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¹⁰⁷⁾ 하지만 위의 사례에 따라 60·70대의 인물들은 병사로 천거받는 데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것 같다.¹⁰⁸⁾

106) 70대에 임명된 자는 曹大坤이 유일하다. 그의 나이를 추정할 있는 단서는 1588년(선조 21) 11월 8일 鄭彦信의 상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70이 되었기 때문에 만포진 첨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체직되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11월 8일(정사).

107)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 “年過六十五歲者 勿外敍 堂上官及未挈家者 不在此限”.

108) 다만 조대곤의 경우 73세 때인 1591년(선조 24) 경상우병사로 활동하다가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 金誠一의 후임으로 仍任된 사례가 있다.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29일(정사).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의 재임실태를 『실록』 등을 사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조선 전기 하삼도 병사의 연인원은 총 395명으로 경상우도는 125명, 경상좌도는 89명, 전라도는 92명, 충청도는 89명이었다. 조선 전기 때는 왕의 신임을 받는 종친·공신세력들도 병사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지방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삼도에서 병사를 중임했던 자들은 31명으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이렇게 본다면 동일인이 같은 도에 2번 이상 재임하는 정책은 장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31명의 중임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대개 공신세력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지방 군권의 사유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인사들, 즉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 지방군을 통솔하고 유사시에 있을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병사의 임기는 24개월인데 실제로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부임했던 395명 중 임기가 확인되는 병사는 172명이다.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4개월의 절반인 12개월에 불과했다.

하삼도에서 병사를 배출했던 성관은 총 52성 120본관이다. 이 중에서 2명 이상을 배출했던 가문은 30성 55본관이었다. 특히 전주이씨는 11명, 창녕성씨는 10명을 배출했다. 조선 전기에 병사를 2명 이상 배출한 가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병사를 지낸 자

들이 혈연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신세력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다.

병사의 출신이 규명된 243명 중에 문과는 30명으로 7.6%이었다. 이에 반해 무과는 155명으로 39.2%이고, 음사는 14.7%이며, 미상은 38.5%였다. 무과 출신자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비교적 무과 출신자를 우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삼도 병사는 외관직이기 때문에 본향상피도 적용받았을 것이다. 조선전기 하삼도 병사로 부임한 인사들 중에 연고지와 부임지가 규명된 인원은 248명으로 63%였다. 대체적으로 서울·경기권 출신 인사들이 좀 더 임명되었다. 그리고 15세기에는 동향출신이 서울·경기권보다 다소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16세기부터는 역전되었다. 그 이유로 감사나 수령직이 경화자제들에게 점차 점유된 현상처럼 병사도 여기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사는 종2품의 품계를 가진 외관직이다. 품계를 검토해 본 결과 병사의 관품은 가선대부에 집중되었기에 원칙이 준수되고 있었다. 또 병사는 임전 활동이 우선시 되었기에 경륜과 체력을 갖춘 40~50대가 주로 임명되었다.

〈별표〉 조선전기 하삼도 병마절도사 명단¹⁰⁹⁾

1. 경상도¹¹⁰⁾

순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	崔有璉 (미상)	1392.11.9㉔~	향리	미상	강릉	강릉	崔進 父 개국원종
2	趙涓 (1351~1425)	1394.3.5㉔~	고려 문과	미상	평양	경기 광주	개국공신 2
3	金承霍 (1354~1424)	1395㉔~	음서	미상	순천	여수	좌명공신 4 金有讓 父
4	崔雲海 (1347~1404)	1396.10.23㉔~1397.1.28㉔	음서	미상	통천	창원	화군공신 3 개국원종 崔叔系 祖父
5	尹邦慶 (?~1412)	1397.1.28㉔~5.27㉔	미상	미상	칠원	함안	개국원종 좌명공신 3
1397년 5월 21일		도절제사제도가 폐지					
1398년 9월		9월 26일 이전에 복설					
6	朴子安 (?~1408)	1401.12.18㉔~1402.10.6㉔	미상	미상	함양	함양	朴實 父
7	柳龍生 (?~1434)	1404.3.13㉔~6.5㉔	음서	미상	진주	미상	개국원종
8	朴子安 (?~1408)	1405.2.24㉔~7.22㉔	미상	미상	함양	함양	水使검직
9	柳龍生	1405.11.23㉔~1406.10.5㉔	음서	미상	진주	미상	水使검직
10	姜思德 (?~1410)	1407.3.3㉔~8.11㉔	미상	미상	진주	미상	水使검직

- 109) 1. 재임활동의 기본적인 典據는 『조선왕조실록』이며, 『실록』을 제외한 문헌들은 제목을 따로 기재한다.
 2. 재임활동에서 임명은 ㉔으로 표기하고 사배도 포함한다. 재직은 ㉔로, 줄기에 서 재임이 확인되면 ㉔이라고 기록한다. 체직은 ㉔로 기재하며 과단, 이직, 사직, 파직,卒도 포함한다.
 3. 연고지는 현재지명으로 기재한다.
 4. 비고에는 공신유무, 병사간의 혈연관계, 특별한 이력 등 기타 정보를 기록한다.
 5.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은 미상으로 처리한다.
 6. 생몰년 및 특이사항은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는다.
- 110) 본문에서는 편의상 경상우도로 편입했다.

순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1	尹子當 (?~1422)	1407.10.3㉔~1408.7.13㉔~	미상	미상	칠원	함안	좌명공신 4 李叔蕃 異父兄
1408년 7월 13일		경상도를 상주진주도 · 계림안동도로 분리					
1412년 2월 14일		경상도 좌병영을 우병영으로 승置					
12	曹備衡 (1376~1440)	1412.2.14㉔~10.10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13	李都芬 (1353~1441)	1413.6.13㉔~	미상	미상	성주	성주	
1426년 11월 6일		경상좌도의 병사와 수사 혁파					
14	李澄石 (?~1461)	1433.6.27㉔~1434.10.30㉔	무과	미상	양산	양산	좌익공신 3 李澄玉 兄
15	曹備衡	1434.8.7㉔~10.30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2. 경상우도

순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	尹子當	1408.7.13㉔~1409.3.16㉔~	미상	미상	칠원	함안	
2	曹備衡	1411.8.2㉔~1412.2.14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1412년 2월 24일		경상도 좌병영을 우병영으로 승置					
1413년 7월 19일		병영을 다시 분리					
3	曹備衡	1413.7.19㉔~9.29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4	辛悅 (?~1418)	1416.4.17㉔~	미상	미상	영산	창녕	辛處康 父
5	金貴寶 (미상)	1418.11.20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개국원종
6	禹博 (미상)	1419.8.10㉔~1420.5.7㉔	미상	미상	단양	미상	
7	禹博	1420.10.24㉔~1422.2.16㉔	미상	미상	단양	미상	
8	李中至 (?~1446)	1422.2.16㉔~	무과	미상	고성	서울	수양대군 養育

순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9	李恪 (1374~1446)	1423.1.25㉔~12.11㉔	무과	미상	덕산	미상	
	1426년 11월 6일	경상좌도 병사와 수사 혁파					
	1436년 12월 27일	경상좌도 병사 복설					
10	河敬復 (1377~1438)	1438.8.23㉔~1438.8.17㉔	무과	미상	진양	진주	하한 父 하숙부 祖父
11	李皎 (?~1446)	1438.8.23㉔~1439.11.11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宜安大君子
12	張友良 (?~1441)	1439.11.13㉔~1441.2.30㉔	미상	가선	단양	미상	재임 주
13	鄭孝全 (?~1454)	1443.7.4㉔~	음서	미상	연일	서울	淑貞翁主 부마
14	崔淑孫 (미상)	1444.11.17㉔~1445.5.28㉔~	무과	미상	통천	창원	崔雲海 孫子 崔潤德 子
15	金義之 (미상)	1446.4.28㉔	무과	미상	미상	미상	
16	權恭 (?~1462)	1446.5.27㉔~	음서	미상	안동	미상	淑謹翁主 부마
17	成奉祖 (1401~1474)	1447.7.1㉔~1449.7㉔	음서	미상	창녕	한양	
18	金有讓 (미상)	1449.8.6㉔~	음서	미상	순천	여수	金承霍 子
19	辛傲晴 (미상)	1450.7.6㉔~1451.5.29㉔	미상	미상	영산	함안	辛悅 姪
20	金允壽 (1387~1462)	1451.6.20㉔~	미상	미상	선산	구미	좌익원종 2
21	金允壽	1452.10.1㉔~	미상	미상	선산	구미	
22	俞益明 (?~1455)	1453.7.28㉔~	미상	미상	창원	김천	좌익원종 2
23	韓瑞龍 (1398~1461)	1455.5.3㉔~1456.3.8㉔	음서	미상	청주	파주	
24	柳洙 (1415~1481)	1456.3.8㉔~1457.7.5㉔	음서	미상	문화	남양주	좌익공신 2 좌리공신 4
25	柳洙	1457.9.19㉔~1458.2.18㉔	음서	미상	문화	남양주	
26	朴炯 (미상)	1458.2.18㉔~1460.1.28㉔	미상	미상	고령	고령	좌익원종 1
27	曹秀文 (미상)	1459.12.3㉔~1461.4.9㉔	미상	미상	한양	양주	趙繼宗 父
28	郭連城 (?~1464)	1461.2.22㉔~27㉔~	무과	미상	청주	미상	정난공신 2

순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29	具文信 (1415~1485)	1463.1.13㉔~	음서	가선	능성	미상	좌익원종 1 좌리공신 4
30	金乙孫 (미상)	1464.7.6㉔~15㉔~	무과	미상	상산	미상	좌익공신 3
31	李仲英 (미상)	1465.7.3.~1467.5.24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32	崔有臨 (1426~1471)	1469.1.10㉔~	무과	가선	수원	평택	좌익원종 3 적개공신 3
33	李克均 (1437~1504)	1469.5.29㉔~1471.3.29㉔~	문과	미상	광주	서울	
34	河叔溥 (?~1501)	1471.7.7㉔~1472.11.18㉔~	무과	미상	진양	하동	河敬復 孫子 河漢 子
35	朴居謙 (1413~1481)	1473.6.28㉔~1474.7.27㉔~	무과	자헌	밀양	안산	좌익원종 2 좌리공신 4
36	具謙 (미상)	1475.7.15㉔~1477.1.10㉔~	음서	미상	능성	미상	적개공신 3
37	權擎 (1429~1482)	1477.7.24㉔~1478.2.12㉔~	음서	자헌	안동	음성	權擎 弟
38	具謙	1478.10.25㉔~1479.윤10.8㉔~	음서	가선	능성	미상	
39	王宗信 (미상)	1481.3.29㉔~1483.1.4㉔~	미상	가선	개성	미상	
40	金彦庚 (미상)	1483.4.29㉔~	미상	가선	강릉	파주	
41	李從生 (1423~1495)	1485.6.2㉔~	무과	가정	함평	하남	좌익원종 2 적개공신 2
42	沈安仁 (1435~1488)	1487.7.4㉔~1487.11.2㉔~	무과	절충	청송	광주	
43	李欽石 (미상)	1488.8.17㉔~1490.1.9.㉔	미상	가선	미상	미상	
44	曹克治 (미상)	1490.1.21㉔~1491.7.4㉔~	미상	가선	창녕	미상	좌익원종 2
45	趙益貞 (1436~1498)	1492.2.9㉔~1493.10.20㉔~	문과	가선	풍양	양주	
46	辛鑄 (1430~1526)	1494.11.1㉔~	미상	가선	영산	포천	좌익원종 3
47	李居仁 (1431~1507)	1497.11.27㉔~	미상	절충	성산	김천	李好誠 子
48	河叔溥	1498.5.10㉔~	무과	가정	진양	하동	
49	安琛 (1455~1515)	1500.5.29㉔~	문과	가선	순흥	성남	

순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50	沈順徑 (1462~1542)	1506.9.28㉔~1508.6.25㉔	미상	미상	청송	파주	정국공신 2
51	金錫哲 (1456~?)	1508.12.9㉔~1510.6.1㉔	무과	미상	수원	고양	
52	柳聃年 (?~1526)	1510.6.27㉔~1512.윤5.16㉔	무과	가선	문화	미상	
53	柳繼宗 (미상)	1512.윤5.8㉔~1514.12㉔~	미상	미상	진주	안성	정국공신 3
54	尹熙平 (1469~1545)	1514.1.23㉔~1516.4.19㉔~	무과	미상	해주	양주	정국공신 3
55	曹潤孫 (1469~1548)	1516.1.25㉔~1518.1.12㉔~	미상	미상	창녕	진주	曹淑沂 子
56	成世貞 (1460~?)	1518.4.18㉔~11.16㉔	문과	미상	창녕	고양	成貴達 子
57	金克成 (1474~1540)	1519.1.28㉔~ 『在嶺南日記』	문과	미상	광산	보령	정국공신 3
58	權勝 (?~1522)	1519.11.25㉔~	미상	미상	안동	미상	
59	崔漢洪 (1469~1529)	1521.8.26㉔~1522.2.13㉔~	무과	가선	경주	고양	정국공신 3
60	金世熙 (미상)	1522.4.22㉔~1522.6.22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1	禹孟善 (1475~1551)	1524.4.10㉔~1524.10㉔ 『國朝人物考』	무과	가선	단양	서천	위사원종 (삭훈)
62	李安世 (미상)	1527.2.13㉔~1528.2.8㉔~	무과	미상	용인	서울	
63	宋勳 (미상)	1529.7.16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4	吳世翰 (미상)	1531.7.11㉔~1533.7.26㉔	무과	가선	보성	청원	
65	許寬 (미상)	1535.10.4㉔~『榜目』	문과	미상	하양	서울	
66	金舜臯 (1489~1574)	1537.10.12㉔~1539.윤7.1㉔~	무과	미상	순천	안동	
67	方好義 (미상)	1540.4.13㉔~1541.8.1㉔	미상	미상	온양	양주	方輪 子 方好智 兄
68	梁允義 (1489~1564)	1541.8.2㉔~8.1㉔~	무과	가선	남원	군포	
69	金軼 (미상)	1544.4.17㉔~10.8㉔~	무과	미상	미상	미상	
70	金光軫 (1495~?)	1548.8.2㉔~1549.11.20㉔	문과	미상	강릉	강릉	

순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71	張世豪 (미상)	1551.10.15㉔~1553.6.14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위사원중 (삭훈)
72	金世澣 (미상)	1555.7.27㉔~	미상	미상	광산	서울	
73	崔宗浩 (미상)	1559.3.16㉔	미상	미상	양천	미상	
74	金洵 (미상)	1559.5.27㉔~	무과	미상	경주	경주	
75	朴麟壽 (미상)	1561.3.14㉔~	무과	미상	밀양	연천	朴靑 父
76	李榮 (1494~1563)	1562.8.6㉔~1563.1.20㉔	미상	미상	영천	대구	
77	閔應瑞 (1499~?)	1563.1.20㉔~	미상	미상	여흥	미상	
78	李文誠 (1503~1575)	1563.2.10㉔~『國朝人物考』	무과	미상	전의	가평	
79	元俊良 (미상)	1563.10.20㉔~1564.6.21㉔	무과	미상	원주	평택	
80	吳滄 (미상)	1564.11.3㉔~	무과	절충	해주	미상	
81	李大伸 (미상)	1566.11.30㉔~	미상	절충	미상	미상	
82	蘇滄 (미상)	1569.6.6㉔	무과	가선	진주	평택	
83	許世麟 (1507~1579)	소흥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가선	양천	여주	
84	李大伸	허세린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미상	미상	
85	李戡 (미상)	1573.5.2㉔	미상	가선	우계	강릉	李禩男 祖父
86	蘇滄	1573.7.11㉔~『肩巖日記』	무과	가선	진주	평택	
87	崔遠 (미상)	소흥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가선	미상	미상	
88	柳埴 (1524~?)	1574.1.5㉔~『臺營道先生案』	문과	절충	전주	서울	
89	申格 (?~1592)	1576.8.23㉔~1578.1.26㉔	미상	미상	평산	미상	
90	金堉 (미상)	1578.4.1㉔	무과	미상	순천	서울	
91	郭槃 (미상)	1578.4.5㉔~	미상	미상	의령	미상	
92	洪淵 (미상)	1578㉔~ 『東萊府志』	문과	가선	남양	서울	

순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93	李頤壽 (미상)	홍연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전주	서산	
94	宋重器 (미상)	이아수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무과	절충	여산	서울	
95	朴晉 (1560~1597)	송중기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무과	가선	밀양	서울	朴麟壽 子
96	卞國幹 (1527~1591)	박진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가선	초계	장흥	
97	梁士瑩 (미상)	변국간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1586.11. ^㉔ 『耽羅誌』	음서	절충	미상	미상	
98	李戡	양사영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가선	우계	강릉	
99	李泰亨 (1527~?)	1586~1587 『臺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미상	미상	
100	金紱 (미상)	이태형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미상	미상	
101	辛應基 (미상)	김찬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미상	절충	영월	미상	
102	申結 (1555~1592)	신응기의 후임 『臺營道先生案』	무과	절충	평산	서울	申昞 弟
103	梁士瑩	1590.6.1. ^㉔ ~	음서	절충	미상	미상	
104	曹大坤 (1518~?)	1591 『臺營道先生案』 ~1592.3.3. ^㉔	미상	가선	창녕	미상	
105	金誠一 (1538~1593)	1592.3.3. ^㉔ ~4.14. ^㉔	문과	절충	의성	안동	
재임 활동 미상							
106	趙寶 (1374~1449)	1424~1434. 사이 ^㉔	무과	미상	한양	양주	趙仁沃 子
107	成勝	1440. 이후	미상	미상	창녕	서울	
108	李忠傑 (미상)	1508.1.16. 이전	문과	미상	장수	진주	
109	李文亨 (미상)	명종대 『嶺南邑誌』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10	李彦華 (미상)	명종대 『金海邑誌』	미상	미상	미상	미상	

3. 경상좌도

연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408년 7월 13일		경상도를 상주진주도·계림안동도로 분리					
1	曹 瑗 (?~1424)	1408.7.13㉔~	미상	미상	창녕	창녕	水使검직
2	尹 尙 (1374~1418)	1410.5.14㉔~1412.2.14㉔	미상	미상	파평	광주	鷄林府尹 검직 尹 坤 弟
1412년 2월 14일		경상도 좌병영을 우병영으로 승置					
1413년 7월 19일		병영을 다시 분리					
3	尹 坤 (?~1422)	1413.7.19㉔~	미상	미상	파평	파주	尹 尙 兄
4	權 蔓 (?~1423)	1416.4.17㉔~	고려 소과	미상	안동	예천	
5	李承幹 (미상)	1416.11.26㉔~	미상	미상	전의	미상	河 崙 壻
6	權 蔓	1417.8.20㉔~	고려 소과	미상	안동	예천	
7	朴 實 (?~1431)	1418.2.16㉔~6.17㉔	음서	미상	함양	함양	朴子安 子
8	崔 沄 (?~1431)	1418.6.17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9	李順蒙 (1386~1449)	1420.5.7㉔~	미상	미상	영천	양평	
10	玄貴命 (?~1425)	1422.9.25㉔~1423.8.26㉔	미상	미상	연주	미상	
11	朴彦忠 (미상)	1423.8.26㉔~	미상	미상	밀양	밀양	卞季良 丈
12	李澄 (1375~1435)	1423.12.11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宜安大君 子
1426년 11월 6일		경상좌도 병사와 수사 혁파					
1436년 12월 27일		경상좌도 병사 복설					
13	李思儉 (?~1446)	1437.1.5㉔~1439.1.2㉔	무과	미상	양성	포천	
14	申得海 (미상)	1439.1.2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5	李澄玉 (?~1453)	1439.9.22㉔~11.22㉔~	무과	미상	인천	양산	李澄石 弟
16	李穰 (?~1453)	1441.9.17~1443.9.12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宜安大君 孫子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7	李樺 (1391~1459)	1443.9.12㉔~	미상	미상	전의	안동	
18	柳江 (?~1458)	1444.9.4㉔~	미상	미상	문화	미상	좌익원종 2
19	李澄玉	1445.11.5.~1447.2.5㉔	무과	미상	인천	양산	
20	權孟慶 (미상)	1447.5.12㉔~1448.7.9㉔~	미상	미상	안동	미상	
21	金自雄 (미상)	1448.5.11㉔~	무과	미상	미상	미상	
22	趙石岡 (?~1454)	1451.4.2㉔~	무과	미상	미상	미상	
23	河漢	1452.10.1㉔~	미상	미상	진주	하동	좌익원종 2 河敬復 子 河叔漙 父
24	李允孫 (1414~1467)	1453.7.28㉔~	무과	미상	가평	서울	좌익원종 1
25	河漢	1454.6.27㉔~	미상	미상	진주	하동	
26	河漢	1455.4.4㉔~	미상	미상	진주	하동	
27	李好誠 (1397~1467)	1457.9.19㉔~1459.10.24㉔	무과	미상	광평	김천	좌익원종 2 李居仁 父
28	洪益生 (미상)	1461.1.20㉔~1462.3.27㉔~	미상	미상	남양	화성	
29	鄭種 (1417~1476)	1463.4.23㉔~	무과	미상	동래	고령	좌익원종 1 적개공신 3
30	鄭種	1464.1.18㉔~	무과	미상	동래	고령	
31	卞袍 (?~1488)	1464.7.6㉔~	무과	미상	초계	미상	
32	閔孝源 (미상)	1465.7.3㉔~	미상	미상	여흥	미상	좌익원종 3
33	李衡 (미상)	1467.5.24㉔~	음서	미상	전주	미상	좌익원종 2
34	韓致義 (1440~1473)	1469.1.10㉔~	음서	가선	청주	서울	외척
35	林自蕃 (?~1486)	1469.6.5㉔~	미상	미상	예천	예천	장난공신 3
36	金嶠 (1428~1480)	1471.7.13㉔~1472.11.4㉔~	무과	미상	선사	파주	좌익원종 1 적개공신 1 좌리공신 4
37	金舜臣 (미상)	1473.6.28㉔~1472.8.15㉔	미상	가선	연안	미상	
38	金伯謙 (1429~1506)	1474.9.15㉔~1475.8.22㉔~	무과	가선	광산	미상	적개공신 3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39	辛鑄	1476.10.26㉔~1477.8.20㉔~	무과	미상	영산	포천	
40	薛茂林 (미상)	1478.9.24㉔~	미상	절충	경주	미상	
41	慶由恭 (미상)	1480.11.26㉔~	미상	가선	청주	신천	
42	尹末孫 (미상)	1482.12.1㉔~1483.1.4㉔~	미상	미상	남원	미상	적개공신 2
43	李叔琪 (1429~1489)	1485.1.27㉔~3.2㉔~	무과	자헌	연안	용인	좌익원종 2 적개공신 2
44	吳純 (미상)	1487.5.23㉔~1488.8.7㉔~	미상	가선	보성	미상	吳子慶 子
45	邊處寧 (미상)	1489.5.9㉔~1491.4.21㉔~	미상	가선	원주	미상	
46	河叔溥	1491.4.21㉔~7.4㉔~	무과	가정	진양	하동	
47	曹淑沂 (1434~1509)	1493.윤5.22㉔~1494.11.6 ㉔~	문과	절충	창녕	진주	曹潤孫 父
48	具詮 (미상)	1497.10.6㉔~	미상	통정	미상	미상	
49	柳繼宗	1508.11.17㉔~1510.6.11㉔	미상	미상	진주	안성	정국공신 3
50	黃衡 (1459~1520)	1510.6.27㉔~1511.3.7㉔	무과	절충	창원	미상	黃琛 父
51	成秀才 (?~1515)	1511.9.15㉔~1512.5.7㉔~	무과	미상	창녕	미상	
52	李允儉 (1451~1520)	1513.3.11㉔~	무과	가선	합천	합천	
53	沈順徑 (1462~1542)	1514.7.8㉔~12.12㉔~	무과	가선	청송	파주	정국공신 3
54	曹閔孫 (1469~1548)	1515.11.9㉔~	미상	미상	창녕	진주	정국원종
55	黃琛 (미상)	1516.2.20㉔~	미상	미상	창원	서울	黃衡 子
56	李券 (미상)	1517.2.29㉔~1517.2.29㉔~	무과	미상	덕수	서울	李芑 兄
57	柳湄 (미상)	1518.1.5㉔~10.26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水使겸직
58	尹熙平 (1469~1545)	1523.6.14㉔~10.25㉔~	무과	미상	해주	양주	정국공신 3
59	李安世 (미상)	1531.4.25㉔~	무과	미상	용인	서울	
60	金鐸 (미상)	1533.5.3㉔~1534.4.1㉔	문과	미상	고령	서울	

연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61	金舜皐	1536.6.11㉔	무과	미상	순천	안동	
62	曹允武 (미상)	1536.6.21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3	朴英 (1471~1540)	1538.7.8㉔~1540.3.29㉔	무과	미상	밀양	선산	讓寧大君 外孫
64	張世豪	1540.9㉔~1541.10㉔『俛仰集』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5	許礪 (?~1545)	1545.3.11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6	金舜皐	1545.8.19㉔~	무과	미상	순천	안동	
67	李見 (미상)	1550.10.23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8	李玪 (미상)	1551.3.27㉔	무과	미상	미상	미상	
69	金胤宗 (미상)	1551㉔~1553.2.4㉔	무과	미상	안동	서울	
70	趙安國 (1510~1573)	1553.5.16㉔~	무과	가선	풍양	미상	
71	方好智 (미상)	1556.9.26㉔~	무과	가선	온양	서울	方輪 子 方好義 弟
72	閔應瑞 (1499~?)	1556.10.28㉔~	미상	가선	여흥	미상	
73	吳誠 (미상)	1557.7.27㉔~	무과	미상	보성	서울	
74	尹先智 (1501~1568)	1557.9.27㉔~1559.5.27㉔~	무과	미상	파평	파주	
75	張彥邦 (미상)	1559.8.10㉔~	무과	미상	덕수	서울	
76	崔終浩 (미상)	1561.9.25㉔~	미상	미상	양천	미상	
77	李大伸	1563.10.10㉔	미상	절충	미상	미상	
78	吳誠	1563.10.4㉔~1564.5.18㉔~	무과	미상	보성	서울	
79	崔希孝 (1509~1589)	1566.7.11㉔~11.21㉔	음서	가선	수성	미상	
80	張弼武 (1510~1574)	1569.5.1㉔~10㉔『國朝人物考』	무과	가선	구례	영동	
81	林晉 (1526~1587)	1573.2.20㉔~8.6㉔	무과	미상	나주	서울	林鵬 子
82	張弼武	1573.10.6㉔~1574.4㉔	무과	가선	구례	영동	

연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구	비고
83	李潤德 (1529~1611)	1574.4.13㉔~	미상	미상	광주	성남	
84	鄭世弼 (미상)	1574.12.5㉔~	무과	미상	영일	합천	
85	柳 貞	1575.2.29㉔~	문과	미상	전주	서울	
86	蘇 滄	1576.8.27㉔	무과	미상	진주	평택	
87	辛應基	1580 「辛應基節度使善政碑」	무과	미상	영월	미상	
88	申翼 (미상)	1586.3㉔~『昌原邑誌』	미상	미상	평산	서울	
89	李珪 (?~1592)	1592.4.14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4. 전라도

연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구	비고
1	金贊吉 (?~1405)	1397.1.28㉔	行伍	미상	고성	고창	
2	洪恕 (?~1418)	1402.2.12㉔~11.10㉔~	음서	미상	남양	미상	좌명공신 4
3	崔 迪 (1356~1426)	1402㉔~1404㉔	미상	미상	강릉	강릉	崔有璉 子
4	金繼志 (?~1410)	1406.4.4㉔~	미상	미상	광산	정읍	
5	李之實 (미상)	1406.7㉔~1408.10.1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	林 整 (1356~1413)	1407.3.3㉔~	미상	미상	평택	용인	
7	成發道 (?~1418)	1407.10.3㉔~	미상	미상	창녕	포천	成石璘 子
8	姜思德	1408.7.13㉔~1409.9.19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9	馬天牧 (1358~1431)	1412.5.3㉔~1413.9.29㉔~	음서	미상	장흥	곡성	좌명공신 3
10	鄭耕 (1370~1421)	1414.12.13㉔~	미상	미상	나주	광주	鄭地 子
11	趙源 (미상)	1415.9.4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2	鄭耕	1416.7.25㉔~1417.1.13㉔	미상	미상	나주	광주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3	馬天牧	1417.4.25㉔~9.5㉔	음서	미상	장흥	곡성	
14	成達生 (1376~1444)	1417.12.3㉔~	무과	미상	창녕	파주	監司검직
15	鄭耕	1419.2.26㉔~	미상	미상	나주	광주	
16	朴礎 (1367~1454)	1419.9.25㉔~1420.10.16㉔	미상	미상	함양	미상	
17	文貴 (?~1439)	1422.9.25㉔~	미상	미상	남평	미상	외척
18	文孝宗 (1365~1444)	1423.12.11㉔	음서	미상	남평	나주	
19	李恪	1429㉔~1430.3.26㉔	무과	미상	덕산	미상	
20	洪師錫 (?~1448)	1434.10.30㉔~	무과	미상	남양	미상	
21	朴信生 (미상)	1435.7.20㉔~	미상	미상	밀양	의성	莊懿宮主 叔父
22	文貴	1437.6.30㉔~1439.5.25㉔	미상	미상	남평	미상	
23	南宮啓 (?~1446)	1441.4.19㉔~	음서	미상	함열	미상	좌명원종
24	朴以寧 (?~1453)	1443.7.12㉔~1444.9.4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25	金有讓	1444.9.4㉔~	음서	미상	순천	여주	金承霍 子
26	尹重富 (?~1451)	1446.1.12㉔~	음서	미상	서흥	경주	尹鳳 弟
27	崔淑孫	1453.10.2㉔~	무과	미상	통천	창원	
28	崔淑孫	1455.4.4㉔~1455.10.7㉔	무과	미상	통천	창원	
29	李樺 (1391~1459)	1455.11.17㉔~	미상	미상	전의	안동	
30	李昇平 (?~1460)	1457.4.7㉔~1458.9.2㉔~	음서	미상	장수	장수	좌익원종 2 李從茂 子 李士平 兄
31	柳洙	1459.3.20㉔~	음서	가선	문화	남양주	
32	洪興祚 (미상)	1460 윤11.11㉔~1462.9.24㉔	미상	미상	남양	미상	
33	李士平 (미상)	1462.8.2㉔~1464.2.24㉔~	음서	미상	장수	장수	좌익원종 2 李從茂 子 李昇平 弟
34	曹繼宗	1464.7.6㉔~	미상	미상	한양	양주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35	辛鑄	1467.5.24㉔~	미상	가선	영산	포천	
36	許亨孫 (1427~1477)	1467.9.20㉔~1469.윤2.6㉔	무과	미상	양천	파주	
37	許琮 (1434~1494)	1469.5.29㉔~	문과	송정	양천	서울	적개공신 1 좌리공신 4
38	康袞 (1411~1484)	1470㉔~	미상	자헌	신천	미상	익대공신 3 좌리공신 3
39	朴堧 (미상)	1472.6.29㉔~1474.5.20㉔~	미상	가선	미상	미상	적개공신 3
40	林自蕃	1474.8.9㉔~1475.8.22㉔~	미상	자헌	예천	예천	
41	河叔溥	1476.8.39㉔~1476.12.5㉔	무과	가정	진양	하동	
42	李叔琪	1476.12.6㉔~1477.9.20㉔~	무과	가정	연안	김천	
43	尹未孫	1479.윤10.8㉔~	미상	가선	남원	미상	
44	辛以中 (미상)	1482.3.1㉔~	미상	가선	영월	미상	
45	卞宗仁 (1433~1500)	1483.2.11㉔~1483.2.29㉔~	무과	가선	밀양	부천	적개공신 1
46	成俔 (미상)	1487.5.23.㉔	문과	절충	창녕	연천	
47	李季全 (1450~1506)	1487.5.23㉔~1489.4.4㉔	무과	가선	평창	서울	
48	辛鑄	1490.4.29㉔~1491.7.4㉔	미상	가선	영산	포천	
49	邊靖 (미상)	1492.12.17㉔	미상	가선	원주	서울	좌익원종 3 德川翁主 子
50	金瑞衡 (미상)	1492.12.19㉔~1494.11.6㉔~	미상	가선	미상	양주	
51	吳純	1495.1.27㉔~1497.3.1㉔~	미상	가선	보성	미상	吳子慶 子
52	元仲矩 (미상)	1497.2.4㉔~10.23㉔	미상	가선	원주	원주	
53	呂允哲 (?~1509)	1497.10.25㉔~	미상	절충	함양	미상	呂自新 子
54	韓忠仁	1498.윤11.8㉔~1500.3.20㉔	미상	가선	청주	고양	외척
55	李胤宗 (1451~1533)	1509.윤9.17㉔~1510.6.12㉔	미상	미상	광산	장성	
56	申繼宗 (미상)	1510.6.27㉔~	무과	미상	미상	아산	
57	李宗仁 (1458~1533)	1513.4.24㉔~1515.4.13㉔~	무과	가선	함평	나주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58	崔漢洪	1515.7.7㉔~1516.6.19㉔~	무과	가선	경주	고양	정국공신 2
59	黃琛	1517.8.22㉔~1519.6.26㉔~	미상	미상	창원	서울	黃衡 子
60	權勝	1520.9.21㉔~1522.1.5㉔	미상	미상	안동	미상	
61	吳堡 (미상)	1522.6.11㉔~1523.7.5㉔~	미상	미상	해주	미상	
62	李安世	1524.1.9㉔~	무과	미상	용인	서울	
63	方輪 (1464~1534)	1526.2.10㉔~1528.4.5㉔~	미상	가선	온양	양주	方好義·方好智 父
64	禹孟善	1528.4.5㉔~1529.4.10㉔~	무과	가선	단양	서천	
65	曹允武	1534.11.24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66	金城 (미상)	1537.8.23㉔	문과	미상	광주	광주	
67	李夢麟 (1496~1563)	1539.8.12㉔~	미상	가선	경주	미상	
68	林鵬 (1486~1553)	1540.12.29㉔	문과	봉정	나주	서울	林晉 父
69	韓琦 (미상)	1544.7.5㉔~	무과	통정	청주	서울	
70	金公奭 (1477~1553)	1545.11.8㉔~	무과	미상	안동	서울	
71	林千孫 (1478~1565)	1547.1.17㉔~1548.3.10㉔~	무과	미상	평택	여주	
72	崔守仁 (미상)	1553.6.12㉔~	미상	가선	해주	미상	
73	元績 (?~1555)	1553.11.16㉔~1555.5.13㉔	무과	미상	원주	원주	
74	趙安國	1555.5.16㉔~7.11㉔	무과	가선	풍양	미상	
75	李光軾	1555.8.25㉔~10.9㉔	미상	가선	우계	강릉	李之芳 子
76	南致勤 (?~1570)	1555.10.10㉔~1557.10.6㉔	무과	절충	의령	서울	
77	張彥邦	1557.10.6㉔~	무과	미상	덕수	서울	
78	崔希孝	1559.2.10㉔~	음서	가선	수성	평택	
79	李元祐 (미상)	1562.6.10㉔~1563.2.28㉔	음서	가선	덕수	미상	李崐 子
80	白惟儉 (미상)	1564.6.9㉔~	미상	미상	수성	양주	
81	郭屹 (미상)	1565.3.22㉔~1565.11.9㉔	무과	미상	현풍	미상	

연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구	비고
82	南致勤	1565.11.9㉠~	무과	미상	의령	미상	
83	白惟儉	1566.7.18㉠~	미상	미상	수성	양주	
84	李戡	1567.2.29㉠~1568.6.12㉡	미상	가선	우계	강릉	
85	邊協 (1528~1590)	1568.6.12㉠~	무과	가선	원주	양주	
86	李龜琛 (1514~1592)	1572.11.13㉠~1573.5.2㉡	음서	미상	전주	미상	
87	申翬 (미상)	1575.2.29㉠~	미상	미상	평산	서울	
88	成應吉 (미상)	1587.6.6㉠~1589.1.15㉡~	미상	미상	창녕	서산	
89	李鎰 (1538~1601)	1589.8.16㉠~	무과	미상	용인	용인	
90	楊大樹 (?~1592)	1592.3㉡ 『耽羅誌』	무과	미상	청주	미상	
91	崔遠	1592.4㉡~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재임 활동 미상							
92	李興淳	1439.7.10. 이전㉡	음서	미상	전주	서울	

5. 충청도

연번	성 명 (생몰년)	재 임 활 동	출신	품계	본관	연구	비고
1	李承源 (미상)	1394.3.5㉠~	미상	미상	청주	미상	개국원종
2	李龜鐵 (?~1413)	1396.10.23㉠~1397.1.28 ㉡	미상	미상	순천	미상	
3	趙英茂 (?~1414)	1397.1.28㉠~5.21㉡	미상	미상	한양	한양	개국공신 2 정사공신 1
4	金南秀 (1350~1423)	1402.6.11㉡	미상	미상	연안	청양	
5	柳龍生	1404.6.6㉠~	음서	미상	진주	미상	개국원종
6	柳濕	1405.7.8㉠~	음서	미상	고흥	완주	水使겸직
7	崔迺	1406.4.11㉡~	미상	미상	강릉	강릉	
8	趙狷	1407.3.3㉠~	고려 문과	미상	평양	성남	
9	李都芬	1407.10.3㉠~1408.5.17 ㉡~	미상	미상	성주	성주	
10	李龜鐵	1408.7.13㉠~	미상	미상	순천	미상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11	辛有定 (1347~1426)	1411.3.8㉔~1412.7.19㉔	음서	미상	영산	미상	개국원종 水使검직
12	金重寶 (?~1413)	1412.7.19㉔~1413.5.1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3	李之實	1413.3.26㉔~1413.5.1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4	李之實	1414.10.13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5	柳濕	1416.2.5㉔~	음서	미상	고흥	완주	水使검직
16	金尙旅 (미상)	1418.5.5㉔~1419.5.7㉔	미상	미상	수원	예산	
17	李中至	1419.5.7㉔~8.25㉔~	무과	미상	고성	서울	
18	朴光衍 (?~1425)	1421.6.2㉔~1422.9.25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19	李興發 (1389~1439)	1422.9.25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李元桂 孫子
20	心寶 (?~1425)	1422.12.13㉔~1423.10.10	미상	미상	풍산	서울	외척
21	趙寶	1423.10.17㉔~12.11㉔	무과	미상	한양	양주	趙仁沃 子
22	李皎	1432.4.20㉔~1434.8.24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李和 子
23	金益生 (미상)	1434.8.24㉔~	미상	가선	김녕	미상	
24	李思任 (미상)	1442.7.3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정난원종
25	安崇直 (미상)	1444.9.4㉔~1445.11.3㉔~	미상	미상	순흥	미상	安景恭 孫子
26	李榬 (?~1455)	1445.11.3㉔~	음서	미상	전의	서울	慶愼公主 駙馬
27	洪海 (미상)	1448.2.4㉔~1449.4.3㉔~	음서	송덕	남양	한양	淑愼翁主 駙馬
28	崔潤德 (미상)	1449.4.3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29	辛處康 (?~1453)	1450.윤.1.17㉔~1451.10.2㉔~	미상	미상	영산	영산	辛悅 子
30	池淨	1453.10.2㉔~10.11㉔	미상	미상	충주	안동	
31	成勝	1453.10.11㉔~1455.2.13㉔~	미상	미상	창녕	서울	
32	李宗睦 (미상)	1455.1.30㉔~	미상	미상	신평	홍성	李宗孝 弟
33	李宗孝 (미상)	1455.8.19㉔~12.17㉔~	미상	미상	신평	홍주	좌익원종 2 李宗睦 兄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34	鄭種	1457.1.23㉔~	무과	미상	동래	고령	
35	黃致身 (1397~1484)	1457.3.20㉔~12.6㉔	음서	정헌	장수	고양	黃禧 子
36	康袞	1459.1.30㉔~1460.7.11㉔~	미상	미상	신천	미상	
37	李宗孝	1460.12.3㉔~1461.8.9㉔	미상	미상	신평	홍성	
38	李允孫	1462.8.9㉔~10.28㉔~	무과	미상	가평	서울	
39	權軀 (?~1467)	1463.7.6㉔~1464.2.20㉔~	무과	미상	안동	충주	정난공신 3
40	李允孫	1464.7.6㉔~1465.9.7㉔~	무과	미상	가평	서울	
41	李休 (미상)	1465.11.16㉔~12.19㉔	문과	창선	전주	서울	孝寧大君 孫子
42	李復 (1428~?)	1466.1.19㉔~1467.10.14㉔~	음서	가선	전주	서울	익대공신 2 定宗 孫子 李衍 兄
43	李衍 (미상)	1468.1.29㉔~	음서	미상	전주	서울	定宗 孫子 李復 弟
44	尹欽 (1418~1485)	1468.3㉔~	음서	가정	파평	파주	좌익원종 2
45	成貴達 (미상)	1468.10.6㉔~1469.윤2.9㉔~	미상	통정	창녕	미상	成世貞 父
46	李仲英	1469.윤2.27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47	金奉元 (미상)	1471.윤9.1㉔~1472.12.4㉔	미상	미상	전주	미상	
48	朴良信 (미상)	1472.6.17㉔~1474.7.25㉔	미상	절충	미상	미상	
49	金瑞衡	1475.4.11㉔~6.7㉔	미상	미상	미상	양주	
50	李從生	1475.6.29㉔~1476.12.14㉔	무과	절충	함평	하남	
51	安仁厚 (미상)	1477.1.10㉔~1478.1.20㉔~	미상	미상	순흥	미상	좌익원종 3
52	朴植	1479.2.11㉔~1481.2.14㉔	미상	가선	고성	미상	적개공신 3
53	朴居謙	1481.2.14㉔~5.27㉔	무과	자헌	밀양	안산	
54	裴孟達 (1411~?)	1481.5.21㉔~	미상	가정	곤양	미상	좌익원종 1 적개공신 2
55	孟碩欽 (1429~?)	배맹달 후임, 구겸 선임	미상	가정	신창	성남	적개공신 2
56	具謙	1485.4.15㉔~	음서	가선	능성	미상	적개공신 3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57	孫繼良 (미상)	1488.8.17㉔~	미상	가선	밀양	미상	
58	邊脩 (1447~1524)	1489.5.18㉔~1490.8.19㉔~	무과	절충	원주	양평	정국공신 3
59	李蓀 (1439~1520)	1492.10.5㉔~	문과	절충	광주	광주	정국공신 3
60	李滋 (1441~1516)	1494.10.26㉔~	문과	절충	고성	안동	
61	禹賢孫 (미상)	1498.윤11.8㉔~	무과	통정	단양	미상	
62	河叔導	1501.1㉔~11.3㉔	무과	미상	진양	하동	
63	崔漢洪	1508.11.1㉔	무과	미상	경주	고양	
64	方輪	1512.10.21㉔~1513.1.23㉔~	무과	미상	온양	양주	
65	趙舜 (1467~1529)	1513.1.26㉔~1515.2.5㉔	문과	미상	함안	함안	
66	金延壽 (?~1515)	1515.2.10㉔~2.23㉔	문과	미상	안동	서울	
67	成夢井 (1471~1517)	1517.3.16㉔~8.27㉔	문과	가선	창녕	대전	정국공신 4
68	禹孟善	1519.9.10㉔~11.3㉔~	무과	가선	단양	서천	
69	金秀淵 (미상)	1531.8.7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70	李亨順 (1475~1541)	1535.6.24㉔~11.15㉔~	무과	미상	전주	서울	
71	李亨順	1536.6.21㉔~1537.6.17㉔	무과	미상	전주	서울	
72	吳世翰	1538.7.19㉔~	무과	가선	보성	청원	
73	元彭祖 (1473~1542)	1539.10.17㉔~	미상	미상	원주	여주	
74	李夢麟	1544.7.27㉔~8.5㉔~	미상	미상	경주	미상	
75	奉承宗 (미상)	1547.1.27㉔~	미상	미상	하음	미상	
76	邊明胤 (미상)	1553.4.7㉔	미상	미상	원주	미상	
77	金世澣	1553.4.13㉔~1554.16㉔~	미상	미상	광산	서울	
78	許世麟	1562.6.6㉔~	미상	미상	양천	여주	
79	白惟儉	1564.1.16㉔~6.9㉔	미상	미상	수성	양주	

연번	성명 (생몰년)	재임활동	출신	품계	본관	연고	비고
80	李大伸	1564.6.9 ^임 ~	미상	미상	미상	미상	
81	洪致武 (미상)	1566.6.17 ^임 ~	무과	미상	미상	미상	
82	李戡	1574.3.15 ^제	미상	가선	우계	강릉	
83	金輿 (미상)	1578.4.7 ^제	문과	미상	청도	예산	
84	鄭元祥 (?~1589)	1589.1.11 ^제	미상	미상	미상	미상	
85	申翌	1592.6.29 ^제	미상	미상	평산	미상	
재임활동 미상							
86	金用超 (?~1406)	1406. 이전 ^제	고려 문과	미상	의성	용인	
87	李箴 (1376~1451)	태종~세종대 ^제	무과	미상	예산	서울	
88	申玉衡 (미상)	1526. 이전	미상	미상	평산	미상	
89	李元祐 (미상)	1550. 4.25 이전	음서	미상	덕수	서울	李芑 子

〈참고문헌〉

1. 자료

『朝鮮王朝實錄』, 『高麗史節要』,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會通』, 『大典通編』, 『蠡營道先生案』, 『長興府誌』, 『新增昇平志』, 『昌原邑誌』, 『耽羅誌』, 『永嘉誌』, 『東萊府志』, 『浩亭集』

2. 저서

金淇森, 柳承宙, 沈允洪, 『全羅兵營史研究-康津兵營城과 하멜滯留址 攷研』, 조선대학교, 1999.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http://uci.or.kr//G901:A-0008420244@N2M>

오종록,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2014.

<http://uci.or.kr//G901:A-0006522734@N2M>

_____,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2014.

<http://uci.or.kr//G901:A-0006522737@N2M>

육군본부,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1968.

<http://uci.or.kr//G901:A-0008260825@N2M>

_____, 『한국군사사5 조선전기 I』, 육군본부, 2012.

<http://uci.or.kr//G901:A-0006416746@N2M>

3. 논문

감병훈, “조선전기 경상우병영의 설치와 이설”, 『민족문화논총』 79, 2021.

<http://dx.doi.org/10.15186/ikc.2021.12.31.06>

김양수·김양식, 「조선후기 忠淸監司와 淸州守令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회』 125, 2004.

<http://uci.or.kr//G704-000361.2004..125.001@N2M>

김원혁, 「조선 성종대 '領敦寧以上' 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韓國史學報』 35, 2009.
<http://uci.or.kr//G901:A-0002684276@N2M>
- 김종필, 「조선후기 국왕권력 이양 사례연구 -선위와 대리청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http://uci.or.kr//I804:11004-200000577741@N2M>
- 김지연, 「朝鮮初期 宗親 仕宦의 推移」, 『서울과 역사』 75, 2010.
<http://dx.doi.org/10.22827/seoul.2010..75.002>
- 박도식, 「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의 研究」, 『人文學研究』 9, 2005.
<http://uci.or.kr//I410-ECN-0101-2014-001-001392687@N2M>
- 박용국, 「太宗代 河崙의 정치적 存在樣態의 變化」, 『남명학연구』 28, 2009.
<http://uci.or.kr//G901:A-0002748227@N2M>
- 박천식, 「朝鮮 開國功臣의 冊封過程과 待遇」, 『論文集』 9, 1976.
<http://uci.or.kr//G901:A-0000333050@N2M>
- _____, 「開國原從功臣의 研究」, 『論文集』, 10, 1976.
<http://uci.or.kr//G901:A-0000352924@N2M>
- 서병패, 「崔有漣 開國原從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분석」, 『詳明史學』 10, 2006.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2495495@N2M>
- 장병인, 「朝鮮初期의 兵馬節度使」, 『韓國學報』 34, 1984.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0442549@N2M>
- 정해은, 「조선후기 武科榜目の 현황과 사료적 특성」, 『군사』 47, 2002.
<http://uci.or.kr//G901:A-0001704987@N2M>
- 이기명, 「조선후기 관찰사의 본향상피 재검토」, 『역사와 교육』 17, 2013.
<http://uci.or.kr//I410-ECN-0101-2014-910-000558769@N2M>
- 오종록, 「朝鮮初期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 上·下」, 『震檀學報』 59·60, 1985.
<http://uci.or.kr//I410-ECN-0101-2014-910-000558103@N2M>

유동호,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http://uci.or.kr//G901:A-0005793687@N2M>

이동희, 「19世紀 前半 守令의 任用實態」, 『전북사학』 11·12, 1989.

<http://uci.or.kr//G901:A-0000766341@N2M>

_____, 「조선시대 전라도관찰사 임용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23, 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1-900-000078809@N2M>

최이돈, 「조선초기 왕실 친족의 신분적 성격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진단학회』 117, 2013.

<http://uci.or.kr//G901:A-0003337894@N2M>

최정용, 「세조조 원종공신의 책정과정과 성격」, 『창원사학』 2, 1995.

한충희, 「朝鮮 世祖代(1455-1468) 原從功臣研究-1,2等功臣을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22, 2013.

<http://uci.or.kr//I410-ECN-0102-2014-900-001556205@N2M>

<Abstract>

The Re-appointment of Hasamdo's Soldier in the Early Joseon Period

Gam, Byung-Hoon

This paper was written to analyze the tenure of Hasamdo soldier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o understand how the soldiers actually operated. The main historical materials referred to in the study wer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ith various eupji's "Siran" used in addition to these records. The scope of the study ranges from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to 1592, whe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roke out.

A total of 395 soldiers were appointed to Hasamdo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mong them, just 31 soldiers, or 8 percent, worked in the same province continuously, as assigning one soldier to a specific region for a long time was considered to create the risk of them claiming their own private land or usurping military authority.

While the statutory guaranteed term of service for soldiers was two years, or 24 months, our analysis found that the average term was only half this duration, or 12 months. Terms were shortened due to failure of an operation, personal circumstances or corruption of the soldie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re were a total of 52 families, and 120 families produced Hasamdo Island. The families that produced more than two of them were 29 families and 55 families of 55 families.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ies that produced Hasamdo soldiers, unlike the late Joseon Dynasty, those who served as soldiers are intertwined with blood relations.

Because soldiers are external workers, the main epithelium was also applied to the epithelium system. Therefore, when we look at the hometowns and places of appointment of those who were appointed as soldiers, Seoul and Gyeonggi-do were generally somewhat dominant. By period, more people from their hometowns were appointed in the 15th century, but this decreased in the 16th century.

At the time of his appointment as a soldier, the official goods were mainly composed of second-class gaseon godfathers, followed by third-class Dang Sanggwan was appointed. In addition, more than a family loan was appointed, but the ratio was only 12%. By age, the largest demographic groups were soldiers appointed in their 40s and 50s, followed by those in their 60s and 30s.

Keywords: the early Joseon period, ByeongmaJeoldosa, Hasamdo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67-111
<https://doi.org/10.29212/mh.2024..130.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후기 충청수영의 松政

- 안면도를 중심으로 -

김명래 | 소영문화연구소

목 차

1. 서론
2. 충청수영과 안면도의 연혁
3. 송정 정책과 안면도의 송전
4. 안면도의 송정
5. 결론

초 록 충청수영의 책무는 충청도의 해방(海防)이었지만 조선후기 평화 시기에는 송정(松政)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작동되었고 그 개연성이 여러 정황에서 나타난다. 송정은 국가에서 필요한 船材와 건축용재 및 관곽용 소나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산림 정책이다. 조선시대 안면도에는 71곳이 봉산으로 지정됐는데 ‘안면송전’이라고 통칭되었고, 섬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소나무는 ‘도송’이나 ‘안면송’으로 불리며 유명하였다. 이러한 안면송전에 대한 송정 관할권을 위임받은 충청수영은 220여 년 동안 안면도를 군정으로 다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면도라는 고립된 섬에서 집행되었던 충청수영의 송정 수행의 실무 내력의 조명은 수군사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안면송전에 대한 송정을 수행했던 충청수영의 운영 방식과 그 성과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안면송전의 규모와 상태를 분석하였고, 안면송의 조달 규칙과 조달 규모를 파악하면서, 송정에 따른 부수입원으로써 수영의 재정충당 방법을 추적 하는 등 송정과 관련하여 파생된 각종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송정을 군영(軍營)에서 집행토록 한 제도는 일상불란한 조직력에 의한 효율성이 있었지만 군사작전처럼 송금 위주의 강압적인 운영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외시한 결과, 백성들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며 괴리되어 갔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수영은 안면도의 송정을 220여 년 동안 수행하면서 충청수영의 필요 선재는 물론이고 어떤 때는 경기수영과 궁궐용 건축재를 비롯하여 일부는 전라도의 조선과 군선용 선재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송정의 기본인 심고 기르는 육림은 등한히 하면서, 관속들의 부패와 결탁된 도벌과 남벌이 자행되자 송전의 황폐화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안면송전 만큼은 선재의 품질은 저하됐으나 그런대로 조달기능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충청수영(忠淸水營), 안면도(安眠島), 송정(松政), 송전(松田), 안면송(安眠松)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서론

본고는 충청수영에서 관할하게 된 안면도라는 특정 지역의 松政에 관하여 살펴 본 것이다. 松政이란 국가에서 필요한 戰船의 船材와 官用 건축재 및 棺槨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반 산림정책을 말한다.

조선시대 안면도는 홍주·서산·태안에 속해 있었으나, 충청수영 인근의 沿岸지역으로써 수영의 군사적 주도권이 작동되는 위수지역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안면도 松田¹⁾에 대한 송정(松政)은 3군 관할에서 1669년(현종 대)부터 충청수영으로 일원화되었다.²⁾ 안면도 송전은 宜松山으로 지정된 71개소로 이루어졌으며 안면도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송전 중에 하나였다. 안면도 소나무는 『忠清水營事例』³⁾에 島松이라는 명칭으로 조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安眠松이라고 불렀는데 품질이 우수하고, 용이한 해상 운송의 이점이 있었다.

조선의 산림정책은 ‘산림은 만민의 공유지’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나, 점차 산림의 私占이 늘어나고 산이 피폐해지면서, 목재가 부족해지자 산림을 보호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封

1) 배재수, 2002, 「朝鮮後期 松政의 體系와 變遷 過程」, 『산림경제연구』 10(2), 22-50쪽. “松田은 광의로 宜松地와 같이 소나무가 잘 자라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협의로 의송지 중에서 봉산보다 격이 낮은 용도림으로 松政의 대상이 되는 국가직속지가 松田에 해당된다.”

2) 『현종실록』 현종 10(1669).1.8.

3) 『忠清水營事例』, 보령박물관 소장: 편자는 미상이고 편년은 1850년이다. 1책 60張이며 각 면은 14행이고 각행은 25자 내외로 쓰여 졌다. 충청수영의 예산운영 실무 지침인 운영규정으로 볼 수 있다. 충남 보령지방에 2종의 필사본이 유행되고 있다.

山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을 대상으로 1684년(숙종 10)에 「諸道沿海松禁事目」이 처음 반포되어 연해지역에서 시행되었는데 松禁 19조로 이루어진 규정이었고, 이후에도 事目이나 節目 형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강화된 嚴法이 반포되었다.

이처럼 산림법은 엄격해지고 그 시행에 있어서도 지방의 군·현에서 담당했던 산림행정은 수군에게 위임되었다. 물론 소나무는 戰船을 짓고 수리하는데 그 수요가 가장 많은 이유가 되겠지만, 군에서 집행하는 송정 또한, 軍務로서 군사작전처럼 수행되면서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송정을 松禁으로 억압하며 일체의 임산물 취득을 금지시킴으로써 山林에서 생활 재료와 부식 및 연료를 채취하여 생활하는 백성들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었고, 軍政으로 다루어지는 엄격한 산림행정에 반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8세기부터는 養松은 등한히 하면서 남벌이 자행된 탓에 송전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으며, 품귀현상으로 소나무 가격이 폭등하자 송정은 더욱 문란해지며 조선말 송전의 실태는 거의 민둥산으로 松材 조달기능이 상실된 상태가 되었다.

송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1990년대에 김선경은 권력층이 산림의 사점을 통해서 계급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고,⁴⁾ 배재수는 봉산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⁵⁾ 최덕수는 봉산제가 어떻게 성립되고 운영되었는가를 해명하였다.⁶⁾ 이옥⁷⁾과 이기봉(2002)⁸⁾은 봉산(封山)의 개념과 그 분포에 대해 밝혔으며,

4)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 77-78호(1993): 497-535.

5) 배재수, “조선후기 封山の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4-1호(1995).

6) 최덕수·박경석·이옥, “조선후기 封山制 성립에 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5-1호(1997):49-63.

7) 이옥외 2인, “조선후기 封山制 성립에 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5-1호(1997): 49-63.

8) 이기봉, 「조선후기 封山の 등장 배경과 그 분포」, 『문화역사지리』 14-3(2002):1-18.

2000년대에 들어서 배재수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금송 중심의 송정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⁹⁾ 노성룡·배재수는 금제 중심의 송정은 민간수요에 대한 억압과 강압적 운영으로 백성들의 반발을 초래했음에도 계속 유지 강화 되었고, 이것이 송정의 커다란 질곡이었다고 평하였으며,¹⁰⁾ 박범은 충청수사의 목재조달에 대한 일부분만을 다루었다.¹¹⁾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안면도 송전과 이 송전을 관찰하였던 충청수영의 송정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안면도라는 섬 안에서 집행되었던 충청수영의 송정에 대한 조명은 수군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기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안면송전에 대한 송정을 수행했던 충청수영의 운영 방식과 그 성과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안면송전의 규모와 상태를 분석하였고, 안면송의 조달 규칙과 조달 규모를 파악하면서, 송정에 따른 충청수영의 수입 원으로써 수영의 재정충당 방법을 추적하는 등 송정과 관련하여 파생된 각종 문제점을 조명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를 언급한다면, 안면도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충청수군의 松政에 관한 제반 사항을 살펴서 파악하고 조명하였음에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충청수영사례』와 충청수영에서 작성된 송정관련 사료¹²⁾를 주로 활용하였고, 이밖에 보완 자료

9) 배재수(2002) 앞의 논문.

10) 노성룡·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전개과정과 특징”, 『아세아연구』 63-3호(2020): 3-78.

11) 박범, “충청수영계록을 통해본 19세기 충청수사의 지방행정”, 『충청학과충청문화』 29호(2020): 71-104.

12) 『公忠水營都重記』 1868, 奎16896 ; 『各營釐整廳濟錄』 奎15062 ; 『忠清水營關牒』 奎15122 ; 『忠清水營所管松田成冊』 奎16379 ; 『忠清水營所管按眠島甲申條風落松用遺在區別成冊』 奎17030 ; 『忠清水營卜定闕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斫株數各項雇價及裝運監色沙格裝載軍糧米磨鍊成冊』 奎17032 ; 『충청수영 및 운영자료』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로서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국역비변사등록』 등¹³⁾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안면도라는 섬을 대상으로 송정에 관한 연구를 처음 수행하면서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2. 충청수영과 안면도의 연혁

충청수군절도영(이하 충청수영)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소재하였다. 충청수영은 1447년에 도안무처치사 박배가 古巒(현 주포면 송학리 송도)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설한 것이며, 수군절도사는 무관 정3품관으로서 본영과 충청도 연해의 18 邑鎭(5개 鎭과 13개 邑水鎭)을 통할하였다.¹⁴⁾

안면도는 섬이 아니라 태안반도에 부속된 곳[串]이었고, 고려 때에는 廣地鄉과 安眠所¹⁵⁾였으며, 조선에서는 행정적으로 홍주·태안·서산으로 분할되었다. 세조 연간에는 송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쇄출론¹⁶⁾까지 거론되었던 育林의 적지였다. 중종대에는 李之菡(1517~1578)의 ‘안면곶 굴착’에 관한 圖識의 예견이 『여지도서』와 『만기요람』에 전해지고,¹⁷⁾ 『여지도서』에 “백사장은

13) 『船案』奎17036; 『國譯備邊司謄錄』79책; 『新增東國輿地勝覽』; 정약전, 안대희 역, “松政私議”, 2014.

14) 『여지도서』 충청수군절도영조.

15) 『신증동국여지승람』[산천]. “安眠串은 옛날의 安眠所이다. 군 남쪽 1백 리에 있으며, 牧場이 있다. [고적] 廣地鄉: 군 남쪽 93리에 있다. 安眠所 모두 泰安郡 남쪽 마을까지 넘어 들어가 있다.”

16) 『세조실록』 세조 3(1457).1.16. “安眠串은 (...)소나무가 있는데, 鹽夫와 雜人이 斫伐하여 없어질까 염려되니, 거주민을 刷出하고, 泰安·瑞山 등 고을과 處置使로 하여금 소나무의 斫伐을 금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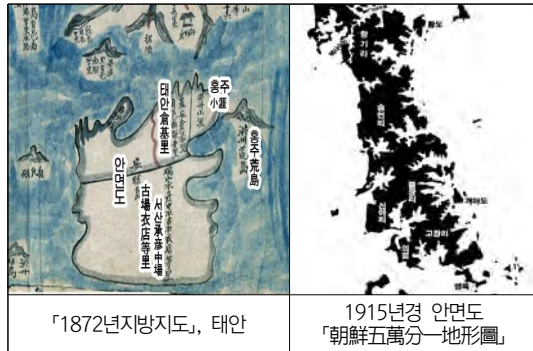
17) 『輿地圖書』. “安眠串在郡南五十里謠傳土亭李之菡愛賞山勢奄留數日乃曰此地後必有鑿脈通者果有本郡鄉吏房景齡獻議于監營鑿來脈通其水道今爲一島松木茂密”

안면도에 있다(白沙場在安眠島)”라고 기록된 것처럼 『여지도서』편찬 이전에 이미 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안면도 굴착에 대한 기록은 여러 문헌¹⁸⁾에서 언급된다.

『태안군지』¹⁹⁾는 그 굴

착 시기를 1645~1647년(인조 23~25)으로 보고 있다.²⁰⁾ 이처럼 안면도가 섬이 된 이유는 안면곶의 외양 항로²¹⁾를 천수만 안쪽으로 우회시켜 안흥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판목을 개착하여 白沙水道를 완성시켰기 때문이다.²²⁾

조선후기 안면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의 대부분은 서산군 지역이었고, 북서쪽은 태안군 지역이며 북동쪽은 홍주목 관할이었다. 우측의 안면도 지도는 1915년경에 측량된 현대적 「朝鮮五萬分一地形圖」로 간척사업 이전의 지도이다.²³⁾



<그림 1> 안면도 지도

18) 『瑞山郡誌』, 1914년 ; 『朝鮮實輿勝覽』 안면도조 “安眠外海漕運不便 切斷山脈以通遂成一島” ; 곽호제(2009), 안면면장(1959)의 “읍면세 편찬에 관한 건.”

19) 『태안군지』, 1997. “安眠島鑿項은 仁祖 23년에서 25년 사이(1645~1647)에 판목이鑿通된 것으로 본다.”

20) 김백은, “안면도의 면적 변화와 연안침식지역 해안선의 속성 분포”, 『한국해양공학회논문집』 22-3(2010) ; 鄭良謨, “安眠島의 成島年代 小攷”, 『史學論叢』 38호 (197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곽호제, “고려~조선시대 태안반도 조운의 실태와 운하굴착”,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호(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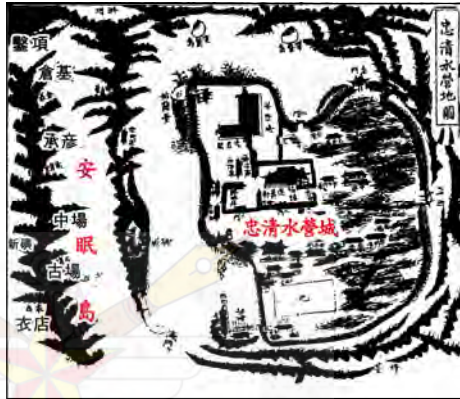
21) 安眠島의 外洋이 危險하고 承彦里에서 西쪽으로 五里쯤에 暗礁 蒸米여(或 쌀씩은 이)에서 稅船 敗沒이 빈번하여 漕運의 안전방안으로 백사수도를 개착한 것이다.

22) 白沙水道는 [판목]이며 남면 신온리와 안면을 창기리 사이에 蟻項을 개착한 鑿項, 『大東地志·大東輿地圖』의 「南掘浦」·「掘浦」等이다. 蟻項은 「개미목」으로 부르며, 잘록하게 된 곳에 부칠 수 있다.

23) 해안선은 1915년에 263km가 2003년에는 110km로 감소하였다. 면적은 1915년 87km²가 113km²로 증가.

근세 안면도의 행정구역은 1897년에 홍주군에 소속되었고,²⁴⁾ 1901년에는 신설 오천군에 편입되었다가,²⁵⁾ 1906년에는 다시 태안군에 편입되는 변화를 겪었다.²⁶⁾ 안면도민들의 생활은 남북간에 생활권이 분리된 채²⁷⁾, 8개 포구에서 각각의 장배로 왕래 하였던 광천장[瓮巖浦: 독바위]과 생활권이 형성된 특징이 있었다.

충청수영에서 안면도까지의 거리는 최남단 潮箭(현 영목항)까지가 해로 15리, 최북단 倉基까지는 해로 60리가 된다. 이렇게 안면도는 충청수영과의 거리가 비교적 멀고 海路인데도 불구하고 충청수영 格軍의 60%가 안면도에서 충원되고 있을 정도로 충



〈그림 2〉 충청수영 지도(여지도서)

청수영은 안면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림 2〉는 『여지도서』에 부속된 충청수영 지도인데, 행정을 관할하는 3개 행정 郡名은 생략된 채 각 里名만이 뚜렷하게 기입되어 있다. 이처럼 표시된 의도는 충청수영의 안면도에 대한 강한 松政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써, 안면도에 대한 송정의 중요성과 수영과 안면도간의 불가분한 관계를 闡明하는 송정관할지도로 볼 수 있다.

24) 『고종시대사 21』 고종 34(1897), 1.14. “勅令 第8號로 忠淸南道管下 洪州·泰安·瑞山郡에 分轄되었던 安眠島를 洪州郡에 全屬시켜 管轄케 하다.”

25) 『高宗實錄』 光武 5(1901), 6.1. 勅令第11號 忠淸南道管下保寧郡區域內 廢止한 前水營에 鰲川郡을 新設하는 件. “第2條 區域은 洪州郡 用川面과 安眠島·元山島(…) 舒川郡 開也島를 該郡에 劃附 管轄할 事.”

26) 『태안군지』 1997. “1906.6.24. 안면도가 태안군에 편입(박제순, 이지용의 지방구역 정리 건)”

27) 이상균, “근대화 전후 도서지역 주민생활권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20-1(2008). “1914년에 안면도 북단에서 남단 영목까지 도로는 우마차도 다닐 수 없는 상태였다.”

3. 송정 정책과 안면도의 송전

가. 송정 정책

정조는 18세기 말 “나라에는 大政이 있는데 송정이 그중 하나이다. 소나무 禁養은 戰船을 만들고 稅穀船을 짓는데 쓰기 위함이다. 궁궐의 건축에 대비하고 백성들의 생활물자로 그 쓰임새가 지대하기 때문에 松禁은 지엄한 것이다”²⁸⁾라고 하였다. 송정이 시행되는 禁松 지역은 「諸道沿海松禁事目」²⁹⁾ 시행으로 각 지방에서 추천한 宜松地를 뽑아 封山으로 획정하였고, 이후부터 의송지는 封山·松田 등의 명칭으로 일반화되었다.

조선의 산림정책은 朱子の 山林共有論(山林에서 나오는 산출물은 모든 인민이 공유해야 한다)과 산림은 만민의 공유지[山林川澤 與民共之]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수립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산림정책은 고려에서 권문세족들에게 독점되었던 산림을 국유(공유)화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산림의 사점이 늘어나고 피폐해지면서 목재가 부족해지자 조정에서는 산림을 보호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封山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을 대상으로 제정된 산림법은 1684년(숙종 10)에 반포된 「諸道沿海松禁事目」인데 전국 연해지역에서 시행되었고 松禁 19조로 이루어진 규정이었다. 이후에 事目이나 節目 형식으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화된 법률이 반포되었다.

28) 『諸道松禁事目』奎957, 정조 12년(1788) : 松政에 관한 규칙으로 전문 1장과 29개 조문으로 구성.

29) 『備邊司謄錄』숙종 10(1684). 2.30. : 松禁 19조로 이루어졌고, 전국 연해지역에 시행되었다.

松禁은 松木禁伐의 줄임말로 송정을 대표하는 용어로 쓰였다. 또, 광범위하게 쓰이는 송전은 의송산과 같이 봉산으로 지정된 소나무가 잘 자랄만한 지역으로 대개 해안가에 위치하였다. 여기서 봉산은 벌채를 금지한 산으로서 禁養하는 곳으로, 토지를 선정하여 보호한다[宜松山抄封]는 뜻이다. 봉산은 금산보다 더 특수한 목적으로 정해졌지만 둘 다 송금이 목표였으며, 봉산에서는 船材와 建築用材를, 黃腸封山에서는 황장목을 생산하여 棺槨用材와 건축용재를 조달하였다. 송전³⁰⁾은 『충청수영사례』와 『忠清水營所管松田成冊』³¹⁾에서 안면도의 의송산 전체를 일컫는 실무용어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안면도의 의송산 전체를 ‘안면도 송전’으로 표기하였다. 안면도 송전은 충청수영에서 송정을 관할하기 이전부터 금송조치가 취해진 곳이다. 일찍이 시행된 만큼 안면도에서 송정이 어떻게 시행되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면도에서는 소나무가 소금을 굽는 땀감으로 다량이 소비되었고 도남벌도 성행하였기 때문에, 조선 초기 1457년(세조 3)에 안면도민들을 진곶이[禿津串]로 이주시켰다.³²⁾ 1485년(성종 16)에 편찬된 『經國大典』工典 栽植조는 봉산 보호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봉산을 정하여 벌목과 방화를 금지하였다. 또, 안면곳에는 萬戶가 봉산을 시찰토록 하면서 매년 봄에 묘목을 심거나 파종하여 기르도록 했다. 조선 중기에 들어서, 종종 연간에는 “산

30) 배재수, 앞의 책(2002). “松田은 광의로 宜松地와 같이 소나무가 잘 자라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협의로 의송지 중에서 봉산보다 격이 낮은 용도림으로 松政의 대상이 되는 국가직속지가 松田에 해당된다.”

31) 『忠清水營所管松田成冊』: 忠清水營 編, 1冊(7張), 筆寫本(奎16379호), 表題는 ‘忠清水營所管島陸沿海邑鎮松田標內壬申條植松數爰及山名周回竝錄成冊’ 이고, 高宗 10년(1873)에 忠清水營에서 同營 소관 각 郡鎮의 전년도 植松 수효와 山名, 周回 등을 조사기록한 책이다.

32) 『세조실록』 세조 3(1457).10. 2.

에 나무를 벌채를 금하라”³³⁾라는 명을 내렸고, 광해군 연간에는 “도내 각 섬의 굵고 큰 나무들도 도벌을 엄금한다”³⁴⁾는 엄명을 내리는 등 송금정책을 강화하였고, 효종 연간에는 禁山에 몰래 매장하는 행위를 신칙하여 금단시켰다.³⁵⁾ 본격적인 송정은 1684년 (숙종 10)에 「諸道沿海松禁事目」으로부터 구체화 되었고, 영조는 1746년에 『續大典』을 편찬하여 금산·봉산·의송산의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산림행정을 바로 세우고 그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였다.³⁶⁾

충청수영의 안면도 송전 관할권은 공조판서 金佐明이 1669년 (현종10)에 안면도 송전을 충청수사에게 맡겨서 감독하도록 청하여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³⁷⁾ 이때부터 안면도의 송정은 홍주목, 태안군, 서산군 등 3군 관할에서 충청수영에게 일원화 된 것이다. 이는 송정체제가 일반 郡政에서 軍事 行政으로 변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군대라는 엄격함과 효율성을 우선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山林에서 식용 부식과 생활용구의 재료 및 취사와 난방연료를 채취하여 생활하였는데, 송금정책은 일체의 임산물 취득을 금지시키며 그저 松禁으로 억압만 한 결과 백성들과 괴리되어 갔고, 조선후기에는 산림이 더 나빠지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정조는 더 적극적으로 1788년에 「諸道松禁事目」을 규정하여, 100년 전에 반포된 「제도연해송금사목」을 보완하였다. 이 사목은 소나무가 스스로 말라죽거나

33) 『중종실록』 중종 38(1543).5.5.

34)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7(1615).5.16. [3]

35) 『효종실록』 효종 3(1652).11.4.

36) 『續大典』工典 栽植조. “每年春冬令四山分授人, 栽植 每年春·冬二月·十月, 令四山分授人, 無分授處則坊里人 松·雜木栽植, 違者, 科罪備局所在海松子, 多數播種於山麓童濯處, 每朔本曹郎官巡審禁伐(…) [幸行時駐蹕處] 幸行時駐蹕處, 其他講武·習射之場, 令所在官雜木栽植, 禁火·禁伐”

37) 『현종실록』현종 10(1669).1.8. “佐明請取材於安眠島, 使水使監董, 上許之”

불에 타서 죽은 모듬 소나무 반 그루까지 반드시 비변사에 보고
토록 하는 행정절차가 강화되었고, 소나무 도벌에 대한 형벌을
전문 1장과 29조문으로 강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법적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송정을 집행하여야 하는 일선 조직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송정의 조직을 살펴보자.

『충청수영사례』 [本營事蹟]조에서 안면도에 관한 첫 언급은
“현종 7년(1666)에 안면에 산직을 설치했고, 송전을 정한 지 130년”
이라는 기록이다. 또, 안면도의 송정을 위임받은 충청수영의 수사
韓侃는 “숙종 7년(1681)에 안면도에 산직 50명을 설치”하였고,
“숙종 14년(1688)에는 수사 金益勳이 산직 20명을 늘려 합계 75명
으로 하면서, 각각 1인당 논 30斗落과 밭 20두락을 나누어 주고”
復戶의 혜택을 주었다.³⁸⁾

또, 같은 책 兵船掌조에는 “안면도 송전의 실무책임자는 兵船
掌의 船將 겸 監官(色吏)이고 補軍(군관급) 6명이 보좌하였다.
여기에 산직 73명과 植松 2명 도합 75명을 두어 관리하였고, 이
들 산직에게는 復戶를 내렸다”³⁹⁾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영에서 송정을 관리하는 幕僚는 비장청의 兵房
裨將이었다.⁴⁰⁾ 이와 같은 檢討를 통해서 숙종대의 「諸道沿海松
禁事目」에서 정한 감관에 관한 운영방법에서 상이한 점이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감관을 보좌하는 보군 6명을 두어서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38)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本營事蹟: 康熙5年丙午 設直安眠山直捧松田130年, 康熙20年辛酉 韓侃安眠山直50名設置, 康熙 27年戊辰 金益勳安眠山直20名加設合75名每名畵三十斗落田二十斗落畵給復戶”; 『공충수영도중기』, 「安眠山直汰去更勿遷差事節目」: 산직의汰去(잘못하거나 불필요한 관원의 퇴출) 등 참조.

39) 『충청수영사례』, 위의 책. “兵船掌조: 船將兼監官色吏一 補軍六, 安眠山直73名植松2名合75名 每名畵30斗落田20斗落本島田畵定給復戶無結卜只有”

40) 『오천군지』 職員名稱 및 員數와 職務, “裨將廳 兵房: 軍事務一切를 管掌”

둘째, 감관과 산직의 임기와 임용에 대한 숙종대의 규정을 살펴보자.

宜松處를 가려 長廣이 30리 이상/인 산은 산지기를 3명, 10리 이상인 산은 2명, 10리 이하인 산은 1명만 차출하며, 30리 이상인 산은 산마다 감관 1인씩을 차출하고 30리 이하인 산은 부근의 여부에 따라 혹 일 인이 둘, 셋, 넷, 다섯의 산을 兼管하게 하되 전에 鄉所와 軍任을 지내고 威力이 있는 근면한 사람으로 각별히 골라서 정한다. 산지기와 감관의 신역은 가장 괴로운 일이니 각종 雜役 일체를 면제하고 산을 순시하는 임무만 전담하게 한다. 산지기는 年限을 두지 말고 감관은 3년으로 한다.⁴¹⁾

이처럼 산직과 감관에 관한 임용과 배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정조 연간에 시행된 「제도송금사목」에는 禁養의 공과가 있으면 포상한다고 기록되었다.

정성을 다하여 禁養하여 울창한 숲을 만든 자의 경우, 監官 ... 鎭에서는 軍任의 직책에 따라 승진시키고, 으뜸으로 만든 자는 加資를 청하도록 하고, 산지기는 營門에서 상을 주고 가장 으뜸인 자의 아들 한 사람의 신역을 면제하여 주며, 민둥산에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어 확실한 숲을 조성한 자는 己丑定式에 의하여 1만 그루 이상은 加資를 청하고 9천 그루 이하 수천 그루 이상이면 한 아들의 신역을 면제하여 주거나 ...⁴²⁾

41) 「諸道沿海松禁事目」숙종 10(1684). “恰此抄定宜松處 長廣三十里以上山乙良 山直三名 十里以上山乙良 二名 十里以下山乙良 一名差出爲白乎你 三十里以上山 乙良 每山各監官一人式差出 三十里以下山乙良 從附近或一人兼管二三四五山爲白乎 矣 以會經鄉所有風力者 各別擇定爲白齊 一. 山道·監官等爲役最苦 凡于雜役一切免專責巡山之任爲白齊, 一. 山直則勿爲限年 監官則以三年爲限...”

42) 「諸道松禁事目」정조 12(1788), 奎957. “其中殫誠禁 養 漸致蓊鬱者 監官段 邑則卿任 鎭則軍任 各從其相當寬陞差 出類拔萃 衰然爲諸松 田之最者 計其株數 列其勞績 巡水營 相議狀聞 仰請加資 山直段 自營門施賞 最合 嘉獎者 一子鐫役 潼灌處 播種栽植 長過數尺 無慮茁長者 依己丑定式 萬株以上 狀請 加資 九千株以下數千株以上 隨其多寡 鄉任軍任 量宜陞差 山直段 萬株以上 亦爲狀 聞 帖加成給 九千株以下數千株以上 一子鐫役 或別爲施賞爲齊”

한편 읍진의 송전은 禁松都監官, 面監官, 里山直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나. 안면도의 松田

안면도의 소나무는 고려 때에도 선재와 궁중의 재목으로 사용되었고,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일수종의 소나무가 울창한 산지로써, 해로를 이용한 송재 운반이 용이한데 있었다. 1873년에 편찬된 『충청수영소관송전성책』에 기록된 충청수영 소관 송전은 12읍 4개진에 231곳이었는데, 육지의 의송산 52곳, 可禁山 95곳, 私養山 13곳, 안면도에 의송산이 71곳이었다.

이처럼 안면도는 송전 71곳이 한 섬에 집중된 곳으로 충청수영 소관 송정의 중심지가 될 만하였다.

안면도 송전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의 『충청수영소관송전성책』을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안면도 송전의 현황

관	산명	상태	周回 (里)	조림 현황	산명	상태	周回 (里)	조림 현황
서 산	道里島山	船材斫取處	5	播種	春山洞山	稀疏處	5	播種
	串屯山	稀疏處	6	〃	直栗浦山	〃	5	〃
	欣金基谷山	〃	6	〃	大同山	〃	6	〃
	長芑山	〃	6	〃	所栗浦山	〃	6	〃
	𡵇於山	〃	4	〃	炭幕洞山	船材斫取處	6	〃
	化于洞山	〃	4	〃	栗浦南邊	稀疏處	6	〃
	化壽山	〃	5	〃	崐里五之山	〃	5	〃
	柯亭子山	〃	5	〃	上船隅山	〃	6	〃
	驅馬面山	〃	4	〃	長浦山	〃	5	〃

관	산명	상태	周回 (里)	조림 현황	산명	상태	周回 (里)	조림 현황
서	大也島山	〃	4	〃	鉢五之山	〃	7	〃
	新磯山	〃	6	〃	族驕洞山	〃	8	〃
	羅培山	〃	4	〃	傍浦山	〃	6	〃
	無根老末山	稀疏處	6	播種	水鐵洞山	稀疏處	8	播種
	長津浦山	船材斫取處	6	〃	馬堂基山	〃	5	〃
	移來洞山	〃	5	〃	鳥介山	〃	7	〃
	方下頂山	〃	7	〃	陸浦山	〃	6	〃
	承彦西邊	〃	7	〃	屯島山	船材斫取處	8	〃
	廣之山	〃	6	〃	多步先浦山	稀疏處	5	〃
산	長堂串之山	〃	5	〃	耆老山	船材斫取處	5	〃
	屏風東邊山	〃	6	〃	大浦山	〃	5	〃
	蘆田九味山	〃	4	〃	串堂山	〃	5	〃
	大沙串之山	〃	6	〃	漈浦山	〃	4	〃
	中山	〃	7	〃	承彦北邊	〃	5	〃
	屏風西邊山	〃	6	〃	漕箭山	〃	6	〃
	仇雪湯里山	〃	6	〃	陰山	〃	5	〃
	迄里浦山	〃	7	〃				
	태	長串之山	風落自枯處	3里	播種	墨松山	〃	20步
基各之谷山		稀疏處	20步	植松 100柱	短串之山	〃	200步	植松 20柱
倉之橋山		〃	20步	植松 50柱	米所斤山	風落自枯處	20步	播種
火炭浦北邊		風落自枯處	30步	植松 5柱	金堤山	〃	20步	植松 120柱
崑里山		稀疏處	30步	播種	倉基山	〃	30步	植松 70柱
火炭浦西邊		〃	30步	植松 200柱	加仁山	〃	50步	播種
三峯山		〃	50步	植松 200柱	加仁串西邊	〃	50步	播種
鷄卵里山		〃	30步	植松 20柱	加也浦南邊山	童濯處	7里	植松 100柱
狐浦山		風落自枯處	30步	播種	道嶼山	稀疏處	20步	播種

관	산명	상태	周回 (里)	조림 현황	산명	상태	周回 (里)	조림 현황
홍주	牛巖山	船材斫取處	380 步	播種	東邊山	船材斫取處	300步	播種
周回(里) 計: 3리×1, 4리×7, 5리×16, 6리×19, 7리×7, 8리×3, (합 298건 22.02 km ²)					周回(步) 計: 20보×6, 30보×5, 50보×6, 200보×1, 300보×1, 380보×1, (합 20건 0.026 km ²)			

〈표 1〉을 통해서 안면도의 송전 71개소에 대한 송전 양상을 그 외양으로 분류하면, 船材斫取處(船材를 벌채한 곳)가 27곳, 稀疎處(나무가 성긴 곳)가 32곳, 童濯處(草木이 없는 곳)가 1곳, 風落自枯處(풍해로 고사한 곳)가 10곳으로 나타난다. 나무가 있긴 하지만 드문드문 있는 곳이 32곳으로 45%가 되는데 松材의 규격이나 주수는 알 수가 없고, 그 나머지 15%는 민둥산으로 보인다. 다만 자세한 播種 면적과 생육상태는 알 수 없지만 파종이라고 기재된 송전이 61곳으로 86%나 되고 있으며, 植松 주수가 10곳에 895주로 미소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안면도의 송전은 목재 공급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당시 안면도 송전의 당면 과제는 파종과 식송을 통한 육림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안면도의 산림은 “경복궁 수축 때 노령수의 우량목은 대부분 베어내어 큰 나무는 소량이고 수령 7,80년의 나무는 각처에 상당 잔존한다. 삼림의 대부분은 수령이 약 30년 된 壯齡林이다”⁴³⁾라는 1933년 기록이 있는데, 이 상황을 20년 전인 조선말(1910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보면, 10여 년생 정도의 치송이 대부분이고 5,60년생 정도의 소나무가 약간 남아 있는 정도로 목재 생산능력이 없는 송전으로 유추되는 것이다.

43) 하야시 쇼우조우(한국명 林省三), 『安眠島, 京城帝國地方學會 발행(1933), 국립중앙도서관 所藏. “안면도 전체임야면적 7,000정보(70km², 불하 6,500정보, 미입목지 500정보), “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자고 먹고 거주하며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안면도”라고 홍보하는 내용도 있다.

〈표 1〉에 표시된 송전의 규모는 周回 단위로 里와 步를 사용하였다. 주회는 뜻 그대로 둘레를 의미한다. 주회 4리를 정방형이라고 가정하여 그 면적을 산출하면 약 187,000㎡가 되고, 원형으로 가정한 면적은 238,000㎡가 된다.⁴⁴⁾ 따라서 주회 4리의 면적은 약 200,000㎡ 내외일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 1〉의 송전면적을 산출하여 집계하면 전체 면적은 약 22km²가 된다. 그러나 이 면적은 안면도 송전 실면적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成冊’에 기록된 주회(리)라는 면적단위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안면도의 송전면적은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안면도 국유림의 80% 정도인 임야 56.32km²를 매각하면서 국유림 면적이 약 70km²로 밝혀진다.⁴⁵⁾ 조선총독부는 재정보호를 위해 안면도 국유림을 매각하는데, 이에 미루어 보아도 강점 후 17년 동안에 임야를 매입하여 면적이 늘어났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따라서 조선시대 안면도 송전 면적은 1927년 당시 국유림 70km²와 유사하다고 비정된다.

44) 1) 주회 4리를 ①정방형으로 가정하면 1변이 1리(360보×6×0.2m=432m)이고 면적은 186,624㎡가 되며, ②원형으로 가정하면 직경 458.6보(550.3m)이고 면적은 237,720㎡가 된다. 따라서 주회 4리는 200,000㎡ 내외가 될 것이다. 2) 정방형으로 가정할 때, 주회 20보=36㎡, 주회 30보=81㎡, 주회 50보=1,350㎡.

45) 「조선총독부관보」 제44호(1927.2.24.). “安眠島國有林入札拂下: 안면면 창기리, 정당리, 승언리, 중장리, 신야리, 장곡리, 누동리, 고남리에 소재, 安眠島國有林은 林野면적 5,679정6단보, 地上立木 赤松(アカマツ) 817,492尺締 송목 2,584,352株.” [尺締: 사방 1척 길이가 12척인 材積 단위, 12立方尺(=100才, 약 0.324㎡)]

4. 안면도의 송정

가. 안면송 조달

안면 송전의 첫째 목적은 군선의造船과 改槳에 소요되는 송재의 원활한 조달이었다. 그렇다면 충청수영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각 수요처에 송재를 공급하였을까?

안면송의 공급은 비변사에서 許斫(별목 허가)을 받아 별채된 송재에 지정된 烙印을 지저 수요부서에 조달하는데, 이를 烙給이라고 하였다. 충청수영은 안면도 송정의 주관자이면서 船材의 수요자로서 선재를 제공하는 規式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兵船掌에서 담당하였다. 즉, 『충청수영사례』 兵船掌조는 군선 별로 新造와 개삭 시 선재의 낙급에 관해 군선의 척수와 선박 별로 신조·개삭 시에 지급하는 안면송의 규격과 수량을 규정하고 있어서, 군선의 소요 선재 파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⁴⁶⁾

1804년에 丁若銓은 “현재 겨우 명색이 남아있는 봉산은 오직 큰 산과 큰 鎭밖에 없어서 영남의 거제도과 남해도, 호남의 완도와 변산, 호서의 안면도 등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그 산들도 모두 벌써 민동산이 되었다.”⁴⁷⁾라고 하였다. 이처럼 전국의 봉산들이 19세기 초에는 민동산이 될 정도로 산림은 황폐해진 것이다.

그러나 충청수영은 선재 조달규식(1850년에 편찬된 『충청수영

46) 『충청수영사례』, “戰船新造材木庚寅定式, 稚兒松稚松並201株內10株減棠191株, 初改槳稚兒松稚松並25株內 5株減 棠20株, 再改槳稚兒松稚松並53株內3株減棠50株, 3改槳稚兒松稚松並107株內12株減棠95株/龜船新材稚兒松稚松 並19株內2株減實17株, 再改槳稚兒松稚松並47株內12株減實35株/3改槳稚兒松稚松並83株內”

47) 『松政私議』1804년, 정약전 지,

사례』)에 따라 선재를 공급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大·中·小·兒·稚 5단계로 분류되며⁴⁸⁾ 大松과 中松이 선재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 규칙에서는 中松이 제일 큰 선재이었고, 兒松을 中兒松·兒松으로 나누고 稚松을 稚兒松⁴⁹⁾·稚松으로 나누어 모두 7단계로 세분되었다.⁵⁰⁾ 여기서 대송 공급은 아예 보이지 않고 중송조차 희소하며 兒松 이하의 어린 송목을 주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안면 송전의 열악한 산림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 군선용 선재를 조달하는 충청수영의 규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군선의 선재 공급량을 집계하는 데에는 관선의 종류와 보유척수 그리고 신조·개삭 시 소요되는 선재량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충청수영사례』를 참고하여 船種 별로 신조·개삭 시에 지급되는 船材의 규격과 수량을 <표 2>에 분석하였다.

<표 2> 官船의 新改槩時 안면송 조달규식

소속	선종	척수	本板長把	재목	신조	초개삭 30朔	재개삭 60朔	삼개삭 90朔	四五改
本 營	1戰船	1	14	稚兒松 稚松	201	25	53	107	
	2戰船	1	11	"	"	"	"	"	
	龜船	1	10	稚兒松 稚松	146	19	47	83	
	防船	1	10	稚兒松 稚松	96	12	22	32	
	防船	1	8	劈鍊	39	5	10	30	
				弓鉤	28				
	兵船	2	8	劈鍊	23	4	7	10	32
				弓鉤	23				

48) 『統營管下右沿各邑鎮封山雜項松株成冊』 1787년,奎 17031.

49) 稚兒松: 소나무의 크기에 따라 중간치 소나무[中松], 작은 소나무[小松], 애소나무[兒松], 어린 소나무[稚松]등으로 구분되었으나, 樹齡과 흉고직경(DBH) 등 구체적인 구분은 파악되지 않음.

50) 『충청수영사례』 兵船掌. “戰船新造材木, 稚兒松稚松並201株內 10株減 案191株, 初改槩稚兒松稚松並25株內 5株減 案20株, 再改槩稚兒松稚松並53株內 3株減 案50株, 3改槩稚兒松稚松並107株內 12株減 案95株”

소속	선종	척수	本板 長把	재목	신조	초개삭 30朔	재개삭 60朔	삼개삭 90朔	四五改
本 營	伺候船	7	4	添材本3株	-				
	別搜討船	2			-				
	搜討船	2			-				
	亭子船	1	7		-				
	安眠津船	1	4	島松2株	-				
	梭船	8		陸松4株 加給	-	4	4	4	2
	補用庫船	3		改槩 島松2株	-				
	塘報船 ⁵¹⁾	1		-	-		2	2	2
忠 清 道 鎭	採鹽船	47		改槩 島松2株	-		2	2	2
	戰船	-	中松 中兒松 稚兒松		190	20	25	31	
	龜船	-	中兒松 稚松 兒松 稚兒松		140	19	39	51	
	防船	-	兒松 稚松		92	9	19	28	
	兵船	-	添本 兒稚松 3株		-				
경 기 황 해	伺候船	-	添材本 3株		-				
	京畿戰船	-	中松 中兒松 稚松 稚松		201				
	京畿龜船	-	中松 中兒松 稚松 稚松		145				
	京畿防船	-	兒松 稚兒松		99				
	京畿兵船	-	兒松 稚兒松		94				
	江華御駕亭子船		兒松 稚松		56				
	黃海道 戰船		中兒松 兒松 稚松 稚松		158				
	漕船	-	中兒松 兒松 稚松 稚松		106				

주) 실시급은 5~6%정도를 감액, 改槩其間은 新造 후 30~36개월
자료) 김명래(2020) 논문⁵²⁾에서 표내용 가필,

〈표 2〉에서 전선의 경우 새로 배를 지을 때에는 200여 주의 송목이 소요되는데, 어린 소나무들로 선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처럼 송목이 품귀해지자 풍해로 인한 피해목을 枯松·去皮松·偷斫松·風落松으로 분류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기까지 하였다.⁵³⁾ 1798년 기록에서 통영에서는 전선 1척을 건조하는

51) 塘報船: 斥候兵이 旗를 갖고 배의 망루에서 적정을 살피 알리는 배.
52) 김명래, “19세기 전반 충청水營의 수군編制와 운영事例”, 『사학연구』 137호(2020).
53) 忠清水營編, 『忠清水營所在各樣船隻及改造株數區別數交成冊』, 규장각 소장 奎17038, 1冊(4張), 筆寫本, 1874년(高宗 11) 정월에 忠清水營에서 각양 船隻數 등을 보고한 책, 끝에 節度使 李의 수결이 있다.

데 사용된 송목은 大 15주에 中 24주, 小 56주를 포함해서 총 178~220주라고 하였다.⁵⁴⁾

또 1791년 편찬된 『弘齊全書』는 전선 新造에 송목 191주, 초개삭에 20주, 재개삭에 50주, 삼개삭에 95주가 소요된다고 기록되었다. 이처럼 18세기 말에 작성된 기록에서 전선 1척당 소요 선재가 약 200여주로 나와 있는 것은 『충청수영사례』와 비슷하다.

그러나 18세기 기록에는 신조 전선 1척당 대중소 규격의 소나무가 半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표 2〉의 경우에는 稚兒松과 稚松으로만 201주를 책정하였다. 송목의 주수는 같다고 하더라도 대형 소나무와 어린 소나무는 재적량과 품질 면에서 대단한 차이가 있을 터인데, 그러한 선재로써 어떻게 배를 짓고 수리하였는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안면 송전은 1850년대만 하더라도 1873년의 산림상태보다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고,⁵⁵⁾ 군선의 개삭 기간은 1817년에 펴낸 『船案』에서 36朔이 30朔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이유도 船材의 품질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안면송에 대한 烙給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충청수영에서 사용되었던 烙印은 『공충수영도중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營자 2개, 忠자 1개, 風자 2개를 합해서 전부 5개가 사용되었다.⁵⁶⁾ 낙인은 3종류로 각기 용도별로 쓰임새가 정해져 있었을 것이다. 風자 낙인은 풍락송을 낙급 하는 용도로 추정되지만 營자와 忠자 낙인에 대한 사용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낙인 취급이 소홀했다는 조정의 논의가 있었다.

54)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81호(1998) “統制營節目”, 1798” 재인용

55) 『忠清水營所管松田成冊』. 〈표 1〉에서 송전 대부분이 소나무가 듸성듬성하다는 ‘稀疎處’ 기록 참조.

56) 『公忠水營都重記』1868년, 奎16896. “烙印 5箇內 風字 2 忠字 1 營字 2 紙筒上”

安眠島의 배를 만들 재목에 烙印하여 주는 일을 軍校에게 맡기지 말고 差員을 정하여 거행한 뒤에 巡營에 보고하고 순영이 장계로 아되는 것으로 시행하고, 몰래 벤 자는 刑配하되 감히 收贖하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재목을 가져다 쓰는 것은 반드시 본도에 의지해야 할 것인데 근년에 함부로 베는 일이 허다하므로 ... 57)

낙인을 일개 軍校에게 맡긴 것을 지적하면서 差員하여 책임 있는 관리에게 일임시키며 순영에까지 보고하도록 절차를 개진해야 한다는 논의 내용이다.

이미 「諸道沿海禁松事目」에서 낙인 사용은 “斫伐 날짜를 營門에서 미리 알리고 烙印을 지참시켜 군관과 소관 관리를 보내어 입회하여 작별하게 하며 定數대로 烙印하여 중간에서 남별하는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충청수영에서는 사목에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함부로 낙인을 사용한 사례라 하겠다. <표 3>은 대궐에서 사용되었던 안면송의 조달에 관한 烙印 기록이다.

<표 3> 궐내 조달 안면송의 烙印

리 명	재목 長(尺)	末圓徑(尺)	주수	산직	비고
창기	40	2.0-2.5	4	이종민 편대관	창기 烙印
	30	2.0-2.8	2		
승언	40	1.8-2.5	4	이완득 박흥용	승언 烙印
	30	2.0	1		
중장	40	2.0-2.1	2	김판복	궐내 烙印
	30-35	1.9-2.3	6		
의점	30	2.0	1	박춘신	궐내 烙印
계			20		

자료) 『忠清水營卜定關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印株數各項雇價及裝運監色沙格裝載軍糧米磨鍊成冊』,⁵⁸⁾ 헌종 12년(1849), 규장각 소장(奎17031)

57) 『고종시대사』7, 고종 11(1874).11.6.

58) 『忠清水營卜定關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印…成冊』(奎 17032) : 忠淸道 水營에서 關內의 差備役에 소용되는 材木·烙印株數와 斫伐·曳下·桴軍 등의 雇價 및 監色·沙格·裝載軍의 糧米를 계산한 책이다.

표에서 낙급되는 재목은 길이가 30~40척이며 평균 말구직경이 2~3척 정도가 되는 비교적 우수한 안면송으로 볼 수 있다. 대궐에 조달하는 재목이므로 가장 좋은 소나무를 택별했을 것이다. 이처럼 안면송은 대궐의 건축재로도 공급되었는데 유일하게 자세한 기록이다.

또, 안면송 許斫에 관한 기록으로 1869년(고종 6) 10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안면송을 전라도의 鎭과 倉에 낙급한 『충청수영관첩』의 기록을 살펴보자(〈표 4〉).

〈표 4〉 안면송의 수요처 船別 별목허가

연월일(수신)	수요처	원인	株數	비고
1869.10.06	위도 鎭軍船	전체破傷 今改造	120	안면도 許斫
1869.11.25	함열창 鹹字船	개조 年限已過	160	안면도 허작
1869.11.26	법성창 善成律字漕船	三隻船 新造松材	160	許斫 안면도
1869.12.09	군산창 雨字漕船	勢將持本板 改造	120	허작 안면도
1869.12.24	법성창 興字漕船	소근진 致敗	160	허작 안면도

자료) 『忠清水營關帖』⁵⁹⁾ 규장각 소장(규 15122)

위 표는 충청수영 이외의 타도에 선재를 낙급한 내용으로써 안면송은 전라도의 漕船과 군선의 선재로 조달되었던 실적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안면도에서 생산하여 조달되는 송재는 연간 몇 주나 되었을까?

충청수사 민광승은 1796년(정조 20)에 “본도 각 읍진의 군선 및 강화의 교동과 경기고을의 각 선박은 조정의 정식대로 新造·改槩 시 이곳 소나무를 사용하는데 매년 2천 주가 넘는다”

59) 『忠清水營卜定關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斫…成冊』(奎 17032) : 忠淸道 水營에서 關內의 差備役에 소용되는 材木·烙斫株數와 斫伐·曳下·桴軍 등의 雇價 및 監色·沙格·裝載軍의 糧米를 계산한 책이다.

고 장계하였다. 이처럼 안면도 송전에서는 매년 송목 2천주 정도를 충청수영 및 수군진과 읍진과 경기수영에서 소요되는 선재를 공급하였는데 운반이 용이하여 예운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점이 있었다. 『忠清水營卜定關內…成冊』에는 별목운반 雇價가 1주당 斧軍(별목공)은 1전5푼, 曳下軍⁶⁰⁾은 3냥5전, 桴軍(목도꾼)은 5푼씩 모두 3냥7전이라는 노임 기록이 있다.⁶¹⁾ 그러한 이점에 더하여 안면도에서는 일부 수요처에 필요한 선재를 낙급하는 대신에 필요한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조달한 사례가 있다.

경기수영이나 강화부에서 필요한 선박을 안면도에서 건조한 사례는 “교동은 (…) 물력이 매우 적어 戰艦을 모두 안면도에서 만들어 오는데”⁶²⁾라는 기록과, “御駕船의 기한이 차 (…) 안면도에서 새로 짓기로 비국에…”⁶³⁾했다는 보고는, 안면도에서 직접 배를 건조했다는 사실이 된다. 인조 연간에 경기도에는 적당한 봉산을 구하기 어려워 선박을 건조할 곳을 안면도라고 생각하였다.⁶⁴⁾ 이처럼 안면도에서 건조한 배를 수요처에 인도하였다면 防納(郡縣에서 군선을 사는 것) 형식이 된다. 선박 건조에서 선재는 제외 하더라도 운반비, 인건비, 기타 재료비와 경비 등이 부가되므로 금액 정산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850년대 기록인 『충청수영사례』는 그러한 조선소 조직과 업무가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한때라도 조선소 운영을 했다면 수익이 있었을 것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어서 그 실정은 알 수가 없으므로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60) 별채한 목재를 船所까지 운반하는 役軍으로, 曳運軍 혹은 運載軍으로도 부른다.

61) 앞의 책(奎17932). “1株당 裝載軍 30명씩 600명 糧米 4石, 裝載船 10척에 沙格 117명 15일간 糧米 31石9斗, 斫伐曳下斧軍雇價 및 裝載軍, 沙格 등 雇價 合下 180냥7전7분”

62) 『승정원일기』 영조 4(1728).5.13.

63) 『국역비변사등록』130책, 영조 32(1756).4.19. “江華留守 趙榮國 등이 御駕船 논의”

64) 송기중, 2019,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역사와 비평사.

넛재는 風落松도 하나의 목재로써 수요처에 조달했는데 그 처리에 관해 살펴보자.

풍락송은 風災를 입어 뽑히거나 부러진 소나무를 말한다. 1731년(영조 7)에 큰 피해를 당했는데 “지난번 풍재 때 부러지거나 뽑힌 의송산의 소나무가 몇 만 그루나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⁶⁵⁾라고 하는 막대한 피해보고가 있었다.⁶⁶⁾ 풍락송이 워낙 많다보니 이 풍락송만으로 수군 영진과 읍진의 군선은 물론이고, 조운선 건조 방안까지 제시되었다. 1874년(고종 11)에 충청수영에서는 소속된 각 선박의 개조에 드는 풍락송의 주수 및 낙급 방법과 배의 용도를 중앙에 成冊으로 엮어 보고했다.⁶⁷⁾ 이 내용은 호도의 채복선 2척에 개조용으로 풍락송 각 2주, 補用庫船 2척에 개조용으로 풍락송 각 1주, 梭船 2척에 개조용으로 풍락송 각 1주, 원산의 津船 1척에 개조용으로 풍락송 2주를 배당하여 도합 22주⁶⁸⁾를 낙급한 사실이었다.

「諸道松禁事目」은 “산 소나무는 물론이고 말라 죽거나 불에 타 죽은 소나무 한 주라도 사소한 숫자까지 낙급하여 비변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눈 여겨 볼 것은 풍락송을 上折, 腰折, 空心, 拔根 등 4가지로 세분한 점과, 향후 용도에 대하여 보고하는 등의 철저한 행정체제가 되겠다. 그토록 엄격한 규정에 따른 1885년(고종 22) 안면도의 태풍피해 보고내용은 풍락송의 상태, 주수, 산직 성명, 里名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으나 정작 쓸 재목은 47주 중에 2주뿐인 사례도 있었다.⁶⁹⁾

65) 『승정원일기』영조 7(1731).7.4. “낭청을 보내 적간하고 오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啓.”

66) 『승정원일기』영조 7(1731).7.14. “金在魯의 啓.”

67) 『忠清水營所在各樣船隻及改造株數區別數交成冊』, 1冊(4張), 奎17038, 고종 11(1874).

68) 『忠清水營所屬各樣船隻中改造殘剩船七隻與各船材木株數成冊』, 奎17039, 고종 12(1875).

69) 『충청수영소관안면도갑신조풍락송용유재구별성적』, 奎17030: 高宗 22년(1885)에 忠清水營에서 安眠島內의 風落松의 사용여부와 遺在를 조사·기록한 책이다.

나. 송정에 의한 충청수영의 재정 확보

충청수영은 안면도에 대한 송정을 담당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충청수영의 재정에 얼마나 기여되었는지 전체적인 수입액수 파악은 자료 미비로 어려운 편이다. 수영은 원래가 재원이 부족한 곳이다. 정약전은 “수영은 田土稅를 받을 권한이 없어 본래 가난한 진영이다. (...) 오로지 소나무가 있을 뿐이다”⁷⁰⁾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충청수영의 경우에도 안면도의 송정 담당은 재정 획득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수영은 국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지 못했고, 부족분에 대한 재정확보 방침이 명문화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 충청수영의 공식적 세입은 番錢 5,808兩과 結錢 3,300兩을 합한 9,108兩으로 180여명의 입방군에 대한 給代로 6,564냥, 나머지 2,544냥은 육물가와 군선의 신조·개삭비 총당금 정도로 지출되었다. 그리고 需米 400石이 매년 전입되었지만 군관들의 饌價 정도로 사용되었고, 屯稅는 잡곡을 합하여 연간 300석 정도가 걷히는데 수영의 잡비로 쓰였다.⁷¹⁾ 이처럼 명문화된 비용 이외에 수영에서 가장 큰 지출항목은 수사를 비롯한 우후, 비장 등 간부와 영속들의 급료가 되는데, 『충청수영사례』는 그러한 인건비는 적시하지 않았다. 인건비는 기본적인 중요 예산이지만 누락시킨 것이다. 『오천군지』⁷²⁾에 기록된 1895년 당시 충청수영의 직원봉급표에는 수사, 우후, 비장, 장교, 영리, 진리, 영노비, 사령 등의 봉급을 금전(錢)과 현물(米)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리고 그 표에는 각 직원 별로 금전은 ‘수군 番錢’으로, 현물은

70) 정약전, 안대희 역, “松政私議”, 『소나무 정책론』(2014, 주민음사).

71)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72) 1911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편자와 원본의 소재는 불명이다. 현재 유행되는 필사본은 1915년에 이기한 것으로 3본이다. 내용은 ‘從前 충청수영에 관한 舊價’이라는 부제와 같이 충청수영이 중심이다.

‘수사가 支撥함’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수사가 支撥함’은 수사가 봉급을 준다는 의미이고, 그 재원은 수사의 재량이나 慣例에 의해 수취된 재정으로 볼 수 있다.⁷³⁾ 유형원이 수군의 내재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주장한 개혁론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할만하다.⁷⁴⁾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충청수영은 안면도 송정을 담당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획득은 어떤 방법이었을까? 충청수영은 부족한 재정을 획득하는 방법을, 송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는, 松贖은 수영의 재정 획득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었다. 松贖은 송금 범법자들에게 실형대신 징수한 贖錢이다. 이와 같은 송금 위반자에 대한 송속 판결은 수사의 강력한 권한이었고, 속전은 국가에 바치지 않고 해당 수영에서 전용할 수 있는 수입금으로 취급하였다. 충청수영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刑房은 수영의 송전과 17개 읍진의 해문 30리 이내는 물론 사양산을 정탐하며 각별히 禁斷 명령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안면도 송전은 매월 따로 정한 將吏들이 犯伐 유무를 염탐하고 5개 都山直은 삭망에 馳告한다”⁷⁵⁾고 하였다. 이처럼 형방은 「송금절목」의 사법을 관장하는 부서였다. 행형 집행에서 治盜棍은 水使가 쓰되 도적을 다스리거나 소나무 벌채에 관련된 범죄인에게만 쓸 수 있

73) 김명래, “오천군지의 편찬과 충청수영의 舊慣”, 『한국문화』98호(2022):399-431. 오천군지의 봉급표 오류를 바로 잡아 1895년 당시 충청수영 본영의 간부와 필수 종사원의 봉급표를 작성.

74) 『磻溪隨錄』. “水軍役은 本役 이외에도 각종 잡세를 수취와 잡역에 동원된 경우가 많아 역 부담이 연간 50필정도가 된다. (...) 수군 지휘관은 재정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역가를 착복하여 각종 지출에 이용에 이용하였고, 처자식을 봉양하거나 뇌물에 이용한다.”

75)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刑房兼隨陪大小文簿當舉行 舟師松田17邑鎮海門30里內 毋論宜松私養山——廉探別禁斷 安眠松田每朔別定幹幹將吏廉探犯伐有無五都山直朔望馳告陸山春秋監官馳告”

었다.⁷⁶⁾ 그만큼 松禁 범죄는 중죄인으로 취급되었고, ‘송정은 곧 군무’라는 인식하에 수사의 송정 권한은 때때로 監司보다 강하게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연해지역 수령의 송정관련 범죄에 대하여 처벌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⁷⁷⁾ 이와 같은 권한을 뒷배로 위세 등등한 수령의 감관과 군교들은 인근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속전을 거두는 것도 정약용이 지적한 것처럼 무리한 징수는 그 속전을 갚기 위해 또 도벌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⁷⁸⁾

충청수영에서 松贖을 전담하는 修繕庫라는 금고를 운영했던 기록으로, 1874년(고종 11) 희정당에서 어사 박용대가 아뢴 啓請에 언급된다.

“安眠島는 세 고을의 경계에 있는데, 松政은 오로지 水營에 속합니다. 그 영문에서 창설한 修繕庫는 松贖을 받아쓰는 곳인데, 한 해의 속이 많으면 5, 6천이나 되고 적어도 2, 3천이 못되지는 않으니, 軍校들의 농간과 섬 소나무가 줄어 없어지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수선고를 폐지하고 송속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니, 박용대가 아뢰기를, “소나무는 한 번 베면 다시 움트지 않는 것인데, 한결같이 송속을 받아쓰면 섬 소나무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⁷⁹⁾

76) 「흙흙전직」: 1778년(정조 2)에 형구의 규격과 사용범위를 정한 법전, 水使는 重棍과 大棍을 사형 죄를 지은 중죄인에게 사용할 수 있었고, 中棍은 우후·營將, 소곤은 첨사·만호·權官 등이 사용하도록 규정.

77) 「諸道沿海松禁事目」속중 10(1684). “법을 잘 봉행하지 않은 수령과 변장은 營門에서 경중에 따라 決杖하되, 결장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파면한 뒤에 죄를 청한다. 沿海의 수령과 변장의 褒貶도 道臣과 帥臣이 함께 상의하여 하되 動亂을 따져 黜陟의 증빙자료로 삼게 하여 禁松令에 무게를 더하도록 한다.”

78) 정약용, 『牧民心書』工典, 한국종합DB: “백성 한 사람이 囚禁되면 나무는 100株나 더 베어진다. 본래 나무 때문에 붙잡혀 들어왔으나 도리어 나무의 힘으로 풀려 나가며, 본래 나무 때문에 죽게 되었으나 도리어 나무의 힘으로 살게 된다. 즉, 나무를 또 도벌하여 그 돈으로 贖錢을 내는 것이다.”

79) 『승정원일기』 고종 11(1874).11.3.

이와 같이 수선고와 송속은 박용대의 의견대로 폐지되었다.⁸⁰⁾ 이때는 충청수영이 폐지되기 20년 전으로 안면도 송전의 생산력이 쇠퇴하고 있을 때였다. 소나무가 품귀 상태로 松材 가격이 고가인 상황에서는 속전을 내고도 이득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송속은 오히려 수사·감관 등 관속과 도별꾼들이 서로 유착되도록 유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수영의 입장에서 속전이 적어도 2, 3천 냥이나 되는 거금이었으니 재정 확충 차원에서 외면하기가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이다.

둘째는, 수영의 재정 확보를 위해 직접 송재를 私賣하는 방법이 되겠다.

여기서 송재를 확보하는 방법은 ㉠필요한 송목의 주수를 부풀려 허가 받거나, ㉡허가 받은 주수에서 일부를 빼돌리거나, ㉢수요부서에 공급할 때 소량을 除給하기도 하고, ㉣아예 허가 이상으로 별목하는 등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私賣錢은 수영의 부족 재정을 보충해주는 큰 재원이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수영의 재정에 보태면서 그중 일부는 관속들이 서로 나누어 착복하는 경우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충청수사 이현택이 사용 후 남은 송목 47주와 다른 건에서 1,022냥을 착복한 사건이다.⁸¹⁾ 이 경우는 수사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비장과 영속들에게 급료로 체급(帖給, 관아에서 지급함)했다는 공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으로는 범죄이고 공적으로는 수영의 재정 충당이었으니 사법적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온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건화가 되어도 수

80) 『승정원일기』 고종 11(1874).11.6. “충청우도 암행어사 박용대의 별단에 대한 의정부의 제.”

81) 『국역비변사등록』 191책, 순조 즉위(1800).8.16. 本道の 수사 李顯宅이 부임한 뒤로 松政을(…)

영의 재정 충당이라는 업무 수행상 관행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탈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영의 非違는 수사의 개인 품성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았다.⁸²⁾

셋째는, 충청수영에서 안면도 주민들에게 부과하여 걷어 들인 현물 수입에 대하여 살펴본다. 『충청수영사례』에서 언급된 세목 중에서 소모 잡품과 六物의 質納⁸³⁾ 및 賦役은, 안면도민에게서 捧納(물품을 납부 받음)받는 것이므로 송정에 의한 충청수영의 세입에 해당된다. 이 징수 내역을 <표 5>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표 5> 안면도에 부과된 충청수영의 징수 물목

해당부서	징수품	징수 내역	대상
①본영	瓢子	瓢子 230개 質納(價4兩) 逐年應下 ⁸⁴⁾	안면 山直
	生麻	生麻 235근 質納(價14兩) 間年應下 ⁸⁵⁾	안면 산직
②예고	蛤醢	價米 2두5되 質納	안면 100호
③공고	生麻	生麻 200근(每100斤價米5斗) 官廳出給 ⁸⁶⁾	안면 산직
④영선고	火木	858단 및 숯[炭] 15석 ⁸⁷⁾	안면도 5개리
⑤육물고	海草	400級 無價年例納	안면 5도산직
	生麻	302斤(價木22疋)중 약96근 7疋出給	안면 산직
	瓢子	瓢子92개(價木9필)중 약20개 2필出給, 9月捧	안면 산직
	賦役	6-7月 捧上 造漕	안면 토병

자료) 『忠清水營事例』

82) 노성룡, “조선후기 산림과 松政”, 『역사랑』13(2021)/ koreahistory.org. 2021(1).

83) 質納: 조선은 필요 물품을 백성들로 부터 무상으로 납부 받았다. 그러나 생산, 운 반, 납기일 등의 문제로 돈으로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를 선정하여 그 물품을 구매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납부 기관은 현물 대신 값으로 거두어 민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상납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質納이라고 한다.

84)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逐年應下조 18兩 230介內 4兩出給安眠山直質納 每兩 23介合92介 14兩使令路資 / 間年應下조: 44兩 生麻740斤價內 24兩3秩每兩16斤 13兩1錢 14兩安眠山直 6兩元山屯長

85) 『충청수영사례』, 위의 책. 蛤醢1石… 米2斗5刀安眠100戶質納

표에서, 영선고는 매월 땔나무[火木]를 안면도의 의점리에서 58단, 고장리 93단, 중장리 173단, 승언리 230단, 창기리 304단 등 5개 리에서 도합 858단의 장작과 숯[炭] 15石을 징수하였다.⁸⁸⁾ 이러한 화목 마련은 대부분의 산이 송전인 안면도에서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장작이 없으면 柴草(땔나무로 쓰는 마른 풀)로 대체하기 위해서, 大木 1把는 장작으로는 80단이며, 시초로 대체하면 58속(1속은 4단)에 해당된다는 환산식까지 있었다.

육물고에서는 안면도의 산직과 토병으로부터 육물의 일부를 징수하였는데, 도산직 5명에게는 밧줄 재료용 海草 400級⁸⁹⁾을 무상으로 例納(전례에 따라 납부)을 받으며, 산직들에게는 生麻 96근(價7필)⁹⁰⁾과 瓢子(바가지) 20개(價2필)을 부과하였고, 안면도에 편성되어 있는 토병들에게는 6-7月 중에 밧줄 꼬는 賦役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재정획득 유형은 ①본영과 ②예고는 3건이 質納(각주 84 참조)이고, ③공고는 出給(물건을 내어 줌) 1건, ④영선고는 無償(대가나 보상이 없음) 1건, ⑤육물고는 無償 1건과 出給 2건에 賦役 1건 등 도합 9건이다. 여기서 무상 2건과 부역(밧줄을 만드는 노역) 1건을 제외하면 質納 3건과 出給 3건이 된다. 이러한 징수에는 市價에 부합되는 가격을 지급했는지, 물품을 수

86)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生麻300斤200斤安眠山直/100斤元山屯長每100斤價米5斗式正月自官廳出給

87) 『충청수영사례』, 火木每朔15把炭15石安眠5里輪納/ 安眠衣店1朔80丹內減22丹存58丹, 古場1朔136丹內減43丹存93丹, 中場1朔240丹內減67丹存173丹, 承彦1朔320丹內減90丹存230丹, 倉基1朔424丹內減120丹存304

88) 『충청수영사례』, 火木每朔15把炭15石安眠5里輪納/ 安眠衣店1朔80丹內減22丹存58丹, 古場1朔136丹內減43丹存93丹, 中場1朔240丹內減67丹存173丹, 承彦1朔320丹內減90丹存230丹, 倉基1朔424丹內減120丹存304

89) 『충청수영사례』, 위의 책. 海草400級安眠5都山直無價年例納/安眠土兵6-7月捧上造漚/瓢子92介價木9疋內7疋代出給使令2疋代出給安眠山直

90) 『충청수영사례』, 위의 책. 生麻302斤11兩8錢價木22疋間3年會下內12疋鎖撫通引使令7疋安眠山直3疋

매하였을 때 봉납하는 데에 수반되는 노동력 보상이 되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山直들에게 준 復戶의 혜택이 19세기 중반기 즈음에는 아예 무시된 채 조세와 잡역이 부과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넷째는, 풍해가 심할 때는 製鹽 수입을 획득할 수 있었다.

안면도 송정은 1792년(정조 16)에 풍해를 극심하게 입었다.⁹¹⁾ 이때의 풍락송은 재목으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품이어서 소금을 굽는 화목으로 쓰기로 결정하였다. 수영에서 소금가마[鹽盆]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주민들을 염부로 고용하여 생계를 도우면서, 소금을 구워 수익을 획득하는 방안이 있었다. 당시에 煮鹽法(前熬製鹽法)은 막대한 땀값이 소요되면서 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⁹²⁾

요컨대, 충청수영은 안면도의 송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수영의 재정을 보충하는 재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다. 첫째는 犯伐者에게서 받는 松贖이었으며, 둘째는 송목의 密賣錢을 재정에 보태는 것이며, 셋째는 육물 및 노역의 획득이었고, 넷째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풍락송을 화목으로 자염을 만들어 수입금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었다.

다. 송정 관련 문제점들

수영의 송정 집행은 송금을 주목적으로 禁壓的인 군사 행정으로 일관되었다. 것처럼 강력한 송정에도 불구하고 18세기부터

91) 『정조실록』정조 16(1792).12.26. “비국 당상 서유린이…청하니 허락하다.”

92) 전오제염법은 1정보의 염전에 70정보의 솔밭이 필요했다. 1일 생산량은 鹽盆 하나에 한 가마 정도였고, 鹽盆당 5명 이상이나 필요했다. 연료비와 인건비가 총비용의 2/3 이상이었고, 소금 1가마 가격은 쌀값의 1/2 정도가 되는 高價였다. 시칠리아의 Saline di Trapani 염전은 BC. 8세기에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천일염전인데, 조선에는 천일제염법이 1907년에야 도입되었다.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쓸 만한 목재가 품귀해지자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였다. 1789년(정조 13)에는 “木物 값이 상승하여 조운선의 改槳과 新造 비용이 元定價로는 태반이 부족하다(비변사등록, 175권)”고 하였다. 이처럼 목재 가격이 급등하자 棺 가격이 1675년에 租 5~10石이었으나 1825년에는 米 15~30석 정도로 올랐다.⁹³⁾정약전은 “백성들이 관을 구하기 어려워 草葬을 치러야 할 지경”⁹⁴⁾이라고 하였다. 棺價가 米 15-30石(作錢價, 米1石=5냥)이라면 대략 100냥이 넘는 액수로 논 1斗落 가격을 능가하는 고가인 것이다.

이처럼 고가품이 된 소나무는 탐관들에게 축재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영의 관속들이나 인근 백성들은 엄벌에도 불구하고 안면도 송전의 낙락장송들을 마구 도벌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송정의 파행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실록에는 안면도의 송정에 관련된 많은 유형의 사건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편이다. 그 중에서 안면도 송정의 파행적 실태가 잘 드러나는 탐관의 부정 사례 중에 하나이다.

안면도는 封山인데도 도끼와 자귀가 날마다 드나들어 도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다가 함부로 일구는 폐단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아름드리 목재가 이미 남김없이 다 베어지고 播植하는 규정도 방치되어 거행되지 않으니, 당초 이를 거듭 금하지 않은 帥臣과 수령은 의당 죄가 있거니와 도벌한 사람이나 개간한 사람 또한 당률이 있으니 반드시 염탐하고 검찰하여 준엄하게 勘斷해야 한다.⁹⁵⁾

김정희는 암행어사로서 안면도의 송정실태를 수차례에 걸쳐 탐색해본 결과, 禁松만이 민둥산이 된 송전을 예전과 같은 울

93) 이우연, “18·19세기 山林荒廢化와 農業生産性”, 『경제사학』34(2003).

94) 정약전, 앞의 책 : “오늘날 극에 달한 폐단은 환곡과 송정이다”

95) 『정조실록』권16, 정조 7(1783).10.29.

창한 소나무 숲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원론적 판단을 하였다.⁹⁶⁾ 본래 島松은 군선 건조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관청을 보수할 때 도송을 請得하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었고, 수사는 관청 보수를 핑계 삼아 안면송을 청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빼돌린 나무를 私賣하여 사육을 채우기도 하였다.⁹⁷⁾

송정에 관련 비리는 연이었고 전형적인 부정사례를 <표 6>에 요약하였는데 모두 수사가 직접 가담된 것으로 시사되는 바가 크다.

<표 6> 전형적인 수사(탐관)의 부정사례

탐관	기간	범죄 내역	하수인
①이현택	1799 -1800	船材를 줄여 남은 47주 중 10주와 퇴선 밀매- 550냥, 선재 12주와 퇴판 등 밀매- 380냥, 선재 4주 밀매- 92냥 등 착복	비장·영속 帖給
②윤희중	1822 -1824	戰船을 건조하거나 개삭할 때마다 남발·사매하여 착복. 군선 4척 개삭에 선재를 4주 만 사용-- 군선의 성능저하	비장·船將· 이속 결탁
③조석태	1824 -1826	송목 44주 남벌, 풍낙송 642주 은닉, 황학루 개건 송목 20주-밀매 400냥 착복, 귀선 개삭용 송목 17주 240냥 착복	비장·船將· 이속 주도

자료) ① : 국역비변사등록 191책, 1800(순조 즉).8.16.

②, ③ : 「忠淸右道暗行御史金正喜進書啓別單」

또, 원산도의 別將에 불과한 궤문영이 술수를 부려 漕船 감독 자리를 얻은 다음에 안면도에 들어가서 “송금을 핑계로 饒民(살림이 풍족한 백성) 李良文에게서 200냥을 토색하고 도송 12주를 도벌했으며, 벼 40석과 錢 1,300냥의 세금을 착복”⁹⁸⁾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관속들의 침착은 수영의 강압에 억눌려 주눅이

96) 『순조실록』 순조 26(1826).6.25. “「忠淸右道暗行御史金正喜進書啓別單」”

97) 김명숙, “암행어사 김정희가 본 19세기 충청우도의 사회상”, 『한국사상과문화』37 (2007).

98) 『고종실록』고종 11(1874).11.8. “충청우도 암행어사 박용대의 서계에 대해 회계하는 병조 계목.”

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연되었다. 조선의 3禁은 소나무·소·술에 대한 정책인데, 송금이 가장 중요하여 암행어사에게는 송금수칙인 『諸道御使事目』⁹⁹⁾을 지참시켰다. 그래도 충청수영 관속들은 남벌과 침탈을 자행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아뢴 ‘암행어사 李建昌의 별단’을 보자.

安眠島의 封山은 근래 公用을 빙자하여 멋대로 나무를 베어내고 있으니 놀랍습니다. 水營의 영속들이 벌목을 금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贖錢을 거두기도 하고 붙잡아 들이기도 하므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섬은 본래 水營이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고 4리는 瑞山에 속해 있고 1리는 泰安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섬의 송전에 관한 일은 두 고을에 맡겨 그들로 하여금 나무를 심고 남벌을 금하도록 하며, 수영에서는 봄과 가을 한 차례씩 摘奸하는 외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게 하고, (...) 이 섬이 날로 헐벗는 것은 몰래 베어내고 濫伐하는 데서 연유합니다. 그런데 수영의 영속들이 이를 빙자하여 침탈하니, 이것은 바로 부근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함정입니다.¹⁰⁰⁾

충청수영의 松政때문에 산림은 오히려 남벌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진다면, 원래대로 서산군과 태안군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수영의 송정이 불신 받는 이유는 강압과 수탈에 대한 반발심으로 볼 수 있다. 『오천군지』는 충청수영의 最惡慣行 2개 중에 하나가 “범죄인 및 잡기자에게 松贖이라고 하여 돈을 내도록 엄히 가두고 장을 치고 뇌물을 받고서 풀어주는 일”¹⁰¹⁾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미

99) 『諸道御使事目』(『정조실록』정조 7년10월28일)은 암행어사에게 지급되는 염문규찰의 직무수행 사항이 8도별로 게재된 규정집으로, 비변사에서 올린 것이다.

100) 『승정원일기』고종 15(1878).7.19.

101) 一. 犯罪人及雜技者에게 稱以松贖披贖하고 捉囚嚴杖에 受賂放釋事, 一. 有財産無權力者에게 不孝不悌姦淫等罪名言動加捉囚하고 受賂放釋事.

정약용이 “松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송정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안면도는 조수 간만차가 크고 갯벌이 넓은데다가 해안가에 鹽木 구입이 용이하므로 무허가 鹽盆이 수시로 생겼다. 煮鹽 생산은 많은 화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림보호차원에서 송전 인근에는 금지된 업종이었다.¹⁰²⁾ 또 안면도에는 閒雜人¹⁰³⁾의 이주가 산림에 폐해를 주었고, 불법 개간과 경작도 단속과 치죄가 반복되었다. 게다가 안면도에는 숙종대(1684)부터 ‘봉산에 埋葬 금지’하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안면도는 모든 산이 봉산이다시피하므로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는 참담한 상황은 심각하였다.

산지기 등은 대대로 섬에서 살고 있는데 埋葬을 금한 뒤로는 시체를 묻을 곳이 없는 탓에 시신을 육지로 나올 때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거나 침몰하는 일이 종종 생겨 애통함이 골수에 사무치는 일입니다. 변통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되니, 앞으로 섬사람이 사망할 경우 수영에서 군관을 보내어 집 뒤 수목이 없는 곳에 표식을 하고 매장하게 한 뒤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여 상세히 문서에 기록함으로써 뒷날 적간할 때에 이를 가지고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병신년에 암매장되었던 분묘도 다 파내었으며 그 후로 매장한 곳은 없습니다. 禁山에 암매장하는 폐단은 참으로 금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산기슭에 假殯해둔 것이 해야될 수가 없으며 (...) 古峙로부터 바닷가에 이르는 수십 리의 땅엔 소나무는 벌거벗고 분묘만 뽁뽁하여 소나무 기르기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10여 리의 경계를 정하고 매장을 허락한다면 술밭에 암매장하는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¹⁰⁴⁾

102) 『국역비변사등록』 72책, 숙종 45년(1719) 1월 17일. “金滄 및 李穰이 조사한 安眠島의 문제(...)”

103) 閑人과 雜人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商人으로 보인다.

104) 『승정원일기』 영조 2(1726).2.8. “낭청 崔命柱가 안면도를 적간한 결과 보고.”

이처럼 島民이 사망하면 수영에서 군관을 보내서 置標(假葬)하고 일일이 본사에 보고하고, 문서로써 후일 摘奸할 때에 이것을 검토[憑考]하도록¹⁰⁵⁾ 했으나, 도민들은 가족이 죽어도 무덤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고초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민들은 송정 집행의 추세와 강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문제는 도민들의 勞役과 軍役이 되겠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활 실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 첫째는 물품 봉납과 노역 동원의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군선 건조 비용 중 六物價는 숙종 30년(1704) 『양남수군변통절목』에서 규정되었다. 六物은 수군이 역가의 일부를 면제받고 대신 진에 내던 것인데, 진에서 물품가를 역가로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었다. 이 절목에서는 육물가 이외에도 材木曳下軍과 木材匠人의 給代비용, 군선에 사용되는 돛 등과 기타 비용도 수군 역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진의 군선 개조비용은 진 자체에서 조달하여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 이전에 통제영에서는 군선을 개조하기 위해 영에 거주하는 백성을 동원했다. … 통제사 金滄은 병고에서 1,000냥을 가져와 조 1,000석을 사서 이를 盡分取耗해서 그 모곡을 원곡에 합산했다가 배를 만들 때 목재의 曳運役價로 사용하게 했다.¹⁰⁶⁾

이처럼 통제영에서는 보역창을 세워 曳運役을 면제하였는데, 충청수영은 그런 사례가 없다. 伐採는 운반뿐만 아니라 造材와 集材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노역이 부과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때 役價를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문제가 되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잡역으로 안면도민들의 생활상은 고단

105) 『국역비변사등록』79책, 영조 2(1726).2.8. “山直이 죽으면 水營에서 軍官을 보내 置標·虛葬”

106) 송기중, “조선후기 통제영의 군선 건조와 양송처 관리”, 『영남학』78호(2021): 205-238.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안면도에는 격군이 265명으로 충청수영 전체 格軍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¹⁰⁷⁾ 인구 비례나 지역적 안배 및 거리기준을 고려치 않은 격군의 편성이 주목된다.¹⁰⁸⁾ 일반적으로 격군은 ‘鎭에서 5리 이내 주민[鎭下居民 五里以內]’으로서 ‘일회 호출에 승선[一乎而乘船]’이라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海路 15리에서 60리나 떨어진 안면도 주민들을 차출하였을까?

격군은 軍役중에서도 가장 고역이며 천역에 속하였다. 안면도의 병역의무자 대부분이 格軍¹⁰⁹⁾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는 충청수영이 안면도의 송정을 관할하면서 행정적 주도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격군 차출이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면도 주민들은 수영의 각종 負役에 수시로 동원되었을 개연성이 큰데 이 또한 주민의 생활에서 큰 고역 중에 하나였다. 통제영의 경우에는 “군선을 개조와 건조할 때는 土卒이나 格軍을 모았고 급료는 자체적으로 마련했다”¹¹⁰⁾는 기록에서 부역자를 위한 유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충청수영의 경우에는 주민을 유급으로 부역했는지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차후 과제로 남긴다.

107) 『충청수영사례』, 앞의 책. “能櫓448名內75名營內21名金神22名用川65名元山104名漕箭68名中場47名承彦46名倉基”

108) 김명래, 앞의 논문.

109) 『여지도서』에서 집계된 안면도 인구는 478호에 남자 808명, 여자 758명이다. 이 집계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연령 불문하고 格軍 비율이 1/3이나 되고, 이중에 장정(16-60세)이 1/2 정도로 추정된다.

110) 송기중, 앞의 책, 461쪽.

5. 결론

본고는 조선후기 충청수영의 안면도에 대한 松政 전반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충청수영은 1669년(현종 10)부터 안면도의 송전의 松政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송정이란 松禁과 동의어로 소나무 벌채를 금지하고 국가에 필요한 松材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안면도는 고려부터 천혜의 소나무 생산지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았고 조선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안면도 소나무는 安眠松이나 島松이라고 호칭될 정도로 유명하였고, 충청·경기 수영의 군선용 목재와 관용목재를 연간 2천여 주를 조달한 실적이 있다. 안면 송전은 宜松山 71처로 구성되었고, 감관과 보군의 감독을 받아 山直 73명과 植松 2명이 주재했으며 충청수영의 兵船掌에서 담당하였다.

둘째, 안면도에서 충청수영의 松政은 水營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되었다. 松贖이 수영의 재정으로 충당되었고, 빼돌린 송목을 사매하여 재정을 보충하였다. 그 방법은 송목의 주수를 부풀려 허가받거나, 허가받은 주수에서 일부를 빼돌리거나, 수요처에 除給하여 남기거나 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탐관들이 전액을 사취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營屬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수사와 관속들이 한통속이 되어 犯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했으나, 근절시키지 못하고 育林을 등한시 한 결과 안면도 송전은 황폐화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충청수영은 軍船을 비롯한 각종 관선의 烙給 수량을 규정하고 있었다. 안면송을 조달하는 烙給 절차는 단 한그루의 고사목이나 風落松일지라도 備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철저하였다. 烙印 사용은 斫伐 날짜를 營門에서 미리 알리고 烙印을 지참시켜 군관과 소관 관리를 보내어 입회하에 작별하게 하며 定數대로 烙印하여 중간에서 남벌하는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넷째, 전체면적의 80%가 송전인 안면도민들의 생활은 충청수영의 松政에 밀접하게 종속되었고, 사실상 軍政體制에서 여러 가지 침해를 받게 되는 형편이었다. 松政의 집행 강도에 따라 안면도 주민들의 생활은 제약될 수밖에 없으니, 고충이 컸다고 보여 진다. 게다가 산림 벌채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주민들이 부역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크고, 동원된 주민에게 정당한 노임을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인구 비례로 볼 때 안면도는 과도하게 많은 격군이 편성된 곳이었다. 이처럼 고역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상은 安眠島라는 이름처럼 安眠할 수 있기에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안면도 송전은 섬 전체면적 87.4km²의 80%인 70km²나 되었다. 이만하면 소나무 2백만 주를 넉넉히 育林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 소나무를 100년 정도 기른 후 부터 매년 1%씩 벌채를 하고 또, 그만큼씩 식재를 한다면, 연간 2만 주를 벌채할 수 있게 된다. 100년생 이상 된 대송을 연간 2만 주씩 생산된다면, 충청·경기·궁궐의 재목까지 조달하고도 남아돌아 비축까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충청수영에서는 연간 2천 주를 조달하기에도 벅차했었고 19세기 말에는 그나마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안면도의 송정을 파악하고 송전의 생산량을 계량적

으로 비판해 보면서, 산림정책은 강력한 법에 의한 금압보다 주민들과 공생을 도모하는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명해 보았다. 앞으로 안면도에 관한 송정 자료가 더 발굴되어 안면도의 송정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忠清水營事例』

『鰲川郡誌』

2. 단행본

배재수, 『朝鮮後期 山林 政策史』, 임업연구원, 2002.

송기중, 『조선후기 수군 연구』, 역사와 비평사, 2019.

하야시 쇼우조우(林省三), 『安眠島』,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3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 논문

김명래, “19세기 전반 충청水營의 수군編制와 운영事例”, 『사학연구』137, 2020.

_____, “오천군지의 편찬과 충청수영의 舊慣”, 『한국문화』98, 2022.

김명숙, “암행어사 김정희가 본 19세기 전반기 충청우도의 사회상”, 『한국사상과 문화』37, 2007.

김백운, “안면도의 면적 변화와 연안침식지역 해안선의 속성 분포”, 『한국해양공학회논문집』22-3, 2010.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77-78, 1993.

노성룡·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전개과정과 특징”, 『아세아연구』 63-3, 2020.

박 범, “충청수영계록을 통해 본 19세기 충청수사의 지방행정”, 『충청 학과 충청문화』29, 2020.

배재수, “조선후기 封山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4-1, 1995.

_____, “朝鮮後期 松政의 體系와 變遷 過程”, 『산림경제연구』 10-2, 2002.

배재수·김은숙, “1910년 한반도 산림의 이해”, 『한국산림과학지』 108(3), 2019.

- 송기중, “조선후기 통제영의 군선 건조와 양송처 관리”, 『영남학』 78, 2021.
- 이기봉, “조선후기 封山の 등장 배경과 그 분포”, 『문화역사지리』 14-3, 2002.
- 이상균, “근대화 전후 도서지역 주민생활권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20-1, 2008.
- 이우연, “18·19세기 山林荒廢化와 農業生産性”, 『경제사학』34, 2003.
- 이옥 외 2인, “조선후기 封山制 성립에 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5-1, 1997.
- 정약전, 안대희 역, “松政私議”, 『소나무 정책론 외』, 주)민음사, 2014.
- 鄭良謨, “安眠島の 成島年代 小攷”, 『史學論叢』38, 一潮閣, 1970, 국립중앙도서관소장.

4. web site

- (web) 한국사 DB/ 金鉉丘, “조선후기 造船業과 造船術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81집, 1998, 211-258쪽.
- (web zine): 노성룡, “조선후기 산림과 松政”, 『역사랑』 v.13, 2021/koreahistory.org. 2021(1).
- (web) 한국고전종합DB/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經國大典』; 『續大典』; 『輿地圖書』上20집; 『國譯備邊司謄錄』79책; 『高宗時代史』21; 『牧民心書』工典; 『礪溪隱錄』卷二十七 兵制.
- (web)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B/ 『謫道松禁事目』 奎957; 『船案』 奎17036; 『公忠水營都重記』 1868, 奎16896; 『忠清水營關牒』奎 15122; 『忠清水營所管松田成冊』 奎16379; 『忠清水營所管安眠島甲申條風落松用遺在區別成冊』 奎17030; 『忠清水營卜定關內差備役處所用材木烙印株數各項雇價及裝運監色沙格裝載軍糧米磨鍊成冊』奎17032; 「1872년 지방지도」 태안, 서산.
- (web) 국립중앙도서관/『조선지리지』 1911, 조선총독부.
- (web) 태안군; <https://www.taean.go.kr/> 『태안군지』1997; 『태안군지』 201

〈Abstract〉

The Policy for Pine Trees (松政) of Chungcheong Suyeongseong Fortre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Anmyeondo Island —

Kim, Myung-Rae

By the late Joseon Dynasty, Chungcheon Suyeong Fortress had jurisdiction over the policy for pine trees (松政) on Anmyeondo Island. The policy for pine trees was a forest policy for procuring pine trees for timber (船材), construction materials (建築用材), and inner and outer coffins (棺槨用). The pine trees from Anmyeondo Island were renowned, as they became known by the common nouns ‘島松’ (Pine Trees in the Island) or ‘安眠松’ (Pine trees in Anmyeon Island) and had been protected, being used as timber and construction materials of the royal court even in the Goryeo Dynasty. 71 places were designated as Bongsan (封山) in Anmyeondo Island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se were collectively called ‘the pine forest in Anmyeondo Island (松田),’ which accounted for 80% of the area of the island. Chungcheon Suyeong Fortress took full charge of the management of pine trees in the island beginning in 1669 (10th year of the reign of Hyeonjong of Joseon). As the military organization called Chungcheon Suyeong Fortress operated the forest, there was efficiency and consistency in its management. Yet, as it ignored residents' living convenience by focusing on an oppressive ban on pine trees (松禁) like military operations, it caused resistance from the people and became divorced from their needs.

As Chungcheon Suyeong Fortress implemented the policy related to pine trees in Anmyeondo Island for more than 220 years, it supplied construction materials for Gyeonggisuyeong Fortress and the palace as well as the timber required for it, as well as some timber for shipbuilding (漕船) and armed ships (軍船) in Jeolla-do. However, as it ignored the need to plant and grow trees, the essence of the management of pine trees, by the 19th century, Suyeong government officials' greed and tyranny deepened. Devastation of the pine forest worsened, but the governmental forest policy kept the ban on pine trees (松禁) from being improved.

Chungcheon Suyeong Fortress' policy on pine trees was a special case which was implemented on an island called Anmyeondo Island. The need for research was raised as the subject suitable for examining the real condition of the policy for pine trees. Accordingly, we examined the procurement of pine trees in Anmyeon Island, the acquisition of finances, and the problems through Chungcheon Suyeong Fortress' policy for pine trees implemented in Anmyeondo Island.

Keywords: Chungcheon Suyeong Fortress (忠清水營), Anmyeondo Island (安眠島), The policy for pine trees (松政), Pine forest (松田), Pine trees in Anmyeon Island (安眠松).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113-144
<https://doi.org/10.29212/mh.2024..130.11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896년 을미홍주의병 선봉장 정인희와 정산 전투

조준희 | 국학인물연구소 소장

목 차

1. 서론
2. 정인희의 청양군수 부임과 홍주의병 가담
3. 정인희 부대의 공주 진격 대 관군의 진압 작전
4. 결론

초 록 본고는 '정산 전투'로 알려진 1차 홍주의병 정인희 부대 대 관군의 진압 작전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연구다. 기존 학계에서 선봉장 정인희 그리고 관군 측 상황을 다룬 적이 없었고, 이에 문헌 고증과 필드워크를 시행했다.

1896년 1월 18일 청양군수 정인희는 선봉장이 되어 2천 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한 뒤 41km 거리의 공주부 공격을 감행했다. 휘하에 참모장 이세영 등 유림들이 보좌했고, 금정역참 역민들이 부대의 주축이었다. 그러나 인원 대비 무기 부족, 험준한 지형, 약천후가 겹쳤던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그들은 18.6km 행군한 뒤 정산에서 3일간 지체했다. 그 사이 공주부 관군 100명 중 구완희 소대 50명은 정산과 공주의 경계에 있는 공수원에 매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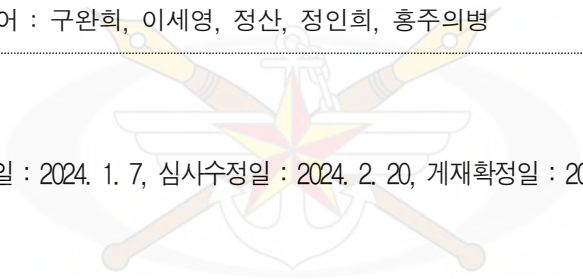
했고, 백낙완 소대 50명은 후방을 사수했다. 1월 21일 저녁 출정을 재개한 부대 선발대는 공수원에 이르러 관군의 ‘양동 작전’에 기습당했고, 후발대가 도주하면서 결국 패했다. 소규모 관군이 화력뿐만 아니라 전술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점이 부대의 정산 전투 패전 요인으로 주목되었다. 학계에서 정산 전투 접전 지역이 철마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정산군 공수원(지금의 청양군 목면 송암리)임을 확정하였다.

정인희는 패전과 동시에 군수에서 파직된 뒤 끝내 충남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정인희 휘하 이세영 등은 홍주의병 참전 실패 경험을 통해 1906년 2차 홍주의병 봉기를 다시 일으켰다.

한말 전기 의병 대 관군의 전술 비교 분석 사례가 군사와 역사학계, 지역사 연구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구완희, 이세영, 정산, 정인희, 홍주의병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서론

군사(軍史) 분야에서는 국군의 정통성을 한국광복군에 두고 대한제국군(1897)까지 확장하여 뿌리를 찾으려는 성과를 계속 축적하고 있다.

더 앞선 시기의 의병은 군사적 관점에서 조직, 전술, 무기, 훈련, 보급 모든 면에서 열세였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개인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점차 체계적인 독립군으로 발전해 갔으며, 대한제국군으로서 의병에 가담한 이도 적지 않았다. 1984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병의 역사를 집대성한 『의병항쟁사』¹⁾를 편찬했다. 『의병항쟁사』, 「을미의병의 항쟁」 편에 1차 홍주의병의 공주 공격 루트 지도가 ‘홍주의병의 활동 경로’라는 삽화로 실려 있어서 주목된다.

〈그림 1〉 「홍주의병의 활동 경로」



* 출처 : 『의병항쟁사』(1984)

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의병항쟁사』, 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당시 지도부는 홍주성에서 전원 체포되었기 때문에, 위 경로는 선봉장 정인희(鄭寅羲, 1849~1917) 부대의 공주부 진격만을 지칭한다. 역사학계에서는 정산군(지금의 청양군 정산면)에서 관군과 접전이 벌어져 ‘정산 전투’로 표현하고 있다.²⁾

을미항주의병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도부 김복한, 이설을 비롯해 안창식-안병찬 부자, 임한주 등 인물별 성과물이 축적되었다. 그렇지만 유독 정인희는 부수적으로 언급될 뿐³⁾ 심도 있게 조명된 적이 없었다. 현재는 휘하 의병들의 공적이 더 부각되고 서훈 추서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⁴⁾

정인희 부대의 행보와 정산 전투 전말은 김상기에 의해 처음 밝혀졌고,⁵⁾ 부대 참여 계층은 유생(혈연·지연·학연에 의한) 외에 보부상, 관찰사 이승우의 동학군 진압 동참 정도가 파악되었으나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정인희 개인 그리고 관군·일본 측 상황은 다뤄진 적이 없다.

그간 학계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안창식의 「간호일기(艮湖日記)」

2)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윤병석교수화갑기념한국 근대사논총』, 서울: 지식산업사, 1990, 189쪽.

3) 전병철, 「韓末洪州義兵의 性格」, 『한성사학』 2, 한성사학회, 1984.

정성중, 『韓末 洪州義兵에 관한 研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7.

최근목, 「洪州義兵에 관한 一考: 參與階層을 중심으로」, 『새마음』 8, 충남대 새마을 연구소, 1988.

이상찬, 「乙未義兵 지도부의 1894년 反東學軍 활동」, 『규장각』 1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5.

오영섭, 「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국사관논총』 65, 국사편찬위원회, 1995.

이은숙, 『1905~10년 洪州 義兵運動의 研究』,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박민영, 「한말 牙山 지역의 의병투쟁」, 『송실사학』 35, 송실사학회, 2015.

조준희, 「단재 정호모의 생애와 사상」, 『대종교연구』 1, 한국신교연구소, 2019.

이성우, 「古狂 李世永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담론』 103, 호서사학회, 2022.

4) 이창서(1841~1911), 이봉학(1858~1924), 이병승(1857~1924)은 이 ‘공주 공격 담당’ 행적으로 각기 서훈(2004, 2008, 2021 건국포장)을 추서 받았다.

5) 김상기, 앞의 논문, 207~208쪽.; 국방군사연구소 편, 『韓民族戰爭通史』 IV,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240쪽.

외에 『매천야록』, 『대한계년사』, 이소응의 「척화거의사실대략(斥和擧義事實大略)」은 간접 기록이다. 정인희 부대에 직접 참전했거나 현장을 목격했던 이들이 남긴 자료로 참모장 이세영의 「고광연보(古狂年譜)」, 관군 백낙완의 「남정록」, 홍주부 사판 손승용의 보고서, 주일공사관 순사 니시무라 게이조(西村銈象)의 첩보가 있으며 이 기록들이 1차 사료로서 중요하다. 고광 이세영(李世永, 1870~1941)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2대손으로 홍주의병에서 출발해 망명 후 신흥무관학교 교장 등을 지냈는데 그가 남긴 「고광연보」는 회고록 성격상 자신의 공을 부각시킨 면이 없지 않으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병 부대 내부 상황이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한편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에는 홍주 등지 국내 의병 봉기 현황이 연재되었는데 연관 기사들은 1895년부터 11년간 아사히신문 경성특파원으로 파견되었던 기자 니시카와 쓰우데쓰(西河通徹, 1856~1929)가 일본에 보냈던 생생한 정보로 국내 기록이 없는 조선 정부 친위대 상황이 실려 있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 의병 진압 상황이 담긴 관군 회고록, 관찬 기록, 일본 첩보 및 신문 기사는 활용되지 못했다.

을미의병의 효시는 문석봉의 유성의병인데, 1895년 12월 14일 공주부에서 진압 작전에 투입한 지휘관이 구완희와 백낙완이었고,⁶⁾ 백낙완의 회고에 전투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이들이 정인희 부대 진압에 다시 투입되었기 때문에 「남정록」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홍성-청양-공주 사이 공간에서 정산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100명에 불과했던 소규모 관군이

6) 김상기, “朝鮮末 文錫鳳의 儒城義兵”, 『역사학보』 134:135(1992):98,
<http://uci.or.kr//G901:A-0000908408@N2M>.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는지, 20배가 넘었던 대규모 부대의 패전 요인 등 양측 상황을 동등하게 살펴보는 것도 군사학적 의미가 있으리라고 사료되었다. 청양은 칠갑산(해발 561m) 중심의 분지형 지역이기 때문에 평면 지도만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논자는 조선과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제작한 고지도를 분석하고서 위 「홍주의병의 활동 경로」 즉 정인희 부대의 홍성-청양-정산-공주 진격 루트를 세 차례 현지 답사했다. 접전지가 철마정인지, 공수원인지 기록마다 달라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정인희 휘하 이세영 등은 참전 실패 경험을 통해 전국 규모 항일 의병의 도화선이 된 1906년 병오홍주의병 봉기를 다시 일으켰다. 소위 3일 천하로 끝나 2차 홍주의병에 비해 저평가되었으나, 충청남도 지역에서 유성의병의 실패에도 멈추지 않고 조정의 면직 압박과 친위대 출병, 공주부 파견 관군 진압의 삼중고 속에서 공주부 공격을 다시 감행했던 족적에 대해서는 재조명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을미홍주의병 정인희 부대가 1896년 1월 21일 치렀던 정산 전투에 대해 기존 성과에서 미진했던 점을 규명해 의의를 찾고 학계와 지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인희의 청양군수 부임과 홍주의병 가담

가. 청양군수 정인희의 홍주의병 가담

정인희는 1849년 1월 17일 서울에서 정영조(鄭永朝, 1809~1860)와 풍양 조씨(1810~1855) 사이에서 3남 3녀 중 막내아들

로 태어났다. 자는 경빈(敬賓, 景賓), 호는 우당(隅堂), 본관은 동래(東萊)다.⁷⁾

정인희의 학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가계도를 살펴보면, 1851년경 병조참의를 지낸 정익조(鄭翊朝, 1813~1864)에게 출계했고 경화세족 관암 홍경모가 양 외조부, 최익현의 「계유상소(癸酉上疏)」(1873)에 대해 “유배형으로 그칠 수 없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추담 조병휘(초명 조휘림)가 고모부로 확인된다.

동래 정씨 문익공파는 서인-소론계 명문가로, 조부 정기선(鄭基善, 1784~1839)은 경상도관찰사로서 왜인에 대한 강경책을 조정에 건의했던 공적이 있고, 도내 기민(飢民)을 해결하고 예조판서, 대사헌에 오른 인물이다. 정인희는 척왜·척양의 가풍⁸⁾ 속에서 가학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879년 5월 기묘 식년시 생원에 입격, 1894년 7월 14일부로 청양현감을 제수받은 뒤 8월 홍주목 관할 청양현청에 부임했다.⁹⁾ 부임 1개월 뒤 동학농민운동 전주·광주 꺾기가 발발하자 현청 북쪽의 우산성을 보수하고 군기(軍器)를 정비했다.

1894년 4월 13일 사헌부 대사간, 행 부호군 등을 지낸 이승우(李勝宇, 1841~1914)가 홍주목사를 제수받고서 10월 7일 충청도 서부 지역 동학군 토벌 담당인 호연초토사에 임명되었다. 11월 14일, 그는 초토사로서 남정(南征)을 결의하고 본영(本營)의 총

7) 정재덕 편, 『東萊鄭氏己未世譜(復元本)』 13, 東萊鄭氏大宗中, 2010, 55면.

8) 1866년 정인희가 만 17세 때 작은 매형 임흥상에게 보낸 문안 편지 「병인 십월 이십팔일 외인 님흥상 상서」(홍주성역사관 소장본)에는 “국운이 기운 때에 서양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보다더니 임금께서 큰 복력과 뛰어난 무용으로써 물리치시니 신민의 다행한 일(국운이 비썩흔을 썩을 당호와 낭적이 우리나라를 엿보다 흐더니 금상 홍복과 신무로 물리오니 신민의 다행흔은 일)”이라며 신미양요에 대한 우국 심경과 척양 사상이 담겨 있다.

9) 李在信, 『公清右道靑陽邑誌』, 光武10(1906), 21b. 1895.5.26. 칙령 제98조로 현은 군으로, 현감은 군수로 개칭되었다.

수(銃手)와 창수(槍手) 150명을 뽑고 여러 고을에 전령을 보내 동시에 거병해 남포(지금의 보령시 남포면)에 가서 지키게 했다. 이에 보령현감 이교철(李敎哲)·해미현감 이일(李鎰)·청양현감 정인희·소모관 이장규(李章珪) 등이 와서 함께 군무를 의논했는데,¹⁰⁾ 정인희 등 홍주부 관할 현감들은 이승우의 동학군 토벌을 도왔던 것이다. 12월, 동학군은 청양 인접 공주로 지나갔고 정인희는 조정으로부터 중등 평가를 받았다.¹¹⁾

정인희는 이듬해 개화파의 을미 변복령(3.29), 을미사변(8.20), 단발령 공포(11.15)에 항거한 홍주의병이 일어나자 적극 동참했다.¹²⁾ 그는 11월 26일(1896.陽1.10) 청양향교 전교 이봉학(李鳳學, 1858~1924)으로부터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서신을 받고서 다음날에 동참을 결정했다.¹³⁾ 11월 28일(陽1.12) 홍주향교 전교 안창식(安昌植, 1838~1899)은 정인희를 찾아가 격려했다.¹⁴⁾

11월 24일(陽1.8), 안창식은 단발령이 내려오자 이승우에게 창 의하자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¹⁵⁾ 이설과 김복한, 안병찬이 권해도 듣지 않았으며, 홍건이 권했을 때는 “인심의 향배를 보아 하겠다”라며 조건부로 답했다.¹⁶⁾ 이승우가 마지못해 창의대장을

10) 洪樾, 최원경 역, 『洪陽紀事』(1894.11.14),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정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8, 110쪽.

11) 『官報』, 1894.12.18, “청양현감 정인희는 큰 난이 겨우 지나갔고 조심하고 삼가서 나감. 평가 ‘중’(各道中下等, …青陽縣監 鄭寅義, 大亂纔過小心做去… 以上中)”

12) 安炳瓚, 「葵堂日記」(1895.11.27), 『홍주의병실록』, 홍성: 홍주의병유족회, 1986, 174쪽. 이승우의 비서였던 홍건과 유희장 안창식 등 이승우를 도와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던 이들이 홍주의병을 거의하자 정인희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정인희도 이승우에게 기만당한 셈이다.

13) 이구영, 『湖西義兵事跡』, 수서원, 1993, 164~165, 678쪽, “『李相麟 洪州府供辭, 李鳳學持金福漢書札, 往青陽倅(이봉학이 김복한의 서찰을 가지고 청양군수에게 갔다)”.

14) 安昌植, 「長湖日記」(1895.11.28), 『홍주의병실록』, 앞의 책, 164쪽.

15) 安炳瓚, 「葵堂日記」(1895.11.24), 위의 책, 173쪽.

수락한 날짜는 12월 2일(陽1.16)이다.¹⁷⁾

관찰사 이승우는 의병 참여를 승낙하고서 이봉학이 군령을 지참해 청양으로 가면 현감 정인희가 공주로 진격하고, 이세영에게 보부상을 이끌고 청양 의병을 도우라고 명령했다.¹⁸⁾

정인희는 12월 1일(陽1.15) 안병찬 등 홍주 유생들이 홍주성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튿날 이창서에게 수백 명의 군사를 팔려 보내 의병에 합류시켰다.¹⁹⁾ 12월 3일(陽1.17) 청양에 창의소를 차리고 홍주창의소에 포군 5백 명과 화포 1천정을 요청했다.²⁰⁾

나. 홍주부와 주일공사관의 정인희 첩보

그런데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가 배신해 성내에 있던 김복한과 이설 등 주모자가 체포되고 의병들이 강제 해산되었다. 12월 4일(陽1.18) 정인희는 군사를 일으켜 공주부로 진격했다.²¹⁾

12월 2일 홍주부를 장악한 홍주의병의 거의 방략(전략) 중 하나는 ‘공주부 선공(先攻)’이었다.²²⁾ 당시 공주부 관찰사는 이종원(李淙遠)이다. 첫째, 1895년 11월 15일 공포된 단발령이 단행되자 이종원은 스스로 삭발하고서 금강 나무를 가로막고 행인들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해 길에 왕래하는 사람이 끊겼고, 사방에서 의병이 봉기하게 했던 원흉이었다.²³⁾ 둘째, 공주부 감영은 이종

16) 林翰周, 「洪陽紀事」, 앞의 책, 132~134쪽.

17) 安炳瓚, 「葵堂日記」(1895.12.2), 위의 책, 175쪽.

18)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앞의 논문, 200쪽.

19) 林翰周, 「洪陽紀事」, 앞의 책, 136쪽.; 安炳瓚, 「葵堂日記」(1895.12.2), 앞의 책, 175쪽.

20) 林翰周, 「洪陽紀事」, 위의 책, 138쪽.

21) “청양군수 정인희가 발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聞, 靑倅鄭寅義, 發言之報)”(安昌植, 「艮湖日記」(1895.12.6), 앞의 책, 164, 166쪽).

22)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앞의 논문, 204쪽.

23) 황현,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476쪽.

원의 하소연²⁴⁾을 빌면 성곽이 없고 병사가 200명에 불과해 사방의 공격에 취약한 구조였다. 또한 무기가 준비되지 않아 조정에 여러 차례 전보를 보내 군대와 무기(총 3백정, 단총 50정 및 탄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²⁵⁾

이 공주부 공격의 선봉장을 군수 정인희가 맡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진격 명분(을미사변 및 단발령)은 조정 측 보고 및 일본 측 첩보에도 잘 나타난다.

우선 1896년 1월 19일(陰12.5)에 홍주부 사판 제1위원 손승용(孫承鏞, 1855~1928)이 농상공부 참서관 오세창에게 보낸 공문은 다음과 같다.

청양군수 정인희는 홍주부에 사변이 나는 것을 보고 또한 완고지심으로 단발령[斷髮之事]에 항거코자 하여 금정역검관인채 자처했다. 금정역에 거주하는 역교 최만광과 역리 박문익을 체결하였는지 금정역에 현존한 군기(軍器)를 본월 17일(1895.陰12.3-논자 주) 밤에 운반하여 소위 유희군(儒會軍)에게 분파시키고, 인근 여러 군의 대소 민인을 청양군수가 스스로 이끌고 정산 지역을 경유하여 공주 지역으로 나아가서 방금 소동이 시작되었다. 도처 물정(物情)이 대단하고 급작스러우며, 각처 요충지 입구[陬口]를 끊고 막아 군사(行旅)로 하여금 통섭치 않게 한다. -견양원년(1896) 1월 19일 홍주부 사판 제1위원 손승용²⁶⁾

24) “공주부 관찰사 이종원이 상소하기를, …(중략)…본부는 충청도와 경상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본래 성곽이 없고 병사도 200명에 불과한데, 사면이 적의 공격을 받아 달려가 구제하기에 지쳐 있습니다.”(선종순 역, 『승정원일기』, 고종 33(1896).2.20)

25) 김상기, 「金福漢의 洪州義兵과 파리長書 運動」, 『대동문화연구』 39(2001):340, <http://uci.or.kr//G901:A-0001653029@N2M>.

26) 『各司謄錄』, 「驛土所關查員實報存」 照會 第四號(1896.1.19).

다음, 1896년 1월 20일(陰12.6) 일본 측에서는 주한일본공사 관 영사 우치다 사다쓰지(內田定槌)가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판리공사에게 공주와 홍주에 순사 파견을 위해 호조(護照, 여행권)와 관문(關文, 공문)을 요청했고, 판리공사는 본 안건을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전했다.²⁷⁾ 김윤식은 즉각 공주부 관찰사 이종원에게 순사를 도우라는 훈령을 내렸고,²⁸⁾ 판리공사에게 호조와 훈령을 발급해 주었다. 1월 24일(陰12.10) 의병 진압 현장에서 니시무라 순사가 고무라 판리공사에게 보고한 첩보는 다음과 같다.

1월 24일. 지난 13일(陰11.29-논자 주) 전 홍주목사가 각부에 보낸 격문에 전 開陽(靑陽의 오기-논자 주)郡守 鄭寅義(鄭寅義의 오기-논자 주)가 거괴가 되어 2,000여 명의 폭도를 이끌고 공주로 갔으며, 21일 밤에 정산 斗門에 이르렀으므로 공주에서 참령과 대홍군수가 각기 병정 50명씩을 이끌고 나가 同地에서 접전하여 격퇴시켰다 함. 원인은 8월 11일(8월 20일의 착오-논자 주) 사변과 단발령 때문이라 함. 그러나 사실은 분명치 않음.²⁹⁾

27) 국사편찬위원회 DB,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 一. 外部往來, (66) 公州 等地로 파견하는 순사의 護照·關文 요구 건.

28) 『忠淸南北道來報』 1(066a).

29) 국사편찬위원회 DB,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五. 機密通常和文電報往復一·二 第3冊, 51-1.(斷髮令反對 民衆蜂起 各地狀況 報告1) 一月廿四日, 公州 西村巡查→小村. 정인희 부대 진압 작전이 종결된 상황에서 거의 원인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라는 첩보가 있었으나 체포해서 직접 취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는 소견을 첨언한 것으로 보인다.

3. 정인희 부대의 공주 진격 대 관군의 진압 작전

가. 정인희 부대의 진군과 정부 친위대의 출병

12월 3일(陽1.17) 정인희는 홍주창의소의 무기 지원이 여의치 않자 그날 밤을 기해 금정역참 역원들에게 명하여 군기(軍器)를 유회군(儒會軍)에게 배포했다. 유회군의 지휘관은 이세영(참모장), 이봉학(참모), 이병승(후에 선봉), 김정하(중군) 4인으로 파악된다.

금정역은 청양군청에서 서쪽 9km 거리에 있었다. 애초에 필요했던 1천정의 화포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지만 역참에 조총 26정, 창 100자루, 환도 6자루, 그 외 오방기 10개, 순시기 1쌍, 영기 1쌍, 등채 2개가 있었다.³⁰⁾

또한 역민이 58호, 인근 면리에 사는 역민이 75호로 총 133호나 되었으며³¹⁾ 찰방 오상학(吳相鶴)이 대표로 있었다. 정인희 부대에 합류한 주동자는 역교(驛校) 최만광(崔萬光)과 역리(驛吏) 박문익(朴文益)이었다. 두 사람은 동학군에 가담했던 인물이며, 장정 수백 명을 모으고서 각자 장작을 소지하게끔 했다.³²⁾ 이들은 12월 3일 홍주에서 금정역으로 도피한 홍주부 세무시찰관 김기룡(金基龍)을 에워싸고 “세무시찰관도 역시 개화파 소굴에서 내려온 관원이라 죽여 마땅하다”라고 외쳤는데, 김기룡은 전 찰

30) 국사편찬위원회 DB, 『驛土所關查員質報存』 02, 建陽元年(1896) 3.4, 洪州府查辦第一委員 孫承鏞—農商工部大臣 趙秉稷, 「報告」第4號, “홍주부 관하 7개 군 각 역전담의 改量降等과 임천 등 7개 군의 역토 양안수정 등을 보고”

31) 위와 같음.

32) 『各司謄錄』, 『驛土所關查員質報存』 照會 第四號(1896.1.19).

방 김영선(金永善)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금정역에서는 1894년 가을 청일전쟁 때 청나라 군영에 말 100여 필을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고자 마호(馬戶)들에게 수 천 냥의 부가세(添價錢)를 납부하게 했던 피해가 있었다.³³⁾ 특히 박문익은 역리이자 마호로서 청군에 말을 빼앗겼던 피해 당사자³⁴⁾였기 때문에, 울분이 짐작된다. 역리는 양인 신분이었으나 천민 취급을 받았다.

12월 4일(토) 날이 밝자 정인희는 금정역민을 중심으로 부대를 편성해 대기했다. 그런데 관찰사 이승우의 배신과 동지들의 체포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서산군수·남양부사·대흥군수는 회군했으나,³⁵⁾ 청양군수 정인희만 출정을 강행했다.

청양에서 공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정산군을 거쳐야 하고, 정산군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정산군수는 서상면(徐相冕, 1842~1915)이었다. 홍주와 공주 사이 대흥, 청양, 정산은 군수들이 홍주의병에 적극 동조한 지역이었다. 청양군청에서 정산군청까지는 약 18.6km로 도보 4시간 거리다(청양군 읍내면 월천(月川)[후의 청양읍 교월리] → 동상면 탄동[후의 대치면 탄정리] → 수곡(壽谷)[후의 대치면 주정리] → 송죽골[僧主洞][후의 대치면 광대리] → 대터[大峙][후의 대치면 대치리] → 정산군 읍면 용머리[龍頭][후의 정산면 용두리] → 현내면[후의 정산면 서정리]). 그런데 칠갑산 자락의 고갯길이 험준하여 실제 행군은 배로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산까지 행군하면서 지역 주민³⁶⁾까지

33) 『公文編案』 19, 奎18154-v.1-99, 019a-020b, 洪州府觀察使 李勝宇, 「報告書」(1895.8.29), “홍주부 관찰사의 금정찰방이 보고한 1895년 復戶結 처리문제에 대한 보고서와 해당 지령”

34) 국사편찬위원회 DB, 『驛土所關査員質報存』 02, 建陽元年(1896) 3.4, 洪州府査辦第一委員 孫承鏞—農商工部大臣 趙秉稷, 「報告」 第4號, “홍주부 관하 7개 군 각 역전답의 改量降等과 임천 등 7개 군의 역토 양안수정 등을 보고”

35)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앞의 논문, 205쪽.

36) 12월 3일 김복한이 홍주부 각 군 각 면에 「통문」을 띄워 화성(지금의 청양군 화성면)에도 도착했는데 각 이장이 한 집에 군정(軍丁) 1명씩 출동케 했고, 모집에 응

합세해 정인희 부대 총인원은 2,000명으로 관측되었고, 정산군에서 진을 치고 3일간 숙영했다.

진격이 지체된 이유는 충청감영 참모관으로서 동학농민군 진압에 공로가 있던 이인찰방 구완희(具完禧, 1876~?)³⁷⁾가 공주 부 영관 자격으로 선봉장 정인희에게 거짓 간찰을 보내 교란술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참모장 이세영은 구완희를 믿을 수 없다며 직언했고, 이병승을 선봉, 김정하를 중군으로 한 선봉군을 앞장서게 했다.

그때 청양군수가 (정산에) 머물러 묵고 나아가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병귀신속 곧 군사를 지휘함에 귀신같이 빠름을 귀히 여긴다”라고 했거늘, 만약 더 지체하시면 필히 홍주와 공주에서 협공해 앞뒤로 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청양군수가 말했다. “이미 나와 공주 영관 구완희의 약조가 있다”라면서 그 편지를 보이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마땅히 공주관찰사를 사로잡을 것이고 의진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운운했다.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의했던 이승우도 이랬다저랬다 했는데, 하물며 구완희라? 그 사람은 본래 동학 잔당이 나 도리어 그 무리를 해치고 지금 부역해 관직을 얻었으니 틀림없이 신의가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만 같지 않습니다.³⁸⁾

한 자는 전혀 도피하려는 뜻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몽둥이를 들고 “머리를 깨고 살진대 차라리 의에 죽는 것이 낫다”고 외치기도 했다(林翰周, 『洪陽紀事』, 앞의 책, 137쪽).

37) 구완희의 물연도는 『매일신보』 1915.3.20, 「具完禧氏 逝去」에 1915년 3월 19일 宿病에 인해 별세했다고 보도되었고, 족보(『능성구씨세보』 5, 서울: 능성구씨대중회, 1986, 429쪽)에 1945년으로 적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38) “(原文)時靑守, 逗留不進, 余曰, 兵貴神速, 若遲必洪公合擊, 前後受敵也. 靑守曰, 已與公州領官 具完禧, 有約, 且示其書, 不幾日, 當擒公察請陣云云. 余曰, 不然, 以若同謀李勝宇反復, 況具完禧乎. 此人, 本以東匪餘徒反害其黨, 今附逆得官, 索無信義, 何可信之. 不如連進”(李世永, 『古狂年譜』, ‘三十二年 乙未’, 第十頁)

이세영이 주장한 ‘병귀신속(兵貴神速)’은 『손자병법』 제11 「구지(九地)」편에 나오는 “용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속함(兵之情, 主速)”과 같은 말이다.

이세영의 예상대로 공주관찰사의 전보를 받은 조정에서는 1월 19일(陰12.5) 친위대 파견 논의를 거쳐 1월 21일(陰12.7) 친위대 1중대를 홍주로 출병시켰다. 친위대 소식을 다룬 『도쿄아사히신문』 기사를 날짜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⁹⁾

조선국 주차 일본공사관 소속 무관 와타나베 소좌가 그저께 19일 밤에 전한 상황 시달 전보는 다음과 같다. 조선국 충청도 홍주에서 폭도가 봉기했는데 그 수가 1천여 명으로 창궐한 세력 이어서 조정에서 진압을 위한 친위대 1중대 파견하려고 하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충청도 홍주 폭도 봉기”, 『도쿄아사히신문』 (1896.1.21)

충청도 홍주에서 적도가 봉기했는데 거괴는 전 홍주목사인 듯 하다. 관찰사로부터 「본부가 위급하니 병사를 보내 달라」는 전보가 있었다. -“충청도의 폭도(20일 경성 니시카와 쓰우테쓰 특발)”, 『도쿄아사히신문』(1896.1.22)

1월 19일(陰12.5)은 정인희 부대 1천여 명이 청양을 떠나 정산군에서 숙영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홍주의병 창의대장을 여전히 이승우로 파악했고, 공주부 관찰사의 다급한 전보를 받고서 의병 진압을 위한 출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저께 21일, 조선국 주차 일본공사관 소속 무관이 전한 상황

39) “(雜報)忠清道洪州暴徒蜂起”·“(電報)忠清道ノ暴徒(二十日(午後六時二十分) 京城西河通徹特發)”·“(雜報)暴徒鎮壓軍派遣”·“(電報)賊勢猖獗(廿二日(午後六時十分) 京城西河通徹特發)”·“(朝報時事)賊徒續聞(京城 西河通徹)”, 『東京朝日新聞』(1896.1.21, 1.22, 1.23, 1.24, 2.2).

시달 전보에 의하면, 한국 조정은 홍주 및 원주의 폭도 진압을 위해 친위대 각 1중대를 파견했다고 한다. -“폭도 진압군 파견”, 『도쿄아사히신문』(1896.1.23)

춘천·홍주·안동 3부 관청, 제천·원주 2군 관아가 적도의 수중에 들어간 까닭에 전주 행군 중인 친위대 1중대를 원주에, 당지 친위대 1중대를 홍주에 각기 급파하게 했다. -“적도 세력 창궐”(22일 경성 니시카와 쓰우데쓰 특발), 『도쿄아사히신문』(1896.1.24)

…홍주(충청도)에서 일어난 적도들도 공주부를 습격하려는 기세였다. 즉 공주는 양쪽에서 적을 맞게 된 상황이라 형세가 위급하므로 이와 같이 경보 청원이 계속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설에는 홍주 적과 중에 예전에 관찰사였던 아무개도 있다고 한다. 친위 1중대는 오늘 아침에 쌓인 눈과 단단한 얼음을 밟고 공주를 향해 출발했다(이상 1월 21일 발). -“적도에 관한 후문(경성 니시카와 쓰우데쓰)”, 『도쿄아사히신문』(1896.2.2)

위 기사의 1월 21일(陰12.7)은 정산 전투 당일이지만, 3일 전 홍주부 관아가 장악된 1월 18일(陰12.4) 상황과 공주부 관아의 위기가 같이 보도된 것이다.

12월 7일(陽1.21) 드디어 정인희 부대는 ‘간두문’⁴⁰⁾까지 이동한 뒤 어둠을 틈타 공주부를 공격하기 위해 대기했다. 정산군청에서 간두문까지는 3.4km로 도보 1시간 거리이며, 간두문에서 철마정⁴¹⁾에 이르는 길은 넓은 평야지대로 행군하기에 편하지만,

40) 간두문은 현 청양군 목면 지곡리 321-2 일대로, 옛 한자 지명이 ‘艮杜門’(『忠清監營啓錄』, 1845), ‘干頭門’(『長湖日記』, 1895), ‘斗門’(『駐韓日本公使館記錄』, 1896), ‘艮斗門’(『朝鮮五萬分一地形圖』, 定山, 1911), ‘干杜門’(『古狂年譜』, 1939?)으로 적혀 있다.

41) 安昌植, 『長湖日記』(1895.12.7)에 언급된 ‘철마정(鐵馬汀)’은 「各陣將卒成冊」(1894)에 ‘철마장(鐵馬場)’으로 나오고, 『朝鮮五萬分一地形圖』, 定山(洪州二號)(1911)(남

관군의 공격에는 은폐·엄폐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따라서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기(義氣)와 병력 수만 믿고 전진하다가 ‘위지(圍地, 소수의 적이 다수의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곳)’에서 복병의 기습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공주부 관군의 전략과 전술

같은 날, 구완희가 병졸 50명, 그리고 경리청 대관으로서 구완희와 같이 참전했었고 문석봉 유성의진 진압 경험⁴²⁾이 있던 백낙완(白樂浣, 1845~1930)이 병졸 50명을 이끌고 선제공격에 나섰다.⁴³⁾ 이는 문석봉 의진 진압 때보다 절반 병력이었는데, 나머지 병력 100명은 감영을 사수했을 것이다.

구완희 소대는 웅진을 건너 공수원⁴⁴⁾에 당도해 진을 쳤고, 백낙완 소대는 후방의 동천주막[銅川店]⁴⁵⁾에 주둔하면서 수색과 사주

영우 편, 『舊韓末 韓半島 地形圖』 3, 성지문화사, 1997)에 ‘철마점(鐵馬店)’으로 표기되었다. 현재도 철마장(목면 안심리 산 10-2)으로 불린다. 철마장은 목면 안심리 마군동 서쪽의 ‘철마산(지금의 목면 본의리 미갈산, 해발 369.2m)’에서 유래하며 안심 2리(목면 안심리 585-7) 목면사무소 일대다.

42) 白樂浣, 신복룡 校註, 「남정록」, 『한국학보』 74(20-1)(1994):190-191, <http://uci.or.kr/I410-ECN-0102-2008-910-000439000@N2M>.

43) “...21일(음력 12.7) 밤에 정산 두문(斗門, 艮斗門-논자 주)에 이르렀으므로 공주에서 참령과 대흥군수가 각기 병정 50명씩을 이끌고 나가 동지에서 접전하여 격퇴시켰다 함”(『駐韓日本公使館記錄』 7, 五. 機密通常和文電報往復一·二 第3冊, 51-1.(斷髮令反對 民衆蜂起 各地狀況 보고1) 一月廿四日, 公州 西村巡查-小村)

44) 1834년 ‘청구도(靑邱圖)’에 ‘공서원(公西院)’으로 적혀 있으나, 1894년부터 ‘公壽院(『錦藩集略』, 1894.7.7), ‘公須院(『各陣將卒成冊』), ‘公水院(『公警 第576號, 1908)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근대 자료에서 공수원의 소속 군이 정산과 공주 양쪽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정산 목면 송암리와 공주 우성면(옛 성두면) 용봉리 경계에 위치했었기 때문이다. 1911년 陸地測量部 발행 ‘朝鮮五萬分一地形圖: 公州(公州十四號)’에는 공수원이 없으나, 1922년 지형도에 보인다. 현재 위치는 청양군 목면 송암리 110-3번지 일대이며, 관군이 매복했던 지점은 길 건너편 서북쪽 650미터 거리에 현대 지도상 공수원으로 나오는 송암리 118-26번지로 유추된다.

45) ‘동천’은 금강 지류인 현 유구천(維鳩川) 북쪽의 공주 우성면 동대리로 ‘동천주막’은 지금의 우성면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경계를 했다. 공주 진입 저지 목적의 2차 방어선으로 보인다.

본년 10월 15일에 홍주부에서 창의가 선동되어 관하 20여 군이 향응하여 군량과 기계를 판비하는데 청양군수 정인희가 먼저 수천 명을 조발하여 밤을 타 공주를 엄격코자 한다고 급보가 왔거늘, …{중략}…직일(直日)에 이인찰방 구완희로 50명을 거느려 웅진을 건너 공수원에 둔치고, 우룡(백낙완-논자 주)은 50명을 영솔하여 동천주막에 주둔하고 사방의 동정을 살필 새…”⁴⁶⁾

충청감영에서 공수원까지는 13km로 강을 1번 도하하고 도보 3시간 30분 거리다. 공수원은 공주 우성면의 경계 지역인 정산군 목면 송암리(지금의 청양군 목면 송암리)로, 칠마산(지금의 미결산) 동남쪽 무죽바위산(해발 160m)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매복하거나 관측하기에 최적 장소였다.

〈그림 2〉 「靑邱圖」 중 칠갑산-정산-공서원-공주 성두면 동천-웅진-공주감영 경로



46) 白樂浣, 신복룡 校註, 「남정록」, 앞의 책, 191쪽.

〈그림 3〉「朝鮮五万分一地形圖: 公州」(1922) 중 公須院(※정중앙)



구완희가 부대 선봉장을 속여 지체시켰던 목적은 『손자병법』 제10 「지형」편에 “험한 지형인 험형에서는 아군이 먼저 위치하면 반드시 높고 양지바른 곳을 차지하여 적을 맞이하고, 만약 적이 먼저 위치했으면 유인하여 물러나야 하며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전술을 구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도(六韜)』 제5 「표도」 ‘소중(少衆)’편에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상대할 때 쓰는 전술이 설명되어 있는데, “반드시 날이 저무는 시기를 이용해서 초목이 우거진 곳에 부대를 매복시켰다가 좁은 길목에서 적을 요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중대급 병력이었으나 압도적인 화력을 갖춘 관군의 효과적인 대응 전술이 백낙완의 회고에 보인다.

다만 오늘밤 싸움뿐 아니라 타일에도 의병을 만나거든 거짓 치는 형상만 보이고 그 무리를 헤쳐 군물만 탈취하되, 인명은 살 해치 말라.⁴⁷⁾

47) 위와 같음.

이는 40일 전인 10월 28일(陽12.14) 300여 명의 무장 의병으로 구성된 문석봉 유성의진에게 써서 성공했던 양동 작전이며, 정인희 부대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

〈표 1〉 정인희 부대 대 관군의 편제 및 화력 비교

	정인희 부대	구완희 부대
지휘부	선봉장:정인희 참모장:이세영, 참모:이봉학 선봉:이병승, 중군:김정하	공주부 영관:구완희(전 참모관, 이천찰방) (직명 미상):백낙원(전 중군)
병 줄	유회군, 금정역민, 보부상, 청양 등지 주민 총 2,000명	100명
무 기	유회군 와: 조총 26정, 창 100자루, 환도 6자루. 역민: 장작.	신식 소총 및 대포 1문(추정)

다. 정인희 부대의 패전

1896년 1월 19일 홍주부 손승용은 홍주와 청양 두 지역 동정을 정탐하면서 정인희 부대를 도둑떼[賊匪]로 규정하고 상부에 “시무를 잊고 민심을 요란히 하며 창궐하는 적비에 대해 본인이 병사를 이끌고 토멸케 하도록” 긴급 요청했다. 1월 20일 내부대신 유길준은 내각총리대신 김홍집에게 “청양군수 정인희와 정산군수 서상면은 지방을 지키는 벼슬아치로서 인민을 부추기어 현혹하고 직무처를 상부 지시 없이 함부로 떠났다”라는 「면관청의서」를 올렸다.⁴⁸⁾ 1월 21일(陰12.7) 내각에서 청양군수와 정산군수의 면직이 가결되었고, 김홍집과 유길준 명의의 「상주서」가 올라가 최종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되어 면직되었다.⁴⁹⁾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인희 부대는 석식 직후 출

48) 『議奏』 0043권, 奎17705-v.1-69, 032a.

49) 『官報』(229), 1896.1.23.

정을 재개했다. 간두문에서 철마정까지는 3.6km로 평지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당일 날씨가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다 눈이 쌓여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악천후였다는 점이다.⁵⁰⁾

철마정에서 공수원까지는 2.8km 거리인데 1km 지점부터 경사가 완만한 언덕이 나타나며 여우고개(狐峴)를 넘으면 다시 평지다. 부대의 행군 길이는 2열 종대로만 계산해도 1km 이상의 긴 행렬이었을 것이다.

눈길과 어둠 속에서 이병승과 김정하가 이끄는 선발대가 공수원을 향해 다가오자 구완희 소대가 일제히 총격과 포격을 가했다. 이에 혼비백산하며 선두 진열부터 무너지고 후발대가 차례로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정인희가 의도를 몰아 간두문과 공수원에 주진하고 밤을 타 방장 행진하여 나오는데 눈은 표요히 날리고 바람은 소삽한데 밤이 또한 깊은지라. 구완희가 병대를 단속하여 일제히 내달아 고함지르고 발총하며 거짓 치는 형상을 지으니 포성이 원근 산천을 진동하는지라. 피도가 홀지(忽地)에 우레 같은 병성(兵聲)을 당하매 간담이 서늘하고 수족이 황란하여 가졌던 군물을 던지고 광풍의 낙엽같이 흔적 없이 도망하였더라. 우룡(백낙완-논자 주)이 포성 소리 남을 듣고 접전하는가 하여 군사를 휘동치왕(揮動馳往)한즉 피도가 이미 관군에게 패함을 받아 흩어졌더라.⁵¹⁾

이병승을 선봉으로 삼고 김정하를 중군으로 삼아 행군해 간두문에 이르렀는데, 선봉군이 공서원에서 구완희에게 반격 당해 패되었다. 청양군수는 패전보를 듣고 인장을 향장에게 돌려보낸 뒤 도피했고, 대군은 해산되었다. 부득이 남포로 가서 의병을 모았다. 이중소·이상천 둘 다 포로가 되어 강제 삭발 당했다. 이중

50) 安昌植, 「長湖日記」(1895.12.7), 앞의 책, 166~167쪽.

51) 白樂浣, 신복룡 校註, 「남정록」, 앞의 책, 191~192쪽.

소는 척숙 전 판서 이용원⁵²⁾에게 공갈까지 듣자 끝내 목을 매어 죽었다.⁵³⁾

안창식 일행은 정인희 부대를 쫓아 정산으로 갔다가 이 퇴각 광경을 목격했다.

치성⁵⁴⁾주막[雉城店]에 머물고 저녁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2경(저녁 9~11시-논자 주)도 못되어서 간두문(干頭門)으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좀 있다가 청양군수가 패군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창을 잡고 군기를 끄는 사람들 백여 인이 황망히 정산(定山)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또 얼마 안 되어 또 1대(一隊) 병정들이 달려와서 대포를 쏘았다. 사나운 우레 같이 굉굉하고 박박하여 귓속이 갑자기 메이는 듯 했다.⁵⁵⁾

이렇게 12월 7일 밤 8시경 공수원에서 공주부 파견 구완희 부대를 마주해 항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술 실패로 패전하고 말았다.⁵⁶⁾ 다만 구완희도 진두지휘 중 선발대 응사에 충상을 입

52) 이용원(1832~1911)의 족보 확인 결과 이증소와 친척은 아니었고, 같은 문중 인물로 확인된다. 그는 한말 고위 관료로서 1910년 일진회 합방청원서 찬성 등 친일의 길을 선택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었다.

53) “(原文)以李秉承爲先鋒, 金正河爲中軍, 行至干杜門, 先鋒軍于公西院, 果被具完喜反擊敗續, 青守聞敗報, 歸印鄉長, 逃避. 大軍渙散, 不獲已, 向藍浦招募, 李重韶, 李相天, 俱爲被擄被削. 李重韶聞其叔前判書李容元之恐嚇, 遂自縊死”(李世永, 『古狂年譜』, ‘三十二年 乙未’, 第十頁). 이증소의 생년은 1871년, 사망일은 1895년 12월 9일(『全州李氏密城君派世譜』 2(1983), 完山李氏密城君派宗親, 1983, 102쪽) 이므로 체포 2일 후에 사건이 발생했고 만 24세에 불과했다.

54) 원문의 ‘雉城’은 「定山縣地圖」(1872)에 ‘致城市’, 「朝鮮五萬分一地形圖: 青陽(洪城二號)」(1919)에 ‘場堡’, 「朝鮮五萬分一地形圖: 青陽公州十四號」(1922)에 ‘雉城場’으로 나오는 ‘치성장터’로 현 정산면 역촌리 163번지 일대다. 이곳에서 간두문은 2km 거리다.

55) 安昌植, 「長湖日記」(1895.12.7), 앞의 책, 164, 167쪽.

56) 李根周, 「乙未錄」, 『대한의사 청광자 실기』, 홍성: 청운대 남당학연구소, 2015, 56쪽.;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앞의 논문, 207

은 것으로 보이는데,⁵⁷⁾ 백낙완 소대가 곧바로 합류해 퇴각군을 추격하여 철마정, 간두문을 지나 정산현에 주둔했다. 1월 21일(陰12.7) 구완희가 대홍군수를 제수받았고, 1월 22일자로 백낙완이 참령에 임명되었다는 『관보』⁵⁸⁾를 받아 보고서 친위대 당도 전에 작전이 종료되었다.⁵⁹⁾

〈그림 4〉 정인희 부대 공주부 진격 경로와 거리

← 총 50km(청양군청-공주부=41km) →								
금정역	청양 군청	청양 탄동→대티→정산 용머리→현내면	정산 군청	간두문	철마정	공수원	웅진	공주부
9km	18.6km		3.4km	3.6km	2.8km	13km		

라. 정인희 거의의 당대 평가

동지 이설(李悛, 1850~1906)은 수감 중 정인희의 패전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정인희의 행동 결과보다 명분과 과정을 보라”는 의미의 충고

쪽. ; 구완희 소대의 반격을 당했던 정산 전투 지명이 ‘두문(=간두문)(니시무라)’, ‘공서원(=공수원)(이세영, 백낙완)’, ‘철마정’(안창식)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기 관측 위치와 시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안창식의 기록에는 “(청양군수 부대가) 철마정을 향하여 떠났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공수원→철마정을 되돌아서 간두문→치성장터를 지나 정산으로 후퇴하는 부대를 보았던 것이다.

57) 정교, 이철성 역, 『대한계년사』 2, 서울: 소명출판, 2004, 179쪽. 참고로 화승총의 유효사거리가 70미터 내외임을 역산하면 당시 부대 선발대와 관군의 근접 거리를 유추할 수 있다. 관군이 무장했던 총은 레밍턴 롤링블럭일 가능성이 높고 유효사거리가 400미터이므로 백낙완의 기록에 따라 직사가 아닌 위협사격만 가했을 것으로 본다.

58) 『官報』(229), 1896.1.23 ; 『官報』(230), 1896.1.24.

59) 구완희는 관군을 승리로 이끌어 대홍군수(1896)에 임명된 이후 평리원 검사(1899), 내장원 공세과장(1900), 주차일본국 공사관 참서관(1901~1903), 의주군수(1904), 일본 진북군대 접응관(1904), 경무사(1905), 비서관 승(1905) 등에 오르고 을사오적 이치용의 막료가 되면서 친일 관료의 길을 걸었다.

를 담아 시로 남겼다.

「청양군수 정우당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읍음(聞靑陽倅鄭嶠
堂見敗感吟)」

書生多誤事 서생이 일을 그르침이 많으니
束手復何爲 손을 묶고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莫笑靑陽倅 청양군수를 비웃지 말지어다.
一番義旗 한 번 의병의 기를 들었도다.⁶⁰⁾

정인희에 대한 당대 평가는 홍주의병에 동참했던 청광자(淸狂子) 이근주(李根周, 1860~1910)의 기록이 있다. 그는 「을미록(乙未錄)」에서 “청양군수 정인희는 평소 충의를 품었고 또한 지략이 있었다”라고 평했다.⁶¹⁾

남로선유사를 지낸 양원(陽園)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은 「봉사일기(奉使日記)」 병신(1896)년 4월 19일자에 “청양 전 군수 정인희는 비록 창의(倡義) 때문에 낭패를 당했지만, 그 충의(忠義)와 재기(才氣)는 위 네 사람(고부군수 윤병재, 무주군수 조병유, 상주 전 군수 조원식, 옥천 전 군수 김명수)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평했다.⁶²⁾

전남 장성 출신 의병장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은 “정인의(정인희의 오기-논자 주)는 당시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며, 공(강겸(姜縑, 1657~1713)-논자 주)의 고을(김제-논자 주)에 흘러들어 온 ‘의사(義士)’였으니 그 직필을 충분히 징험할 수 있을 터...”⁶³⁾라며 “의로운 선비”라고 평했다.

60) 李俔, 『국역 북암집』, 대전: 북암선생기념사업회, 2006, 70쪽.

61) 李根周, 「乙未錄」, 『대한의사 청광자 실기』, 앞의 책, 56쪽.

62) “(原文)…靑陽前郡守 鄭寅義, 雖因倡義而狼狽, 其忠義才氣, 不讓於上四人”(申箕善, 『陽園遺集 卷17: 奉使日記』(丙申四月十九日),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3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5, 383쪽.

정인희는 청양군수에서 면직되고, 1월 27일부터 다시 홍주부의 신고로 세금 포탈 누명을 써 청양에 머물 수 없게 되어 1896년 봄 처자를 데리고 전북 만경군(지금의 김제시 만경읍)으로 이주했다가 1905년 말 선산이 있는 충남 결성군 성남리에 안착했다. 1917년 1월 2일 69세(만 67세)로 타계해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 417-3번지 선영에 안장된 뒤 역사 속에 묻혔다. 1918년 4월 30일(陽6.8) 동지 임한주는 그의 첫 기일에 제문을 지어 바쳤다.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어서 일부 번역문을 옮긴다.

「우당 정인희 공을 위한 제문(祭嶠堂鄭公寅義文)」

유세차 무오(1918)년 4월 그믐 병술일에 팽성 임한주는 삼가 한 잔 술을 따라 올려 청송태수(靑松太守) 우당 정공(鄭公)의 영전에 곡하고 아뢰니다.

…{중략}…을미년은 대관절 어느 해였던가. 그때 국모가 시해당하여 신체가 훼손되었으니 “우리가 산들 무엇 하겠는가. 나라의 큰 예법이 무너져 버렸도다” 비분강개하며 수많은 의병들에게 맹세하기를 “우리의 치욕을 씻어 내겠다”고 기약했으나, 소인배가 중간에 배신하여 우리의 중차대한 일을 망쳐 버렸습니다.

하늘의 큰 운수가 회복되지 않아서 벼슬 없는 신세는 한가롭기만 하였고, 통곡하며 부르는 긴 가락의 노래는 천지에 가득히 울렸습니다. …{후략}…⁶⁴⁾

임한주는 정인희와 함께 일으켰던 홍주의병의 명분이 을미사변이었는데 소인배(이승우)의 배신으로 대사를 망쳤다고 명확히 밝혔다.⁶⁵⁾

63) 기우만, 오향녕·이주형·임희택 역, 『송사집』 16, 전주: 흐름출판사, 2021, 100쪽.

64) 林翰周, 『檀軒先生文集』 卷三下, 十三, 『한국역대문집총서』 558, 서울: 경인문화사, 1999, 26~27쪽.

65) 1896년 단발 강제 시행 철회와 의병 해산령으로 인해 의병 활동이 종료되었고, 명

4. 결론

기존 을미홍주의병 연구 성과에서 규명이 부족했던 정인희 부대 대 공주부 관군의 정산 전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울 출신의 정인희는 1894년 7월 청양현감을 제수받은 뒤 1895년 11월 을미사변(8.20), 단발령 공포(11.15)에 항거해 홍주의병이 일어나자 적극 동참해 공주부 공격을 맡았다. 사료에 의하면 공주부에 단발령 강제 시행의 원흉인 이종원이 관찰사로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896년 1월 18일(음력 12.4) 정인희는 창의대장 이승우가 배신해 지도부 인사들이 체포되었어도 선봉장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고자 2,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해 공주부 공격을 감행했다. 선봉장 휘하에 참모장 이세영, 중군 김정하, 참모 이봉학, 이병승 등 유림들이 보좌했고, 개화파에 불만이 있던 금정역참 역민들이 부대의 주축이었던 사실을 처음 밝혔다. 그러나 무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역참에 있던 조총 26정, 창 100자루, 환도 6자루로써 구색만 갖추 수밖에 없었고, 역민들은 각자 장작을 소지한 것이 전부였다.

청양군청에서 공주부는 41km로 측정되며 거리상으로 멀지 않

성황후 추모가 1902년 명성황후 감모비 건립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주도했던 이가 바로 정인희의 장남 정훈호와 남포의병 출신 김홍제(김광제)였고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듬해 정읍 무성서원에서 명성황후 추모와 일본에 복수를 맹세하며 내장사 서보단(誓報壇)을 설치해 1906년 마침내 무성서원에서 태인의병이 창 의되기에 이른다. 홍주의병 선봉장을 자임했다가 파직된 정인희 일가가 전북 만경 이주 후 감모비와 서보단 설치에 관여했던 행적, 그리고 이승우와 계속된 악연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으로 다루고자 한다.

으나, 청양은 칠갑산 중심의 분지형 지역이기 때문에 길이 험준해 행군이 결코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눈과 비가 내리고 빙판이 되는 등 최악의 기후 상황이었다. 18.6km 거리의 정산군(지금의 청양군 정산면)까지 행군한 부대는 3일간 지체했는데, 공주부 파견 관군 구완희가 선봉장 앞으로 “공주 관찰사를 사로잡아 의진으로 찾아뵙겠다”는 거짓 간찰을 보낸 것이 원인이었다. 조선 정부에서는 정인희 부대를 진압하기 위해 우선 선봉장의 본래 관직인 군수에서 면직시키고 다음 친위대 출병의 두 갈래 방향으로 압박했다.

친위대까지 홍주로 출병한 상황에서 서쪽과 동쪽 양 방향에서 협공 당할 위기를 예상한 참모장 이세영의 조언에 따라 1896년 1월 21일 저녁에 선발대를 앞세워 출정했다. 정산과 공주의 경계에 설치된 ‘공수원’(지금의 청양군 목면 송암리) 부근에 이르러 선발대와 관군 간 접전이 벌어졌다. 공주부 파견 관군 100명 중 구완희가 이끄는 소대 50명의 매복·양동 작전에 선발대가 기습당하고 후발대의 진열이 무너지면서 도주해 패전하고 말았다. 구완희도 의병 선발대의 응사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군은 퇴각군을 쫓아 정산까지 추격해 진압을 끝냈고, 포로 2명도 확인되었다. 관군의 전략·전술은 무전(武典)인 『무경칠서』의 기본 지침대로 구사되었던 점도 유추되었다.

정인희는 홍주부의 신고와 정부에 의해 정산에서 공주 진격날 파직되었고, 이후 세금 포탈 누명까지 써서 끝내 충남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홍주의병 동지들(이설·이근주·임한주)과 전남 의병장 기우만, 남로선유사 신기선은 정인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전투에서 비록 패했어도 충의와 의기를 높이 평가했다. 정인희 휘하 이세영 등은 을미홍주의병 참전 실패 경험을 통해 전국 규모 항일 의병의 도화선이 된 1906년 병오홍주의병 봉기

를 다시 일으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병 부대를 진압해 관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구완희는 대흥군수, 의주군수에 임명되며 승승장구했고, 일본군에 협조해 러일전쟁 일본 진북군대 접응관, 경무사 등에 오르며 친일 관료의 길을 걸었다.

향후 정인희 부대의 공주 진격 때 관군의 방어 전술이 학계와 지역사에서 재조명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

- 『各司膽錄』, 『官報』, 『公文編案』, 『議奏』, 『忠清南北道來報』, 『全州李氏密城君派世譜』, 『東萊鄭氏己未世譜(復元本)』,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東京朝日新聞』.
- 「青邱圖」(一)(1834), 「定山縣地圖」(1872), 「朝鮮五万分一地形圖: 定山(洪州二號)·公州(公州十四號)」(1911), 「朝鮮五万分一地形圖: 青陽(洪城二號)」(1919)·「朝鮮五万分一地形圖: 公州(公州十四號)」(1922).
- 奇宇萬, 오항녕·이주형·임희택 역, 『송사집』 16, 전주: 흐름출판사, 2021.
- 白樂浣, 신복룡 校註, 「남정록」, 『한국학보』 74(20-1)(1994)
<http://uci.or.kr//1410-ECN-0102-2008-910-000439000@N2M>.
- 申箕善, 『陽園遺集』 17,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34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5.
- 安炳瓚, 송용재 편, 「葵堂日記」, 『홍주의병실록』, 홍성: 홍주의병유족회, 1986.
- 安昌植, 송용재 편, 「艮湖日記」, 『홍주의병실록』, 홍성: 홍주의병유족회, 1986.
- 이구영, 『湖西義兵事跡』, 서울: 수서원, 1993.
- 李錫泰, 『小梅稿』, 서산: 서산문화원, 1997.
- 李 僖, 북암선생기념사업회 역, 『국역 북암집』, 대전: 북암선생기념사업회, 2006.
- 李世永, 「古狂年譜」(1939?)(한양대 신용하문고 소장본)
- 李在信, 『公淸右道青陽邑誌』, 青陽: 青陽郡, 1906.
- 林翰周, 송용재 편, 「洪陽紀事」, 『홍주의병실록』, 홍성: 홍주의병유족회, 1986.
- _____, 「惺軒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558, 서울: 경인문화사, 1999.

鄭 喬, 이철성 역, 『대한계년사』 2, 서울: 소명출판, 2004.

洪 楗, 최원경 역, 「洪陽紀事」(1894),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4, 정
읍: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8.

黃 玟,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2. 단행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의병항쟁사』, 서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국방군사연구소 편, 『韓民族戰爭通史』 IV,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3. 연구논문

김상기, “1895~1896년 洪州義兵의 思想的 淵源과 展開”, 『윤병석교수
화갑기념한국근대사논총』, 서울: 지식산업사, 1990.

_____, “朝鮮末 文錫鳳의 儒城義兵”, 『역사학보』 134:135(1992)
<http://uci.or.kr//G901:A-0000908408@N2M>

_____, “金福漢의 洪州義兵과 파리長書 運動”, 『대동문화연구』 39(2001)
<http://uci.or.kr//G901:A-0001653029@N2M>

이상찬, “乙未義兵 지도부의 1894년 反東學軍 활동”, 『규장각』 18(1995)
<http://uci.or.kr//I410-ECN-0101-2009-010-014768522@N2M>

_____, “대한제국시기 보부상의 정치적 진출 배경”, 『한국문화』 23(1999)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1054516@N2M>

이성우, “古狂 李世永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와 담론』 103(2022)
<http://uci.or.kr//G901:A-0010862888@N2M>

최근묵, “洪州義兵에 관한 一考: 參與階層을 중심으로”, 『새마음』 8
(1988) <http://uci.or.kr//G901:A-0000731607@N2M>

<Abstract>

A Study on 1896 Jeongsan battle under Cheong, Inhee, vanguard of the First Hongju righteous army

Cho, Jun-hee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overnment troops' military operation to suppress the First Hongju Righteous Army led by Cheong Inhee, known as the Battle of Jeongsan. Previous academic studies have not addressed the situations faced by both the vanguard leader Cheong Inhee and the government troop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analysis and field work.

The governor of Cheongyang-gun, Cheong Inhee, became the leader of the army's vanguard on January 18, 1896 and formed an army of 2,000 righteous soldiers. Then, Cheong Inhee attacked Gongju-bu, which was within a 41 km distance. The Confucian scholars, including chief advisor Lee Se Young, had assisted under his command and the Station Staff of the Geumjeong Public stage station were key members of the righteous army.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equipment for the rugged environment and bad weather. They had marched for 18.6 km and stayed at Jeongsan for 3 days.

At that time, 50 soldiers in the platoon of Koo Wanhee, among the 100 Gongju-bu government troops, were hidden in ambush at Gongsuwon at the border between Jeongsan and Gongju, and 50 soldiers in the platoon of Paik Rak-Wan defended at the back. The advance

party of the righteous army that resumed their advance in the evening of January 21 was ambushed by the government troop's feint strategy when they reached Gongsuwon and the late-arriving group ran away, at which point they were defeated. The main reason for the defeat was that the government troop, despite being smaller in size, had stronger firepower and their strategy was in a superior position.

In academia, Cheolmajeong has been known as the Jeongsan battle area;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Jeongsan-gun Gongsuwon (currently Songam-ri, Mok-myeon, Cheongyang-gun) was the Jeongsan battle area.

After the defeat, Cheong Inhee was dismissed from the position of governor, and left the Chungnam area. Others, including Lee Se Young who had served under Cheong Inhee, initiated the Second Hongju righteous army rebellion in 1906 following the failed experience of joining the war.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rategies employed by the government troops and the early Righteous Arm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ademic research in military and history, as well as studies on regional history.

Key words : Koo Wanhee, Lee Se-Young, Jeongsan, Cheong Inhee,
Hongju Righteous Arm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145-185
<https://doi.org/10.29212/mh.2024..130.1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과 과제*

- 사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

고종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전사자 유해발굴의 사회적 인식 변화
3. 사료를 통한 6·25전쟁 ‘전사자’ 연구
4. 현장을 통한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
5. 6·25전쟁 전사자 연구의 향후 과제
6. 맺음말

초 록 본고는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이뤄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하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한국현대사의 범주 안에서 정리했지만, 연구주제의 특성상 인류학, 고고학 등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된 인접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도 상당수 포함됐다.

* 본고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심사위원 및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사자 유해발굴은 당초 인류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초기 연구가 시작됐다. 그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보는 한편, 국민의 사회소속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았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사료와 기록의 부족이 지적되자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공간적으로는 국내를 넘어 국외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범주의 사료와 기존 연구 간의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며 사료적 가치를 탐색했다.

한국고고학 역시 인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재구성하고 사회의 과거사를 밝혀내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과거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과정까지도 고고학에서 다뤄야 할 분야로 판단한 고고학 연구자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에 고고학적 조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해외 산업고고학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근현대고고학’의 시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연구들은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심층적인 비교·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6·25전쟁 70주년인 2020년을 전후로 전사자 유해발굴의 범위가 비무장지대(DMZ)까지 확장되는 등 성과가 축적되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보고되며 전사자 연구가 다양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전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6·25전쟁의 전장정리(戰場整理) 즉, 6·25전쟁의 진정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제어 : 6·25전쟁, 한국전쟁,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유해, 유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근현대고고학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머리말

본고는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이뤄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하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한국현대사의 범주 안에서 정리했지만, 연구주제의 특성상 인류학, 고고학 등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된 인접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시작된 전사자 유해발굴은 당초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처음 접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당시부터 전사자 유해발굴은 국가를 지켜낸 국민을 국가가 다시 책임지는 상호 관계 확립의 역사적 사례로 해석되었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특성상 인류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6·25전쟁 전사자와 전사자 유해발굴을 전후(戰後) 세대가 어떻게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체인 ‘전사자(戰死者)¹⁾’, 그리고 전사자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유해발굴(遺骸發掘)’ 이상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체인 6·25전쟁 ‘전사자’ 부분에서는 부족한 전사

1) 6·25전쟁에 참전한 군대의 국적은 유엔군,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으로 분류된다. 통상 ‘적군’으로 통칭하는 북한군과 중공군 전사자의 경우, 북한 소재 유해 매장 추정 지역에 관한 보고와 적군 묘지에 관한 연구 등 극히 제한적인 연구성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칭하는 6·25전쟁 ‘전사자’의 연구성과들은 사료적인 한계로 인해 통상 ‘아군’으로 통칭하는 유엔군(그중에서도 주로 미군)과 한국군에 국한된다.

자 관련 기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한편, 6·25전쟁 전사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외 1차 사료 중심으로 전사자의 수습-송환 과정을 살펴본 한국현대사 관련 연구들을 소개한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 부분에서는 전사자 유해발굴이 고고학적 연구방법론을 갖춘 과정을 정리하고 한국고고학이 전사자 유해발굴을 이른바 ‘근현대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성과들을 소개한다. 더하여 위와 같은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의 향후 과제와 방향에 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소개하는 연구들은 학술논문 중심으로 정리하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는 보고서, 논고, 발표문까지도 상세하게 살펴보고 연구가 상대적으로 진척된 분야는 학위논문과 저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2. 전사자 유해발굴의 사회적 인식 변화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성과는 언제부터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가 부각되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전사자 유해발굴 초기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6·25전쟁 전사자의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정리하고 그다음으로 ‘전사자’에 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전사자는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발생하였다. 한국군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전사자의 체계적인 수습 방안을 마련할 여지나 경험 없이 전쟁을 수행했다. 1950년 9월이 이르러서야 ‘묘지등록대’를 창설하였고 1951년부터 영현중대로 확대되었지만,

임시매장이나 화장된 전사자 처리에만 집중했을 뿐,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사자들을 수습할 근본적인 여건은 갖추지 못하였다.²⁾

1960년대부터 육군본부와 전우회 중심의 간헐적인 전사자 유해 수습시도가 있었지만 1990년대까지도 전사자 수습을 위한 근본적인 체계는 갖추지 못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양국이 공동 유해발굴을 시작하면서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제적인 관심도가 증가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2000년 6월 25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사자 유해의 DNA 정보와 유품 등을 단서로 일부 전사자 유해가 유가족에게 인계되는 성과가 나타나자 전사자 유해발굴은 범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³⁾ 이에 따라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보고와 그에 따른 연구 또한 점차 활성화됐다.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는 민·관·군 합동의 한시적 조직이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작된 전사자 유해발굴은 육군본부의 통제하에 충북대학교 유해발굴센터와 함께 이뤄졌다. 당시 유해발굴사업에 참가한 인류학 연구자들은 유해발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했다.⁴⁾ 대표적으로 박선주

2) 2000년대 초에 6·25전쟁 전사자의 수습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남우의 연구가 있다. 이남우는 국방부, 육군본부의 사료들과 유해발굴기록 그리고 참전 군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1950년대 영현중대의 조직 변화와 전사자 수습과정을 세부적으로 밝혔다. 이남우, 「전시체제의 한국군 상·장례 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그러나 현재까지도 발굴되고 있는 전사자 유해의 존재는 6.25전쟁 당시 영현중대 운용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경과와 현황에 관해서는 고종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군사』 제123호, 2022. 참고.

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센터장: 박선주)는 2000년 봄부터 발굴을 시작하여 2007년 8월까지 2,0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작업을 담당했다. 2006년까지 발굴한 전사자 유해의 인류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당시 전쟁을 수행한 전사자들의 해부학적 특성을 밝힐 수 있었으며 이들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신분을

는 충북대학교 유해발굴센터를 이끌며 2007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하 국유단) 창설 이전까지 민간 연구자로서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를 주도했다.⁵⁾ 박선주는 이때 이미 전사자 유해발굴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보는 한편, 국민의 사회소속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았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⁶⁾

권현익 역시 당시 영국 사회과학원 프로그램(2004-2005)의 일환으로 국내 전사자 유해발굴현장을 살펴보면서 제1, 2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의 전사자 매장 문화,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의 경험과 국내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⁷⁾ 권현익은 당시 국내의 유해발굴사업이 기존 형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체질인류학)⁸⁾과

가늠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축적되었다. 유해발굴의 중요목적인 피아구분과 신원확인도 실시하여 방법론의 확립과 일부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방법은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인용되고 있다. 그동안 모두 6권의 발굴보고서와 1권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의 전사자 유해발굴 조사연구 및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조사의 인류학적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박선주,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발굴과 보존」,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23, 10쪽.

5) 박선주, 「6.25전사자 유해발굴조사 : 6.25 전사자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2004년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인류학적 조사」, 『2004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4;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성과와 과제」, 『2005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5;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6) 박선주,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70-74쪽.

7) 권현익, 「전사자 유해와 현대사회」, 『2004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사 유해발굴센터, 2004.

8)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 양상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범의인류학, 고인류학 등을 포함한다. 사람의 뼈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골학(Osteology)을 기본

고고학 방법론을 심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박선주와 마찬가지로 전사자 유해발굴이 인류학적 지식 이외 전쟁사 등 역사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⁹⁾

위와 같이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보고와 연구가 이뤄지는 가운데 노용석은 2008년부터 6·25전쟁의 전투지역이 아닌 민간인 학살 현장에서 민간인 유해발굴에 참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민간인 유해발굴의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노용석은 6·25전쟁기 전사자와 민간인 유해발굴에 관해 동일한 시기에 벌어진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유해발굴이라는 수단을 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도와 내용에서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¹⁰⁾

한편, 전사자 유해발굴과는 별개로 전사자를 기억하고 예우하고자 전사자를 매장하는 행위, 더 나아가 전사자 묘지를 중심으

적으로 다룬다. 최근에는 생물인류학(Biological Anthropology)으로 불린다. 여기서 언급되는 체질인류학은 전사자 유해 즉, 인골(人骨)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한 국내의 체질인류학적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장유량, 「대퇴골의 법의인류학적 인종 특징 분석」, 경북대학교 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임나혁, 「한국인 머리뼈의 윗머리이음새」, 충북대학교 사학과 고고미술사전공 박사학위 논문, 2012; 박정상, 「한국인 치아 석회화정도 : 2009년도 6.25전사자 발굴유해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3; 장유량 외, 「집단으로 매장된 유해의 골절양상 분석 -양주 신암리, 익산 금강변, 창녕 본소리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8; 장유량 외,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6·25 전사 서양인 사람뼈에서 발견된 쉬모를 결절과 불완전 허리뼈되기」, 『해부·생물인류학』, 대한체질인류학회, 2019.

9) 권현익, 위의 논문, 186-187쪽.

10) 노용석은 전사자 유해발굴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성(Nationality)을 내포하는 반면, 민간인 유해발굴은 '국가에 의한' 죽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 국가의 폭력성과 과오를 드러내는 과거청산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노용석, 「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 한국의 전사자,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발굴 연구」,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234쪽. 노용석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전사자 유해발굴과 민간인 유해발굴은 '유해발굴'이라는 방법론만 공유할 뿐, 연구의 주체와 성격에서부터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향후 위 두 가지 유해발굴 연구 간에 별개의 접근방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로 한 추모시설 조성을 비판적인 관점¹¹⁾으로 바라보는 연구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주로 서양의 전사자 묘지 조성 및 예우 사례를 비교하여 전쟁 전사자라는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다카하시 데쓰야와 하상복이 있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전쟁 중 국가에 의한 국민의 희생에 관해 일본과 한국 유럽 등의 사례를 비교하여 국가가 조국을 위해 순국한 전사들을 강조하는 현상은 세계사적 전통이며 이러한 전사자 예우의 전통이 근대 민족국가 시대에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았다.¹²⁾ 하상복 역시 프랑스의 땡떼옹(Panthéon),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그리고 한국의 국립 현충원의 건립 사례와 과정을 비교하면서 전사자에 관한 추모시설 조성이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¹³⁾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6·25전쟁 전사자는 2000년부터 시작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맞물리면서 그 존재를 본격적으로 조명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연구성과는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를 부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후(戰後) 세대가 전사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일부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적인 추모 혹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전사자 문제를 규명한 것으로 전사자에 관해 실증적인 접근을 한

11) 국가 주도의 전사자 예우를 명명하는 단어로 ‘전사자 숭배(Worship of the fallen soldiers)’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독일 출신의 미국 역사가 조지 모스(George L. Mosse)가 1990년 저서 『Fallen Soldiers: Reshaping the Memory of the World Wars』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조지 모스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독일 전사자들이 국가에 의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조지 L. 모스 저, 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 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문학동네, 2015; 최호근,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전사자 숭배-플랑드르 지역의 군인묘지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155호, 2022, 160쪽.

12) 다카하시 데쓰야 저, 이목 옮김, 『국가와 희생』, 책과 함께, 2008, 12쪽, 239-251쪽.

13) 하상복, 『죽은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4.

것은 아니었다. 특히 앞의 연구들에서는 6·25전쟁 중 전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절차를 거쳐서 수습 또는 송환되었는지에 관한 과정이 생략됐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¹⁴⁾

이와 같은 경향에 관련하여 이상호는 전사자 수습과정이 배제된 채 전투 후 바로 국립묘지라는 공간의 이동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⁵⁾ 결국, 이러한 한계점은 국내외 1차 사료 및 전사자 유해발굴 성과에 기반을 두는 6·25전쟁 전사자의 실증적인 연구로 이어졌다.¹⁶⁾

3. 사료를 통한 6·25전쟁 ‘전사자’ 연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6·25전쟁 ‘전사자’ 연구는 2000년부터 시작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맞물리면서 그 존재를 본격적으로 조명받았기 때문에 현재 전후 세대가 전쟁 전사자를 어떻게

14) 고종성, 앞의 논문, 5쪽.

15)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제116호, 2020, 105쪽. 해당 연구에서 이상호의 비판은 기존 베트남전쟁의 사회사적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쟁사에서는 작전과정 중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 그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없었다.”라는 선행 연구에 관한 이상호의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상호의 비판은 비단 베트남전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사자 연구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도 볼 수 있다.

16)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성과가 보고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자 강인철은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전쟁과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전사자 송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강인철은 특히 6·25전쟁기 영현부대를 통한 전사자의 수습과 의례 그리고 국립묘지로 이어지는 전사자의 예우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면서 전사자의 송배와 애도 사이에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인철, 『전쟁과 희생 : 한국의 전사자 송배』, 역사비평사, 2019.

받아들여야 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후 전사자 유해발굴이 대내외적 관심을 받게 되자 정부는 2003년 7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종료 후에도 전사자 유해발굴을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민·관·군 합동 유해발굴사업은 2007년까지 이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속적인 유해발굴을 위해 미국의 사례와 같이 독자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부대 창설을 준비하였고 2007년 1월 1일, 국유단이 창설되어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¹⁷⁾ 국방부는 국유단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군편)를 중심으로 6·25전쟁 전사자와 관련된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였다.¹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국가영구사업이 되면서 전사자 관련 연구 또한, 자연스럽게 지속되었다. 박선주, 권현익 등의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했다시피 6·25전쟁 전사자를 연구하면서 인류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6·25전쟁 전사자를 6·25전쟁사 속에서 다루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김성보는 6·25전쟁 50주년 당시 이루어졌던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켜보면서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가능성과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¹⁹⁾ 그는 종전의 6·25전쟁사가 전투 과정만을 나열하는 전투사 혹은 특정 인물의 정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실상을 파악하

17) 고종성, 앞의 논문, 19-22쪽.

18) 국유단은 매년 현장의 발굴보고서와 유해를 감식한 감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만 군 관련 보고서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편 역시 그동안 축적된 6·25전쟁사를 기반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 전투별 전사자 유해 추정 지도를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해감식 결과 보고서』,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지도(DMZ/남한지역)』, 2009;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 지도(북한지역)』, 2010.

19) 김성보,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지 않고는 전쟁의 전체 실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적인 통계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출신 배경, 생각과 정서, 군내에서의 경험, 처우, 삶의 변화 등 군인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6·25전쟁사 측면에서 전사자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성보는 특히 전사자의 유품에 주목하여 전사자 유해 주변에 남겨져 있는 전쟁의 흔적들을 조사하는 연구의 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²⁰⁾

한편, 양영조는 6·25전쟁 격전지와 전사자 유해의 지역 분포를 비교하고 이를 기존의 전투사 연구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양영조는 2000년대부터 2016년까지 남한지역에서 발굴된 전사자 9,645구를 대상으로 지역적 분포를 분석해 볼 때 강원지역이 5,600구, 경북지역이 2,415구, 경기지역이 1,848구순으로 가장 많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전사자의 분포는 기존 6·25전쟁의 전투사를 비교적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6·25전쟁 당시 한국군이 전사자 수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사자 연구를 전쟁사 측면에서보다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²¹⁾

20) 김성보, 앞의 논문, 25-27쪽; 고종성, 앞의 논문, 6쪽.

21) 양영조, 『6·25전쟁과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239-241쪽; 고종성, 앞의 논문, 7쪽.

〈사진 1〉 한국군 전사자 고 유광연 일등 상사가 소지했던 카빈 소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사진 2〉 경북 영주시 평은리 출토 버클 (110725 영주 평은리 무명 427고지군 호165-유해1)



* 출처 : 고종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군사』 제123호, 2022.

고종성은 위와 같은 방향성에서 한층 더 나아가 전사자 유해발굴을 한국현대사의 관점 안에서 고찰하고자 시도했다. 전사자 유해발굴을 6·25전쟁사의 관점에서 다룰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료(史料)²²⁾에 관해 고종성은 양영조 등이 지적한 전사자 기록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우선,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한 전사자 유해와 유품이 사료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검토했다.

고종성은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전사자 수습 및 유해발굴의 경과와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6·25전쟁 초기 대표적인 전투지역이었던 경상북도의 전사자 유해 규모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영천과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보고된 전사자보다 더 많은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음을 확인하였다.²³⁾ 또한, 김성보가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던 전사자 유품(遺品)에도 주목하여 〈사진 1〉과 같은 총기류를 포함한 전사자 유품이 단순히 전

22) 사료(史料)는 인간의 과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되는 모든 자료로써 역사 연구 및 편찬에 필요한 문헌(文獻)이나 유물(遺物) 등을 포함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 6·25전쟁 전사자 규모에 관한 통계는 국방부에서 전사(戰史)를 종합하여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전사자 통계 대부분이 전쟁 중에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확도를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규모는 6·25전투사를 재검토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사자의 피아구분 및 신원확인의 참고자료 역할뿐만 아니라 1950년대 6·25전쟁기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연구 및 전시 등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진 2>와 같이 2011년, 경북 영주 고지군 출토 버클에 새겨진 민족지상(民族至上), 국가지상(國家至上)의 문구를 근거로 해당 버클이 1946년에 이범석(李範奭)이 결성한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 약칭 ‘족청’)의 것임을 밝혀내어 전사자 유품의 사료적 가치에 관해 검토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²⁴⁾

그러나 위와 같은 고종성의 연구는 전사자 유해와 유품과 같이 주로 유물(遺物)로 구분되는 출토 자료에 주목한 나머지 전사자와 관련된 문헌과 기록 등 직접적인 1차 사료(Primary Sources)에 관한 고찰이 결과적으로 배제된 측면이 있다. 한편, 국내외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전사자 송환 과정에 관해 천착한 연구도 있다.

조성훈은 정전협정 당시 회의록과 미군 자료를 중심으로 6·25전쟁 당사국 간의 유해교환 성과와 한계에 관해서 조명하였다.²⁵⁾ 조성훈은 우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전사자 유해발굴 및 송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²⁶⁾가 되는 정전협정 13항 ‘묘’목²⁷⁾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국 간 조율 과정

24) 고종성, 앞의 논문, 25-51쪽.

25) 조성훈, 「정전협정 직후 유해교환 성과와 한계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집, 2020.

26) 1953년 정전협정 이전 전쟁 사망자 및 포로에 관한 인도적 조치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한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전사자에 관해 육전과 해상에서의 약탈방지, 신원 판별, 사망 확인 및 매장, 사망자 인양 요청, 포로의 사망에 관한 제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정전협정의 항목들 역시 국제협약의 성격을 가진 제네바 협약의 인도적 조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박중섭은 전사자 유해발굴이 제네바 협약에서 정전협정으로 이어지는 인도법에 근거한 조치임을 밝힌 바 있다. 박중섭,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인도법논총』, 2006.

27) 매장(埋葬)지점이 있고 분묘(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에 그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

을 밝히는 한편, 정전협정 이후 설치된 분묘등록위원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1954년에 당사국 양측에서 이뤄진 전사자 유해교환²⁸⁾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성과와 한계를 고찰했다. 특히 조성훈은 상기 1차 사료를 통해 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각국 전사자의 수치를 근거로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의 아군 전사자 유해 규모를 추정해 향후 이뤄질 전사자 유해발굴에 기여하였다.²⁹⁾

이정선은 미국 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약칭 ‘NARA’) 소장 RG 92 문서군을 중심으로 미군이 자국의 전사자를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 본토로 송환한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³⁰⁾ 이정선은 전체 유엔군 전사자의 89%를 차지하는 미군이 한국 내 마련된 유엔묘지³¹⁾에 자국 전

국 지역의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 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上記)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 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172쪽.

28) 위와 같은 정전협정 제13항 ‘ㄴ’ 목에 따라 1954년 8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7차 본 회의에서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를 비준했다. 이 행정상 세목의 양해에 따라 1954년 9월 1일부터 양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유엔군 측 전사자 4,091구와 북한군과 중공군 측 전사자 13,528구가 일괄 상호 송환되었다. 박중섭, 위의 논문, 2006, 242-243쪽.

29) 조성훈은 이미 북한 포로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 지역의 국군포로 사망자의 유해발굴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 조성훈, 「6·25전쟁 중 북한 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 사망자 유해발굴 가능성」, 『군사』 제75호, 2010.

30)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당시 송환 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향도부산』 제40호, 2020.

31) 유엔묘지의 탄생과 건립 관한 연구는 국립묘지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전사자 수습의 마지막 과정인 안장과 예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엔묘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선미·우신구·차성환 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정성운,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점 -묘역의 공간구성과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제38호, 2019; 이정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엔기념공원의

사자를 안장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 배경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정선은 NARA의 RG 92 문서군 등을 통해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Policy of Concurrent Return of Bodies)의 존재를 확인하고 일본 고쿠라(小倉)에서 실시한 미군 전몰장병의 신원확인 및 감식 그리고 송환과 관련된 1차 사료를 국내 학계에 처음으로 밝혔다.³²⁾

〈사진 3〉 6·25전쟁기 한국-일본간 전사자 유해 이동 경로



* 출처 :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항도부산』 제40호, 2020, 298쪽.

유산 해석 전략 연구 : 벨기에·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 사례를 참고로, 『문화정책논총』 34, 2020;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5~1960년을 중심으로-」, 『군사』 제119호, 2021; 「1951년 유엔묘지 전몰장병 헌정식 -1950~1951년 임시 유엔묘지의 통합에서 헌정식에 이르는 과정 고찰-」, 『항도부산』 제42호, 2021; 전성현, 「한국전쟁기 유엔한국묘지(적군묘지)의 구성과 의미」, 『사회와 역사』 제132집, 2021.

- 32) 미국이 자국 전사자를 본토로 송환하기 위해 일본 고쿠라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은 이전에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이상호 역시 이정선과 비슷한 시기에 군편의 공간 사(公刊史)를 저술하며 언급하였다. 최용호 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13, 12쪽; 이상호, 『6·25전쟁기 유엔군 군사지원체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 243쪽. 그러나 이정선은 위와 같은 언급에 그치지 않고 고쿠라에서 실행된 전사자 감식과 송환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여 미군의 전사자 송환 정책이 어떠한 정치·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정선은 <사진 3>과 같이 한반도 각지의 미군 전사자 유해가 부산을 거쳐 일본 고쿠라 항을 경유하여 미국 본토로 이송되는 경위를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1951년 1월 일본 규슈 고쿠라 부대(Camp Kokura)에서 미국 영현 등록 업무가 개시되고 미 군사상 최초로 해외 전장지에서 전사자 유해 수습과 본국 송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 과정에서 미 극동사령부 병참단 직할 영현등록부대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쿠라 부대 내에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식별반(Central Identification Unit, 약칭 'CIU50')이 설치되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특히 전사자 신원확인 및 유해 감식 업무에는 극동사령부와 미 전역에서 파견된 사체 방부처리 기술자(embalmer) 그리고 유럽, 미국, 일본의 인류학자 등 현재와 유사한 전문 감식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³³⁾

전사자 유해발굴의 활성화는 곧 6·25전쟁 전투사의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박동찬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시기별 양상과 특징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기존의 화살머리고지는 1952년 10월에 프랑스군이, 1953년에 한국군 제2사단과 중공군이 치렀던 고지쟁탈전 정도로 인식되어 있을 뿐, 관련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4월부터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의해 화살머리고지 전투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박동찬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지휘보고서와 전투상보 등을 중심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전황을 폭넓게 살펴보며 약 2년간 총 4차례 이뤄진 화살머리고지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와 더불어 철원지역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음을 강조했다.³⁴⁾

33) 이정선, 앞의 논문, 2020, 282-301쪽.

34) 박동찬, 「1951~1953년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시기별 양상과 특징」, 『6·25전쟁과 철원』, 태봉학회, 2020. 해당 연구에서 박동찬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화살머

또한, 미국의 1차 사료와는 별개로 국내에 산재한 다양한 사료로 전사자를 바라보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이윤정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순직경찰관 합동추도회 사진첩을 중심으로 경찰 전사자의 의례 과정을 고찰했다. 이윤정은 경찰 전사자의 예우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사진 자료에 수록된 경찰 전사자 위패 등을 분석하여 그동안 포괄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경찰 전사자들의 시기별 수치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윤정 역시 새로운 사료를 기존 사료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사진첩의 사료적 가치를 검토함으로써 한국군보다 상대적으로 사료가 부족한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자 연구에 이바지했다.³⁵⁾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사료와 기록의 부족이 지적되자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공간적으로는 국내를 넘어 국외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사료의 범위를 보다 다양화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며 사료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4. 현장을 통한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6·25전쟁 ‘전사자’의 기록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사료 발굴의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사자 ‘유해발굴’ 역시 전사자를 책임지는 국가 차원의 보훈적 예우임과 동시에 전사자를 연구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리고지 전투가 유해발굴사업을 계기로 주목받았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존 연구에 더하여 국내외 사료를 통해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35) 이윤정, 「한국전쟁기 경찰 전사자 의례와 기록사진」, 『한국연구』, 2022.

2007년 창설된 국유단은 전사자 유해발굴의 과정을 조사 및 탐사 - 발굴 및 수습 - 신원확인(감식) - 후속조치(안장 및 송환 등)와 같이 총 4단계로 나누고 있다.³⁶⁾ 특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사자 유해발굴의 모든 과정은 전사자 유해와 유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에 의한 문화재³⁷⁾ 발굴기법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곧 고고학 발굴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한국의 고고학적 과거를 연구하는 한국고고학은 한민족 혹은 한국문화의 연원이 된 다양한 역사·문화적 단위의 실체 확인과 성격 규정을 중요한 연구목적의 하나로 삼는다.³⁹⁾ 이번 장에서는 유해발굴에 고고학이 도입되는 전개 과정과 한국고고학이 현재의 유해발굴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본격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고고학적 시각에서 검토한 연구자로는 안신원이 있다. 안신원은 유해발굴을 전사자 유해발굴과 민간인 유해발굴로 구분하고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유해발굴에 대해 미국, 남미 등 해외 유해발굴 사례와 비교하며 고고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안신원은 고고학이 다루는 주된 연구주제인 죽음과 유해발굴의 접점을 강조하며 고고학은 지금까지 죽은 자를 통해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재구성하고 과거사의 단면을 밝혀내고자 노력했으므로 6·25전쟁 전사자 연구 역시 고고학적 맥락 속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⁴⁰⁾

3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유해발굴 추진절차’ (www.withcountry.mil.kr / 2023.10.5. 검색)

37) 2023년 7월 18일부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받아온 문화재(文化財)의 명칭이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변경되었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3.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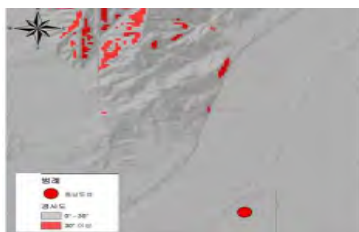
38) 최용호 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13, 24쪽.

39) 『한국고고학강의』, 한국고고학회, 2007, 20쪽.

〈사진 4〉 통영시 항공사진 시기별 비교



〈사진 5〉 풍납토성의 경사도 분석



* 출처 : 김인수,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을 활용한 전사자 유해발굴」, 2014,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또한 안신원은 전사자 유해발굴의 최우선 목표가 신원확인(신원확인)과 전사자 유해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유해를 제외한 매장 방법, 매장 행위, 매장 환경 등의 고고학적 정보가 상대적으로 차순위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⁴¹⁾ 이러한 지적 이후 국유단 소속이었던 김인수는 고고학에서 진행 중인 매장문화재 조사방법들을 적용하여 전사자 유해발굴의 고고학적 전문성을 재고하고자 했다. 김인수는 지표조사 - 확인조사 - 발굴조사 - 후속조치 등 매장문화재의 발굴 절차를 전사자 유해발굴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진 4, 5〉와 같이 항공사진과 GIS(지리 정보 체계)를 통한 경사도 분석 등 고지형환경분석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검토했다.⁴²⁾

이에 국유단은 창설 이후 위와 같은 학계의 지적을 반영하여 고고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했고⁴³⁾ 전문성을 갖

40) 안신원, 「유해발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미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 제7-1호, 2008.

41) 안신원, 앞의 논문, 85-86쪽.

42) 김인수,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을 활용한 전사자 유해발굴」, 고려대학교 고고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43) 국유단은 현재 계획운영처 / 조사발굴처 / 신원확인처 / 감찰실 / 지원대대 등 크게 5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위 부서 중 발굴은 조사발굴처, 감식은 신원확인처

춘 발굴팀장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한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최인건은 국유단에 근무하면서 전사자 유해발굴의 축적된 성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⁴⁴⁾

최인건은 6·25전쟁 당시 전투흔적(교통호·개인호 등)이나 전사자 유해, 유품 등도 과거의 상황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문화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적-전투지역 / 유구-전투흔적 / 유물-유품과 같이 고고학적 매장문화재의 개념에 전사자 유해발굴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기법을 적용하여 유해를 정밀 노출하고, 기록 후 수습하는 과정을 볼 때 전사자 유해발굴을 매장문화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인건은 2019년부터 비무장지대(DMZ)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에 참여하여 발굴현황을 학계에 보고한 점이 주목된다.⁴⁵⁾

위와 같이 고고학 연구자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에 고고학적 조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전사자 유해발굴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고민도 시작했다.

에서 담당하고 있다. 감식 분야는 2007년 고고학, 인류학 등 관련 전공의 민간 감식전문가(감식관) 5명이 채용된 이후 꾸준히 전문인력을 채용해왔다. 발굴 분야는 각 팀의 발굴팀장을 관련 집체교육을 받은 부사관이 전담했다가 고고학 전공자도 점차 채용하는 추세이다. 최용호 외, 앞의 책, 2013, 235쪽; 국방부 유해발굴심단, 『유해발굴 20년사』, 2021, 12쪽.

44) 최인건 외, 「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한국고고학에서 다양성의 이해』, 한국고고학회, 2020; 최인건 외, 「현대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근현대고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한국고고학회, 2022; 최인건, 「도서지역에서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국민방위군 사건을 중심으로-」, 『2023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문』 2, 2023;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본 6·25전쟁 문화유산」,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고고학으로 본 권력과 공간』, 한국고고학회, 2023.

45) 최인건 외, 위의 글, 2022.

대표적으로 김동일은 한국 근현대 사건들과 산업화 과정 역시 고고학에서 다뤄야 할 분야로 보고 이를 위한 고고학 용어의 정립을 위해 1950년대 영국에서 제시되었던 ‘산업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⁴⁶⁾의 개념을 제안했다. 김동일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업문화의 유산을 이해하기 위해 성립된 산업고고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통해 한국 근현대고고학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한국고고학이 1961년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고고학을 교육하기 시작한 이래 국내외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고 수용해왔으므로 산업고고학 역시 선사고고학, 역사고고학, 동물고고학 등과 같이 고고학의 하위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⁷⁾

〈표 1〉 고고학의 시대별 하위 분야와 시기구분

분류	시대
선사고고학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역사고고학	삼국시대(가야 포함)
	통일신라시대(발해 포함)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고고학 (산업고고학)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 출처 : 김동일,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 제88호, 2020, 180쪽.

46) 산업고고학이란 인류사회의 산업화 과정과 흔적을 기록·해석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조선후기부터 크게 유형과 무형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적 대상으로는 공장, 제련소, 교량 등의 건축 및 구조물과 그 외 장소, 기계 지도 재료 등이 포함되며 무형적 대상으로는 도시경관, 기술, 인물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박재민·성종상,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1, 2012.

47) 김동일,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 제88호 2020.

김동일은 산업고고학이 고고학의 하위개념이지만 동시에 현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필연적으로 근현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된 근현대 유산의 경우, 형식학적인 분류, 절대연대의 결정, 용도 파악이 불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기존 고고학의 개념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동일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고고학의 시간적 범위를 현재 한국근현대사의 범위와 동일하게 1876년 개항부터 현재까지로 보았는데 이에 따라 김동일은 전사자 유해발굴 역시 <표 1>의 산업고고학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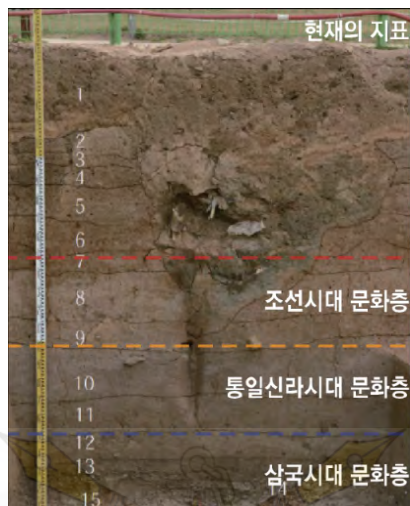
김동일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상황에 맞는 산업고고학의 개념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근현대고고학(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⁴⁹⁾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⁵⁰⁾

48) 앞의 논문, 177-181쪽. 김동일과 이기성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지만, 유해발굴 분야는 일본 등지에서는 전적고고학(戰蹟考古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적고고학은 전쟁 및 그 흔적과 관련된 고고학의 하위 분야이다. 여기서 전쟁 흔적이란 일본에서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유산을 말하며 한국의 경우는 전사자 유해발굴 관련 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49) 김동일의 연구에서도 보이는 경향이지만 근현대고고학 자체가 산업고고학의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산업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과 근현대고고학(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용어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정립 중이다.

50) 김동일, 「근현대 고고학의 필요성과 연구방향성 제언」,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기술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022.

(사진 6) 문화층(文化層)의 구분



* 출처 : 국립경주박물관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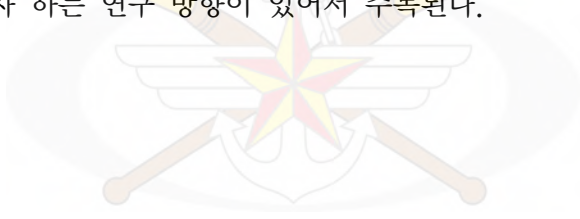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gymuseum/22163328414> 2023.10.5. 검색)

이기성은 근현대고고학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근현대 유적 발굴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기성은 그동안 근현대고고학이 새로운 연구 분야로 주목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이유로 고고학 연구자들이 근현대 유적을 고고자료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사진 6>에서 보는 것처럼 고고학에서는 유적의 층위(層位)를 볼 때 시대별로 문화층(文化層)을 구분하는데 이 문화층에서 해당하는 유구를 노출하고 유물을 발굴한다. 그런데 근현대 관련 건물지나 유물은 모두 지표층(地表層)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고고학 연구자들은 이것을 유적으로 보기보다는 근현대의 교란층(攪亂層)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⁵¹⁾

51) 이기성, 「근·현대고고학과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고고학회

위와 같은 인식에 관해 이기성은 근현대 유적이 항상 남아 있는 것도 아니며, 일본 등 해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근현대 유적을 통해 문헌이나 사진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당시의 사회상을 밝힐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현대고고학의 인식을 재고하는 한편, 근현대고고학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⁵²⁾

언급한 바와 같이 전사자 유해발굴 등 근현대 발굴 자료의 해석을 위해 한국 고고학계가 근현대고고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³⁾ 한편, 위와 같은 근현대고고학의 인식과 달리 새로운 방법론으로 근대고고학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이 있어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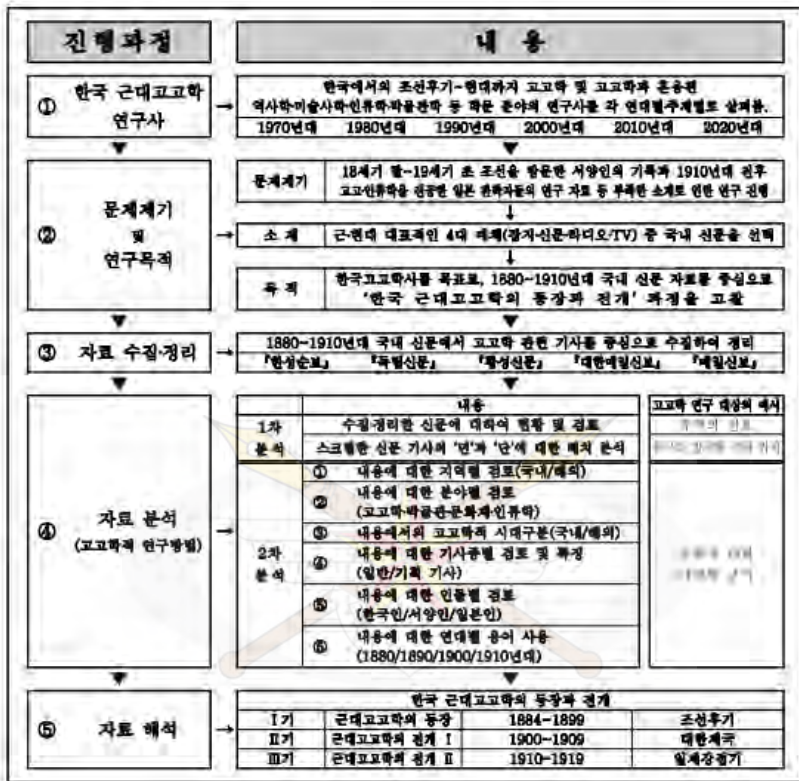


제6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근현대고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한국고고학회, 2022, 35-37쪽.

52) 위의 글, 38-45쪽. 이기성은 2010년경부터 한국고고학회가 문화재청 측에 일제강점기 건물지 등을 포함한 근현대 유적도 매장문화재 조사 실시 기준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근현대 유적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3) 한국고고학회 제도교육개선위원회는 ‘근현대고고학’을 한국연구재단 학술 표준 분류 체계 추가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고고학회, 「2024년도 제1차 평의원회 회의 결과」, 2024.

〈표 2〉 한국 근대고고학의 연구방법론



* 출처 : 김병철, 『한국 근대고고학의 등장과 전개』,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10쪽.

김병철은 고고학사(考古學史)에서는 최초로 한국 근대고고학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고고학적 방법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표 2〉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병철은 고고학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적(遺蹟), 유구(遺構), 유물(遺物)의 개념⁵⁴⁾을 주로 한국

54) 유물(遺物)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유구(遺構)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유적(遺蹟)은 유물, 유구의 공간적인 집합이다. 대부분 유물이 남아있는 밀집도나 빈도수에 의해 유적의 범위가 정해진다. 최성락, 『고고학 입문』, 학연문화사, 2005, 91~93쪽.

근현대사에서 1차 사료로 인식하는 신문자료에 적용하여 고고학적 방법론으로 문헌 자료를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김병철은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등 1880-1910년대 신문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고고학 관련 기사들을 해제(解題)하면서 한국 근대고고학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심도 있게 연구했다.⁵⁵⁾

〈표 3〉 근현대고고학을 바라보는 연구자별 관점

번호	구분	최인건 (현대 매장문화재, 2022)	김병철 (근대고고학, 2021)
1	유적 (遺蹟, Site)	전투지역 (고지군 등)	신문(원문)
2	유구 (遺構, Features)	전투흔적 (전투호/교통호 등)	신문기사(스크랩)
3	유물 (遺物, Artifacts)	전사자 유품	신문기사의 내용
기타	연대측정 (절대연대)	-	신문기사의 날짜

* 출처

- 최인건 외, 「현대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2022
- 김병철, 「한국 근대고고학의 등장과 전개」,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위와 같은 김병철의 새로운 관점은 〈표 3〉과 같이 유적을 현장의 전투지역, 유구를 전투흔적, 유물을 전사자 유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인건의 시각과 비교된다.⁵⁶⁾ 이와 같은 흐름은

55) 김병철, 「한국 근대고고학의 등장과 전개」,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56) 김병철은 근대고고학의 전개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국유단 소속 발굴병으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의 고고학적 성과를 검토하기도 했는데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해서는 최인건의 접근방식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김병철, 「국방부 유해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성과와 검토」,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기술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022.

향후 근현대고고학의 개념이 정립되고 연구성과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추이라고 볼 수 있다.

5. 6·25전쟁 전사자 연구의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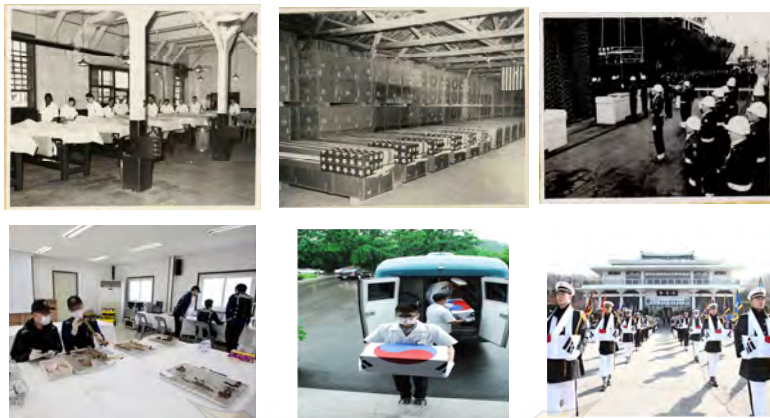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와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사료’와 ‘현장’이라는 주제별로 6·25전쟁 전사자 연구의 향후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양영조(2016), 강인철(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지만 6·25전쟁기 한국군은 전쟁 중 전사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예우할 것인지에 관한 경험 없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전사자에 관한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했는데 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사료를 발굴(發掘)하고 해제(解題)하여 연구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이고 후자는 다양한 범주의 사료를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하여 사료적 가치를 탐색하는 방향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정선(2020)의 연구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다음 〈사진 7〉의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7〉 1950년대(상)와 2020년대(하) 전사자 유해발굴 감식 및 의례 비교



* 출처 : NARA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유해발굴 추진절차' (www.withcountry.mil.kr / 2023.10.5. 검색)

6·25전쟁기 일본 고쿠라 항에서 감식과 신원확인을 마친 전사자 유해는 입관을 거쳐 배편으로 1951년 3월부터 송환을 시작했으며, 1952년 4월 1일에는 고쿠라에서 접수된 약 1만 6천여구의 전사자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되었다.⁵⁷⁾ 위와 같은 1950년대 미군의 감식과 송환 과정은 〈사진 7〉과 같이 현재 국유단이 취하고 있는 전사자 유해 감식 - 예우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유단은 현재의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약칭 'DPAA')⁵⁸⁾를 모

57) 이정선, 앞의 논문, 2020, 302쪽.

58) 미 육군 중앙유해감식소(CILHI)는 1973년 동남아시아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을 목적으로 태일랜드에서 창설되었던 부대를 1976년 하와이로 이전하면서 편성되었다. 2003년 합동특수임무부대(JTF-FA)와 통합해 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로 개칭되었다. 2016년에는 미국 국방성 전쟁포로/실종자 사무소(DPMO), 미 공군 생명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을 통합하여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

텔로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정선의 연구는 현재 전사자 유해발굴 - 신원확인(감식) - 송환 및 안장으로 이어지는 한미 양국의 전사자 보훈 체계가 1950년대부터 이미 정립되었다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향후 NARA 자료 등을 중심으로 외국의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여 부족한 전사자 기록을 보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료의 범주를 다양화하고 이를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하는 후자의 연구 방향은 고종성(2022)이 시도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고종성은 기존 문헌 자료 중심의 1차 사료와 더불어 전사자 유해 정보와 유품 등도 하나의 사료로 보고 그 가치를 검토해나가고 있다.

앞서 고종성이 확인한 전사자 유품 중에 족청의 버클은 6·25 전쟁기 족청계의 영향력과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사자 유품 등의 사료를 기존 1차 사료와 비교·검토하는 연구는 해당 전사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반드시 필요한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⁵⁹⁾

종자 확인국(DPAA)으로 확대 개편되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출범하였다. 고종성, 앞의 논문, 2022, 16쪽.

- 59) 조선민족청년단, 그리고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연구자로는 후지이 다케시가 대표적이다. 이후 김지훈은 위와 같은 족청계를 한국군 정훈(政訓)도입의 주체로 보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아직 완벽히 해제되지 않은 조선민족청년단 단보(朝鮮民族靑年團 團報)등 상당한 사료를 소장하고 있다.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012; 김지훈, 「창군기 한국군 정훈의 도입 과정과 중국국민당 정공의 변용」, 『역사와 현실』, 제104호, 2017; 후지이 다케시, 「조선민족청년단 단보와 자료적 가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3.

〈사진 8〉 지평리 인근 공산군 진지를 미군이 습격한 뒤 참호에 있는 미군과 중공군 유해(1951.02.17.)



〈사진 9〉 고 조응성 하사 유해 노출 (2021년 철원 백마고지 출토)



* 출처 : NARA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Aerial and Panoramic Photographs of Various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1942 - 1964; 최인건, 앞의 글, 2022, 22쪽.

한편, 전사자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전사자 ‘유해발굴’ 분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유해발굴을 근현대고고학의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심층적인 연구가 축적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발굴(發掘)이란 본래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찾아서 파낸다는 의미와 더불어 세상의 알려지지 않은 유무형의 사실을 찾아낸다는 뜻도 같이 담겨 있다.⁶⁰⁾ 사료발굴과 유해발굴 역시 특정 학문에 따라 발굴의 대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진 8〉은 양평 지평리 전투 중 확인된 미군과 중공군의 사진 자료이고 〈사진 9〉은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한국군 전사자의 유해 노출 사진이다. 위 두 가지 사진의 전투 장소와 전사자의 신원 또한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한국현대사를 연구하기 위한 1차 사료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현장의 흔

6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적은 앞선 문헌과 사진 등의 기록과는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근현대고고학 역시 발굴현장에 남아 있는 고고학적 맥락(Context)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근현대사의 사료와 기록 등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땅속에 혼재된 전사자를 혼동 없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결과에 관한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근현대사와 한국고고학간의 다양한 학제 간 교류가 필요할 것이며 각각의 연구방법론의 차용 역시 긴요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현대사와 한국고고학 분야 모두 공통적으로 구술사(口述史)를 활용하여 전사자를 연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성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⁶¹⁾

마지막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은 최근 역사학과 고고학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전사자 유해발굴을 예우와 보훈의 시각으로 바라본 보훈 분야⁶²⁾, 전사자 유해발

61) 전사자 유해발굴에 구술사를 적용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강정덕의 연구가 있다. 강정덕은 국유단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업무의 방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하지만 강정덕의 연구에서 적용된 참전 군인 혹은 전사자 유가족에 관한 증언은 구술채록과 활용 방법에 있어서 한국현대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술사 연구방법론과 차이점을 지닌다. 고고학 연구자들 또한, 근현대 유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유적 근처 주민들의 인터뷰를 수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역시 구술사 방법론으로 보기에는 매우 1차적이라고 볼 수 있다. 6·25전쟁 생존 장병이나 유가족 그리고 전투지역내 주민들의 증언(證言)은 전사자 연구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연구에 맡겨두고자 한다. 강정덕,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과 유해소재 조사업무의 역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62) 양병기, 「한국전쟁 시기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중원문화연구총서』, 2002; 이기오, 「보훈선양정책측면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연구」, 『군사』 제71호, 2009; 조석근,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한 정신적 가치 연구」, 『군사』 제71호, 2009; 길병욱, 「전시유해발굴 사업과 국가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6권, 2010; 최용호·오홍국, 「6·25전사자 유해발굴과 호국용사 명예선양 방안」, 『한국보훈논총』, 2015; 윤지원,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2022.

굴을 통해서 얻은 각종 데이터를 축적하는 전사자종합정보체계(KIATIS : Killed in Action Information System)를 비롯해 관련 기록의 보관과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기록학 분야⁶³⁾, 전사자 유품을 보존처리하고 연구하는 보존과학⁶⁴⁾, 그리고 3D 스캔과 VR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미래지향적인 연구까지 이뤄지고 있다.⁶⁵⁾ 본고에서 이에 관한 연구성과를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역시 다양한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융합적인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63) 김민정, 「유해발굴 조사기록의 관리방안 연구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기록물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9; 심종보, 「한국전쟁 유해 발굴사업 관련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김상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조사기록체제의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사학과 기록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2022; 김세현, 「전사자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2023; 변선영, 「2020년 육군 6·25전쟁기록의 유형과 가치 -육군 6·25전쟁기록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2020; 「한국전쟁기 경남 함양군 전쟁 기록 연구 : 육군의 6·25전쟁 군사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3.

64) 문화재청은 전사자 예우 조치의 일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2020년부터 매년 주요 전사자 유품을 국유단으로부터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담당하는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3.9.1.” 이에 2020년을 전후하여 전사자 유품에 관한 보존처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성과는 아래와 같다. 조하늬 외,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수습 철제 총기류의 보존처리와 탈염처리 방법 고찰」, 『보존과학회지』, 2021; 양의진 외, 「대전 보훈공원 전시실 소장 6·25 전사자 유품의 과학적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연구』, 서울역사박물관, 2021; 박민선 외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과학적 보존 : 지상작전사령부 소장 지역유품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022; 오승준·위광철, 「비무장지대 출토 군화의 형태 복원을 위한 3차원 디지털 기술의 적용 및 보존처리」, 『문화재』, 2023; 국립문화재연구원,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23; 『DMZ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유품 보존처리』, 2024.

65) 정상훈, 「유해발굴감식단의 교육훈련을 위한 VR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2; 안형기 외, 「전쟁 문화유산 디지털 재현을 위한 방독면 3D 가상 복원 및 융합 활용 연구」,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2023.

6. 맺음말

지금까지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과제를 진단해보았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은 단어 그대로 6·25전쟁 당시 전사한 ‘전사자’를 ‘유해발굴’이라는 방식으로 연구한다는 의미에 다르아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6·25전쟁 전사자의 사회적 인식 변화 양상을 소개하는 한편,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사료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의 연구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전사자를 연구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인 ‘유해발굴’에 관해서는 한국고고학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전사자 유해발굴은 당초 인류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초기 연구가 시작됐다. 그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보는 한편, 국민의 사회소속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해석했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사료와 기록의 부족이 지적되자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공간적으로는 국내를 넘어 국외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범주의 사료와 기존 연구 간의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며 사료적 가치를 탐색했다.

한국고고학 역시 인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재구성하고 사회의 과거사를 밝혀내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과거

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과정까지도 고고학에서 다뤄야 할 분야로 판단한 고고학 연구자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에 고고학적 조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해외 산업고고학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근현대고고학’의 시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연구들은 학제 간 교류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비교·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6·25전쟁 70주년인 2020년을 전후로 전사자 유해발굴의 범위가 비무장지대(DMZ)까지 확장되는 등 성과가 축적되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보고되며 전사자 연구가 다양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 등에서 남·북과 미·북의 정상들이 모두 각국의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을 합의하면서 전사자 유해발굴 문제는 전쟁 종식의 종착점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유해발굴은 물론, 한·중 유해발굴 송환 사업에 이어 미·중 유해발굴 사업에 관한 협의 또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⁶⁶⁾

정전협정 70주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전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6·25전쟁의 전장정리(戰場整理)⁶⁷⁾ 즉, 6·25전쟁의 진정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66)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부터 중국과 협의를 거쳐 국내에서 발굴한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미국이 한·미·중 3국이 유해발굴 관련 과학·기술 교류에서 시작해 신뢰가 쌓이면 6·25전쟁 전사자의 공동 유해 조사·발굴까지 나아가는 방안도 구상해 한국에 제안한 바 있다. 「중국, 자국 내 2차대전 미군 유해 발굴 협력 4년여만에 재개」, 《연합뉴스》, 2024년 2월 29일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36594?sid=104>)

67) 이상호, 앞의 논문, 106쪽.

〈참고문헌〉

1. 자료

NARA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NARA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Aerial and Panoramic Photographs of Various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1942-1964.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2. 공간사(公刊史) 및 보고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지도 (DMZ/남한지역)』, 2009. <http://uci.or.kr//G901:A-0007155484@N2M>

_____,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 지도(북한지역)』, 2010. <http://uci.or.kr//G901:A-0006345518@N2M>

_____, 『6·25전쟁기 유엔군 군사지원체제』, 2022.
<http://uci.or.kr//G901:A-0010873745@N2M>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해감식 결과 보고서』, 2013.

_____,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http://uci.or.kr//G901:A-0006452306@N2M>

_____, 『유해발굴 20년사』, 2021.

<https://doi.org/10.978.8997748/501>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4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2004.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5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2005.

3. 저서 및 단행본

- 강인철, 『전쟁과 희생 :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http://uci.or.kr//1410-ECN-0199-2020-334-000027663@N2M>
- 다카하시 데쓰야 저, 이목 옮김, 『국가와 희생』, 책과 함께, 2008.
<https://doi.org/10.978.8991221/338>
- 박선주, 『생물인류학』, 충북대학교출판부, 2003.
<https://doi.org/10.978.897295/1797>
- 조지 L. 모스 저, 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 : 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문학동네, 2015. <https://doi.org/10.978.89546/35752>
- 최성락, 『고고학 입문』, 학연문화사, 2005.
- 하상복, 『죽은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4.
<http://uci.or.kr//G901:A-0006468651@N2M>
-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2007.

4. 논문

- 고종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군사』 제123호, 2022.
<http://uci.or.kr//G901:A-0010793149@N2M>
- 김동일,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 제88호 2020.
<http://doi.org/10.47417/yar.2020.88.175>
- 김병철, 「한국 근대고고학의 등장과 전개」,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http://uci.or.kr//I804:46002-000000023150@N2M>
- 김성보,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중원문화연구총서』, 2002.
<http://uci.or.kr//G701:A-00123514765@N2M>

- 김인수,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을 활용한 전사자 유해발굴」, 고려대학교 고고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노용석, 「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 한국의 전사자,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발굴 연구」,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http://uci.or.kr//G901:A-0002864481@N2M>
- 박동찬, 「1951~1953년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시기별 양상과 특징」, 『6·25 전쟁과 철원』, 태봉학회, 2020.
<https://doi.org/10.978.896246/4368>
- 박선주, 「6.25전사자 유해발굴조사 : 6.25 전사자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 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http://uci.or.kr//G901:A-0002007425@N2M>
- _____,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http://uci.or.kr//G901:A-0002310145@N2M>
- 박중섭,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인도법논총』, 2006.
<http://uci.or.kr//I410-ECN-0101-2010-338-003183940@N2M>
- 안신원, 「유해발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미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 제7-1호, 2008.
<http://uci.or.kr//G901:A-0003448767@N2M>
- 이남우, 「전시체제의 한국군 상·장례 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http://uci.or.kr//G901:A-0005244870@N2M>
-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제116호, 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0-911-000839510@N2M>
- 이윤정, 「한국전쟁기 경찰 전사자 의례와 기록사진」, 『한국연구』, 2022.
<http://uci.or.kr//G901:A-0010930742@N2M>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40호, 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1021819@N2M>

조성훈, 「정전협정 직후 유해교환 성과와 한계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집, 2020.

<http://doi.org/10.33127/kdps.2020.42.1.197>

최호근,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전사자 송배 -플랑드르 지역의 군인 묘지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155호, 2022.

<http://uci.or.kr//G901:A-0011035362@N2M>

5. 발표문 및 논고

권현익, 「전사자 유해와 현대사회」, 『2004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 보고서』,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4.

김동일, 「근현대 고고학의 필요성과 연구방향성 제언」,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기술의 고고학』, 2022.

김병철, 「국방부 유해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성과와 검토」,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기술의 고고학』, 2022.

박선주,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발굴과 보존」,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23.

양영조, 「6·25전쟁과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이기성, 「근·현대고고학과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근현대고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한국고고학회, 2022.

최인건 외, 「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한국고고학에서 다양성의 이해』,
한국고고학회 2020.

최인건·안순찬, 「현대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2022.

최인건, 「도서지역에서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국민방위군 사건을
중심으로-」, 『2023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문』 2, 2023.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본 6·25전쟁 문화유산」,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고고학으로 본 권력과 공간』, 한국고고학회,
2023.



<Abstract>

**Trends and Challenges in Research on Excava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 Focusing on Historical Records and Fields —**

Ko Jong Sung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article summarized research trends on excava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since the 2000s. Although the most of this study was done within the category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t also covered a number of recent works in adjacent fields such as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due to the nature of the top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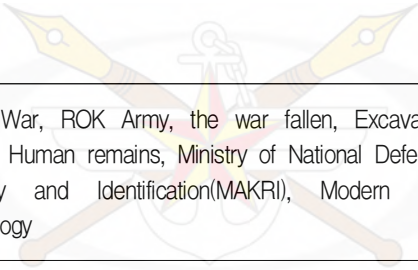
The early research of the topic had begun by anthropologists; they viewed the subject as a major symbol of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while seeing it as an example of the people's sense of social belonging as well. They had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various approaches in terms of historical as well as anthropological knowledge for in-depth research.

As the above prior research pointed out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s on the "dead" of the Korean War, researchers o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re discovering overseas records, while internally diversifying the scope of records and value them through comparison and review with existing studies.

Korean archaeology has also tried to reconstruct human cultural behavior and uncover the past history of society through human death. The researchers who judged not only the past but also modern & contemporary processes as an area to be dealt with in archaeology

are trying to apply archae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hile also studying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 based on the concept of overseas industrial archaeology.

As research achievements were accumulated around 2020,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such as the excavation being expanded to the Demilitarized Zone (DMZ), some notable studies were submitted and the study itself began to be diversified. At this point of passing through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ease-fire, various studies on the subject help us to truly understand the Korean War by reviewing our attitude toward the deaths that inevitably accompany the war.



Keywords: Korean War, ROK Army, the war fallen, Excavation of the human remains, Human remain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MAKRI), 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187-230
<https://doi.org/10.29212/mh.2024..130.18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 역할에 관한 연구

-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메시지」를 중심으로 -

문관현 | 연합뉴스 기자

목 차

1. 머리말
2.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
3.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4. 대한민국 「메시지」 의미 분석
5. 맺음말

초 록 본 연구는 6·25전쟁을 배경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정세에 정통한 이승만 대통령은 부족한 병력과 재래식 무기에 매달리는 대신 미국과 유엔을 대상으로 전시외교에 주력해 국난 극복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유엔과 백악관, 극동군사령부 등을 무대로 숨 가쁜 외교전쟁이 전개됐고, 남북한 격돌을 유엔사와 공산세력 대결 구도로 끌어올렸다. 6·25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출범한 유엔사는 전쟁수행의 주체로서 공산세력의 침략을 물리치고 정전협정

서명에 성공했다. 출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1950년 6월 26일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는 유엔사 창설의 근거를 제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83호 결의안 작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제83호 결의안은 본문에서 “국제연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라며 우리 정부의 전시외교 노력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다. 호소문의 핵심 문구들을 안보리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6월 26일자 대한민국 「메시지」의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엔사 초기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가려졌던 대한민국의 노력과 희생이 제대로 평가받게 되면 향후 유엔사에서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6·25전쟁, 대한민국 메시지, 안보리 결의안, 유엔군사령부, 전쟁지도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머리말

본 연구는 6·25전쟁 초기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가 유엔사를 출범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 받지만,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오히려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야반도주한 무책임한 지도자처럼 비난받고 있다. 한국이 유엔사 설립에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작용했다면 유엔사에서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이하 한국 시간)¹⁾ 경무대에서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황보고를 받은 뒤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국제정세에 누구보다 정통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개입을 위한 전시외교(戰時外交)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²⁾ 이승만 대통령

1) 대한민국 표준시(KST)가 미국의 동부(EST)보다 14시간 빠르지만 미국이 서머타임을 적용하면 13시간차로 줄어든다. 한국 역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했기 때문에 미국 동부와 14시간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모든 시간대를 대한민국 표준시로 통일하며,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미국 또는 현지 시각을 병기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Q1=total&query1=%EC%9D%BC%EA%B4%91%20%EC%A0%88%EC%95%BD&x=0&y=0>(검색일: 2024.1.23);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p. 81.

2) 남정욱,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지도자 역할”, 『이승만과 6·25전쟁』,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2, 162쪽.

은 전쟁 발발 6시간여 만에 총력전(Total War) 양상으로 전개 되는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국가의 모든 능력과 각 분야의 전력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었다.

1950년 미국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 GNP의 40%를 차지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1947), 나토 창설(1949), NSC-68 봉쇄정책(1950) 등 외교국방정책으로 자유 진영의 리더로서 공산주의 정책에 맞서고 있었다. 미국은 유엔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했고, 유엔 집단안보의 발동·집행을 주도할 수 있는 독보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³⁾

독립운동과 정부수립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역량을 체감한 이승만은 폭풍처럼 거대하게 밀려드는 공산 파고를 넘을 힘은 일본 도쿄(東京)의 맥아더와 미국 워싱턴에 있음을 감각적으로 알아차렸고, 한국문제(The Korean Question)를 더 높은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릴 구상을 번개처럼 밀어붙이고 있었다.⁴⁾ 그야말로 “이승만의 전쟁”을 “세계전쟁”으로 격상시켜 유엔의 역사상 최초로 집단안보체제를 가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6·25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최고 지도자들이 북한군의 국지적인 공격에 대해 세계적인 규모로 해석을 부여한 사실이었다. 해리 S.트루먼 대통령은 만주(滿洲)와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사례와 똑같이 보았고, 북한군 배후에서 스탈린이 히틀러와 무솔리니, 일본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또한 그것을 유엔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애치슨 국무장관 역시 미국의 위신과 억제전략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3) 박홍순, “한국전쟁과 유엔의 개입(1950) : 과정과 배경”, 『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2004, 39-40쪽.

4)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146-147쪽.

있었다.⁵⁾

전시 국력운용에 관한 지표로서 전쟁지도(Conduct of War)는 전쟁수행을 위해 요강의 제정, 무력 발동에 따른 통수권의 행사,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간의 통합, 조정, 효율적인 통제 등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총역량을 전승 획득에 집중시키도록 조직화하는 지도 역량과 기술을 의미한다.

전시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첫날 전쟁지도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 뒤 외교채널을 통해 유엔한국위원단(UNCOK)과 주한미국대사관, 극동군사령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위기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주미한국대사관을 동원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하루에 두 차례 존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불러들여 전시대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이튿날 새벽 일본 도쿄(東京) 극동사령부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과 무초 주한미국대사에게 잇따라 긴급전화를 걸어 전쟁사태 발생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따지는 등 전쟁 초기의 흐름을 결정짓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⁶⁾

트루먼 대통령이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즉각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유엔대표부, 합동참모본부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저항 없이 한국이 점령된다면 미국의 방위선 주변부터 약

5)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政夫), 현대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미국의 개입과정』, 청계연구소, 1986, 88쪽.

6) 남정옥, "6·25는 무엇이었나? : 전쟁조건 고루 갖춘 김일성 악조건 투성이의 한국과 이승만", 『한국논단』272, 2012, 54쪽 ;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June 26, 1950, *FRUS 1950*, Vol. VII, pp.147-148 ;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New York : Dodd and Mead Company, 1954), p.295.

소국들이 차례로 공산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상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방어지역이 아닌데도 미국이 6·25전쟁 개입을 결정한 것은 대소 봉쇄전략과 제3차 세계대전 방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안보리는 1950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13일 동안 결의안 3건을 통과시켜 유엔사 창설의 토대를 마련했다. 소련이 중국의 대표권을 문제 삼아 불참한 상태였기 때문에⁷⁾ 안보리에서 미국이 제82호(S/1501)와 제83호(S/1511)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84호(S/1588)를 각각 발의하는 등 결의안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해달라고 권고한 제83호와 미군 주도의 다국적 통합군사령부 창설 구상을 제시한 제84호를 근거로 유엔사 깃발이 세워졌다.

〈표 1〉 유엔 안보리 결의안

	결의 82호(S/1501) ⁸⁾	결의 83호(S/1511)	결의 84호(S/1588)
날짜 (한국시간)	6월 26일	6월 28일	7월 8일
국문 제목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 요청에 관한 결의	한국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	국제연합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
영어 제목	The reques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	The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Unified command
적용현장	제39조, 제41조 잠정조치	제42조	

7)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p.222; Henry Kissinger, *On China*(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p.129.

8) 유엔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uncmil/Portals/46/Documents/Historic%20Documents/S_RES_82\(1950\)_E.pdf?ver=2020-03-01-195332-850](https://www.uncmil/Portals/46/Documents/Historic%20Documents/S_RES_82(1950)_E.pdf?ver=2020-03-01-195332-850)(검색일: 2024. 01. 06)

	결의 82호(S/1501)	결의 83호(S/1511)	결의 84호(S/1588)
주요 내용	-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파괴로 규정 - 적대행위 즉각 중단 및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 - 대북 원조제공 중단 요청	- 무력공격 격퇴를 위해 한국에 원조제공 권고	- 미군 주도 다국적통합군 설치 권고 - 미국에 지휘관 임명권 부여 권고 - 유엔기 사용 승인
투표 결과 ⁹⁾	9(찬성)-0(반대)-1(기권)	7(찬성)-1(반대)-2(기권)	7(찬성)-0(반대)-3(기권)

* 출처: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등을 참조해 필자 작성

6월 28일 통과된 제83호 결의안에 한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지원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 5번째 문단은 “(안보리는) 유엔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¹⁰⁾라고 명시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공식 문건에 대한민국의 지원요청 행위가 역사적 사실로 기록돼 있지만,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유엔에 호소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 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놓았던 미국은¹¹⁾ 국무부를 중심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대책회의를 거쳐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유엔사 창설 작업을 진

9) 1950년 당시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쿠바와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등 6개 비상임이사국 등 11개국 대표들로 구성됐다. 소련이 중국의 대표성 문제로 불참한 가운데 제82호 결의안에 유고슬라비아가 기권표, 제83호 결의안에 이집트와 인도가 기권표, 유고슬라비아가 반대표, 제84호 결의안에는 이집트와 인도, 유고슬라비아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p.221-238.

10)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p.223-224. 필자의 견해에 따라 굵은체 글씨로 처리.

11) 문관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20, 79쪽.

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6·25전쟁 초기에 ‘전쟁 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활발하게 전시외교를 벌였다는 사실을 조명한 국내외 연구자료와 학술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해당 사안을 언급하는데 그쳤을 뿐이고, 한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통사적 의미를 부여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박명림은 “(6월 26일) 14시에 다시 속개한 국회는 유엔과 미의회 및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했다”며 “메시지에서 한국 의회(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세계평화에 대한 파괴행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호소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¹²⁾

정진욱 역시「6·25전쟁 초기 정부의 전쟁지도: 행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중심으로」주제의 논문에서 국회가 “6·25 사변은 북괴의 불법 침략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중대 사태임을 지적하고 긴급 원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사태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를 수립할 것을 건의하는 비상시국에 관한 결의안과 38도선 인근 주민들에게 보내는 격려문이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으나 더이상 깊이 있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¹³⁾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지도를 집중 연구한 남정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과 유엔에 대해 북한군의 침략을 격퇴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뿐 어떤 내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설명하지 않았

12)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155쪽.

13) 정진욱, “6·25전쟁 초기 정부의 전쟁지도: 행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화랑대 논문집』12집 2권, 2019, 29쪽.

다. 또 “이승만이 무초 미국 대사와 맥아더 원수, 그리고 장면(張勉) 주미한국대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로 외교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강구했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해법 노력을 부각시켰지만 역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미국 대통령과 의회,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의 작성 주체를 국회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제헌 헌법상 이승만 행정부의 외교안보 부처 실무진이 제출해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안자와 비준 주체를 혼돈한 배경으로 풀이된다.¹⁴⁾

예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 아침, 한국 국회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유엔 총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며 한국 국회를 지원 요청의 주체로 묘사했다.¹⁵⁾

외무부 외교연구원은 1950년 6월 26일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연합 총회에 보낸 「멧세지」와 ‘대한민국 국회가 미합중국 대통령 및 하원에 보낸 1950년 6월 26일자 「멧세지」 전문을 각각 공개했다.¹⁶⁾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연합 총회와 미합중국 대통령 및 하원 등에 메시지를 전달한 주체로 각각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6·25전쟁이 발발하고 유엔사가 창설될 때까지 한 달 동안 국제사회 활동을 기록한 『유엔연감』 1950년 판(*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과 유엔의 공식문서시스템(<https://documents.un.org>) 미국 국무부의 Office of the Historian 홈페이지(<https://history.state.gov>) 등의 1차 자료들을 연구대상으로 활용했다.

14) 이에 대해 본 논문 아래 제3장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라. 대한민국 「메시지」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에서 상세히 기술.

15)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8, 동방문화인쇄사, 2004, 42쪽.

16)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외교의 20년』, 1967, 317-318쪽.

본 연구는 서론을 제외한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 이승만의 전시외교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6·25전쟁이 발발한 이튿날(6월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메시지」 내용을 정리했다. 제4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평가했고, 마지막 5장에서는 유엔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2.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주한미군 철수는 신생 이승만 정부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¹⁷⁾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1949년 5월 17일 워싱턴의 최종 결정을 통보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한안보정책이다. 남한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를 요청한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없어도 좋다”고 강조했다.¹⁸⁾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에 필요한 군원과 방위전략 구상을 밝혔다. 전략구상은 첫째 대서양조약과 유사한 태평양조약(Pacific Pact)의 체결¹⁹⁾, 둘째 한미 또는 다른 국가를 포함한

17)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사』 1, 395-402쪽.

18)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건국대 출판부, 2002, 314쪽.

19) 미 상원과 하원은 1950년 7월 11일 북대서양방위동맹과 유사한 태평양군사조약 체결을 권고할 것을 전원일치 가결시켰다. 군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8, 210-211쪽.

상호방위조약 체결, 셋째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가운데 미국의 우호 조항 재확인 등이었다.²⁰⁾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돋보인 업적은 외교 및 국가안보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보잘 것 없던 국가를 외교를 통해 건설하고 지탱해 나갔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받기 위한 승인외교, 6·25전쟁 당시 국가생존을 위한 전시외교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 최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6·25전쟁 기간은 대한민국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기간이었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보인 외교적 역량은 대한민국 생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²¹⁾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이양과 한국군 단독 38선 돌파 명령,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작전지휘권 이양이야말로 미국의 전쟁 책임을 극대화시킨 대전략이었다. 미국을 압박해 참전 결정을 이끌어내고 미군 주도 유엔사에 작전지휘권을 넘긴 전략은 전시외교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한 달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구상했던 미국의 참전과 미군 주도의 전쟁 수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됐다. 6월 30일 미국의 (지상군) 참전결정이 있었으며, 전쟁에 참가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 전체 병력을 공식적으로 지휘하게 된 것은 7월 25일이었다. 전쟁 승리를 위한 결정적 장치가 전쟁 발발 1개월 만에 완성됐다고 말해도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²²⁾

한미 양국군은 1950년 7월 1일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

20) 미국은 자국의 정책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국의 지원 요청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May 17, 1949), *FRUS 1949, Vol. VIII*, part2, pp. 1029-1030.

21) 이춘근,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 『이승만과 6·25전쟁』,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2, 206-207쪽.

22) 앞의 책, 219쪽.

요한 주요 합의를 이뤄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군은 가능한 오래 한강선을 지탱한다. 한국군은 정부 국도 연변에서 적을 저지하면서 미 제24보병사단의 진출을 엄호한다” 등이었다.²³⁾

유엔사가 미 극동군사령부를 모체로 출범하면서 극동군사령부 예하에 미8군사령부와 극동해군사령부, 극동공군사령부를 지상군과 해군, 공군 사령부로 활용했다. 미8군사령부가 일본 도쿄에서 한국 대구로 이전해 7월 13일부터 지상군작전을 통합지휘하게 됐다.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같은 날 대구에 지휘소를 설치하고 이튿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7월 14일 미8군사령부와 육군본부가 합동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통합작전체제를 논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명령을 받으라고 지시한 뒤²⁴⁾ 무초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전달된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공동 군사노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유엔의 육해공군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 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인은 현 적대행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다.²⁵⁾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명시한대로 7월 14일을 기점으로 모든 지휘권(command authority over all)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²⁶⁾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7월 17일 미8군사령관

2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2, 1979, 116쪽.

24)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고려서적, 1996, 171쪽.

25)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1979, 169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2, 991쪽.

에게 한국군 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겨줬다.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작전지휘권 이양절차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²⁷⁾

맥아더 사령관은 7월 18일 전달한 답신을 통해 모든 지휘권 대신 인사와 군수 분야를 제외한 작전지휘권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 서한과 맥아더 사령관 회답은 7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돼 안보리에 제출됨으로써 공식화됐다.²⁸⁾

정일권 총참모장은 육군본부에서 참모회의를 소집해 김홍일 제1군단장과 김백일 제2군단장에게 작전지휘권 이양은 유엔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각 사단장에게 일제히 하달했다.²⁹⁾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9월 1일 정책연설에서 한국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통일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화답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6)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권 이양에 관한 서한을 작성해 우선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보여주고 견해를 청취했다. 정일권 총참모장이 “우리 국군의 자체 편제라든지, 인사 문제는 절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전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불편도 각오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문제가 왜 없겠나. 나도 그 점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불편을 견뎌라도 그들과 작전을 원만히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170-171쪽.

27) 김명기, “국제법상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공헌의 유효성”, 『육사논문집』15, 1976, 314쪽.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미 군사관계사』, 471쪽.

29)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5, 78쪽.

3. 국제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가.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10시경 비원(祕苑)의 반도지에서 낚시를 하다 경무대경찰서장³⁰⁾ 김장흥 총경으로부터 북한의 남침 상황을 보고 받고 즉각 경무대로 복귀했다.³¹⁾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초로 전황을 보고 받은 뒤 임시국무회의 소집을 명령했다. 그는 신성모 장관의 보고를 접하면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미국의 지원과 유엔의 개입을 위한 전시외교 카드를 선택했다.

이어 오전 11시 35분 경무대를 예방한 무초 주한미국대사와의 대담에서 “10일 이내에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남녀노소 모두가 일어나 막대기와 돌맹이를 들고라도 싸우겠다”는 총력전 의지를 내비쳤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제2의 사라예보가 되는 것을 피해왔지만, 당시 위기가 한국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 발 더 나가 김일성이 먼저 38선을 파

30)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 경무국(경찰청 전신) 산하 경위부가 이승만 대통령 호위와 관저 경비를 담당했다. 그러다 1949년 2월 경무대경찰서를 신설해 해당 업무를 이관했다. 같은 해 12월 내무부 훈령으로 경호 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 ‘경호(警護)’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폐지됐으며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에 해당한다. 경찰청, 『경찰 50년사』,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106-107쪽.

31) 프란체스카 도너 리, 조혜자 옮김,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기파랑, 2010, 22쪽.

기했으니 전쟁을 이용해 한반도 통일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대응 구상은 이날 오후 1시 미국 워싱턴 장면 주미한국대사와의 긴급전화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황당한 어조로 “북한 적군이 탱크까지 가지고 대거 침입해 국운이 위급하니 즉시 **미 대통령과 유엔에 호소해** 구국의 방도를 강구하라”³²⁾고 명령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성에 따라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곧바로 미국 대통령과 유엔을 대상으로 원조요청 작업에 착수했고, 실제로 유엔 안보리와 백악관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면 주미한국대사 이름으로 제안된 「유엔 총회 및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한국 국회에서 채택됐고,³³⁾ 미 국무부에 신속히 전달됨으로써 유엔 결의안 작성에 반영됐다. 수신 대상을 미 대통령과 유엔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 대통령의 지시에 전시외교의 핵심 사항이 담겨 있었고, 유엔 역사상 최초의 전투사령부 창설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유엔의 집단안보체제 특성과 슈퍼파워로 떠오른 미국의 힘을 이용해 슬기로운 국난 극복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무초 주한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다시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서울 천도론’을 거론하며 미국을 압박했다.³⁴⁾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도 (본인은) 떠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승만

32) 허동현, 『건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장면』, 분도출판사, 1999, 96쪽. 굵은 글씨체는 필자 강조.

33) 국회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제2대국회·제3대국회, 광명인쇄공사, 1971, 341쪽.

34) 온창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수도 대전 이전 발언을 무초 주한미국대사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였다고 설명했다.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 출판부, 2006, 125쪽.

대통령은 6월 26일 새벽 3시 일본 도쿄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쟁발발 사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따졌고,³⁵⁾ 4시 30분 무초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극동군사령관과 참모장에게 한국군에 필요한 전투기와 탄약 등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5시에 이승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애치슨 국무장관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통보하며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³⁶⁾

장택상에 이어 2대 외교사령탑에 오른 임병직 외무장관 역시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며 위기상황을 직감하고 장면 주미한국대사와 미 국무부, 국방부, 맥아더 극동군사령관, 트리그브 리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전화를 돌려 북한의 남침 소식을 알리고 신속한 원조를 요청했다. 임병직 장관은 6월 26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기대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³⁷⁾

경무대 비서 민복기와 고재봉, 황규면, 그 밖의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6일 외부원조 요청, 즉 대미 교섭에 바빠서 다른 일을 돌아볼 경황이 없었다. 심야 국무회의가 열렸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³⁸⁾ 당일 행적으론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에 잠시 들러 관계자들을 위로하는

35) 이승만 대통령은 전속 부관이 맥아더 사령관을 깨울 수 없다고 전화 연결을 거부하자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이 한 사람씩 죽어갈테니 장군을 잘 재우시오”라고 호통을 쳤다. 놀란 전속 부관이 전화연결을 하자 맥아더에게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당신 나라에서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졌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라고 무섭게 항의했다. 프란체스카 도너 리,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23-24쪽.

36)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26, 1950), *FRUS 1950*, Vol. VII, pp. 147-148.

37) 『조선일보』 1950년 6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8, 45쪽.

38)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162쪽.

한편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시상황을 체크했다.

북한의 전면도발 소식을 접한 국회는 6월 26일 즉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수습을 논의했으나 정부 당국조차 사태의 진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국회는 우선 유엔 및 미국 정부에 보낼 “6·25사변은 북괴의 불법침략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중대 사태임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채택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 사태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를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³⁹⁾

대한민국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 만에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메시지」 2건을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이름으로 각각 작성된 각각의 「메시지」는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호칭과 용어를 다르게 사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오전 1시 주미한국대사관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일이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 국군이 용감히 싸우긴 하나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즉각 장면 주미한국대사와 함께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군사원조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⁴⁰⁾ 장면 주미한국대사가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국회가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과 하원과, 유엔에 보내도록 승인한 “북한의 침략을 패배시키는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미국은 6월 29일 전쟁발발 이후 처음 개최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 정례회의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대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39) 국회 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제2대국회·제3대국회, 340쪽.

40) 헤럴드 노블, 박실 역, 『비록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 이승만·미대사관·워싱턴을 잇는 외교내막』, 정호출판사, 1983, 40쪽.

“우리는 이런 공격이 일어나자마자 이 사실을 즉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의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이런 사실을 유엔에 보고하는 일이 우리 최초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이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 전체의 견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회의는 6월 25일(미 동부 시각) 소집됐다. 그 후부터는 한국에서의 모든 행동은 유엔의 관할 아래 움직이게 됐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털어놨다.⁴¹⁾

트루먼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월요일(6월 26일)까지 한국으로부터 타전된 보고서들은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다. 도착한 메시지 중에는 국무부 전보 양식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의 원조요청 메시지(One from Syngman Rhee asking for help)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장면 주미한국대사가 이날 오후 이승만 대통령의 긴급 원조요청 메시지를 들고 백악관을 방문했다. 동시에 공식적으로 이날 오전 국무부에 도착한 국회의 원조 메시지를 휴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호소문을 나에게 가져온 한국 대사는 의기소침해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직전이었다”고 전달 당시의 백악관 상황을 설명했다.⁴²⁾ 장면 주미한국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직접 건넨 이 대통령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6월 25일 조조(早朝)를 기해 북한 공산군대는 남한에 대한 무력 침략을 개시하였다. 귀하 및 미합중국 하원은 우리 국민이 오늘과 같은 사건을 예기해 동방에서 민주주의 보루를 확보하고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군을 창설한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귀하에게 우리들

41) Paige, *The Korean Decision*, pp. 98-99; *New York Times*, June 29, 1950, p.10.

42) Raymond H. Geselbracht, *The Memoirs of Harry S. Truman : A Reader's Edition*(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2019), pp. 553-554.

을 해방하고 우리 공화국의 수립을 위해 귀하가 준 요긴한 원조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용감한 전투를 전개해가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당면해 우리들은 귀하의 가일층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이러한 세계평화 파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동시에 유효하고 적시적인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⁴³⁾

Beginning in the early morning of 25 June, North Korean Communist Army began armed aggression against the South. Your Excellency and the congress of US are already aware of fact that our people, anticipating an incident such as today's , established a strong national defense force in order to secure a bulwark of democracy in the east, and to render service to world peace. We again thank you for your indispensable aid in liberating us and in establishing our Republic. As we face this national crisis, putting up brave fight, we appeal for your increasing support and ask that you at same time extend effective and timely aid in order to prevent this act of destruction of world peace.⁴⁴⁾

이처럼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발송해 6월 26일 오후 8시 2분(미 동부 같은 날 오전 6시 2분) 국무부에 착신된 전문은 약간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트루먼 대통령의 표현처럼 소극적이고 감성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미 대통령과 하원에 보낸 호소문의 영문 번역본이라고 소개했다. 전문은 “오늘(6월 26일) 아침 평소보다

43)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 외교의 20년』, 318쪽.

44)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26, 1950), *FRUS 1950*, Vol.Ⅲ, pp.167-168.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국회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유엔 총회에 지원을 호소했으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제헌 헌법 제51조는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42조는 국회는 국제조약에 관한 조약,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해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다시 말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외교 안보 부처에 외국에 대해 원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고, 호소문은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쳤다. 국회는 호소문의 주체가 아닌 승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2대 국회는 제7회 회기(1950.6.19-6.27)⁴⁵⁾의 경우 개회 직후에 해당하는 1차(6월19일)와 2차(6월20일) 본회의 속기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중한 자료들이 모두 전쟁으로 분실되거나 훼손됐다. 서울을 떠나 부산에 정착하고 한 달 만에 개최된 제8회 회기(1950.7.27-11.25)부터 제대로 운영됐기 때문에 개전 초기의 국회 본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대한민국 국회의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

북한의 전면도발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국회는 6월 25일이 일

45) 제7회 회기(6.19-27)는 6월 19일(제1차 본회의)과 20일(제2차)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21일은 임시 장충(獎忠) 공휴일로 휴회했다. 22일(3차) 상오 10시 정각에 속개됐으나 23일(4차)과 24일(5차)에 이어 25일 전쟁 소식을 개회되지 못했다. 26일 제6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전체 9일 회기 중 실제로 7일 본회의가 열린 셈이다.

요일이었고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6월 26일 오전 11시 신익희 의장의 사회로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을 비롯한 각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신성모 국방부 장관과 백성옥 내무부 장관,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만이 출석해 전황을 보고했다.

신성모 장관과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군의 고충은 명령이 없어서 38선을 넘어 공세작전을 취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만약 공세를 취한다면 1주일 이내에 평양을 탈환할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군부의 지도부는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비현실적 발언을 내뱉었는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상황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⁴⁶⁾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당시까지 수차례 반복됐던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도발행위 정도로 간주했었으나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신성모·채병덕 보고와는 반대로 「비상시국에 관한 긴급결의안」⁴⁷⁾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적의 침공을 받고 있는 38선 지역의 군경과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문단 파견을 결의한 것이었다. 대

46) 채병덕 총참모장은 이튿날 아침 만난 황성수 의원(용산 갑. 무소속)에게 어제 국회에서 한 보고는 군기라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으면서 “이런 거짓말을 처음 했다”면서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6)「가장 길었던 3일」, 『중앙일보』, 1970. 04.13.

4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서울신문사, 1977, 613쪽: 비상시국에 관한 긴급결의안(요지)

①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군사비 지출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② 유엔과 미 의회 그리고 미 대통령에게 message를 보낸다.

③ 38°선 지역에서 전투 중인 군경과 주민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위문단을 파견한다.

④ 대미무기대책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한다.

⑤ 물심양면으로 행정부에 호응하는 동시에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 국가의 안정을 기한다.

미무기대책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며 군사비 지출을 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오후 2시 속개한 국회는 장택상 부의장 사회로 비밀회의를 열어 유엔 및 미국 의회, 대통령에게 “6·25사태는 북괴의 불법침략으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중대 사태임을 지적하고 긴급원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채택하는 동시에 정부에 사태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를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태는 견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돼 26일 오후 8시 국군 7사단 사령부가 주둔한 의정부가 침공 당하자 국회는 27일 새벽 2시 각 의원들에게 긴급비상소집을 통보해 4시경 개회했다. 수도 사수론과 수도 철수론 공방 끝에 원세훈 의원⁴⁸⁾의 긴급 동의로 “수도 사수”를 결의하고 1시간 만에 해산했다.

수도 사수의 문안 작성은 신익희 의장에게 일임됐으며, 의장실에서 신익희 의장과 사무총장, 이충환 의원(충북 진천, 무소속)이 문안을 작성했다. 문안을 작성해 신익희 의장과 조봉암 부의장이 경무대로 달려갔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수원으로 피신한 이후였다. 그래서 이시영 부통령을 찾아가 단잠 자는 것을 깨워 경과를 설명하고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국회로 돌아왔고,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헤어졌다. 국회가 유엔한국위원단을 통해 유엔 총회에 전달된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6월 25일 조조를 기해 북한 공산 군대는 38도선 전면에 걸쳐 무력침략을 개시하였다. 자위를 위해 우리들의 용감하고 애국적인 육해군은 영웅적인 방위작전을 전개하였다. 반란군의 이 야만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3천만 국

48) 임시정부 위원 출신 원세훈 제2대 국회의원(서울 중구甲, 민족자주연맹)은 6·25 전쟁 중 납북됐다.

민⁴⁹⁾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침략에 대한 우리들의 방위전투가 우리들 국민과 정부의 불가피한 반발임을 인식할 것을 희망한다. 우리들은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애호 국민들을 위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귀하의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호소한다.⁵⁰⁾

Beginning early morning 25 June North Korean Communist Army began armed aggression throughout 38th parallel area. For self protection our brave and patriotic army and navy opened heroic defense operations. This savage and unlawful act of rebel force is commission of unpardonable sin. We, representing 30 million Koreans, hope UNGA realized our defensive fight against aggression is inevitable reaction of our people and government. We also appeal for you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peace loving people of world.⁵¹⁾

다. 대한민국 「메시지」 작성 주체와 전달 경위

국가 비상사태를 직감한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오후 1시 (미 동부 6월 24일 오후 11시) 한표욱 주미참사관에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든 미국의 원조가 시급히 도착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지시했다.⁵²⁾ 국제

49) 1950년 기준으로 남한의 인구는 2천51만 명, 북한 인구는 1천54만 명으로 각각 추계됐다. 국회가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3천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 배경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필자 주

50) 외무부 외교연구원, 『한국 외교의 20년』, 317쪽.

51)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26, 1950), *FRUS 1950*, Vol.Ⅲ, pp.167-168.

52) 한표욱,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 1984, 76쪽.

감각이 뛰어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대거 남침 상황을 보고 받고 무초 주한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불러들여 면담한데 이어 취한 2번째 전시조치였다.

제헌 헌법 제57조는 내우와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際)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현재 남한의 국가와 외교 그 자체였다.⁵³⁾ 또 이러한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돼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⁵⁴⁾

〈표 2〉 안보리 결의문 작성 경위

제목	이승만-장면 통화 내용	대한민국 「메시지」 국회 통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S/1511)
일시	6월 25일 오후 1시	6월 26일 오후 2시 이후	6월 28일 오후 1시 50분
내용	“미 대통령과 유엔에 호소해 구국의 방도를 강구하라”	미국 대통령 · 하원 및 유엔 총회 대상	대한민국에 무력 제공 권고
비고	전시외교의 첫 구체화	대한민국주미국대사 작성	“대한민국 호소에 유의해”

출처: 유엔 연감 등을 참고해 필자 작성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받은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미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원조의

53)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160쪽.

54)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1&lsId=001444&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검색일: 2024.1.6.)

교'에 착수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제의에 따라 6월 25일(현지시간) 개최된 473차 회의에 장면 주미한국대사의 참석을 허용했다.⁵⁵⁾ 한국과 중국, 쿠바 대표들은 안보리가 침략행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대표는 유엔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기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사태가 특별한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⁵⁶⁾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유엔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미국 대통령과 하원, 유엔 총회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지원해 달라는 메시지를 제안해 6월 26일 오후 2시 속개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미 합동참모본부는 “무초 대사가 월요일 아침에 이들 호소문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오후에 주미 한국대사 장면이 백악관으로 가서 이 호소문의 사본을 전하고 또 몇 시간 전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로 전달한 다른 호소문의 내용을 전하였다”고 밝혔다.⁵⁷⁾

하지만 존각을 다투는 전쟁 상황에서 채택된 의결들에 대해 국회 절차상 업무 처리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됐다.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미국대사’ 명의로 접수된

55)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6월 26일(미 동부 6월 25일) 워싱턴 D.C.에서 뉴욕 유엔본부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유엔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술회했다. 연설문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25일 평화스러운 일요일 새벽 적의에 찬 북한 괴뢰군은 여러 지점에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서 사면팔방으로 공격을 개시해왔습니다...(중략)...본인은 국제평화에 대한 이 위협을 당장 제거해 줄 것과 이 침략자들로 하여금 모든 공격을 즉각 중지하고 우리 영토로부터 철퇴하도록 강력히 조치해줄 것을 귀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합니다.(하략)...” 허동현, 『전국·외교·민주의 선구자 장면』, 96쪽.

56)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221.

57)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한국전쟁』 (상), 삼아인쇄공사, 1990, 76쪽.

「유엔 총회 및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 문건(의안번호 020715)은 1950년 7월 4일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⁵⁸⁾ 해당 서류는 업무상 미국에 체류 중인 장면 주미한국대사가 서울 국회를 방문해 접수하는 대신 제3자에 의해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2대 국회(1950-1954) 제8회 회기에 제출된 문건은 접수과정에서 기입하도록 요구되는 제안 일자와 문서 내용이 빈칸으로 남아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날짜, 회의명, 회의록 역시 확인되지 않으나 1950년 7월 4일 ‘원안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사(國會史)는 2대 국회의 안전처리 상황에 대해 “본 회기는 6·25동란으로 인해 회기가 9일에 불과해 안전심의를 위한 시일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와 제2차 회의의 속기록 이외에는 속기록 원고가 전부 분실 당함으로써 안전처리 상황을 정확히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⁵⁹⁾ 다시 말해 메시지 채택 과정의 결정적 자료인 6월 26일 제6차 본회의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보된 자료만으로 안전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제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비롯해 “북괴(북한)의 불법남침을 규탄하고 유엔과 미국 정부에 긴급원조를 요청하며 행정부에 급속한 사태수습을 요청하는 메시지 채택에 관한 결의안 및 대정부 건의안, 어떤 일이 있어도 수도 서울은 내놓을 수 없다는 수도 사수에 관한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고 국회사는 강조했다.

6월 19일 개원한 제2대 국회는 6월 27일 새벽 피난을 떠났기 때문에 이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익희 의장과 조봉암 부의장이 국회의 ‘수도 사수 결의 내용을 전달하기

5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8247>) (검색일:2024.01.05)

59) 국회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제2대국회·제3대국회, 341쪽.

위해 경무대를 방문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피난을 떠난 이후였다. 이 대통령의 피난 소식은 국회에마져 통보되지 않았다. 신익희와 조봉암은 할 수 없이 국회로 돌아와 새벽 5시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6월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한 메시지는 주한미국대사관을 경유해 같은 날 오후 8시 2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 도착했다.⁶⁰⁾ 국회를 속개한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국회에서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전달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해당 메시지를 바탕으로 제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인 유엔 안보리 권고안을 작성했다.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장면 주미한국 대사는 백악관을 방문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국회가 서울을 떠나기 전 미국 국회와 유엔에 보내도록 승인한 북한의 침략을 패배시키는데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⁶¹⁾

6월 26일 대한민국 「메시지」의 미 국무부 전달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참고로 7월 18-21일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 주한미국대사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통령과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쟁을 벌였다.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중에서 “우리 한국 국민은 공산군을 우리의 본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으로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을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빼자고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

60)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June 26, 1950), *FRUS 1950*, Vol.Ⅲ, pp.167-168.

61)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04쪽.

이다....(중략)...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이 19일 사인됐다.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편지내용을 전문⁶²⁾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우편을 이용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무초 주한미국대사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본을 건네주고 오리지널은 파우치 편으로 장면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냈다. ...(중략)...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대통령의 서한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하면서 한국전에 관한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을 전달했다.⁶³⁾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6월 25일 오전 서울 경무대 면담부터 대전과 수원, 부산 등 피난지를 옮겨 다니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유엔군사령부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경무대와 백악관 사이에 ‘무초 핫라인’이 원활하게 가동돼 우리 정부의 의사가 반영됐던 것으로 평가된다.

트루먼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보고서 전달 방법과 경위, 전달자 등에 대해 언급했다. 트루먼 대통령 표현대로 국무부 전보 양식이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주한미국대사관과 국무부-백악관 지휘체계를 통해 전문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62) 페이지는 1950년 여름 한국에서의 국제통신 수단으로 주한미국대표부(American Mission in Korea) 공식 채널과 상업용 무선전신 시설, 국제무선전화 등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 제한된 시간에 이용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Paige, *Korean decision*, p.85.

63) 프란체스카 도너 리, 『6·25와 이승만: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45-49쪽.

4. 대한민국 「메시지」 의미 분석

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파급 효과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6월 말까지 총 4차례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지 2시간 만에 개최된 블레어하우스⁶⁴⁾ 제1차 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사태의 자세한 윤곽부터 토의하자”면서 “당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으니 기탄없이 의견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전투지역으로 정보를 수집할 군사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은 존 처치 준장의 인솔 하에 장교 13명과 병사 2명을 한국에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표 3〉 美 중요회의 일정과 의제

	제1차 블레어하우스회의	제2차 블레어하우스회의	정례 국가안보회의	긴급 국가안보회의
개최 시기 (한국시간)	6.26. 09:45-13:00	6.27. 11:00-12:00	6.29. 04:30-	6.30 07:00
장소	블레어하우스	블레어하우스	백악관	백악관
참석자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장관, 3군 참모총장, 국무장관, 국무차관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장관, 3군 참모총장, 국무장관, 국무차관대리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장관, 3군 참모총장, 국무장관, 러스크, 해리만, 델레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 장관, 3군 참모총장, 국무장관, 러스크, 해리만, 델레스
주요 의제	군사시찰단 파견	38선 이남 지역에 美 해·공군 투입 결정	소련의 개입에 따른 행동방침 준비	美 해·공군 작전 38선 이북으로 확대 지상군 투입 결정

* 출처: 유엔 연감 등으로 바탕으로 필자 작성

64) 백악관은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맞은 편에 위치한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27일 오전 11시(미 동부 26일 오후 9시) 제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를 열렸고,⁶⁵⁾ ‘서울이 실함(失陷)될 위기에 처했다’는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의 상황보고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블레어하우스 회의가 하루 만에 재소집된 이유는 전날 밤 내린 결정의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고, 한국군 전면적 붕괴가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서울 함락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정세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모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유엔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는 결의는 변함이 없었다.⁶⁶⁾ 세계대전 회오리에 말려들지 않고 소련의 도전에 대해 한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제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의 결정적인 핵심이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해·공군 사용에 대해 모든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건의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작전지역이 38도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애치슨 건의를 수락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튿날 오후 안보리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국무부가 (제82호에 이어) 또 다른 결의안 채택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유엔 안보리 분위기는 심지어 스웨덴이 지지 입장으로 돌아설 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히커슨 유엔담당 차관보가 이 자리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이 북한의 불법침략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S/1508/Rev.1)을 낭독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블레어하우스 2차 회의에서 미국이 공식으로 한국군 지원을 위해 해·공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과정을 설명했다.

6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Jessup)”, *FRUS*, Vol. VII, Korea, pp.178-183.

66) Ambassador Jessup, Interview, July 28, 1955.

유엔 안보리가 27일 오후 3시 15분(미 동부 현지시간) 제474차 안보리 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유엔한국위원단으로부터 S/1503, S/1505/ Rev.1, S/1507 등 3개의 보고서가 도착했다.⁶⁷⁾ 6월 26일 사무총장 앞으로 발송된 S/1503은 “위원단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거나 유엔한국위원단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북한군의 공격 중단과 철수에 대한 논의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4 용지 4장 분량의 S/1505/ Rev.1은 14개 조항에 걸쳐 6·25 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S/1507은 북한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총력전을 벌이는 반면 한국은 38선 전역에서 방어전에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미국 대표의 연설이후 장면 주미한국대사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 안보리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주도록 호소했다. 미국의 국무부 라인이 제출한 제83호는 28일 오후 1시 50분(미 동부 27일 오후 11시 50분)에 통과됐다.

유엔 안보리 제83호 결의안은 총 6개 문단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요청이 다섯 번째 문단에 등장했다. 제83호 결의안은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국제연합에 대한 대한민국의 호소에 유의해(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라고 명시했다.

이 대목에서 한국 국회가 보낸 메시지 문구들이 안보리 결의안 초안과 안보리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적극 나서 유엔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

67)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p.222-224.

사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유엔사 창설의 근거인 안보리 결의안에 우리 정부의 활동상황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이어 마지막 문단은 “국제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제시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 대한민국 메시지-국무부 초안-안보리 결의안 비교

	대한민국 메시지	미국 국무부 초안	유엔 안보리 결의
문서 제목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June 26, 1950	S/1508/Rev.1	S/1511
영어 원문	We also appeal for you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s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s Nations fo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armed aggression	armed attack	armed attack
	rebel forces	forces from North Korea	forces from North Korea
수신 및 승인 날짜	1950.6.26.	1950.6.27.	1950.6.28.
작성 기관	한국 국회	미국 국무부	유엔 안보리

* 출처 : 유엔 연감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나. 근거 없는 ‘북침설’에 반박

북한은 6월 25일 오전 11시 평양방송을 통해 “남조선 괴뢰군의 침공 결과 북한 정부가 한국에 대해 전쟁선포를 했다”고 보도했다.⁶⁸⁾ 김일성은 이날 오후 1시 35분 라디오 연설에서 한국이 북한의 모든 평화통일 제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웅진반도 위쪽 해주지역을 아침에 공격해 북한이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깜짝 놀란 세계는 북한이 서울의 “괴뢰” 정부군에 의해 반역적인 침략을 받았으며, 그래서 자위로서 마지못해 반격한 것으로 알게 됐다.

개전 초기 연합신문사 최기주 기자가 보도하고 육군본부가 발표한 ‘해주 점령설’이 대대적으로 배포됐다. 최 기자는 전쟁 발발 당일 웅진을 현장 방문해 취재 중이었고, 백인엽 제17연대장을 만나고 곧바로 서울로 귀환했다. 김현수 국방부 보도과장을 만나 백 연대장이 “서울에 가거든 이 말 한마디만 전해주슈. 백인엽은 부대를 지휘해 해주로 진격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달했는데 ‘북침설’로 둔갑해 한국은 물론 서방세계에까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메시지를 통해 ‘북침설’ 주장에 쐈기를 박고 북한의 남침 행위를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6월 26일 메시지에서 ‘남쪽을 향한 무력침공’(armed aggression against South)이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국회는 ‘38선 전역에 걸친 무력 침공’(armed aggression throughout 38th parallel area)이라고 밝혀 38선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미국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합의한 38선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68)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2), p. 21.

국회는 이어 ‘자위(self protection)’, ‘영웅적 방어작전(heroic defense operations)’, ‘침략에 대한 방어전투(defensive fight against aggression)’ 공격이 아닌 방어에 초점을 맞춘 용어를 선정해 북한의 침략성을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가 앞서 발표한 결의안 82호에서 북한에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38선 이북으로 병력을 철수하라고 요구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은 6월 2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서(S/1495)를 보내 북한군의 침공 사실을 알렸다.⁶⁹⁾ 미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평화의 파괴이자 침략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제82호는 첫 번째 문단에서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은 유엔 헌장 제7장의 ‘침략’(aggression)과 ‘평화의 위협’(threat of peace), ‘평화의 파괴’(breach of peace) 가운데 ‘평화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는 당초 마련한 결의문 초안에서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공은 부당한 침략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으나, 이집트와 노르웨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평화의 파괴’로 절충됐던 것이다.⁷⁰⁾

하지만 트리그브 리 유엔 사무총장 역시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침략과 평화의 파괴가 아닌 평화의 위협을 고집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침략’과 ‘평화의 위협’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결과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평화의 파괴로 절충작업이 이뤄졌다.

다. 부당성 강조해 우호적 여론 조성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반란군의 야

69)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p.221.

70) 문관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81쪽.

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savage and unlawful act of rebel force)”,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unpardonable sin)”, “불가피한 반응(inevitable reaction)”이라며 북한 무력침공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북한의 명분 없는 침공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해 국제사회로부터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메시지는 북한군을 가리켜 ‘북한 공산당 군대(North Korean Communist Army)’에 이어 ‘반란군(rebel force)’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에 제83호 결의안은 한국에 대해 정식 국호(the Republic of Korea)와 함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북한 당국(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이라는 용어를 구사했다.

5. 맺음말

6·25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창설된 유엔사는⁷¹⁾ 전쟁의 자유진영 측 주체로서 공산군 침략을 물리치고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유엔사는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를 관리감독하고 유사시 전력제공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 비무장지대 둘레길 조성사업 등은 대표적 사안들로 꼽을 수 있다.

유엔사 창설 과정에서 누가 먼저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71) 유엔사는 7월 25일 오전 8시 50분 특별발표를 통해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25일 정식으로 도쿄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18, 313쪽.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제법학자 김명기는 우리 정부의 지원 요청에 근거해 유엔이 군사력을 파견할 조치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⁷²⁾ 유엔 회원국들이 6·25전쟁에 개입한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장 출신 로잘린 히긴스는 “비록 유엔이 일본 도쿄에 지휘사령부를 설치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을 주재국(host state)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했다”고 선언했다.⁷³⁾

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 만에 대한민국이 정부와 국회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미국 대통령과 하원에,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한국위원단을 통해 유엔 총회에 다른 메시지를 각각 발송했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1948년 이후 유엔과 창구 역할을 담당한 유엔 기구를 통해 한국의 비상사태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던 것이다.⁷⁴⁾

유엔 안보리 제83호 결의안은 ‘대한민국의 국제연합에 대한 호소’(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라고 명시하면서 호소 문구를 그대로 결의안에 반영했다. 국회가 유엔 총회에 보낸 메시지 가운데 “평화와 안전을 확

72)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주한미군의 구별”, 『고시계』33권 7호, 1988, 111쪽.

73) Rosalyn Higgins,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1946-1967 Document and Commentary II Asia*(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211.

74) UNCOK는 1950년 6월 25일 오후 11시(미국 동부시각)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쟁발발 상황을 최초로 보고했으며(S/1496),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82호는 유엔한국위원단이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38선 이북으로 철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이 먼저 간밤에 38선에서 도발했다는 평양방송 발표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한 이승만 대통령 및 임병직 외교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전면전 양상으로 번져 국제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안보리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시 말해 유엔한국위원단이 미국 뉴욕 소재 유엔 본부로 통하는 ‘핫라인’ 역할을 담당했다.

보하기 위해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immediate and effective steps)를 취해 달라”는 문구가 제83호 결의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반영됐던 것이다.

다시 말해 6월 26일 유엔 총회에 전달된 대한민국의 메시지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해달라고 권고한 안보리 제83호 결의안의 ‘마중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메시지는 결정적 시기에 미국과 유엔의 지지와 분투를 이끌어내 유엔사 창설에 분수령으로 작용한 셈이었다. 한국 정부의 위기탈출 노력은 미국의 조율 과정을 거쳐 안보리 결의안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한국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원요청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엔사 창설에 앞서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발 빠르게 이양했다. 전시지도자로서 무력 발동에 따른 통수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국가 총역량을 전승 획득에 집중시키도록 조직화하는 역량을 발휘한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을 전제로 우리나라 육·해·공군의 모든 지휘권을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한국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유엔사 창설 작업이 순풍을 타고 진행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사 설립 과정에서 ‘외교의 귀신(鬼神)’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제83호 결의안 통과에 기여하고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발 빠르게 넘겨주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고 주일미군 병력 중 제24사단 스미스 대대가 참전한 7월 1일까지 한국군이 교전의 주체였다. 유엔군이 가세한 이후에도 한국군이 지상군 전체 병력의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1953년 휴전협상에 실패할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북진명령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승만 대통령을 연금,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른바 에버레디 계획(Plan Eveready)을 준비하는 등 한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엔에서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대한민국과 유엔사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유엔사는 사령관 예하에 부사령관, 참모장, 부참모장 등으로 구성된 지휘부와 참모부 역할을 수행하는 군정위 비서처로 구성된다. 유일한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 부참모장 겸 군정위 수석대표를 맡고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구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유엔사 지휘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에서 한미 간 의사소통 채널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⁷⁵⁾

판문점 출입절차와 대성동 선전마을 대민 업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감안할 때 유엔사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군 장성이 유엔사 지휘부와 참모부에 참여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⁷⁶⁾ 이에 따라 미군 장성이 아닌 제3국 장성에게 개방된 유엔사 부사령관 자리에 한국군 장성 임명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한반도 안보의 양대 축이 미래연합군사령부와 재활성화된 유엔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군 출신 미래연합군사령관과 미군 출신 유엔군사령관 사이 긴밀한 협조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⁷⁷⁾

한미동맹 70주년을 지나면서 한국과 미국이 시대 변화에 따른

75)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미 동맹의 쟁점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64-65쪽.

76) 장광현, 앞의 논문, 206쪽.

77) 문관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209쪽.

상호간 역할 분담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서 유엔사 내 한미관계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이 스스로 주재국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전력제공국(sending state) 대우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반드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지원을 받는(supported) 약소국에서 지원을 주는(supporting)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제무대 현실을 감안할 때 유엔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서울신문사, 1977.
_____, 『한국전쟁사』 2, 서울신문사, 1979.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8, 동방문화인쇄사, 2004.
- 김영호 외 4인, 『이승만과 6·25전쟁』, 연세대 출판문화원, 2012.
-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_____,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지도자 역할」, 『이승만과 6·25전쟁』, 연
세대 출판문화원, 2012a.
_____, 『북한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 살림, 2015.
<https://doi.org/10.978.89522/32762>
-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국회사』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1971.
- 로버트 올리버. 황정일 역,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건국대 출판부,
2002.
-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2.
- 박홍순, 「한국전쟁과 유엔의 개입(1950) : 과정과 배경」, 『유엔과 한국
전쟁』, 리북, 2004.
- 서울신문사, 『주한미군 30년』, 서울신문사, 1979.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政夫), 현대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미국의 개입
과정』, 청계연구소, 1986.
-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
대 출판부, 2006.
- 외교연구원, 『한국외교의 20년』, 외무부, 1967.
- 이춘근, 「이승만 대통령의 전시외교」, 『이승만과 6·25전쟁』, 연세대 출
판문화원, 2012.
-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5.
_____, 『정일권 회고록』, 고려서적, 1996.
- 프란체스카 도너 리, 조혜자 역,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서울: 기파
랑, 2010.

- 한표육, 『한미외교요람기』, 중앙일보, 1984.
- 허동현, 『건국 · 외교 · 민주의 선구자 장면』, 분도출판사, 1999.
- 헤럴드 노블, 박실 역, 『비록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 : 이승만 · 미 대사관 · 워싱턴을 잇는 외교내막』, 정호출판사, 1983.
- James F. Schnabel · Robert J. watson,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한국전쟁』(상), 삼아인쇄공사, 1990.
- Kissinger, Henry. 2011. *On China*. The Penguin press.
- Oliver, Robert T. 1954.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 Dodd and Mead Company.
- Geselbracht, Raymond H. 2020. *The Memoirs of Harry S. Truman : A Reader's Edition*. Columbia :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Higgins, Rosalyn. 1970.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1946–1967 Document and Commentary II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 Paige, Glenn D. 1969.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 Roy E. Appleman. 1992.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 Time*. July 17, 1950.
- Truman, Harry S. 1965. *Memoirs: Years of Trial and Hope*, Vol. II. New York: Signet Books.
-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50*,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2. 논 문

- 김명기, “국제법상 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공한의 유효성”, 『육사논문집』15, 1976.

-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주한미군의 구별」, 『고시계』33권 7호, 198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161117>
——,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과 북침설의 부당성 근거(하)”, 『국제문
제』31권 5호, 2000.
- 남정옥, “6·25는 무엇이었나? : 전쟁조건 고루 갖춘 김일성 악조건
투성이의 한국과 이승만”, 『한국논단』272, 2012b.
- 문관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20.
- 장광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미동맹의 쟁점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9.
- 정진옥, “6·25전쟁 초기 정부의 전쟁지도: 행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화랑대 논문집』12집 2권, 2019.

3. 인터넷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색일: 2024년 01월 05일)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8247>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검색일: 2024년 01월 06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081&lsId=001444&chrClsCd=010202&urlMode=lsInfoP#0000>
- 유엔사 공식 홈페이지(검색일: 2024년 01월 06일)
[https://www.unc.mil/Portals/46/Documents/Historic%20Documents/S_RES_82\(1950\)_E.pdf?ver=2020-03-01-195332-850](https://www.unc.mil/Portals/46/Documents/Historic%20Documents/S_RES_82(1950)_E.pdf?ver=2020-03-01-195332-85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검색일: 2024년 01월 23일)
<https://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Q1=total&query1=%EC%9D%BC%EA%B4%91%20%EC%A0%88%EC%95%BD&x=0&y=0>
-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FRUS*, Vol. VII, Korea.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Seoul June 26, 1950.

<Abstract>

The Role of Korea in the Establishment of the UNC “Focused on the June 26th, 1950 Messages”

Moon, kwan-hyun(Yonhap news)

This study is written to shed light on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ROK)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pecialist President Syngman Rhee led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by focusing on Wartime Diplomacy targeting the U.S. and the U.N. instead of focusing on insufficient troops and conventional weapons. As a result, a breathless diplomatic war unfolded at the U.N., the U.S. Embassy in Korea, the Far East Command, and the Korean Embassy in the U.S., raising the clash between the two Koreas to a showdown between the U.N. Command and Communist Forces. Launched one month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UNC successfully signed an Armistice Agreement by defeating communist aggression as the main agent of the war.

In the process, the "Message" s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U.S. Presiden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June 26, 1950 contributed decisively to the drafting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which provided the basis for the establishing of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83 highlighted the Korean government's diplomatic achievements in the text, saying, "Having noted the appe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ccordingly, I would like to analyze the subject, delivery process, and ripple effect of the "Messag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June 26. If the efforts and sacrifices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re hidden by the leading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days of UNC history, are properly evaluated, it is expected to help strengthen

its status in UN history in the future

Keywords: Korean War, Korean Messag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United Nations Command, Operational Command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231-257
<https://doi.org/10.29212/mh.2024..130.2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40-50년대 군가 음반 연구

이준희 | 전주대학교 강사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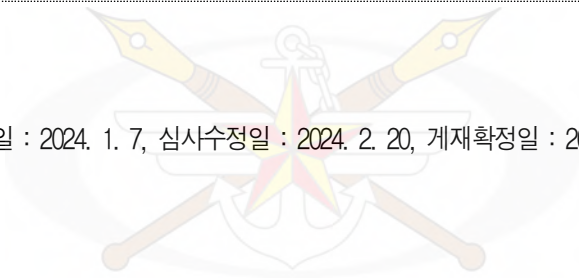
1. 머리말
2. 1940년대 후반 군가 음반의 흔적
3. 전시 오리엔트레코드의 군가 음반
4. 전후 군가 음반의 위탁 제작
5. 맺음말

초 록 한국 군가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새로운 군가가 많이 만들어졌고, 군가를 수록한 음반을 제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가 유통에서 음반이 담당하는 역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1940-50년대 초기 군가 음반은 당대의 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가치가 크며, 연구 대상으로서도 중요하다. 군가 음반으로 볼 수 있는 최초 사례는 1949년에 이미 등장했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그 제작은 더욱 확대되었다. 전쟁 중에는 특히 대구 소재 오리엔트레코드가 많은 음반을 발매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울 소재 여러 음반회사들이 군가 음반 제작을 이어갔는데, 1950년대 유력 음반회사였던 유니버살레코드와 오아시스레코드는 군 당국의 위탁을 받는 형식으로 제작을 수행했다. 1950년대 말까지 여러 음반회사에서 발매된 군가 SP음반은 최소한 20장 이상 확인되며, 대중음악과 작가음악 분야를 망라한 여러 음악가들의 참여로 녹음되었다. 그 중에서도 김동진, 박시춘, 김희조 등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군가, SP음반, 오리엔트레코드, 유니버살레코드, 오아시스레코드, 김동진, 박시춘, 김희조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머리말

군가는 말 그대로 군대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군가도 있고, 외부에서 만들어진 뒤 군대로 유입되어 불린 비공식적인 군가도 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근대시기에 군가가 불리고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지금 상세히 알기 어렵지만, 19세기 말 이후로는 군대에서 불린 노래의 실체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예컨대,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직전에는 “시위대 병정들이 하는 군가”의 가사가 신문에 실렸고,¹⁾ 이듬해 1898년에도 시위2대대 대대장 윤철규(尹喆圭)가 새로운 군가를 만들었다는 소식과 그 가사가 역시 신문에 소개되었다.²⁾ 대한제국 시기에 군가가 실재했던 것은 이처럼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나, 다만 그것이 제도적인 배경을 갖춘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한제국이 몇 년 지나지 않아 1910년에 망해 버렸고, 군대는 그보다 앞서 1907년에 이미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권이 사라진 뒤 군가는 상이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외에서 활동한 독립군이나 광복군의 군가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군가가 교육이나 방송·음반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국외의 군가는 역사적 정당성은 충분히 있는 대신 당시

1) “잡보(시위대 병정들이 하는 군가인데)”, 『독립신문』(1897년 6월 10일)

2) “잡보(새 군가)”, 『독립신문』(1898년 11월 1일)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국내에 유포된 일본 군가는 당대는 물론 광복 이후까지도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을 만큼³⁾ 대중에게 보다 익숙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군가로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군가가 의미 있는 문화 현상으로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한 때는 역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왕이나 외적의 군대가 아닌 새로운 국민의 군대에서 불린 군가는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도 듣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고, 1950년 6월 이후 만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실제로도 대중의 일상에 밀착한 존재가 되었다.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그 무렵,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의 초기 군가 역사이다. 그리고 군가의 여러 가지 존재 형태 가운데 음반이라는 매체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군가는 사실 스튜디오에서 녹음해 음반으로 제작, 배포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군가 보급의 가장 중요한 경로는 예나 지금이나 구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군내 교육이므로, 악보나 음반 같은 매체의 역할은 보조적인 데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가도 음악인 이상 그 실체를 당대 소리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음반 자료의 중요성은 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40-50년대 초기 군가 음반의 구체적인 면모를 구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군가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선행 작업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주요 대상이 음반이었던 경우는 전혀 없었으므로, 군가 연구의 세부 영역 확장으로서도 이 글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초기 군가 음반의 구체상은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

3) “사라바 라바울”, 『조선일보』(1961년 5월 14일)

다. 첫 번째는 전쟁 발발 이전인 1940년대 후반, 다음은 전쟁이 진행된 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은 휴전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이다. 국산 LP(Long Play, 1분당 33.3회전)음반 생산이 시작된 때가 1958년 여름이므로,⁴⁾ 초기 군가 음반은 모두 LP 이전 단계인 SP(Standard Play, 1분당 78회전)음반, 그 중에서도 직경 10인치 SP음반으로 제작이 이루어져 음반 한 장에 앞뒤로 노래 한 곡씩이 수록되어 있다는 기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군가 작품의 성격이나 음반 제작 경위에 각각의 특징이 또 있기도 하다. 이하 본문에서는 그러한 시기별 특징을 실제 자료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1940년대 후반 군가 음반의 흔적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 시기에 해방병단과 국방경비대가 이미 조직되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정식으로 체계를 갖춘 때는 역시 정부 수립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체계 가운데 하나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 작업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미 1948년 3월에 설립된 군악학교⁵⁾의 역할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당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1948년 12월에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⁶⁾

4) 이준희, “1950년대 유성기음반사 연구 - 6대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16호(2006): 201

5) “군악학교 창설”, 『조선일보』(1948년 3월 19일)

6) “군악 80여 곡 국방부서 작성 완료”, 『동아일보』(1948년 12월 9일)

국방부에서는 군대 생활면에 있어 가장 청량제라고 할 군악의 작곡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오던 바 이번 행진곡 60여 곡과 예식 기타 작전 동작 등 20여 곡을 합하여 80여의 작곡을 끝마치어 군악학교에서도 이들 중심으로 보급을 시키게 되었으며 동시에 전국 각 연대에도 이 곡을 ‘레코-드’로 취입하여 불일내로 각각 배부하기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작곡 내용의 중점은 주로 구한국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던 군악과 현재 각 연합국에서 취하고 있는 행진곡 등을 중심으로 편곡한 것으로 군 정신의 작흥은 물론 한국 남아의 용맹심을 추입시킨 명곡들이라고 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군악은 가사 있는 노래가 아니라 군악대가 연주하는 행진곡이나 의식 음악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 군악뿐만 아니라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군가 역시 이 무렵 대거 정비,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육군본부 지정 출판사인 병학(兵學)연구사에서 1949년 가을에 출간한 『군가집』 광고에는 “군·경·청년·학생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천지가 진동하도록 불러야 할 군가” 220곡이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의 1년 반 동안 심혈을 경주”한 작업으로 편찬되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⁷⁾ 1년 반 전이면 1948년 봄 무렵이므로, 군악학교 설립 시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특히 주목이 되는 점은 새롭게 정비된 군악을 레코드로 취입(녹음)해서 각 연대에 배부하기로 되었다는 대목이다. 군악이 음반으로 제작될 예정이라 보도되었다면 군가 음반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 이후 실제로 군악 음반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가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확정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음반을

7) 『군가집』 광고, 『조선일보』(1949년 9월 28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당시에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광복 이전 1930년대에 음반을 녹음할 수 있는 설비는 콜럼비아(Columbia)레코드, 오케(Okeh)레코드, 빅터(Victor)레코드, 시에론(Chieron)레코드 등 일본 음반회사의 서울 지점에 일부 갖추어져 있었으나,⁸⁾ 음반을 찍어내는 공정은 전적으로 일본 본사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때문에 광복 이후 만 2년 동안은 국산 음반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판용 음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⁹⁾ 광복 이후 첫 번째 국산 음반은 최성두(崔聖斗)가 설립한 고려(高麗)레코드에서 1947년 8월에 발매한 〈애국가〉, 〈조선의 노래〉, 〈건국의 노래〉 등을 수록한 것이었는데,¹⁰⁾ 고려레코드 역시 회사 자체는 1946년 7월에 이미 설립되었으나¹¹⁾ 실제 음반 발매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1947년 8월 당시 고려레코드 광고를 보면 특약점과 기술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와 함께 “단체가 취입 수응(酬應)”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¹²⁾ 자체 기획으로 제작한 음반을 판매하는 것과 아울러 각종 단체의 노래도 주문에 맞춰 녹음, 제작하는 것이 고려레코드의 주요 사업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고려레코드가 “문교 당국의 교육가와 각 은행 방송국 청년단체 각 회사 등의 단체 주문”을 받아 음반을 만들었다는 1년여 뒤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¹³⁾ 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레코드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단체가 목록을

8) 이준희, “일제시대 경성에서 이루어진 음반 녹음의 경위와 의미”,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2009): 52-60

9) 이준희, “1940년대 후반(1945-1950) 한국 음반산업의 개황”, 『한국음반학』 14호 (2004): 144-148

10) 고려레코드 광고, 『동아일보』(1947년 8월 3일). 1번 음반에 현행 〈애국가〉(신곡)와 〈Auld Lang Syne〉 곡조로 부른 〈애국가〉(구곡)가 앞뒤로 함께 실렸다.

11) 고려레코드 광고, 『한성일보』(1946년 7월 26일)

12) 고려레코드 광고, 『경향신문』(1947년 8월 24일)

13) “조악한 레코드 장안의 거리에 대범람”, 『평화일보』(1948년 10월 7일)

볼 수 있는 광고(1948년 봄 추정)가 간접 확인되기도 하며,¹⁴⁾ 그 중 <(조선)민족청년단가>(필자 소장)와 <금용조합(연합)가>(김득성 소장)¹⁵⁾는 음반 실물까지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악이나 군가, 또는 각급 부대가를 녹음한 음반이 고려레코드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는 한데, 실제 음반이나 관련 문헌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려레코드 외에도 1948년 이후 다른 음반회사들이 뒤를 이어 속속 등장했으므로, 그 관련 자료를 보면 군가 음반이 전쟁 발발 이전 1940년대 말에 이미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실물이 확인되는 첫 번째 군가 음반을 제작한 곳은 1949년 3월에 첫 광고를 내고¹⁶⁾ 4월부터 음반을 발매한¹⁷⁾ 럭키(Lucky) 레코드이며 다음과 같은 관련 기사도 있다.

끝으로 해방 후 이 땅에서 처음 계획된 군가 레코드는 요새 펍 그 활동이 활발해졌다. 현재로는 심용사의 무훈을 찬미하는 UN고지 <용전가>가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단다. 이 작사에 육군 중령 이영순 씨 - 다음에 장훈 씨 노래에 <용사의 노래>도 좋단다.¹⁸⁾

강운용(姜雲溶)이 설립한 럭키레코드는 첫 작품으로 낸 가수 현인(玄仁)의 데뷔곡이자 대표작인 <신라의 달밤> 등이 크게 히트하면서 당시 여러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서 얻은 여유 덕분이었는지 대중가요 외에 이채를 띠는 다양한 내용의 음반을 몇 가지 아울러 제작하기도

14) 이준희, “6.25전쟁과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 『대중음악 SOUND』 3호(2011): 38

15) 광고에는 <금용조합연합가>, 음반 딱지에는 <금용조합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같은 곡으로 추정된다.

16) 럭키레코드 광고, 『동아일보』(1949년 3월 13일)

17) 럭키레코드 광고, 『경향신문』(1949년 4월 6일)

18) “거리에 흐르는 유행가”, 『삼천리』(1949년 12월)

했다. 위 기사에 등장하는 군가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와 〈용사의 노래〉가 앞뒤로 실린 음반(필자 소장)이 1949년 10월 신보(新譜)로 발매되었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와 비슷한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가요’ 음반도 세 가지가 확인된다.¹⁹⁾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음반도 1950년에 럭키레코드에서 제작되었는데, 서울특별시경찰국장 김태선(金泰善)의 강연 〈민경일심(民警一心)〉과 동요 〈순경 아저씨〉 음반이 기록과 실물로 전하고 있다.²⁰⁾

그런데, 럭키레코드에서 음반으로 낸 첫 군가 두 곡은 작품 성격이 통상적인 군가와는 다소 다른 편이다. 기사에서 군가라고 언급을 했고 가사도 군대 관련 내용이지는 않지만, 음반 딱지나 신문 광고에는 곡종(曲種)을 그렇게 명시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기에 적당하도록 고려해 만들어진 보통 군가와 달리, 곡조가 보다 전문성 있는 가창에 어울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가사에도 구체적인 서사가 등장한다.

비둘기고지에는 초목도 운다/ 적탄이 비 오는 듯 아군의 용전/
들었나 포연 속에 격분의 얼굴/ 서 상사는 원합니다 특별공격을/
부대장을 울려 주는 애원의 소리/ 장하다 우리 용사 아 십용사

UN고지에는 적구(赤狗)도 운다/ 토치카 파괴 작업 십삼시 이십
분/ 붉고 검은 얼굴 위에 방긋 웃으며/ 내 한 골편(骨片) 평양까지
최후의 부탄/ 지축을 흔드는 폭발의 소리/ 장하다 우리 용사 아 십
용사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 가사

19) 이진원, “해방 공간의 유성기음반 문화 연구”, 『해방공간 및 그 전후의 음악사』 (2014): 85-87

20) 이진원, 위의 글: 83

두 곡은 사실 일반 군인들이 제창 형식으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음악극 공연의 일부인 주제가로 만들어진 노래였다.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에 침투한 북한군을 격퇴하는 가운데 서부덕(徐富德) 등 국군 용사 열 명이 육탄공격을 감행해 순국한 이른바 ‘육탄 십용사’ 사건²¹⁾이 일어났고, 그 일을 극화한 추도 공연 〈육탄 십용사〉가 8월 6일부터 서울 극장시공관(市公館)에서 막을 올렸는데,²²⁾ 그때 무대에서 불렀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가사에 등장하는 ‘서 상사’는 바로 육탄공격을 주도한 서부덕을 가리킨다. 그리고 음악극 〈육탄 십용사〉의 원작자인 이영순(李永純) 중령과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 박시춘(朴是春)이 바로 음반에 담긴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와 〈용사의 노래〉 가사와 곡을 만든 작가들이기도 했다. 공연이 많은 화제를 뿌리며 전국 순회까지 할 정도로 인기를 끌자, 대표적인 주제가 두 곡을 럭키레코드에서 음반으로도 제작했던 것이다.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와 〈용사의 노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L7706

〈육탄 십용사 UN고지 용전가〉

이영순 중령 작사, 박시춘 작·편곡, 현인 노래, 럭키관현악단 반주

〈용사의 노래〉

이영순 중령 작사, 박시춘 작·편곡, 장훈(張勳) 노래, 럭키관현악단 반주

군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럭키레코드 음반에 수록된 두 곡은 군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

21) “십용사의 장렬한 전투 경과”, 『동아일보』(1949년 5월 21일)

22) “십용사 추도 공연”, 『경향신문』(1949년 8월 4일)

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0년대 말에 많은 군 관련 음악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음반에 담으려는 시도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고, 3년 동안 전황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더욱 많은 군가가 또 만들어졌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군가 음반도 그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3. 전시 오리엔트레코드의 군가 음반

지난 2010년 5월, 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해 국립극장 공연 예술박물관에서 <6·25전쟁, 공연예술의 기억과 흔적> 전시가 열렸다. 다양한 당시 유물과 함께 전쟁 기간 전후에 활동한 예술가들의 생생한 증언 영상도 함께 전시되었는데, 그 영상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²³⁾

군가 또 크라식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통 레코드에 관심이 없고 그저 군가는 내가 여러 판 맨들었죠. 그 이선근 씨가 대령 때 대구 큰 성당, 큰 성당 거처서 정훈감을 할 때, 그때 그 <가고파> 김동진 씨가 군가보급단장을 했었거든. 그래 그 양반하고 나랑 참 친하고 내보다 세 살 위에 지금 아마 그 양반이 살았으면 구십서이고. 그래 군가보급단장을 시면서 그 군가를 여섯 곡을, 여섯 곡 같으면 레코드판 두 장이지 앞뒤로. 내가 <육군가>하고 대구에 조 뭐 거도 내보다 한두 살 우엔데 크라식 계통의 그 음악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 곡을 인자 제일 끝에 여섯 곡째 <무기 애호의 노래> 고거 하고 여섯 곡을 레코드판 두, 석 장을 내가 맨들어서 한 그것도 4-5 천 장 정도 맨들어서 국방부에다 내가 보내 주고 이랬죠.

23) 전시 영상 사본을 필자가 소장하고 있으며, 영상 전체 분량은 5분 17초이다.

증언의 주인공은 1949년 여름 대구에서 동양(東洋)레코드회사, 즉 오리엔트(Orient)레코드를 설립해²⁴⁾ 운영하고 작곡가로도 활동했던 이병주(李炳主)이다. 몇 가지 작은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이병주의 증언은 전시에 군가 음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경위를 살피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무엇보다 이병주가 언급한 두 곡을 포함한 여섯 곡, 음반 세 장의 내용이 거의 모두 확인되고 있다. 〈육군가〉 음반은 뒷면 수록 곡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다른 두 장은 〈상이군인가〉와 〈진격의 노래〉(이경호 소장), 〈병기 애호의 노래〉와 〈행군의 아침〉(필자 소장)으로 앞뒤가 구성되어 있다. 이 군가 음반 세 장은 여타 오리엔트레코드 음반들과는 달리 음반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육군의 상징인 별을 사용한 딱지 디자인이 모두 같으므로, 특별한 세트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곡 제목이나 작가, 가수의 이름은 각각 따로 표기되었지만 ‘동양음반공사 제작’, ‘조국통일구국회 발매’, ‘육군본부 정훈감실 감수’ 등 표기는 공통으로 등장한다.

음반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병주 증언에 등장하는 이선근(李瑱根)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로 있다가 1950년 2월에 국방부 정훈국장에 취임했고,²⁵⁾ 이어 3월에는 육군 대령으로 임명되었다.²⁶⁾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육군본부 정훈감도 겸임을 했고,²⁷⁾ 1950년 10월에는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기도 했다.²⁸⁾ 1951년 2월 당시 육군본부 정훈감이 박영준(朴英

24) 오리엔트레코드의 설립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있으나, 그 첫 광고를 통해 1949년 여름임을 알 수 있다. 동양레코드회사 광고, 『영남일보』(1949년 7월 8일)

25) “정훈국장에 이선근 씨 취임”, 『경향신문』(1950년 2월 14일)

26) “정훈국 이선근 씨 육군 대령에 임명”, 『조선일보』(1950년 3월 17일)

27) 이선근, “나의 이력서 40”, 『한국일보』(1975년 3월 7일)

28) “이선근 대령 준장으로 승급”, 『조선일보』(1950년 10월 24일)

俊) 대령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²⁹⁾ 겸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선근은 이후 1952년에 봄 무렵 예편한 뒤 서울대학교로 복귀했으므로,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은 이선근의 예편 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주 증언에서 군가보급단장으로 등장하는 작곡가 김동진(金東振)은 1952년 2월 이후 부산 해군정훈음악대에서 활동한 기록이 확인되므로,³⁰⁾ 이 또한 음반 제작 시점을 추정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평안남도 안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김동진은 1930년대 말부터 만주국 신징(新京)교향악단에서 활동하다가 광복 직전에 평양으로 돌아왔고, 북한 정권 치하에서 잠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전쟁 발발 이후 월남해 대구에서 군가보급단장을 맡았다.³¹⁾

이병주의 증언 내용과 다른 기록들이 모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리엔트레코드의 군가 음반은 1·4후퇴 이후 대구 계산(桂山)성당에 자리 잡은 국방부 정훈국에서 이선근과 김동진이 함께 일했던 1951년에 제작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제작 시점을 알려 주는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1952년 4월에는 군가 음반 보급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경상남도 병사구(兵事區) 사령부의 회의 내용을 소개한 기사에 의하면, “다방에는 반드시 군가 음반을 사용할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³²⁾ 기사에 등장하는 군가 음반이 오리엔트레코드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명기되지는 않았으나, 1951-52년 당시 음반 제작이 가능했던 회사는 오리엔트레코드를 비롯해 몇

29) “신 장관 증부전선서 총공격을 진두지휘”, 『동아일보』(1951년 2월 24일). 박영준은 이선근이 준장으로 정훈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부국장이었다고 한다. 박시춘, “나의 이력서 34”, 『한국일보』(1978년 4월 12일)

30) “해군정훈음악대 6회 연주회 개최”, 『경향신문』(1952년 2월 28일)

31) 김동진 구술, 전정임 채록, 『2003년도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3: 김동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41-45, 55-57

32) “다방은 군가 음반 사용, 국산물 애용 장려”, 『마산일보』(1952년 4월 5일)

군데 되지 않았고, 그 중 실제 군가 음반이 실물로 확인되는 곳은 오리엔트레코드가 유일하므로, 오리엔트레코드의 군가 음반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1952년 7월에 대구 문화극장에서 열린 군가콩쿨대회 광고³³⁾를 보면 후원 단체로 육군본부 정훈감실과 오리엔트레코드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 또한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과 관련이 있는 자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병주가 증언한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 세트 세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미표기

<육군가>

최달희 작사, 김동진 작곡

뒷면 곡 미상

* 음반번호 미표기

<상이군인가>

유호(兪湖) 작사, 장수철(張壽哲) 작곡, 정문숙(鄭文淑) 노래, 국방부정훈국합창단 합창, 국방부정훈국관현악단 반주

<진격의 노래>

이선근 작사, 안병소(安柄瑠) 작곡, 박승유(朴勝裕) 노래, 국방부정훈국합창단 합창, 국방부정훈국관현악단 반주

* 음반번호 미표기

<병기 애호의 노래>

박두진(朴斗鎭) 작사, 김동진 작곡, 이보림(李寶林) 노래, 국방부정훈국합창단 합창, 국방부정훈국관현악단 반주

<행군의 아침>

김영삼(金永三) 작사, 김동진 작곡, 변훈(邊煥)³⁴⁾ 노래, 국방부정

33) 군가콩쿨대회 광고, 『대구매일신문』(1952년 7월 14일)

34) 음반 딱지에는 ‘邊君’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인쇄 오류이다.

훈국합창단 합창, 국방부정훈국관현악단 반주

그런데, 오리엔트레코드에서 제작한 군가 음반은 이병주 증언에 등장하는 3매 1세트 외에 다른 예도 추가로 확인이 된다. 우선 〈애국가〉와 〈휘날리는 태극기〉가 앞뒤로 수록되고 딱지에 태극기가 그려 있는 음반(한국대중음악박물관 소장)이 있으며, 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역시 정확한 제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정황상 전시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곡의 편곡자와 반주자가 모두 김희조(金熙祚)와 육군군악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김희조는 1948년 7월에 군악장교로 임관한 뒤 1950년 9월 이후 육군본부 군악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⁵⁾ 그리고 9월 28일 서울 수복 직후인 1950년 가을에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행하던 『승리일보』를 통해 발표된 가사에 곡을 붙인 군가 〈승리의 용사〉³⁶⁾도 1951년에 오리엔트레코드 음반(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소장)으로 발매되었다. 이 역시 음반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딱지 디자인 형태로 보아 1951년에 발매된 것이 확실시된다. 별과 태극기가 등장하는 앞서 본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 디자인과 달리 1951년에 발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다른 대중가요 음반 딱지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1952년에는 〈제2국민병의 노래〉 음반(필자 소장)이 또 오리엔트레코드에서 나왔는데, 뒷면 곡은 대중가요에 가까운 〈북으로 가자〉라는 곡이다. 〈승리의 용사〉와 〈제2국민병의 노래〉는 모두 앞서 럭키레코드 음반에서도 본 대중가요 작곡가 박시춘이 만들었으며, 박시춘은 군가인 동시에 대중가요로 전시에 가장 널리 불린 〈전우야 잘 자라〉를 비롯해 〈육군제1훈련소가〉

35) 윤중강·김용현, 『남에는 김희조』, 서울: 민속원, 2002, 75

36) 박시춘, “나의 이력서 33”, 『한국일보』(1978년 4월 11일)

등 당시 만들어진 여러 군가의 작곡자이기도 하다. 그가 이처럼 군가 작곡에 적극 관여했던 이유는 수복 직후부터 축탁 형식으로 국방부 정훈국 문예중대, 육군제1훈련소 군예대 등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다.³⁷⁾ 〈제2국민병의 노래〉 음반 딱지에도 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승리의 용사〉 예와 같이 디자인 형태로 보아 1952년 발매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세트 외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오리엔트레코드 군가 음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미표기

<애국가>

김희조 편곡, 이영숙(李英淑)·육군군악대합창반 노래, 육군군악대 반주

<휘날리는 태극기>

정동주(鄭東葑)³⁸⁾ 작사·작곡, 김희조 편곡, 이종운(李鍾運)·육군군악대합창반 노래, 육군군악대 반주

* 음반번호 미표기

<승리의 용사>

나병기(羅炳基) 작사, 박시춘 작·편곡, 오리엔트합창대 노래
뒷면 곡 미상(딱지 유실)

* 음반번호 미표기

<제2국민병의 노래>

유호 작사, 박시춘 작·편곡, 강준희(姜俊熙) 노래

<북으로 가자>

유호 작사, 박시춘 작·편곡, 신세영(申世影) 노래³⁹⁾

37) 박시춘, 앞의 글

38) 음반 딱지 일부가 지워져 있어 확실치 않으나 ‘紉’로 추정된다.

39) 음반 딱지에는 신세영 노래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곡을 실제 들어 보면 여성 가수가 함께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목소리로 보아 금사향(琴糸響)으로 추정된다.

4. 전후 군가 음반의 위탁 제작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형태로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가 음반 제작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전시 군가 음반 제작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구 오리엔트레코드는 휴전과 환도(還都) 이후 음반산업의 중심지가 서울로 다시 이동하면서 사세가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군가 음반을 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서울에서 새롭게 등장한 음반회사들이 군가 음반 제작을 계속 이어 갔다.

전후 군가 음반 제작 사례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스타(Star) 레코드의 〈승리의 노래〉와 〈날려라 해병대기〉이다. 스타레코드는 김흥산(金興山)과 손영준(孫泳俊)이 함께 설립했으며,⁴⁰⁾ 두 곡은 1954년 7월 제1회 신보로 발매된 음반 네 장에 포함되었다.⁴¹⁾ 〈승리의 노래〉는 〈애국가〉와 함께 같은 음반 앞뒤로 수록되었고(부산근현대역사관 소장), 〈날려라 해병대기〉는 대중가요 〈삼다도 소식〉과 같은 음반에 수록되었다(이병권 소장). 〈승리의 노래〉는 제목이 같지만 내용은 다른 두 곡이 1950년과 1951년에 각각 만들어졌는데, 1950년 곡은 김광섭(金光燮)이 작사하고 이흥렬(李興烈)이 작곡한 “바라보니 삼천리 화려한 강산”이고,⁴²⁾ 1951년 곡은 이선근이 작사하고 권태호(權泰浩)가 작곡한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냐”이다.⁴³⁾ 알려지기로는 1951년 〈승리의

40) 박찬호, 『한국가요사 2』, 서울: 미지북스, 2009, 223

41) 스타레코드 광고, 『동아일보』(1954년 7월 4일)

42) “연합군환영가 승리의 노래를 제정”, 『대구매일신문』(1950년 8월 3일)

43) “승리의 노래”, 『대구매일신문』(1951년 1월 29일). 지면에는 작곡자 이름이 박태호(朴泰浩)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노래>가 더 유명하지만, 스타레코드 음반에 실린 것은 1950년 <승리의 노래>이다. 지금도 <해병대 행진곡>이라는 바뀐 제목으로 해병대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군가 <날려라 해병대기>는 가사에 등장하는 도솔산 전투가 벌어진 1951년 6월 이후, 곡을 쓴 대중가요 작곡가 손목인(孫牧人)이 일본으로 밀항한 1952년 6월⁴⁴⁾ 이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이며, 2년여 만에 스타레코드를 통해 음반으로 만들어졌다. 스타레코드 군가 음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KB3002

<날려라 해병대기>

손석우(孫夕友) 작사, 손목인 작·편곡, 신세영 노래⁴⁵⁾

<삼다도 소식>

유호 작사, 박시춘 작·편곡, 황금심(黃琴心) 노래, 스타관현악단
반주⁴⁶⁾

* 음반번호 KB3004

<애국가>

해군정훈음악대 연주

<승리의 노래>

김광섭 작사, 이흥렬 작곡, 사상필(史相弼)·이관옥(李觀玉)·합창단
노래

스타레코드 이후 1955년부터 1957년까지 다른 음반회사에서도 군가 음반을 여러 장 발매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음반은 군 당

44) “손목인 신카나리아 등 칠명! 무엇 때문에 갔나? 의혹 다대”, 『경향신문』(1952년 6월 19일)

45) 음반 표지에 제목이 <날려라 해병대>로, 작가 이름이 뒷면 <삼다도 소식>의 유호와 박시춘으로 바뀌어 표기된 경우도 있다.

46) 음반 표지에 제목이 <삼다도>로, 작가 이름이 뒷면 <날려라 해병대기>의 손석우와 손목인으로, 관현악단이 경음악단으로 바뀌어 표기된 경우도 있다.

국이 민간 음반회사에 위탁해서 제작했다는 특징이 있다. 유니버살(Universal)레코드에서는 국방부 정훈국의 의뢰를 받아, 오아시스(Oasis)레코드에서는 육군본부 정훈감실의 의뢰를 받아 각각 ‘국방부 정훈국’, ‘육군레코드’라는 타이틀로 음반을 제작했다. 앞서 본 오리엔트레코드 3매 1세트 군가 음반이 ‘조국통일구국회 발매’로 표기되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군 당국이 직접 음반을 녹음하고 찍어낼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민간 위탁 방식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유니버살레코드와 오아시스레코드는 1950년대에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른바 ‘6대 음반회사’에 속한 곳이었다.⁴⁷⁾

1954년에 김재창(金在昌)이 설립한 유니버살레코드⁴⁸⁾에서 제작한 ‘국방부 정훈국’ 군가 음반은 지금까지 확인된 규모가 총 네 장이다. 음반 각 면마다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0001과 0002, 0005와 0006, 0007과 0008의 내용이 현재 알려져 있다. 0003과 0004 음반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만들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최소한 네 장이 발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번호가 가장 앞서는 0001, 0002 음반에는 〈6·25의 노래〉와 시 낭독 〈칠월의 노래〉가 수록되었는데, 지난 2008년에는 이 음반이 1950년대 초반에 제작된 ‘군가 음반 1호’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⁴⁹⁾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1949년에 이미 럭키레코드 음반이 만들어졌으므로 ‘군가 음반 1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제작 시점도 보도와 같은 1950년대 초반이 아니라 1955년 3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

47) 나머지 네 곳은 도미도(Domido)레코드, 미도파(美都波)레코드, 신신(新新)레코드, 킹스타(King Star)레코드이다.

48) 박찬호, 앞의 책, 202

49) “‘6.25의 노래’ 실린 군가 음반 1호 발굴”, 『연합뉴스』(2008년 6월 25일)

유니버살레코드는 1954년 9월에 〈이별의 부산정거장〉, 〈봄날은 간다〉 등 대중가요 음반을 제1회 신보로 발매했는데,⁵⁰⁾ 당시 음반 딱지 테두리에는 “MADE BY YUNGCHANG IND. CO. LTD SEOUL KOREA”라는 표기가 보인다. 이는 유니버살레코드의 제조사가 영창(英昌)산업임을 밝히는 내용이며, 유니버살레코드 초기 음반에서만 발견이 된다. 이후 1955년 3월에는 유니버살레코드에서 새로 발매한 음반을 홍보하는 광고가 또 신문에 게재되었고,⁵¹⁾ 음반 내용 소개에 이어 “유니버살레코드제작소는 금반(今般) 상호를 고려레코드제작소로 변경하고 계속 좌기(左記)와 같은 상표로서 발매”하게 되었다는 안내가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당시 발매된 유니버살레코드 음반 딱지 테두리에는 그러한 상호 변경을 반영해 전과 달리 “MADE BY KOREA RECORD MANUFACTORY SEOUL KOREA”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유니버살’에서 ‘고려’로 상호가 바뀐 이유는, 앞서 본 고려레코드가 전쟁으로 문을 닫은 뒤 그 설비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곳이 바로 유니버살레코드이기 때문에,⁵²⁾ 나름의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정훈국’ 음반 딱지 테두리에도 이와 완전히 같은 표기가 나타나므로, 그것이 바로 1955년 3월 이후 유니버살레코드에서 ‘국방부 정훈국’ 음반을 제작한 것임을 알려 주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유니버살레코드 제작 군가 음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 유니버살레코드 광고, 『서울신문』(1954년 9월 25일)

51) 유니버살레코드 광고, 『경향신문』(1955년 3월 20일)

52) 박시춘, “나의 이력서 35”, 『한국일보』(1978년 4월 13일)

* 음반번호 0001-0002

<6·25의 노래>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 이상춘(李想春)·김천애(金天愛) 노래,
육군교향악단 반주

<칠월의 노래>

양명문(楊明文) 작사·낭독, 육군교향악단 반주, 간주곡 <내 조국>

* 음반번호 0003-0004

수록 곡 미상

* 음반번호 0005-0006

<용진가>

모월천(毛月泉) 작사, 김동진 작·편곡, 김동진·손운렬(孫允烈) 노래,
김동진 지휘, 국방부관현악단 반주

<바다로 가자>

손원일(孫元一) 작사, 홍은혜(洪恩惠) 작곡, 김동진 편곡, 황병덕
(黃炳德)·손운렬 노래, 김동진 지휘, 국방부관현악단 반주

* 음반번호 0007-0008

<비행 행진곡>

최용덕(崔用德) 작사, 김성태(金聖泰) 작곡, 김동진 편곡, 황병덕·
이보림 노래, 김동진 지휘, 국방부관현악단 반주

<해병대의 노래>

이화 작사, 윤용하(尹龍河)작곡, 황병덕·이보림 노래, 김동진 지휘,
국방부관현악단 반주

유니버살레코드 위탁 제작 음반에 비해 오아시스레코드 위탁 제작 음반은 보다 간단하게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음반 판매업을 하던 봉철(奉喆)이 녹음 기술자 이성희(李成熙)와 함께 설립을 주도하고 원지복(元知福)이 대표를 맡았던 오아시스레코드는 유니버살레코드보다 약간 늦게 1954년 주식회사 형태로 설

립되었다.⁵³⁾ 오아시스레코드의 ‘육군레코드’는 유니버살레코드의 ‘국방부 정훈국’ 음반과 달리 앞뒷면 번호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00002, 00005, 00007 세 장의 수록 내용이 현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일곱 장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며, 자료 발굴 여하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야영가>와 <전선의 밤>이 수록된 00002 음반에서는 ‘육군본부 정훈감실 제작’, ‘오아시스레코드회사 납품’이라는 표기가 확인되며, <군기 진작의 노래>와 <나가자 북진의 길로>가 수록된 00005 음반(필자 소장)에는 그와 달리 ‘육군본부 정훈감실’ 표기만 나타난다. 그리고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나”로 시작하는 <승리의 노래>와 <전선의 아침>이 수록된 00007 음반에는 ‘제정 육군본부 정훈감실’, ‘오아시스레코드주식회사 제작’이라는 또 다른 표기가 보인다. 00002 음반에는 날짜 표기가 따로 없지만, 00005 음반에는 단기(檀紀) 제작 일자가 ‘4289 5.1’(1956년 5월 1일)로, 00007 음반에는 ‘4290 6.25’(1957년 6월 25일)로 적혀 있으므로, 세 음반이 각각 다른 시기에 만들어져서 표기도 다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표기 내용과 제작 시기는 달라도 음반 딱지 디자인은 동일하므로, ‘육군레코드’는 시종 오아시스레코드에서 위탁 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아시스레코드에서 제작한 군가 음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반번호 00001

수록 곡 미상

53) 오아시스레코드 설립 경위에 관한 내용은 2009년에 필자가 수행한 봉철 인터뷰 녹음과 봉철이 직접 작성한 메모에 담겨 있다. 메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문 끝에 고려레코드사에 있던 원판 기사 이성희 만나. 6.25사변으로 문 닫음. 둘이서 오아시스라는 간판 하에 출발하려 할 때 원판 기사 이성희와 같이 있었던 고려레코드사 상무 원지복 외 임원 3명이 찾아와 같이 하자고 사정. 이성희 역시 모시던 분이라 같이 했으면 하여서 1954 주식회사로 발족함”.

* 음반번호 00002

<야영가>

김희조 지휘, 이보림 노래, 서울사범합창단 합창, 육군제2군악대
반주

<전선의 밤>

김희조 지휘, 변성엽(邊成燁) 노래, 서울사범합창단 합창, 육군제2
군악대 반주

* 음반번호 00003

수록 곡 미상

* 음반번호 00004

수록 곡 미상

* 음반번호 00005

<군기 진작의 노래>

강위규(姜渭揆)⁵⁴⁾ 작사, 이흥렬 작곡, 김동진 편곡, 김노현(金魯
鉉)·서경숙(徐瓊淑) 노래, 육군교향악단 반주

<나가자 북진의 길로>

김교 작사, 김성태 작곡, 김동진 편곡, 김노현·서경숙 노래, 육군
교향악단 반주

* 음반번호 00006

수록 곡 미상

* 음반번호 00007

<승리의 노래>

이선근⁵⁵⁾ 작사, 권태호 작곡, 임만섭(林萬燮) 노래, 김동진 지휘,
김동진실내악단 반주

<전선의 아침>

김동진 작·편곡, 김동진 지휘, 김동진실내악단 반주⁵⁶⁾

54) 음반 딱지에는 '강위규'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55) 음반 딱지에는 '이성근'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56) 노래가 아닌 연주곡이므로, 음반 딱지에도 '군악'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가운데 00005 음반 수록 곡 〈군기 진작의 노래〉와 〈나가자 북진의 길로〉는 앞서 1955년에 육군본부 정훈감실에서 실시한 ‘신군가’ 가사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었다.⁵⁷⁾ 전체 응모작 1157편 가운데 〈나가자 북진의 길로〉 등 당선작 두 편과 〈군기 진작의 노래〉 등 가작 네 편이 선정되었는데, 음반 발매가 확인된 두 곡 외에 다른 네 곡 〈유쾌한 사병〉, 〈조국 수호의 노래〉, 〈명령만 내린다면〉, 〈진중의 노래〉 또한 ‘육군레코드’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내용을 알 수 없는 00004, 00006 음반에 이들 네 곡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음반회사 다섯 곳에서 제작한 군가 SP음반은 최소한 20장이 확인된다. 음반에 따라 한 쪽에는 군가 아닌 대중가요나 시 낭독이 수록된 경우도 있으므로 군가 작품으로 치면 40곡이 되지 않지만, 음반이 향후 얼마든지 추가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1960년대 이후 LP음반에 수록된 군가의 양과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분단·전쟁·빈곤으로 모든 것이 어렵기만 했던 1940-50년대 당시 상황에서는 그 정도 군가 음반이 제작된 것도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일이다.

군가의 제작과 보급이 군대 내부 일로 한정될 수 없었던 시대적 배경과 요구가 있었기에, 초기 군가 음반 제작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은 매우 다채로웠다. 이영순·이선근·김희조 등 현역

57) “〈나가자 북진의 길로〉 신군가 가사 당선 작품 발표”, 『동아일보』(1955년 4월 29일)

군인 신분으로 참여한 경우는 물론이고, 민간 음악계에서 제작·창작·녹음에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상업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군가 음반을 만드는 데에 앞장섰던 오리엔트레코드의 이병주나 인기 대중가요 작곡가이면서도 전시에 누구보다 많은 군가를 만든 박시춘의 경우는 시대의 상황, 개인의 지향과 역량이 들어맞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통상 가곡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지만 1950년대 군가 창작과 음반 녹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김동진의 경우에는 시대의 상흔을 살필 수도 있다.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온 월남 음악가에게 쏠린 사상적 의혹의 눈길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김동진에게 군가 작업은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⁵⁸⁾

이 글에서는 1940-50년대 군가의 모습을 음반 측면에서 주로 살폈지만, 당시 군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음반 외 다른 자료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 주로 가사만 전달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군가집 또는 군가를 포함한 노래책이 음반보다 훨씬 더 많이 간행되어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또 자료 접근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라디오 방송 역시 군가 보급 매체로서 음반 못지않은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한 다양한 경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군가는 군내 문화의 일부를 넘어 시대 전체의 모습을 반영한 문화라는 보다 비중 있는 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58) 김동진 구술, 전정임 채록, 앞의 책, 57-61

〈참고문헌〉

『경향신문』
『대구매일신문』
『독립신문』
『동아일보』
『마산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영남일보』
『조선일보』
『평화일보』
『한국일보』
『한성일보』
『삼천리』

- 이준희, “1940년대 후반(1945-1950) 한국 음반산업의 개황”, 『한국음반학』 14호(2004): 139-163, <http://uci.or.kr/G901:A-0007759785>
- _____, “1950년대 유성기음반사 연구 - 6대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한국음반학』 16호(2006): 191-216, <http://uci.or.kr/G901:A-0007759785>
- _____, “일제시대 경성에서 이루어진 음반 녹음의 경위와 의미”,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2009): 43-74, <http://uci.or.kr/G901:A-0006449064>
- _____, “6.25전쟁과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 『대중음악 SOUND』 3호, 서울: 가슴네트워크, 2011
- 이진원, “해방 공간의 유성기음반 문화 연구”, 『해방공간 및 그 전후의 음악사』(2014): 29-100, <http://uci.or.kr/G701:B-00113825954>
- 김동진 구술, 전정임 채록, 『2003년도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3: 김동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 박찬호, 『한국가요사 2』, 서울: 미지북스, 2009
- 윤중강 · 김용현, 『남에는 김희조』, 서울: 민속원, 2002

〈Abstract〉

1940-50's SP record of Korean military song

Lee Jun-hue(Jeonju University)

The history of Korean military songs began in earnes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t this time, many new military songs were composed, and there was a movement to record military songs. While the role of recordings in the distribution of military songs is not absolute, early military song recordings from the 1940s and 50s have great archival value as they provide a first-hand account of the sounds of the time, and are important as research objects. The earliest examples of military song recordings appear as early as 1949, and their production expanded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During the war, the Daegu-based Orient Record in particular played a key role, releasing many records. After the war, several Seoul-based record labels continued to produce military music, with Universal Record and Oasis Record, two of the most prominent labels of the 1950s, commissioned by the military authorities. By the end of the 1950s, at least 20 SP recordings of military songs released by various record companies have been identified, and they were recorded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musicians from the fields of popular music and auteur music. Among them, the roles of Kim Dong-jin, Park Si-chun, and Kim Hee-jo were particularly prominent.

Keywords: military song, SP record, Orient Record, Universal Record, Oasis Record, Kim Dong-jin, Park Si-chun, Kim Hee-jo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259-293
<https://doi.org/10.29212/mh.2024..130.25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제1차 세계대전 협력 배경에 대한 검토

- 사회주의적 ‘선의’에 입각한 전쟁 협력논리 재조명 -

고용준 |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수료

목 차

1. 1914년 8월 4일: ‘성내평화’의 탄생과 제2인터내셔널 평화주의의 종식
2. 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 수행에 협력하였나?
3. 기존의 해석: ‘오판과 배신’ 또는 ‘체념과 수동성’
4. 전쟁 협력의 길: 1914년 7-8월의 선택과 그 과실
5.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참전 논리 분석
6. 협력의 결과: 사회주의계의 분열과 반성 없는 복귀
7. 결론에 대신하여: 본고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초 록 본고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반전 입장을 고수하여 온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전쟁 수행에 협력하게 되었는가를 기존 영·미 학계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조명하였다. 다수의 연구는 사회주의적 이상에 대한 ‘오판과 배신’ 또는 급격한 정세 변화에 따른 ‘체념과 수동성’의 맥락에서 이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동참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계급 일반의 민족주의적 주전론에 휩쓸렸든지 제국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동조했다는 ‘소극적’인 이유에 더해, 사회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장차 사회주의 실현을 앞당길 촉매제로 전쟁을 활용코자 하였다는 ‘적극적’인 이유도 작용하였다. 본고는 당시 독일 사회주의 세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던 사회민주당과 자유노동조합연맹의 지도자들이 1914년 8월 이후 전쟁 수행에 협력한 논리를 ① 차르 전제정치에 맞선 사회주의 가치 수호, ② ‘유산자’ 대영제국에 대한 ‘무산자’ 독일의 투쟁, ③ ‘전시 사회주의’ 달성을 통한 노동계급의 권익 향상, 그리고 ④ 세계혁명에 대한 기대라는 네 가지 범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전시 협력을 정당화해 주었던 사회주의적 ‘선의’는 역설적으로 전후 사회주의 세력의 분열과 나치즘의 대두로 귀결되었다. 1914년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선택이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제3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궤적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사를 풍미한 ‘혁명’과 ‘전쟁’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주제어: 제1차 세계대전, 독일 사회민주당, 성내평화, 전시사회주의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1914년 8월 4일: ‘성내평화’의 탄생과 제2인터내셔널 평화주의의 종식

1914년 8월 4일 오후 1시, 베를린 궁(宮)의 백실(白室: Weiße Saal)에 모인 독일 제국의회 의원들은 황제 빌헬름 2세(Kaiser Wilhelm II)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군복을 착용한 황제가 레르헨펠트 백작(Graf von Lerchenfeld)의 소개로 입장하여 전쟁에 임하는 제국의 각오를 엄숙하게 표명하였다. 이어 그는 “짐에게는 ‘독일인’ 외의 어떠한 당파도 보이지 않느니라(Ich kenne keine Parteien mehr, Ich kenne nur noch Deutsche)”고 발언한 뒤, 각 정당 지도자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당시 백실에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사민당’) 소속 의원은 없었지만, 황제는 참석한 의원들 중 한 명을 사민당 지도자로 착각하고 각별한 애정을 담아 그의 손을 잡았다. 이어 프로이센 국가 ‘승리의 화환을 너에게(Heil dir im Siegerkranz)’가 제창되고 빌헬름 2세는 퇴장하였다.

황제가 이석하자 의원들은 제국의회 의사당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속개하였다. 사민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의장 요하네스 캄프(Johannes Kaempf)와 제국정부 수상 테오발트 폰 베티만-홀베크(Theobald von Bethmann-Hollweg)의 연설이 이어졌다. 베티만-홀베크는 전 독일의 단결을 촉구하는 대목에서 사민당 의원들을 응시하였는데, 정부 관료의 발표에 최초로 사민당 의원들 일부가 갈채를 보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잠시 간의 정회 후 속개된 자리에서 사민당 공동원내대표인 후고 하세(Hugo Haase)는¹⁾ 러시아 전제정치의 위협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러시아 전제정치의] 이러한 위협을 축출하여 조국의 문화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 차제에 사민당은 매년 강조해왔던 바를 다시금 천명하고자 한다: 위기의 시기에 조국을 버리지 않겠다. 이는 어떠한 형태의 정복전쟁에도 반대하지만, 국가의 독립과 자위권(自衛權)을 인정해 온 인터내셔널의 방침과도 합치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²⁾

하세의 연설에 의사당 내 우익은 ‘얼음장 같이 냉담’하였으나, 좌익과 중앙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어 제국 의회가 전시공채 모집 및 예산 책정에 관한 일련의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베트만-홀베크는 금번 회기(會期)가 독일사의 성전(聖殿)에 헌정되었으며 “1914년 8월 4일은 가장 영광된 하루로 남을 것이다”라 선언하였다. 회의는 ‘민족, 조국 그리고 황제(Volk, Vaterland und Kaiser)’에 대한 만세 제창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사민당 의원들도 처음으로 자리를 지켰으며 더러는 제창에 합세하였다.³⁾ 이 만세소리는 전쟁을 앞둔 독일제국

1) 또 다른 공동원내대표는 제4장에서 언급될 필립 샤이데만(Philipp Scheidemann)이었다.

2) *Verhandlungen des Reichstags: X III. Legislaturperiode. II. Session, Band 306.* (Berlin: Norddeutsche Buchdruckerei und Verlags-Anstalt, 1916): 9. 영역(英譯)된 내용을 William Maehl, “The Triumph of Nationalism in the German Socialist Party on the Eve of the First World War”,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24, No. 1(March 1952): 41에서 재인용.

3) 이상 8월 4일의 상황에 대한 묘사는 Jeffrey Verhey, *The Spirit of 1914: Militarism, Myth and Mobilization in Germany*, (Cambridge: Cambridge

에 이른바 ‘성내평화(城內平和: Burgfrieden)’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함성인 동시에, 국제사회주의(Internationale Socialiste: 이하 ‘제2인터내셔널’)가 표방하던 평화주의와, 역설적이게도 사민당 내 진정한 평화의 사멸을 알리는 조종(弔鐘)이기도 했다.⁴⁾

2. 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 수행에 협력하였나?

세계대전의 발발 직전까지만 해도 독일과 여타 유럽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은 제2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자본계급의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1889년 파리 창립대회와 1891년 제2차 브뤼셀 대회, 1907년 제7차 슈투트가르트 대회, 1910년 제8차 코펜하겐 대회, 1912년 제9차 바젤 임시대회 등 일련의 회의를 통해 각국 사회주의자들 간의 반제국주의·반전(反戰) 연대가 확인되었다.⁵⁾ 특히 독일에서는 1914년 5월 5일 제국의회

University Press, 2000): 157~160에 기반하였다. 베헤이의 저술은 1914년 8월 독일 사회를 지배했다던 열광적 전쟁 환영 분위기의 실상과, 그 이미지가 이후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며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인의 기억을 구성하였는지를 규명한 수작(秀作)이다.

- 4)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사민당이 ‘악취나는 송장’이 되었다 비난하였고, 사민당의 전시공채 모집 찬성 보도를 접했을 때 기사가 날조되었다 생각했던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Ilych Lenin)은 1914년 11월 14일 독일 사민당이 더 이상 국제혁명운동의 대열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William Maehl, “The Role of Russia in German Socialist Policy, 1914-18”,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Vol. 4, Issue 2(August 1959): 187 참조.
- 5) 황동하, “제1차 세계대전기 독일 사회민주당의 ‘방어전쟁’과 로자 룩셈부르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1권 제3호(2014): 13~14·16~21. 이상의 대회에서도 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에 있어 입법부를 통한 반대, 청원서 제출, 대중봉기 선동, 총파업(Generalstreik) 등 다양한 방법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어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전쟁에 맞선 전쟁’의 구호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 간 일체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

소속 사민당 의원들이 자국의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프랑스와의 화해를 주창하였고, 1914년 6월 뮌헨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노동 조합대회에서도 국제문제가 직접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제국정부에 대한 반감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었다.⁶⁾

이른바 ‘7월 위기(Julikrise)’가 한창 진행되던 7월 하순에도, 사민당은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의지를 다지는 한편 세르비아 사태가 격화되어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의 종언(終焉)이 될 것이라 경고하였다.⁷⁾ 7월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사무국 회의에서는 1912년 제1차 발칸전쟁 시와 유사하게 세계대전으로의 비화를 막을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견해가 확인되었으며,⁸⁾ 독일 사회주의의 대표적 이론가로 사민당의 고문(顧問) 역할을 수행하던 칼 카우츠키(Karl Kautsky) 역시 7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사민당원들의 전쟁 거부 입장은 너무나 자명하게 보였다고 술회하였다.⁹⁾ 그런데 이로부터 닷새가 채 지나지 않은 8월 4일, 사민당이 ‘조국 방위’의 명분을 내세우며 제국정부의 전쟁 개시에 협력해 버린 것은¹⁰⁾ 당대 비평

6) John A. Moses, “Bureaucrats and Patriots: The German Socialist Trade Union Leadership from Sarajevo to Versailles, 1914-1919”, *Labour History*, No. 30(May 1976): 2.

7) 황동하(2014): 24; Francisco Herreros, “The Dilemma of Social Democracy in 1914: Chauvinism or Social Dilemma?”, *Rationality and Society*, Vol. 15, No. 3(August 2003): 326·329. 1914년 8~9월 간에는 제2인터내셔널의 제10차 빈 대회와 제21차 세계평화대회(Universal Peace Congress)가 예정되어 있기도 했다.

8) Martin Ceadel, “Pacifism”,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ume II: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581. 동 회의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Georges Haupt, *Socialism and the Great War: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2): 183~215 참조.

9) Maehl(1952): 40, Footnote 153.

가들은 물론 후세 역사가들을 당혹케 하였다. 그토록 줄기차게 전쟁에 반대해 왔던 독일 사민당이 어찌하여 세계대전에 협력하게 된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독일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을 새로운 견지에서 접근해보려 한다. 즉 이들이 전쟁 수행에 협력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계급 일반의 민족주의적 찬전(贊戰) 여론에 휩쓸렸든지 제국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마지못해 끌려갔다는 ‘소극적’인 이유에 더해, 당시까지 일구어놓았던 사회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 장차 사회주의 실현을 앞당길 촉매제로 전쟁을 활용코자 하였다는 ‘적극적’인 이유도 작용하였음을 조명코자 한다.¹¹⁾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협력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며, 제4장을 통해 독일 사회주의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던 사민당과 자유노동조합연맹(Freie Gewerkschaften: 이하 ‘자유노련’)이¹²⁾ 전쟁에 찬성하게 되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10) 이는 전시공채 발행 거부를 선언한 1907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의 결정은 물론, 1914년 8월 8일 러시아 제국의회에서 불세비키가 전시공채 모집을 반대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다. Maehl(1952): 39; Maehl(1959): 182~183; Hew Strachan, *The First World War Volume I: To Ar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15 참조.

11) 영구평화를 달성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이 그 수단으로 ‘혁명’ 내지 ‘전쟁’의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려 하는 역설은 시델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Ceade l(2014): 582 참조.

12) 조합의 정치적 목적이나 정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부인했던 공식 입장과 달리, 자유노련은 사민당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조직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기구임을 주장하면서도 1906년 ‘만하임 협정’ 이후 상호 관심사안에 있어 긴밀히 협력기로 하였다. 개전 당시 사민당 소속 제국의회 의원 110명 중 45명 이상이 노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인사였으며 19명은 노조 전임간부 출신이었다. 역으로 자유노련 총운영위원회(Generalkommission)를 구성하는 13명 가운데 의장 칼 레긴(Carl Legien)과 부의장 구스타프 바우어(Gustav Bauer) 등 6명은 사민당 우파에 소속된 제국의회 의원으로, 이들의 의견은 사민당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두 조직의 입장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당시 독일 사회주의계의 동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

한다. 제5장에서는 이들 두 조직의 지도자들이 전쟁 수행에 협력하기로 한 ‘적극적’ 논리를 영·미 학계의 2차 문헌에 근거하여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보겠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협조한 결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짚은 뒤, 제7장에서 본고의 한계와 후속 연구방향을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였다.

3. 기존의 해석: ‘오판과 배신’ 또는 ‘체념과 수동성’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입장 변화를 가장 비판적으로 해석한 이들은 다름 아닌 여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영수(領袖)가 된 레닌은 1916년 집필한 『자본주의 최상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서 특히 카우츠키의 ‘초(超)제국주의론(Ultra-imperialismus)’을 호되게 비판하며,¹³⁾ 그를 위시한 독일 사민당원들이 제국주의를 은연 간에 옹호하는 ‘사회주의적 기회주의자’로 전락하였고, 자유노련의 ‘노동귀족’들은 부르주아 계층에 매수되어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레닌에 따르면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반복해 온 국제적 연대의 수사는

다. John L. Snell, “Socialist Unions and Socialist Patriotism in Germany, 1914-1918,”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9, No. 1(October 1953): 66~67 참조.

- 13) 카우츠키는 일체의 제국주의 전쟁을 소멸시킬 자본주의 발전의 궁극적 단계로 ‘초 제국주의’를 상정하고, 1914년 8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인터내셔널 빈 대회에 제출할 요량으로 개전 직전 수개월 동안 『제국주의론(Der Imperialismus)』을 집필하고 있었다. 그는 금융자본에 의한 평화유지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무산자 국제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전쟁관 대신 ‘방위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는데, 제국주의와 전쟁의 필연적 연계성을 포기한 이 같은 주장은 당시 독일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Presentation of Kautsky—1914,” *New Left Review*, No. 59(January 1970): 39~40 참조.

결국 허언에 불과하였으며, 전쟁에 협력한 것은 이들 ‘사회-배외주의자(social-chauvinist)’들의 어리석음과 악의로부터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었다.¹⁴⁾ 주보크(L. B. Zubok) 등 소련의 연구자들과 쿠친스키(Jürgen Kuczynski)를 비롯한 동독 학자들도 이러한 해석을 이어받아, 기회주의자들의 ‘오판과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찬전 입장을 비난하였다.¹⁵⁾

이보다는 좀 더 온건한 해석으로 트로츠키(Leon Trotsky)는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동조함으로써 무산자들의 권익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비판하였으며, 룩셈부르크는 혁명을 포기한 개량주의자들이 무산자 국제주의를 온전히 실천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¹⁶⁾ 토르페(Wayne Thorpe) 같은 최근 연구자의 경우, 제2제국의 자본주의 국가-사회체제에 안주하게 된 사민당이 사회주의의 궁극적 이상을 저버리게 된 결과가 전쟁 협력이었다고 평가하였다.¹⁷⁾

14) Vladimir Ilych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남상일 譯, 『제국주의론』, (서울: 백산서당, 1986): 35~38 · 123~128 · 145~160; Herreros (2003): 327. 독일 사민당의 전쟁 협조에 대한 레닌의 비판으로는 Lenin, *Collected Works*, 양효식 譯, 『레닌 전집 제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파주: 아고라, 2017) 中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회주의와 사회배외주의에 대한 노동자 당의 임무에 대하여”; “사회배외주의자의 궤변”; “사회배외주의와의 투쟁에 대하여”;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전쟁에 관한 독일 기회주의의 주요 저작” 등의 논설을 참고.

15) Haupt(1972): 183, Footnote 6; Herreros(2003): 327~328. 쿠친스키는 또한, 사회주의의 성장세를 막기 위해 전면전도 불사하고자 했던 제국정부가 사민당을 의도적으로 기망(欺罔)한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Maehl(1959): 178 · 181 참조.

16) Herreros(2003): 328.

17) Wayne Thorpe, “Keeping the Faith: The German Syndicalists in the First World War”,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33, No. 2(2000): 206~207 · 216. 대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카우츠키 류의 사민당 중도파가 사회주의자들의 ‘변절’을 야기하였다고 비판하지만, 맥네어(Mike Macnair)와 리(Lars T. Lih) 등의 연구자는 레닌의 볼셰비키와 카우츠키의 사민당 중도파 간 이념이 그렇게 대립적이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반박하고 있다. Mike Macnair, “Die Glocke or the

한편 스넬(John Snell), 맬(William Maehl), 레베리오(Madelaine Rebérioux) 등의 비(非)공산권 연구자들은 독일 사회주의자들 간에 만연해 있던 배외적 성향에 유의하였다.¹⁸⁾ 특히 맬은 사민당을 ‘국제사회주의의 햄릿(Hamlet of international socialism)’에 비유하며, 이들이 제2제국과 너무 깊게 연계되어 있던 나머지 전쟁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① 당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하던 사민당이 당시 분출하던 대중적 주전론(主戰論)의 열광에 휩쓸린 측면과 ② 러시아 전제정치가 제2의 ‘틸지트 분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③ 사민당의 전쟁 협력노선은 국가방위의 의무가 받아들여진 1912년 챔니츠 당 대회와 당내 좌파들이 제시한 전시 총파업 및 국방세 거부 결의안이 부결되었던 1913년 예나 대회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보았다.¹⁹⁾

다음으로 커비(David Kirby)는 개전을 앞두고 사회주의자들 간에 만연한 ‘체념과 수동성(resignation and passivity)’의 분위기에 주목하였다. 그는 제국정부의 검열과 애국주의적 정열이 쇄도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무산자들의 반격(counter-offensive)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무력감과 망설임의 빈틈을 대중적 애국주의가 파고든 것이라 지적하였다.²⁰⁾ 한편 치커링(Roger Chickering)은 사민당과 자유노련 지도부가 제2인터내셔널의 방침 및 내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협조함으로써

Inversion of Theory: From Anti-imperialism to Pro-Germanism,” *Critique*, Vol. 42, No. 3(2014): 354; Lars T. Lih, “The New Era of War and Revolution: Lenin, Kautsky, Hegel and the Outbreak of World War I,” in Alexander Anievas (eds.), *Cataclysm 1914: The First World War and the Making of Modern World Politics*, (Leiden: Brill, 2014): 366~412 참조.

18) Herreros(2003): 328.

19) Maehl(1952): 32~39; Maehl(1959): 177~183.

20) David Kirby, *War, Peace and Revolution: International Socialism at the Crossroads 1914-1918*, (Aldershot: Gower, 1986): 27·39; Herreros(2003): 328.

제국정부의 억압을 완화시키는 편이 당원과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리라 판단하였다고 추정하였다. 그는 또한 계층·지역·이념적으로 균열되어 있던 ‘이익사회(Gesellschaft)’적 독일제국이 전쟁을 통해 ‘공동사회(Gemeinschaft)’화되는 과정에서, ‘사면(四面)의 적(Feinde ringsum)’에 맞서기 위해 그간 ‘국적(國賊: Reichsfeinde)’으로 지탄받던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적 연대의 대상으로 포섭되었음을 포착하고 있다.²¹⁾ 이러한 그의 분석은, 찬전 사회주의자들이 ‘오판과 배신’이라는 악의적 사유와 ‘체념과 수동성’이라는 피동적 상황을 뛰어넘는 나름의 목적의식을 갖고 전쟁에 협력했음을 밝혔지만 이들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레고리(Adrian Gregory)의 연구 역시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적 광풍(狂風)에 휩쓸려 전쟁을 지지했다는 기존의 해석 대신 그들이 갖고 있던 사회주의적 지향이 전쟁 협조의 배경에 놓여있음을 언급했으나 상세한 해명을 결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²²⁾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동참에 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개재되어 있음을 밝힌 독보적인 연구로 맥네어의 성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915~1919년 발간된 『경종(警鐘: Die Glocke)』지를 분석하여, 파울 렌쉬(Paul Lensch), 하인리히 쿠노(Heinrich Cunow), 콘라트 해니쉬(Konrad Haenisch) 등 반제국주의 입장을 고수하며 전쟁에 반대하였던 사민당 좌파 세력이 1914년 10월 이후 전쟁 수행에 찬성하게 된 논리를 설명하였다.²³⁾ 맥네

21) Roger Chickering, *Imperial Germany and the Great War, 1914-19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8 · 15~16 · 152~154.

22) Adrian Gregory, *A War of Peoples 1914-19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3~24.

23) 이른바 ‘렌쉬-쿠노-해니쉬 그룹(Lensch-Cunow-Haenisch Gruppe)’을 범주화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지겔(Robert Sigel)은, 이들의 저작을 검토한 결과 렌쉬는 8월 상순, 쿠노는 10월 중순, 해니쉬는 10월 상순부터 찬전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추정하였다. Macnair(2013): 369 참조.

어에 따르면 이들은 제국주의의 불가피성에 관한 당내 논쟁을 거치며, 제국주의의 성장과 세계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사회주의의 도래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적극적’ 대처론을 가다듬었다.²⁴⁾ 그의 연구는 전쟁에 대한 협조가 사회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리라는, 통념과 상반되는 인식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며 ‘렌쉬-쿠노-해니쉬 그룹’이 그 논리를 따라 전쟁을 지지하게 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강점을 지닌다. 본고 역시 독일 사회주의자들에게 비취졌던 전쟁의 사회주의적 의의 내지 효용성의 시각에 주목하여 그들의 찬전 논리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바, 다음 장에서는 그 사전작업으로 사민당 및 자유노련이 개전 초기 전쟁에 협력하게 되는 경로와 이로써 얻어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추적해보겠다.

4. 전쟁 협력의 길: 1914년 7~8월의 선택과 그 과실

가. ‘7월 위기’ 시의 반전운동

주지하다시피 1914년 7월 중순까지만 해도 프란츠 페르디난트(Franz Ferdinand von Habsburg) 황태자 부처(夫妻)의 목숨을 앗아간 사라예보의 총탄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 이는 없었다. 황태자 부처의 암살 다음날인 6월 29일 열린 사민당 집행부 회의에서도, 하세만이 개전을 우려하였을 뿐 별

24) Macnair(2014): 353~375. 맥네어는 이들 사민당 좌파와 러시아 볼셰비키들이, 제국주의의 성장과 세계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정세인식 면에서 궤를 같이 하였음에도

① 그 세계전쟁이 즉각적인 계급혁명으로 이어질지 ② 그리고 사회주의 실현 단계에 있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사회주의화(socialisation)’ 중 무엇이 선행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각기 다른 대응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다른 위기의식은 감지되지 않았다. 사민당 총서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Friedrich Ebert)와 공동원내대표 샤이데만, 헤르만 몰켄부어(Herman Molkenbuhr) 등 핵심간부들은 예정된 하계휴가를 떠났고, 레긴을 위시한 자유노련 수뇌부는 7월 27일 개최될 벨기에 노동조합대회 참관 차 브뤼셀로 이동하는 등 ‘7월 위기’를 앞둔 독일 사회주의계는 오히려 평온한 듯이 보였다.²⁵⁾

그러나 7월 23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정부가 세르비아에 최후통첩을 제시하고 25일 총동원령을 발포하여 ‘7월 위기’가 개시되자, 사민당은 오스트리아-헝가리와의 동맹 무효화를 주장하며 독일의 전쟁 연루를 막고자 했다. 여타 지도자들이 부재한 가운데 이들의 직무를 대행하던 하세가 전쟁 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²⁶⁾ 사민당 집행부는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최후통첩을 비판하는 한편, 7월 25일 독일의 참전에 반대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계급의식에 투철한 독일의 무산자들은 전쟁광들의 범죄적 행각을 인류와 문명의 이름으로 맹렬히 규탄하는 바이다. 무산자들은 독일 정부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평화를 유지토록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수치스러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결코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오스트리아 지배계층의 탐욕과 제국주의적 이윤 추구를 위해 독일 군인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될 것이다.”²⁷⁾

25) Harry J. P. Harmer, *Makers of the Modern World: Friedrich Ebert - Germany*, (London: Haus Publishing, 2009): Chapter 2; Moses(1976): 3. 당시의 평온함은 비단 독일뿐 아니라 유럽 사회주의 세력 전반에 걸쳐 공통된 분위기였다. Haupt(1972): 183 참조.

26) Strachan(2001): 120.

27) Carl Grünberg, “Vor dem Kriege und während der ersten Kriegswochen”, *Die Internationale und der Weltkrieg I*, (Leipzig: C. L. Hirschfeld, 1916):

이러한 방침에 따라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사민당 기관지 『전진(Vorwärts)』은 물론, 뮌헨·라이프치히·드레스덴·마그데부르크·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 등 각지의 사회주의계 언론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가 내부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감행하려 한다며 그 호전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7월 27일에는 베를린을 위시한 독일 주요 도시에서 사민당이 주도한 반전시위가 일어났는데, 7월 28일 10만여 명이 운집한 베를린을 필두로 라이프치히에서 5만 명, 드레스덴에서 3만 5천 명이 시위에 참여하는 등 상당한 세를 과시하였다. 함부르크에서만도 7월 24~29일 간 19차례에 걸친 반전집회가 진행되는 등 7월 31일까지 163개 지역에서 288회의 반전시위가 발생하였고, 8월 2일에는 베를린에서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다.²⁸⁾

한편 자유노련 기관지 『서신(Correspondenzblatt)』 8월 1일자에는 ‘7월 위기’를 총평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여기서는 열강 간에 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노동계급이 될 것이므로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또한 황태자 부처의 피살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오스트리아-헝가리는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세르비아에 대한 최후통첩은 잘못된 것이므로 제국정부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입장이 표명되었다.²⁹⁾

사민당 지도부는 유사시 당 재건의 기반을 마련해두고자 7월 30일 에베르트와 오토 폰 브라운(Otto von Braun)에게 당 자금의 일부

51. 영역된 내용을 Carl E. Schorske, *German Social Democracy, 1905-1917: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Sch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286에서 재인용.

28) Maehl(1959): 179~180; Strachan(2001): 121. 사민당이 주도한 반전 시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Verhey(2000): 52~57 참조.

29) Moses(1976): 2.

를 맡기고 취리히로 망명시켰다. 더불어 7월 31일에는 헤르만 뮐러(Herman Müller)를 파리로 급파하여 프랑스 사회당과 양국의 전시 공채 법안을 부결시킬 방안을 조율하는 등³⁰⁾ 제국정부의 탄압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임박한 전쟁을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었다.³¹⁾

나. '성내평화'의 형성

이렇듯 단호한 반전입장을 취할 듯이 보였던 사민당의 태도는, 러시아 정부가 7월 30일 오후 6시 총동원령을 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격히 바뀌기 시작하였다.³²⁾ 7월 31일 『전진』 지에는 “애국심 없는 잡배(雜輩)들[이라 비난받았던 사회주의자들] 역시 의무를 다할 것이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제정 러시아에 대한 ‘방어전쟁’에 사회주의자들이 찬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한편 레긴을 비롯한 자유노련 지도부는 7월 31일 베를린으로 복귀하여, 산하 노조 지도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함과 더불어 제

30) Kirby(1986): 28; Schorske(1983): 287~288. 뮐러는 팔레 부르봉(Palais Bourbon)에서 사회당 대표단과 회합하고 양국의 전시공채 모집 반대에 협조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31) 제국정부는 사회주의 세력의 초기 반전운동에 비교적 관대한 반응을 보였다. 7월 25일 프로이센 전쟁상 에리히 폰 팔켄하인(Erich von Falkenhayn)은 사민당의 활동에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지시를 내렸으며, 내무상 클레멘스 폰 델브뤽(Clemens von Delbrück)은 7월 26일 하세와 만난 자리에서 사민당의 시위를 용인하겠노라 밝혔다. 한편 하세는 제2차 인터내셔널 사무국 회의 참석자 칼 리프크네히트(Karl Liebknecht)·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7월 28~31일간 브뤼셀로 이석하였는데, 그의 직무를 대행한 알베르트 쉬데쿰(Albert Südekum)이 베트만-홀베크에게 총파업 계획은 없다고 밝혔음을 고려하면 사민당 역시 확고한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 제국정부에 일관된 반전 메시지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다. Strachan(2001): 121~122 참조.

32) Maehl(1952): 40.

국내무성(Reichsamt des Innern)과도 협의를 시도하였다. 레긴은 정국 안정을 당부하는 제국정부의 시책에 따라 정세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노조 내부의 단결에 충실하자는 노선을 택하였다.³³⁾ 8월 1일 자유노련 집행부는 전시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언권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여,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하에 파업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³⁴⁾ 다음날 자유노련 산하 48개 사회주의 노조의 대표들은 회합을 갖고 영국·프랑스·러시아 3국이 독일 노동계급의 투쟁성과를 파멸시키려 하는 형국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결의하였으며, 전시 임금인상투쟁 및 파업의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성내평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반동적 융커(Junker)와 산업자본가들의 나라였던 독일제국이 순식간에 사회보장제도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조국’으로 둔갑한 것이었다.³⁵⁾

이러한 자유노련의 태도는 다음날 개최된 사민당 원내대책회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민당 집행부와 원내대표단은 제국정부가 신청한 50억 마르크의 전시

33) Moses(1976): 4.

34) 1890년 이래 자유노련 의장을 역임해온 레긴은 제국정부의 탄압을 피하려는 차원에서 총파업을 정치적 투쟁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반대해 왔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점진적·비폭력적 전환을 지지한 온건파이기도 하였다. Moses(1976): 3 참조.

35) Schorske(1983): 289; Snell(1953): 67; Strachan(2001): 122~123. 다만 모든 노동조합이 전쟁 수행에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노조의 산업체 직접경영을 추구하였던 독일노동조합자유연맹(Freie Vereinigung deutscher Gewerkschaften)은 전쟁에 대한 협조가 사회주의의 이상과 양립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사민당 및 자유노련의 전쟁 협조를 비판하였다. 다만 그 가맹원수가 6천여 명에 불과하였기에 주류 사회주의계의 찬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 연맹의 활동 및 그 의의에 관한 사항은 Thorpe(2000): 195~216 참조.

한편 이러한 협력의 결과 1915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근로일은 1913년의 5,672,034일 대비 0.12%에 불과한 6,511일을 기록하였다. 개전 첫째 파업에 참가한 영국 근로자들이 345,394명으로 추산된 반면 동시기 독일에서는 10,739명만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독일 노동계의 전쟁 협조는 타국에 비해서도 독보적이었다. Snell(1953): 74 참조.

공채 발행법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³⁶⁾ 7월 31일 회의에서는 기권론이 우세한 가운데, 하세의 부결론이 뒤를 잇고 에두아르트 다비트(Eduard David)만 홀로 찬성을 주장하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8월 3일 회의에서는, 원내대표단 6명 중 하세와 게오르크 레데부어(Georg Ledebour)만이 반대를 표명하고 나머지 4명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다비트는 차르 전제 치하의 민중을 해방하는 ‘성전(聖戰)’에 사민당이 홀로 방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좌중의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결국 전시공채 모집에 대한 찬·반 표결에서 재석 92명 가운데 78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함으로써 사민당의 찬성 당론이 결정되었다.

제1장에서 서술한 하세의 8월 4일 제국의회 발언은 이 당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후일 전쟁 수행에 반대하며 독립사회민주당(Unabhängig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독립사민당’)을 창설하게 된 하세 본인은 물론, 칼 리프크네히트를 포함한 사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동조 하에 전시공채 법안은 통과되었다.³⁷⁾

다. 전쟁 협력의 과실

사회주의 세력의 협력에 따른 대가는 전쟁이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되기 시작하였다. 사민당의 다비트와 막스 코헨-로이스(Max Cohen-Reuß)는 내무상 델브뤽을 비롯한 제국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신분별 3부제 원칙에 기반한 프로이센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획기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 언급하였으며, 그러한 양보가 불발될 경우 민중의 기대는 분노로 전화될 것이

36) Harmer(2009): Chapter 2.

37) Maehl(1959): 184~185; Strachan(2001): 123.

라 밝혔다. 에베르트 역시 ‘성내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국 정부의 양보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며, 1915년 1월 샤이데만·레긴과 함께 밀 생산통제, 물가통제, 빵 배급 등의 조치를 내무성에 요구하였다.³⁸⁾

이에 따라 제국정부는 몇 가지 양보를 행하였다. 우선 사민당 출판물에 대한 불온서적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전후 프로이센 선거제도 개혁이 약속되었다. 1915년 3월부터는 빵 배급제도가 시행되었고, 동년 8월에는 ‘결사(結社)에 관한 법률(Reichsvereinsgesetz)’ 개정과 노조의 임금협상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³⁹⁾

전쟁이 장기화되며 노동계급의 협력이 절실해지자, 제국정부 관료 및 군부 관계자들이 사민당·노조 간부들과 정책을 논의하는, 전전(戰前)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특히 1916년 8월 팔켄하인의 경질 이후 파울 폰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원수와 에리히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 장군이 주도하는 총참모부(Oberste Generalstab)의 군사독재가 본격화되자, 전시경제를 군부 통제하에 두려는 시도와 함께 일련의 사회주의적 정책이 취해졌다. 예컨대 1916년 11월 8일 내무성과 자유노련 지도부 간 회의에서 레긴은 결사권 및 근로조건 보장과 징용된 노동자들의 가족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요구하였는데, 내무성의

38) Harmer(2009): Chapter 2; Kirby(1986): 32. 프로이센 선거권 확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Verhey(2000): 166~173 참조.

39) Moses(1976): 13; Verhey(2000): 169. 다만 제국정부의 이러한 양보는 사회주의 세력의 의도처럼 국내정치의 민주적 개혁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다. 베트만-홀베르크는 제2제국의 보수적 군주정체를 유지코자 사민당을 회유하려 했을 따름이었다. Egmont Zechlin, “Cabinet versus Economic Warfare in Germany: Policy and Strategy during the Early Months of the First World War,” in H. W. Koch (eds.),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Great Power Rivalry and German War Aims* Second Edition, (London: Macmillan Press, 1984): 268~269 참조.

반대에도 전쟁국(Kriegsamt)의 수장 빌헬름 그뢰너(Wilhelm Groener) 장군의 협조로 이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1916년 12월 6일 발효된 ‘전시근로보조법(Gesetz über den vaterländischen Hilfsdienst)’은 군부와 노조 간 협력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공장에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및 제반 요구사항들을 관리할 ‘노동자위원회(Arbeitskammer)’가 구성되었고, 노·사 간의 분쟁은 군구(軍區)별로 설치될 조정위원회가 중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의 통과와 함께 자유노련 산하 금속노조연맹 의장인 알렉산데르 쉘리케(Alexander Schlicke)가 프로이센 전쟁성의 고문으로 임명되는 등,⁴⁰⁾ 제국정부의 정책결정에 노조가 일정한 발언권을 보장받기까지 이르렀다.

5.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찬전 논리 분석

가. 차르 전제정치에 맞선 사회주의 가치 수호

“[러시아 정부가 총동원령을 발포한] 이 순간 이후로 독일 민중은 러시아의 위협에 사로잡힌 셈이다. 민중은 차르 전제정치와 그 병력에 관한 일들을 들을 때마다 독일 강토(疆土)에 발을 내딛는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승리가 야기할 후과를 생각하게 된다. 이 같은 공황의 분위기에서 전 독일민족은 조국의 정치·군사 지도부에 유순한 일꾼으로 봉사하게 된 것이다.”⁴¹⁾

40) Moses(1976): 13; Thorpe(2000): 200.

41) Vorstand der SPD, *Zur Frage der Verantwortung am WeltKriege*, (Berlin: n.d.): 8. 영역된 내용을 Maehl(1959): 184에서 재인용.

사민당 집행부가 발표한 이상의 성명은, 하세의 8월 4일 제국 의회 발언과 더불어 당시 독일 사회주의자들 간에 보편화되어 있던 제정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샤이데만은 사민주의의 최전선인 독일을 차르 전제정치의 위협으로부터 수호할 책무를 강조하며, 독일 사민주의의 패망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좌절로 이어지리라고 판단하였다.⁴²⁾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유럽문명을 파괴할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역시 반동·야만적인 제정 러시아에 맞선 전쟁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⁴³⁾ 사민당 내 중도파를 이끌며 당내 단합을 이루는 데 부심하였던 카우츠키도⁴⁴⁾ 8월 28일 『신시대(Die Neue Zeit)』 지에 기고를 내어 “우리는 또다시 유럽의 자유를 위협했던 고래(古來)의 사악한 숙적, 차르 전제정치에 맞서 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⁴⁵⁾

42) Maehl(1959): 185~186.

43) 베른슈타인은 폭력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문명화된’ 유럽 국가에 의한 식민지배는 용인하였었다. 그러나 1911년 제2차 모로코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제국주의 간 경쟁에 의한 파멸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깊이 염려하게 되었다. 그는 초기 전쟁 수행에는 찬성하였지만 이후에는 반전 입장으로 돌아서서 칼 리프크네히트 등과 함께 독립사민당 결성에 참여하였다. Roger Fletcher, “Revisionism and Militarism: War and Peace in the pre-1914 Thought of Eduard Bernstein,” *Militär-geschichtliche Mitteilungen*, Issue 1(January 1982): 23~30 참조.

44) David W. Morgan, “The Eclipse of Karl Kautsk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30, No. 1(1989): 59. 8월 3일 사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가 제시한 기권론이 거부되자, 카우츠키는 차선택으로 일체의 침략적 목표를 부인하는 조건 하에 전시공채 모집을 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압정(壓政)에도 거부감을 갖고 있었지만, 차르 전제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이를 능가한 것이었다. Massimo Salvadori, *Kautsky e la Rivoluzione Socialista 1880-1938*, translated by Jon Rothschild, *Karl Kautsky and the Socialist Revolution 1880-1938*, (London: NLB, 1979): 182~184 참조.

45) Karl Kautsky, “Die Sozialdemokratie im Krieg,” *Die Neue Zeit*, Vol. 33, No. 1(1914): 7. 영역된 내용을 Maehl(1959): 188에서 재인용.

한편 유력한 사회주의 이론가였던 알렉산데르 파르부스(Alexander Parvus)는, 차르 전제정치의 승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타격으로 자본주의적 착취를 가속화할 것이나, 러시아의 패배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혁명을 유도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는 헝가리와 불가리아의 사회주의계 잡지에 실린 〈차르 전제정치에 반하여 민주주의를 옹호함(Für die Demokratie gegen den Zarismus)〉 제하의 기사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태껏 힘겹게 이룩해놓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차르 전제정치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해니쉬 또한 독일 사회주의의 독보적인 이론·조직적 공헌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승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러시아의 승리는 곧 독일 사회주의에 대한 압제’라는 렌쉬의 표현은, 이미 고인(故人)이 된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나 빌헬름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 같은 저명한 사회주의 지도자들도 공유하던 명제였다.⁴⁷⁾ 특히 사민당과 자유노련이 전 유럽의 사회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독일 무산자들의 패배는 유럽 전역의 무산자 및 사민주의의 실패와 등치되었다.⁴⁸⁾ 러시아의 폭압적 지배로부터 독일 사회주의가 달성한 성과를 지켜내야 한다는 논리는 세계대전을 ‘방어전쟁’으로 인식케 하여, 사회주의자들이 국제평화주의의 대의에 배치되는 전쟁 수행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었다.

46) Macnair(2013): 368; Thorpe(2000): 209.

47) 가령 베벨은 1891년 에르푸르트 회의에서 제정 러시아를 ‘잔혹함과 야만의 본산’ 이요 ‘인류 문명의 공적(公敵)’이라 비난한 바 있었다. Harmer(2009): Chapter 2 참조.

48) Maehl(1959): 183; Strachan(2001): 121.

나. ‘유산자’ 대영제국에 대한 ‘무산자’ 독일의 투쟁

이상과 같은 대(對)러시아 ‘방어전쟁’의 인식 외에도, ‘금권제국(金權帝國)’ 영국에 대한 ‘무산제국’ 독일의 혁명이라는 견지에서 전쟁 협력이 정당화되는 논리도 찾을 수 있다. 다비트와 코헨-로이스 등으로 구성된 사민당 우파 세력은 세계시장과 식민지에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국을 국제사회에서의 ‘유산자’로, 독일은 이에 대항하는 ‘무산자’ 국가로 상정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렌쉬와 게르하르트 힐데브란트(Gerhard Hildebrand) 등은 사민당 개량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던 『월간 사회주의(Sozialistische Monatshefte)』 지를 통해 영국에 맞선 ‘무산자’ 독일의 혁명이 실패할 경우 전 유럽의 무산자 민주주의가 파탄될 것이라며 영·독 대립을 정당화하였다.⁴⁹⁾ 자유노련 역시 제국정부에 완전 고용상태 유지를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독일 경제의 파탄을 피하는 영국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고용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을 들었다.⁵⁰⁾

한편 1910년 11월부터 1915년 초까지 이스탄불에 체류하던 파르부스에게도 영국을 의식하는 시각이 관찰된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채권(債權) 통치’를 목도하며 영제국주의가 작동하는 현실을 파악한 그는,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대립이 영·독 갈등으로 귀착되었다 판단하였다. 파르부스는 독일을 고립시키고자 ‘3국협상(Triple Entente)’에 합류한 영국의 공세로 인해 전쟁은 불가피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독일의 승전을 통해 오스만 투르크가 영국·프랑스와의 채권관계를 청산하고 러시아의 야욕을 막을 수 있으리라 주장하며 독일에 일종의 ‘해방자’ 역할을 부여하였다.

49) Maehl(1959): 181, Footnote 2.

50) Moses(1976): 7.

렌쉬 또한 1915년 1월 발표한 『독일 사민주의와 세계전쟁: 정치적 연구』라는 팸플릿에서 독일이 금권적 의회국가에 머물러 있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발전된 형태의 자본주의 및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행 중인 전쟁은 영국·프랑스가 유산자의, 독일이 무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계급투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다. ‘전시사회주의’ 달성을 통한 노동계급의 권익 향상

자유노련 기관지 『서신』은 1914년 9~10월간 ‘전쟁과 사회적 책무(Der Krieg und die sozialen Pflichten)’라는 주제의 기획 기사를 통해 독일이 전쟁에 이겨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사회의 단결을 촉진하고 각 계급의 잠재력을 각성시킨다는 전쟁의 순기능이 강조되었다. 전쟁은 사회를 통합시키고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고양시킴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계급만의 사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게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세계대전을 통해 계급투쟁이 종언을 고하고, 파편화된 ‘시민(Bürgers)’ 대신 조국 수호의 일념 아래 단결한 ‘동포(Volksgenossen)’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었다.

총력전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협력이 불가결한 만큼 노동계급은 국가에 협조해야 하며, 국가는 그 반대급부로 노동계급의 권익과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서신』의 논리였다. 자유노련 지도부에 의하면 그들의 전쟁 협조는 지배계층에의 투항이 아니라, 역으로 조국 방위의 대의 아래 조직화된 노동력의 유용성을 인식한 제국의 통치자들이 노

51) Macnair(2013): 365~368 · 371~372.

조의 요구에 양보한 결과였다. 노동계급을 ‘국민(Volk)’이라는 단일 국가공동체의 어엿한 성원(成員)으로 위치시키려는 희망이, 사민당과 자유노련이 ‘성내평화’에 동의하게 된 기저(基底)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쟁 수행에 협조함으로써 제2제국의 폭압성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 역시 찾아볼 수 있다. 1914년 11월 14일 베를린 노조위원회가 제국정부와 군부의 대표자들을 초청한 것은, 사회주의 세력의 협조가 불가결한 것임을 지배계급에 각인시킴으로써 그들로부터 사회주의적 진전을 위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⁵²⁾

이러한 맥락에서 레긴과 자유노련 지도부는 ‘전시사회주의(Kriegssozialismus)’ 개념을 내세우며 전쟁 협조를 정당화하였다.⁵³⁾ 이들은 노동계급을 동원할 수 있는 노조의 조직력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시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당시 상황이야말로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과정이라 생각하였다.⁵⁴⁾

윈스터 대학교의 교수로 ‘1914년 정신(Ideen von 1914)’이라는

52) 이상 Moses(1976): 4~7. 다만 모세는 이러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제국정부는 분명히 일정 수준의 양보를 행하였으나,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도 자신들의 사익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노조의 전향적 태도에 재계가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이 당초 희구하였던, 자본계급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53) ‘전시사회주의’는 렌쉬가 1915년 2월 5일자 『전진』지에 게재한 논설에서 만들어낸 조어(造語)로, 근대적 총력전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를 통제하는 상황을 지칭하였다. 이 개념은 정치적 민주화와 노동계급의 집권을 사회주의 실현의 선행요건으로 본 베벨·카우츠키의 판단과 달리, 국가의 영향력 확대 자체를 사회주의적 전환의 계기로 삼은 발상이었다. 이 개념은 1차대전기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협조 논리에 동원되었던 것은 물론,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계획경제 수립과 2차대전기 영국의 경제계획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Macnair(2013): 372·374; Stefan Vogt, “The First World War, German Nation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German Zionism,” *Leo Baeck Institute Year Book*, Vol. 57(July 2012): 286 참조.

54) Moses(1976): 9~10.

표현을 고안한 요한 플렌게(Johann Plenge)도 독일 특유의 관료 체제와 경제적 조직화를 통해 ‘국가적 사회주의(Staatssozialismus)’가 달성되었다 주장하고⁵⁵⁾ 이를 프랑스 대혁명에 준하는 유럽사의 일대 분기점이라 평가하였다. 그는 또한 노조의 동원력과 규율을 찬탄하며 이들의 초(超)분파적 단합이 전쟁 수행은 물론 전후 복구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렌쉬 역시 ‘1914년 정신’을 통해 프랑스식 자유방임(laissez-faire) · 개인주의와 영국식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독일식의 조직 · 계획 ·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가 승리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주의가 이룩될 것이라 주장하였다.⁵⁶⁾

특히 상술한 ‘전시근로조법’의 제정은 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전시사회주의’의 도래가 임박하였다는 인상을 가지게 하였다. 『전진』은 동법을 국가적 사회주의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 상찬(賞讚)하며 정치 · 군사적 부문에서 ‘프로이센식 사회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평가하였다. 금속노조연맹 기관지 『금속노동자회보(Metallarbeiter-Zeitung)』 역시 1916년 11월 25일자 기사에서 동법을 ‘가장 강력한 전시사회주의 조치’로 칭송하며 전시경제 하에서의 규율과 총화(總和)가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 진보가 됨을 주장하였다.⁵⁷⁾

라. 세계혁명에 대한 기대

열강의 전쟁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촉진하리라는 생각은 기실 제2인터내셔널의 일부 급진파들 간에 공유되던 인식이었다.

55) 본고에서는 나치스(Nazis)가 추구한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와의 구별을 위해 ‘Staatssozialismus’를 ‘국가적 사회주의’로 옮겼다.

56) Moses(1976): 7; Verhey(2000): 132 · 168.

57) Harmer(2009): Chapter 2; Snell(1953): 71~72; Thorpe(2000): 200.

이들은 자본주의의 최종단계인 제국주의가 대전을 통해 파멸함으로써 각국에서 계급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하였다. 전쟁은 사회의 근본적 변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조기에 혁명을 유도하려면 각국의 군국·제국주의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고무되어야 했다.⁵⁸⁾

렌쉬는 앞서 언급한 『독일 사민주의와 세계전쟁: 정치적 연구』에서 세계전쟁이 곧 세계혁명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파르부스는 1915년 4월 올리우스 마르토프(Julius Martov)와 트로츠키에게 띄운 공개서한에서, 전쟁으로 야기될 국가권력의 재조정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무산자 계급투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사민주의자들이 전쟁 수행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결과를 무산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1915년 9월 발표된 〈독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의 보루(堡壘)〉 제하의 비평에서도 유사하게 표명되었는데, 파르부스는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을 막지 못한 판국에서 무산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은 세계전쟁을 지지하며 이를 사회주의 실현에 활용하는 것이라 밝혔다.⁵⁹⁾

6. 협력의 결과: 사회주의계의 분열과 반성 없는 복귀

전전 사회주의계의 ‘가장 반짝이는 보석’으로 칭송받던 사민당과⁶⁰⁾ 자유노련은 독일의 전쟁 돌입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으며, 국제사회주의 신조를 굳건히 지켜줄

58) Kirby(1986): 33; Strachan(2001): 113.

59) Macnair(2013): 365~371.

60) Kirby(1986): 39.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다.⁶¹⁾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주의적 ‘선의(善意)’에 따라 독일 사회주의계는 노동계급 연대에 기초한 국제평화주의 대신 전쟁에 협조하는 길을 택했는데, 그 결과로 이후 독일사의 향방을 바꾸게 될 사회주의계의 분열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였다.

사민당의 분열은 1914년 12월 2일 개최된 제국의회에서 칼 리프크네히트가 제2차 전시공채 추가모집안에 부표(否票)를 던지면서 시작되었다. 하세와 카우츠키는 1915년 6월 사민당 집행부의 노선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16년 3월에는 레데부어와 빌헬름 디트만(Wilhelm Dittmann) 등 제국정부의 전시공채 모집에 반대한 사민당 좌파 의원 18명이 출당 조치되었다. 이들이 1917년 4월 5일 독립사민당을 결성함으로써 독일 사회주의 정당의 단일대오는 깨어지게 되었다.⁶²⁾

그런데 독일 사회주의계가 나름의 지향을 갖고 전쟁 수행에 협력했음에도, 세계대전 발발의 책임은 빌헬름 2세와 군부에게

61) Strachan(2001): 117. 사민당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수상 집권기의 비법화(非法化)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100만 여명의 당원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자유노련 역시 1912년 기준 약 25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사민당은 특히 1912년 제국의회 총선거에서 유권자 투표의 35%에 육박하는 425만여 인의 득표수를 기록하여 재적 397석 중 110석을 차지, 제국의회 제1당으로 부상하는 등 전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화된 사회주의 정당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Chickering(1998): 7; Dittmar Dahlmann, “Parliament,”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44; Maehl(1959): 183 참조.

62) 1914~17년 사민당의 분리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경위는 Chickering(1998): 154~159; Kirby(1986): 45~49; Schorske(1983): 300~320 참조. 이와 함께 사민당과 자유노련 가맹원수도 급격한 저하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16년 3월 기준 사민당원은 전전의 6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유노련 가입자수는 1914년 상반기 251만 1천 명에서 1916년 기준 96만 7천 명으로까지 급감하였다. Kirby(1986): 58; Jürgen Kocka, *Klassengesellschaft im Krieg: dt. Sozialgeschichte 1914-1918*,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3): 56 [Moses(1976): 1에서 재인용] 참조.

전가되었을 뿐 사민당과 자유노련은 별다른 반성이나 자아비판 없이 전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⁶³⁾ 개전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 대한 잠수함 봉쇄작전을 ‘존재를 위한 싸움’으로 옹호했던 에베르트는⁶⁴⁾ 빌헬름 2세 퇴위 후 과도정부 수상과 신생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하였다. 동부전선에서의 러시아군 패퇴를 ‘혁명적’인 것으로 격찬하며 러시아의 방대한 영토를 분리시키는 데 찬성한 사이데만은⁶⁵⁾ 대통령에 취임한 에베르트로부터 공화국 초대 수상직을 물려받았다. 사이데만의 후임 수상으로 베르사유 강화조약에 서명한 이는 자유노련의 부의장으로 전쟁에 협조하였던 바우어였다.

한편 전쟁 후기 반전을 내세우며 독자적 활동을 펼친 독립사민당은 스파르타쿠스단(Spartakusbund)을 중심으로 1919년 1월 독일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을 조직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위 ‘1월 봉기(Januaraufstand)’는 우익의 ‘자유군단(Freikorps)’까지 동원한 에베르트 과도내각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었고, 리프크네히트·룩셈부르크 등의 핵심 간부들은 잔혹하게 피살되었다. 이로써 사민당과 공산당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양당의 불화는

63) 1919년 바이마르 의회에서 사민당은 재적 423석 중 165석을 확보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는데, 당선자들 중 54.5%가 노조에 몸담은 전적이 있었으며 32.7%는 간부 출신으로 노조의 영향력은 전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Snell(1953): 75 참조.

64) Harmer(2009): Chapter 2.

65) Maehl(1959): 187·189. 사이데만뿐 아니라 다비트·쿠노·해니쉬·레긴·코헨-로이스 등 사회주의계의 다수 지도자들이 동부전선의 승리를 통한 러시아 제국의 해체와 차르 체제의 전복을 희구하고 있었다. 당시 제국정부는 이러한 사회주의계의 희망을 더욱 고무시켜 러시아와의 강화협상에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유명한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의 ‘양면게임(two level game)’론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라 하겠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과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대두에 적잖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⁶⁶⁾

7. 결론에 대신하여: 본고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주의 가치의 수호와 실현이라는 ‘선의’에 기반하여 전쟁 수행에 협력했던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의 분열이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주의의 도래까지 야기한—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였다. 다만 본고는 제5장에서 정리된 네 가지 범주의 ‘적극적’ 사고가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찬전을 결정지은 전적인 사유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기해둘 필요가 있겠다. 제국정부와 군중심리의 위협에 따른 ‘피동적’ 상황이나 독일 사회주의계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제국주의적 팽창 욕구에 따른 ‘악의적’ 이유가 전쟁 협력의 배경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⁶⁷⁾ 또한 연구자 역량의 한계로 독일어로 쓰인 1차 사료를 참고하지 못하고 영문 2차 문헌에 의지하였기에, 본고의 서술이 당시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인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고는 감히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간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의 전쟁 협력 논리 속 사회주의적 지향

66) Snell(1953): 75~76.

67) 실제로 독일노동조합자유연맹의 기관지 『선구자(Der Pionier)』와 『단결(Der Einigkeit)』은 반전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폐간되었으며, 『뮌헨 포스트(Münchener Post)』를 위시한 사회주의계 매체나 쿠르트 아이즈너(Kurt Eisner) 등 사민당 간부들에 대한 습격이 시도되면서 물리적 탄압에 대한 우려가 증중하고 있었다. 모세 역시 1914년 7월 31일 계엄령이 반포되어 군부가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국의회를 통한 전쟁 비판마저 탄압을 면치 못했으리라 보았다. Maehl(1959): 179; Moses(1976): 6; Thorpe(2000): 197~198 참조.

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시도는 일말의 학술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생각된다.

후속 연구의 방향에 관하여, 사회주의적 ‘선의’에 입각한 협력론이 여타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작용하였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와 흡사하게 1914년 7월 말까지 반전 입장을 확고히 하던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8월 3일 독일의 대(對)프랑스 선전 이후 ‘신성연합(Union Sacrée)’의 기치 아래 돌연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다. 이때 프랑스 중의원 의원이자 사회당 기관지 『인류(L'Humanité)』의 편집장이었던 장 조레스(Jean Jaurès)는 7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차 인터내셔널 사무국 회의에서 전쟁으로 야기될 비참한 생활과 압제가 민중을 각성시켜 사회주의를 현실화시키리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⁶⁸⁾ 조레스는 이를 후인 7월 31일 우익분자에게 피살되어 이후의 ‘신성연합’ 형성에는 관여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식의 사고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전쟁 협력에 작동하고 있었는지, 작동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독일의 사례와 차별성을 띠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모세의 지적을 발전시켜⁶⁹⁾ 독일 사회주의 세력의 전쟁 협조가 전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적

68) Haupt(1972): 221. 7월 15~16일 간 열린 프랑스 사회당 대회에서는 반전 입장을 확인하며 그 수단으로 국제적 수준의 총파업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프랑스 노동자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또한 제국주의적 전쟁에 대한 전면 거부를 언명하였고,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전집회를 실시하였다. Herreros(2003): 330·332 참조.

한편 독일의 ‘성내평화’에 비견되는 ‘신성연합’의 구호는 8월 4일 르네 비비아니(Rene Viviani) 수상이 중의원에서 대독한 레몽 푸앵카레(Raymond Poincaré)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언급된 표현이다. Dahlmann(2014): 50~53; Stig Förster, “Civil-military relations,”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97 참조.

69) Moses(1976): 2.

경로를 추적해보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독일 노동계급이 보여주었던 국가적 사회주의에 대한 친연성은 이후 국가사회주의가 횡행하게 된 주요한 배경으로 지적되는 만큼,⁷⁰⁾ 당시 독일 사회주의계의 선택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위치시키는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끝으로 독일 사회주의자들의 선택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사를 규정지은 양대 축인 ‘전쟁’과 ‘혁명’의 상호작용이라는 견지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석명하는 것도 흥미 있는 주제가 될 터이다. 가령 사민당과 자유노조 주류가 ‘전쟁’에 합세함으로써 ‘혁명’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 추단(推斷)했다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화시키자’는 레닌의 ‘이중격파론(dual-defeatism)’은⁷¹⁾ ‘전쟁’에도 불구하고 ‘혁명’을 실현시키자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혁명’으로 대변되는 국내정치와 ‘전쟁’이 상징하는 국제정치가 근대 유럽에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당대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다루어야 하기에, 역사학은 물론 군사학이나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다루어볼 만한 문제라 생각된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10주년이 되는 2024년의 시점에서, 본고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후속 작업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며 결론에 대신한다.

70) Snell(1953): 75~76. 스넬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로 에딩거(Lewis J. Edinger), 스투름탈(Adolf Sturmthal), 앤더슨(Evelyn Anderson), 로스펠스(Hans Rothfels) 등의 성과를 꼽았다.

71) Macnair(2013): 373.

〈참고문헌〉

- Lenin, Vladimir Ilych.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남상일 譯, 『제국주의론』. 1986. 서울: 백산서당.
- _____. *Collected Works*. 양효식 譯, 『레닌 전집 제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2017. 파주: 아고라.
- 황동하. 2014. “제1차 세계대전기 독일 사회민주당의 ‘방어전쟁’과 로자 룩셈부르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1권 제3호: 12-39.
<http://doi.org/10.26587/marx.11.3.201408.001>
- Ceadel, Martin. 2014. “Pacifism,”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ume II: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ickering, Roger. 1998. *Imperial Germany and the Great War, 1914-19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mann, Dittmar. 2014. “Parliament,”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ume II: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etcher, Roger. 1982. “Revisionism and Militarism: War and Peace in the pre-1914 Thought of Eduard Bernstein,” *Militär-geschichtliche Mitteilungen*, Issue 1.
- Förster, Stig. 2014. “Civil-military relations,” in Jay Winter and The Editorial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of the Historial de la Grande Guerr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Volume II: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gory, Adrian. 2014. *A War of Peoples 1914–191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mer, Harry J. P. 2009. *Makers of the Modern World: Friedrich Ebert — Germany*. London: Haus Publishing.
- Haupt, Georges. 1972. *Socialism and the Great War: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erreros, Francisco. 2003. “The Dilemma of Social Democracy in 1914: Chauvinism or Social Dilemma?.” *Rationality and Society*, Vol. 15, No. 3.
- Kirby, David. 1986. *War, Peace and Revolution: International Socialism at the Crossroads 1914–1918*. Aldershot: Gower.
- Lih, Lars T. 2014. “The New Era of War and Revolution: Lenin, Kautsky, Hegel and the Outbreak of World War I.” in Alexander Anievas (eds.), *Cataclysm 1914: The First World War and the Making of Modern World Politics*. Leiden: Brill.
- Macnair, Mike. 2014. “Die Glocke or the Inversion of Theory: From Anti-imperialism to Pro-Germanism.” *Critique*, Vol. 42, No. 3.
- Maehl, William. 1952. “The Triumph of Nationalism in the German Socialist Party on the Eve of the First World War.”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24, No. 1.
- . 1959. “The Role of Russia in German Socialist Policy, 1914–18.”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Vol. 4, Issue 2.
- Morgan, David W. 1989. “The Eclipse of Karl Kautsk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30, No. 1.
- Moses, John A. 1976. “Bureaucrats and Patriots: The German Socialist Trade Union Leadership from Sarajevo to Versailles, 1914–1919.” *Labour History*, No. 30.

- Salvadori, Massimo. *Kautsky e la Rivoluzione Socialista 1880–1938*, translated by Jon Rothschild, 1979, *Karl Kautsky and the Socialist Revolution 1880–1938*, London: NLB.
- Schorske, Carl E. 1983. *German Social Democracy, 1905–1917: The Development of the Great Sch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nell, John L. 1953. “Socialist Unions and Socialist Patriotism in Germany, 1914–1918.”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59, No. 1.
- Strachan, Hew. 2001. *The First World War Volume I: To Ar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rpe, Wayne. 2000. “Keeping the Faith: The German Syndicalists in the First World War.”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33, No. 2.
- Verhey, Jeffrey. 2000. *The Spirit of 1914: Militarism, Myth and Mobilization in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ogt, Stefan. 2012. “The First World War, German National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German Zionism,” *Leo Baeck Institute Year Book*, Vol. 57.
- Zechlin, Egmont. 1984. “Cabinet versus Economic Warfare in Germany: Policy and Strategy during the Early Months of the First World War.” in H. W. Koch (eds.),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Great Power Rivalry and German War Aims* Second Edition, London: Macmillan Press.
- “Presentation of Kautsky–1914.” 1970. *New Left Review*, No. 59.

<Abstract>

How German Socialists Came to Support 'the Great War': The Irony of Socialist 'Goodwill' and Their Proactive Cooperation on War

Ko Yong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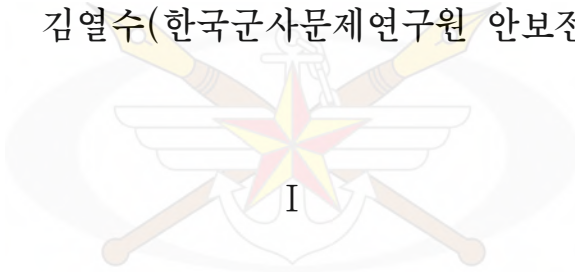
This article purports to revisit how German socialists came to support the Great War in 1914 despite their fierce antagonism against capitalist wars, based on secondary literature written in English. Conventional wisdom tends to explain it with a focus on either 'misjudgement and betrayal' against socialist ideals or 'resignation and passivity' caused by belligerent social atmosphere. In this article, however, I present some evidences for the logic of proactive cooperation on the war conceived by the leaders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SPD) and the Free Labor Unions, both of which were most influential organizations of German socialism. They can be analyzed into four different categories: first, to protect socialist values against the Czarist despotism; second, to counter the greed of the bourgeois British Empire; third, to promote benefits for labor class by realizing 'wartime socialism'; and fourth, to facilitate socialist revolutions around the world. Ironically, though, such 'goodwill' of German socialist leaders which legitimized their collaboration on the war turned out to result in not only the schism of socialist forces but also the emergence of the Nazist 'Third Reich' in the interwar Germany,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critical juncture in the nexus of 'revolution' and 'war' in modern European history.

Keywords : The First World War,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Burgfrieden, Wartime Socialism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295-308
<https://doi.org/10.29212/mh.2024..130.2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동맹 70년사』(서울: 국방부, 2023), 492 페이지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 70년사』라는 공간사(公刊史)를 발간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국방사부 부장을 포함하여 5명의 연구원이 1년 넘게 집필했다. 12명의 자문위원이 집필 과정에 참여했으며 3명이 공간사를 최종 감수했다. 사실의 정확성과 기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고 작은 세미나도 여러 번 개최했다. 그 결과 『한미동맹 70년사』라는 옥동자가 탄생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3년에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동맹 60년사』를 편찬한 바 있다. 『한미동맹 60년사』는 통사(通史) 형식의 공간사였다. 따라서 『한미동맹 70년사』는 기존의 『한미동맹 60년사』에 지난 10년의 역사를 통사 형식으로

덧붙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집필 방향을 선택했다. 통사의 형식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의 70년을 주제별로 편찬한 것이다. 『한미동맹 60년사』가 한미동맹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기술하는 종적(縱的) 기록에 치중했다면 『한미동맹 70년사』는 동맹의 역사를 주제별로 기술하는 횡적(橫的) 기록에 중점을 두었다. 부연하면, 『한미동맹 60년사』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한미동맹의 성립 → 한미동맹의 성장 → 한미동맹의 강화 → 한미동맹의 발전 순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한미동맹 70년사』는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 한미동맹과 국방협력 순으로 주제별로 구성했다. 구성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사 형식의 기술과 주제별 기술 형식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어떤 형식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같은 형식의 기술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 것이 본 공간사를 더 돋보이게 한다.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기도 하다. 사실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전체제 70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이를 뒷받침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동맹 현안에 따라 갈등과 부침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이를 극복하면서 동맹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공간사의 각 부는 동맹의 부침을 가져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II

공간사 제1부는 한미동맹의 전사(前史)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미역사 140여 년의 기원이 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과정과 조약 내용을 둘러싼 미국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해방군으로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미국과의 동맹 체결을 원했으나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던 사실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을 떠났던 미국이 다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남침 때문이었다. 1949년 8월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통일하고, 1950년 2월에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기에 미국의 한국전 참전은 제3차 대전의 위험마저 있었다. 게다가 1950년 1월에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애치슨라인까지 선포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군이 남침하자 즉각 유엔군을 조직하여 한국전에 참전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하였고 6개국이 의무부대를 파병하였으며 38개국이 각종 물자를 지원하였다.

전선에서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자, 정전회담 논의가 급부상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전회담은 1951년 7월에 개최되었다. 포로문제에 대한 유엔군 측의 ‘자유송환’ 주장과 공산군 측의 ‘강제송환’ 주장으로 정전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1953년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하자 정전회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포로송환협정 체결이 임박했고 뒤따라

정전협정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보장조치 없이 정전협정만 체결 되면 북한은 또다시 재침(再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 체결 없이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벼랑 끝 전술까지 펼치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경무대에서 가조인식에 이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순서상으로는 정전협정 체결이 먼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약속이 우선했다. 1954년 11월에는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교환한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때 발효되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1966년에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미동맹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미동맹 출범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미동맹 관계는 ‘후견인-피후견인(patron-client) 관계’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국과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한미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닉슨독트린에 의해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한국은 자주국방을 추진하였고 1978년 한미는 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탈냉전이 되자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군이 주도(leading)하고 미군은 지원(supporting)하는 역할’로 변한 것이다. 9·11테러를 계기로 21세기 안보질서가 변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한미협의체를 통해 주한미군 감축, 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확장

억제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해 왔다. 2023년 현재 한미동맹은 협력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간사 제1부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압축하여 기술한 것이다. 제1부만 읽어봐도 한미동맹의 성립과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Ⅲ

공간사 제2부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다룬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군의 제도적 지원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억제자로서 역할과 지역 안정자로서 역할을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국 경제발전의 촉진자로서 역할도 했다. 주한미군이 존재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었고, 한국은 국방비를 경감시켜 그 절약한 국방비를 경제발전에 투자함으로써 이른 시일 안에 압축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국군에 대한 유·무형의 전력을 보강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했다. 미국은 유무상 군사원조를 통해 국군의 군사력 발전에 기여했고, 국군은 미군의 전구급(戰區級) 전략·전술 등을 습득하고 훈련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한미동맹으로 전통적 유교 질서에 매몰되어 있던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눈

뜨게 되었고 오랫동안 전통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었던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주둔정책은 행정부마다 조금씩 달랐고 이것이 한국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닉슨독트린으로 미 제7사단이 철수하자 한국은 ‘올곡계획’ 등을 통해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관한 2개의 상반된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미 양국은 유엔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였다. 특히,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군이 한국 방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이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군에게 10대 임무를 전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되었고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를 공식화하였다.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 전환에 이어 현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크게 SOFA 개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개선환경과 방위비 분담 등을 다루고 있다. 2차에 걸친 SOFA 개정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현재도 한미간에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이라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SOFA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과 이전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의해 추진되었다. 공사비 12조 원이 투입된, 여의도 면적의 5배인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기지가 되었다.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이곳에 개청했고 2022년에는 CFC가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이 용산기지 이전 선거 공약을 제시한 이후 무려 30여 년만이었다. 주한미군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연도별 분담금 규모가 정해지는데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SMA가 체결되었다. <표 2-11>을 보면 11차례의 SMA가 요약되어 있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IV

공간사 제3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를 다루고 있다.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형성과 발전을 기술하고 있다. 지휘체제와 협력체제, 그리고 훈련체제가 핵심이나 동맹 현안이 되는 작통권 전환 문제도 기술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의 상반된 결의안 통과가 CFC 창설의 정치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CFC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었던 군사적 배경도 중요하다. CFC 창설 이전에 존재했던 한미 제1군단과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가 연합 지휘체제로서 큰 역할을 했다. 공간사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술은 물론 2015년에 창설한 한미연합사단에 관해서도 기술함으로써 전반적인 연합방위체제의 변천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물론 수많은 현재 및 미래의 쟁점들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장관급(SCM)과 합참의장급(MCM)의 회의체와 함께 차관 및 실무자급의 회의체 등 다양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핵협의그룹(NCG) 등이 대표적이다. 전·평시 군수지원을 위한 체제도 존재하는데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A)과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등이 대표적이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합연습 및 훈련은 물론 각종 교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공간사는 6·25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그 변천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교리를 따르고 모방했던 군정기와 창군기를 거쳐 한국형 교리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도 기술하고 있다.

연합방위체제의 임무는 억제이고 억제 실패 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1993년과 2003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북 회담, 6자회담 등을 개최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자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문을 열어 둔 채 확장억제라는 대응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한미 정상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미국은 가용한 모든 국방력을 동원하고 한국은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확장억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3축 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공간사는 무려 50쪽에 걸쳐 이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실체와 이의 대응 방안으로써 외교적인 비핵화 회담과 군사적인 억제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작통권 전환 부분은 6·25전쟁 직후 작전지휘권 이양의 배경과 과정부터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과정까지 다루고 있다. 전쟁 직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작전지휘권은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될 때는 작전통제권이라는 제한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1978년 CFC의 창설과 함께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작통권이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와 미국의 전략 변화로 인해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평통권)이 한국군으로 전환

됨으로써 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부상했다. 2003년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15년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수정되었고 현재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 공간사는 작통권 전환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배경까지 기술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V

공간사 제4부는 동맹으로서의 국방협력을 다룬다. 미국의 세계적 군사 정책에 한국이 동맹으로서 협력한 해외 파병 사례와 포괄적 안보협력 사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파병은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엔 주도의 평화활동(Peace Operations)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공간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MNF)에 국군이 참여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은 박정희 대통령의 파병 의지와 미국 및 베트남의 요청이 맞물려 이루어졌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파병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쟁 파병을 통해 미국 주도의 동맹관계를 협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국군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심지어 한국은 파병된 부대에 대해 독자적인 작통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얻었다. 공간사는 파병의 경위와 규모, 주월한국군의 작통권 행사 배경, 그리고 한미연합작전까지 기술하고 있다. 독자적인 작통권을 행사하면서

도 작전협조기구를 통해 연합작전을 한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전쟁 파병이 SCM이라는 협의체 창설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를 더해 준다.

국군이 다국적군에 참여한 사례는 많지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참여한 것은 1990년의 걸프전, 1992년 소말리아 내전, 2002년의 아프가니스탄전, 그리고 2003년의 이라크전 등이다. 해군수송지원단과 공군수송지원단, 육군의 의료부대와 공병부대 등이 주로 참여했으며 이라크에는 자이툰 부대가 사단급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국적군에 부대 단위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참여할 수도 있다. <표 4-4>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주도의 다국적군에 국군이 부대 및 개인 단위로 참여한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다.

포괄적 안보협력은 재해·재난 대비, 사이버·우주 협력, 방산·기술 협력 등으로 구분된다. 재해·재난 대비는 기후환경과 보건안보의 중요성과 한미의 협력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사이버 협력은 사이버 안보의 위협 및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과 사이버 안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 연합사이버 훈련 등 한미의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우주 협력은 우주를 향한 군의 정책 발전 과정과 한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우주협력협정과 약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우주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황도 기술되어 있다. 방산협력은 방산 협의체와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현황과 방산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을 향한 제3세대 방산협력은 갈 길이 멀다는 점도 기술되어 있다. 주로 방산분야에 국한된 과학기술 협력도 협의체와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강조되어 있다.

재해·재난 대비는 기후와 환경의 차원에서 한미 간의 협력이

본격화되었고, 사이버·우주 협력은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유리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기술 분야는 협력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VI

본 공간사는 사료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무려 7개에 달하는 부록을 첨부했다. 그 중에서도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부터 2023년 제23차 KIDD 개최까지 무려 13쪽에 달하는 ‘한미관계 연표’는 압도적이다. 이 연표만 읽어봐도 한미관계 역사를 대충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급, 합참의장급, 차관급, 그리고 실무자급의 한미안보협의체 개최 현황과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20쪽에 달하는 ‘한미 안보협의체 개최 현황’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현황에서는 한미가 안보 현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정책이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미 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 공동비전과 공동선언, 국방협력 지침과 연합방위지침,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한미동맹의 주요 합의문인 ‘한미동맹 주요 합의문 변천 경과’라는 첨부물도 한미동맹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엔사가 작통권을 행사한다는 한미합의의사록과 CFC 창설의 배경이 되는 상반된 유엔총회 결의안 등이 첨부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미 간에 체결된 조약·각서·약정 목록도 한미동맹 관계사

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 60년사』에 빠져 있던 목록이 10개나 추가되었고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무려 30개 가까운 목록이 포함되어 총 98개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1차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귀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약사도 부록에 있다. 언제 어떤 기지들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며 언제 어떤 기지들이 반환되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군 생활을 오래한 평자의 입장에서든 생소한 이름의 미군 기지들이 생각보다 많다.

공간사는 독자들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표와 사진, 그리고 그림 등을 많이 사용했다. 본문에는 39개의 표와 72개의 사진, 그리고 17개 그림이 사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독자들을 배려했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외국어를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했다. 본 공간사가 단순히 기록을 넘어 독자의 공감대 형성과 가독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VII

한미동맹은 대체 불가능한 귀중한 자산이다. 한국은 한미동맹 덕분에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군사력도 세계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이런 하드파워 못지않게 한류로 표현되는 소프트파워도 강하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6·25전쟁이 남긴 갯더미에서 출발했던 한국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원조를 받지 않으면 생계유지를 할 수 없었던 국가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창의적이고 근면한 민족정신과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들을 만난 덕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북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리고 서독과 동독은 모두 체제모순과 분단모순의 구조를 가졌지만, 세 나라의 운명은 극명하게 다르다. 자유 진영에 속했던 남베트남은 공산진영의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하였고, 자유진영의 서독은 공산진영의 동독을 흡수통일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체제모순과 분단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 나라 운명의 중심축에 미국이 있다. 미국은 닉슨독트린과 파리 평화협정을 통하여 남베트남을 버렸으나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현재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다. 한미동맹이 혼란을 줄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또 다른 70년이 진행되는 동안 정전체제가 사라지고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우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대사는 미국과 함께하는 역사였다. 그 핵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한미동맹 70년사』는 단순히 한미동맹의 70년사일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70년 사이자 한국의 현대사이기도 하다. 본 공간사는 일반독자, 정책 수립자, 그리고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독자는 크게는 한국 현대사와 한미 역사를 이해하고, 좁게는 한미동맹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수립자는 70년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쟁점에 대해 갈등과 그 갈등을 극복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다양한 교훈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에게 본 공간사는 보물과 같을 것이다. 본 공간사는 논문의 주제처럼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는 1차 자료 목록 등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공간사는 상당히 쉬운 문체(文體)로 쓰였기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관심 분야에 따라 제1부를 읽은 뒤 해당 부분만 찾아 읽어도 좋다. 『한미동맹 70년사』가 두루 읽히면서 여러 저술에서 많이 인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소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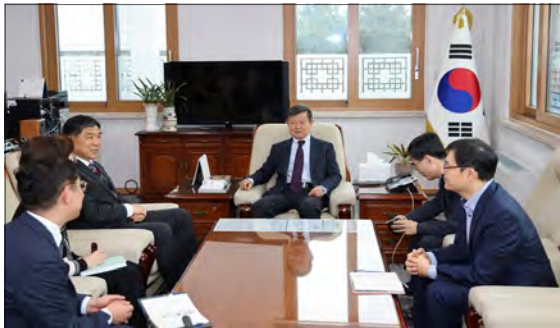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4년 군사편찬연구소 시무식
 - － 일자 / 장소: 2024. 1. 2.(화) / 연구소 회의실
 - － 참석: 연구소 직원



〈2024년 군사편찬연구소 시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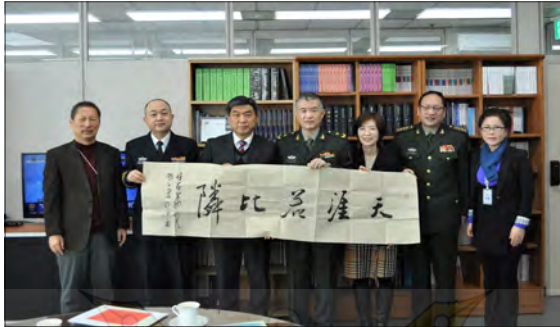
- 유관기관 학술교류 방문
 - － 일자 / 장소: 2024. 1. 11.(목) / 국사편찬위원회
 - － 참석: 연구소장, 군사사부장
 - － 내용: 군사사 연구 학술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유관기관 학술교류 방문〉

○ 중국 무관 내방

- 일자/장소: 2024. 1. 30.(화) / 연구소장실
- 참석: 중국 국방무관 등 3명



〈중국 무관 내방〉

2. 교 육

○ 성과관리과정

- 군사사부 연구원 김윤미 : '24. 3. 4. ~ 8.

자료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http://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1(김경록)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부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22. 2.18.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18

제2조(적용대상) 318

제3조(적용범위) 318

제4조(용어의 정의) 318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319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320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321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322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322

제7조의 4 (중복게재)	323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323
제7조의 6 (공동연구)	324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324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324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324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325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325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326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326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326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327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328
제16조(판정)	328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328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29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329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329
부 칙	3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
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
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
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
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
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
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 (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륜(성신여자대학교)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한동훈(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4/3(第130號)

2024년 3월 8일 印刷

2024년 3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1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4020158)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30. 2024. 3.

Gam, Byung-Hoon	The Re-appointment of Hasamdo's Soldier in the Early Joseon Period
Kim, Myung-Rae	The Policy for Pine Trees (松政) of Chungcheong Suyeongseong Fortre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 Jun-hee	A Study on 1896 Jeongsan battle under Cheong, Inhee, vanguard of the First Hongju righteous army
Ko Jong Sung	Trends and Challenges in Research on Excava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Moon, kwan-hyun	The Role of Korea in the Establishment of the UNC "Focused on the June 26th, 1950 Messages"
Lee Jun-hue	1940-50's SP record of Korean military song
Ko Yongjun	How German Socialists Came to Support 'the Great War': The Irony of Socialist 'Goodwill' and Their Proactive Cooperation on War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ISSN 1598-317X